국제노동단체 및
주요국 노총 현황

2014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목차

자료집을 펴내며 ····· 1

제1부 국제노동단체

제1장 ILO (국제노동기구) ····· 5
1. 개요 ····· 5
2. 역할 ····· 7
3. 조직 ····· 7
4. 회원국의 의무 ····· 11
5. 주요 간부 및 연락처 ····· 14

제2장 ITUC (국제노총) ····· 17
1. 통합배경과 주체 ····· 17
2. 조직 ····· 21
3. 주요 간부 및 연락처 ····· 30

제3장 WFTU (세계노련) ····· 33
1. 개요 ····· 33
2. 조직 ····· 33
3. 연락처 ····· 35

제4장 OECD-TUA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 37
1. 개요 ····· 37
2. 조직 ····· 39
3. 역할과 활동 ····· 42
4. 핵심 이슈 ····· 42
5. 주요 간부 및 연락처 ····· 43

제5장 GUFs (국제산업별노동조합연맹) ····· 45
1. ITF(국제운수노련) ····· 47
2. UNI (UNI 글로벌유니온) ····· 49
3. BWI(국제건설목공노련) ····· 51
4. PSI(국제공공노련) ····· 52
5. IUF(국제식품노련) ····· 54
6. EI(국제교원노련) ····· 55
7. IFJ(국제언론노련) ····· 58
8. IndustriAll(국제인더스터리올노련) ····· 59

제6장 ETUC (유럽노동조합총연맹) ····· 63

제7장 NFS (노르딕국가 노동조합협의회) ····· 65

제2부 주요국 노총 현황

제8장 동아시아 ····· 69

1. 대만 ····· 69
2. 몽골 ····· 72
3. 일본 ····· 76
4. 중국 ····· 88
5. 홍콩 ····· 101

제9장 동남아시아 ····· 107

1. 말레이시아 ····· 107
2. 미얀마/버마 ····· 113
3. 베트남 ····· 118
4. 싱가포르 ····· 123
5. 인도네시아 ····· 129
6. 캄보디아 ····· 136
7. 태국 ····· 140
8. 필리핀 ····· 142

제10장 남아시아 ····· 149

1. 방글라데시 ····· 149
2. 인도 ····· 152
3. 파키스탄 ····· 166

제11장 서아시아(중동) ····· 173

1. 이스라엘 ····· 173
2. 터키 ····· 177

제12장 태평양 ····· 189
1. 뉴질랜드 ····· 189
2. 호주 ····· 195

제13장 서유럽 ····· 205
1. 그리스 ····· 205
2. 네덜란드 ····· 208
3. 노르웨이 ····· 214
4. 덴마크 ····· 221
5. 독일 ····· 227
6. 벨기에 ····· 235
7. 스웨덴 ····· 241
8. 스페인 ····· 252
9. 아이슬랜드 ····· 259
10. 아일랜드 ····· 262
11. 영국 ····· 266
12. 오스트리아 ····· 277
13. 이탈리아 ····· 281
14. 포르투갈 ····· 291
15. 프랑스 ····· 294
16. 핀란드 ····· 309

제14장 동유럽 ····· 317
1. 러시아 ····· 317
2. 체코 ····· 323
3. 폴란드 ····· 328
4. 헝가리 ····· 332

제15장 북미 ····· 337
1. 미국 ····· 337
2. 캐나다 ····· 348

제16장 중 · 남미 ····· 359
1. 멕시코 ····· 359
2. 베네수엘라 ····· 366
3. 브라질 ····· 369
4. 칠레 ····· 375

제17장 아프리카 ····· 381
1. 가나 ····· 381
2. 나이지리아 ····· 383
3. 남아프리카공화국 ····· 387
4. 튀니지 ····· 394

참고문헌 ····· 398

자료집을 펴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사용자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과정의 전면적 재편을 통한 유휴인력 산출과 정리해고, 임금유연화 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로 인한 상시적 · 전지구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극복을 위해 노동운동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노총도 자본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제노동단체 및 외국노총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산하조직 역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노동운동의 국제활동은 성숙된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그 성과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국내사안에 매몰되어 국제노동운동의 정책목표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도 국제적인 전문지식과 정보력을 갖추고 보다 다양한 활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각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에서는 국제노동단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국 노동조직의 대응방식을 파악해 향후 한국노총의 발전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국제노동단체 및 주요국 노총 현황”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집은 ILO와 ITUC를 비롯한 국제노동단체와 전 세계 50여 개국 노동조직을 망라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국제활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 노동단체와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한 유사성과 공동의 관심사는 국제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집은 완성된 형태의 교본이 아닙니다. 비영어권 언어에 대한 한계와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통일성이 결여되고 주요한 정보가 누락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적·시간적·재정적 한계로 보다 많은 국가의 노동조직을 다루지 못했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끝으로 이 자료집을 발행하는 데 노고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노총 김성진 전 국제국장에게도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보다 내실 있는 국제활동에 널리 활용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4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만

제1부 국제노동단체

제1장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 개요

- ILO(국제노동기구)는 1919년 열린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위한 파리평화회의(Paris Peace Conference)와 베르사이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 의해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 창설되면서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기구로 함께 설립됨. 1946년 국제연맹은 해체되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으로 대체되었지만 ILO는 이후에도 UN의 노동 전문기구로 오늘날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1969년 ILO 창립 50주년이 되던 해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함.
- ILO 설립자들은 산업혁명 이후 당시 노동계층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착취로 인한 가난과 궁핍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시대 상황을 인식하였음. 따라서 노동자 보호 등 노동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와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통해 국제경쟁력 공평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 ILO 헌장(constitution) 전문(preamble)은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기반으로 할 때 이룩될 수 있다"는 사회정의 실현과 "일국에서의 인간적인 근로조건 실현의 실패는 타국에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의지를 방해한다"라는 노동착취의 사회덤핑(social

dumping) 방지 등 ILO 설립의 논거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제1차 ILO총회(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1919년 10월 29일에 개최되었으며, 이때 채택된 협약(convention)은 ①근로시간 ②실업 ③모성보호 ④여성 야간근로 ⑤연소자 야간근로 ⑥고용 최저연령 등 당시 시급히 다루어야 할 장시간 노동, 아동 노동, 여성 노동 등 노동착취의 비인간적 형태의 노동 현안들을 규제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는 독일군에 의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총회 참석이 어려워지면서 1940년부터 1948년까지 캐나다 정부의 협력으로 몬트리올에 소재한 McGill대학으로 ILO본부를 옮겨 연차 총회가 개최되기도 함. 이후 ILO 총회는 본부가 소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음.
- ILO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는 삼자원칙(tripartism)에 따라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삼자주의는 정부대표 위주인 다른 UN 기구와 구분되는 대표적 특징임.
- 2013년 현재 UN 가입국 193개국 중 185개국이 ILO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냉전체제 속에서의 남북한 대치 상태로 인해 UN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1년에 들어서야 UN에 가입하면서 ILO 회원국이 됨(북한을 포함한 8개 UN 회원국이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음).
- 현재 ILO 사무총장은 영국인 출신 가이 라이더(Guy Ryder)로서 역대 정부 출신의 사무총장과는 달리 전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사무총장을 역임한 노동계 출신임. 2012년 5월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현 사무총장 임기는 2017년까지 5년이며 재선될 수 있음.

2. 역할

- ILO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의 형태로 제정하여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함. 협약과 권고는 ①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노사관계 ②강제노동 폐지 ③아동노동 폐지 ④차별금지 ⑤삼자협의 ⑥노동행정과 감독 ⑦고용증진과 정책 ⑧직업훈련 및 지침 ⑨고용보장 ⑩임금 ⑪근로시간 ⑫산업안전보건 ⑬사회보장 ⑭모성보호 ⑮사회정책 ⑯이주노동자 ⑰HIV/에이즈 ⑱선원, 어선원, 부두노동자, 선주민 및 특별범주 노동자(예; 가내노동자) 등을 망라하고 있음.
- ILO는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감독하고 위반 상황에 대해 해당 정부에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음.
- ILO는 해당 정부의 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한편, 노사단체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훈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음.
- 각종 노동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1965년 이탈리아 튜린에 설립된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in Turin) 및 연구 수행과 결과물 출판(1960년 설립된 제네바 소재 국제노동연구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3. 조직

1)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IL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통상 매년 6월 첫째 화요일부터 그룹별 회의(정부, 사용자 및 노동자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간 개최되고 있으나 2012년과 2014년의 경우 5월 마지막 화요일부터 시작된 예

도 있어서 개최일이 유연해지고 있음.

- 참가국은 삼자 구성 원칙에 따라 정부대표 2명,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각 1명 등 총 4명의 대표(delegate)로 구성되며, 총회 의제에 따라 자문위원(advisor)을 포함해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음.
- 총회는 협약 및 권고 제정과 개정 등 국제노동기준 설정,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이사회 선출,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의 사안을 다룸.

2) 이사회

- 이사회는 3년마다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로 구성되며, ILO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이사회는 정이사(titular) 총 56명으로 구성되며(정부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4명, 사용자대표 14명), 정부대표 28석 중 10석은 주요산업국가 10개국이 차지하고 나머지 18석은 총회에서 선출됨. 부이사(deputy)는 총 66명으로 정부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9명, 사용자대표 19명으로, 역시 총회에서 선출되지만 이사회에서 투표권은 없음. 후보이사(substitute)도 19명이 선정되지만 역할을 할 기회는 거의 없음.
- 노동자그룹 이사 명단

〈정이사〉

Mr K. Asamoah (가나)
Mr F. Atwoli (케냐)
Ms A. Buntenbach (독일)
Ms M. Carvalho Francisco (앙골라)
Mr R. Chandrasekheran (인도)
Mr L. Cortebeeck (벨기에)
Ms S. Fox (미국)

Mr J. Guangping (중국)
Mr S. Gurney (영국)
Ms H. Kelly (뉴질랜드)
Mr G. Martinez (아르헨티나)
Mr T. Sakurada (일본)
Mr M. Shmakov (러시아)
Mr. B. Thibault (프랑스)

〈부이사〉

Mr M. Al Maaytah (요르단), Mr Z. Awan (파키스탄), Ms B. Byers (캐나다), Ms S. Cappuccio (이탈리아), Sra. I. Carcamo (온두라스), Mr P. Dimitrov (불가리아), M. F. Djondang (차드), Mme A. El Amri (모로코), Sra. E. Familia (도미니카공화국), M. M. Guiro (세네갈), Ms M. Liew Kiah Eng (싱가포르), Mr A. Lisboa (브라질), Mr M. Maung (미얀마), Mr B. Ntshalintshali (남아공), Mr J. Ohrt (덴마크), Ms B. Pandey (네팔), Ms C. Passchier (네덜란드), Ms S. Siwela (짐바브웨), Sra. M. Triana (콜롬비아)

- 노동자대표 이사와 사용자대표 이사는 국적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선출되지만, 국제노총(ITUC)이나 국제사용자기구(IOE)가 조정역할을 하면서 개인적 명망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적인 안배를 고려함.
- 이사회는 통상 연 3회(3, 6, 11월) 개최되며, 주요 기능은 총회 의제 선정, 사무총장 선출, 사무국 활동의 지휘 감독 등임.

3) 사무국

- ILO의 활동을 지원하는 상설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회와 이사회 활동을 위한 문서 및 보고서 준비, 연구, 교육, 노동

관련 정보 및 통계 수집, 출판 등의 역할을 담당함.

-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 외에 ILO는 대륙별로 아프리카(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아메리카(페루 리마), 아랍국(레바논 베이루트), 아시아 · 태평양(태국 방콕), 유럽 및 중앙아시아(스위스 제네바)에 지역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위치해 있는 미국 워싱턴 DC와 UN이 위치한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4) 지역총회 (Regional Meeting)

- 통상 4년마다 지역총회가 개최되는데 그 이유는 4개 대륙(아시아 · 태평양,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기 때문임. 예를 들면, 2013년 유럽 지역총회, 2014년 아메리카 지역총회, 2015년 및 2016년에는 아 · 태지역총회와 아프리카 지역총회가 계획됨. 지역총회 기간은 4일임.
- 지역총회의 목적은 지역 노사정대표들이 ILO 지역 활동 프로그램과 이행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ILO 지역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제를 선정하여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며, 총회의 효과적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룹별 회의도 수시로 개최됨.

5) 업종 및 산업별 활동

(국제산별노련/GUF와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농업, 대농장
- 금속
- 화학
- 상업
- 건설
- 교육

- 금융서비스
- 임업, 목재, 펄프, 제지
- 호텔, 케이터링, 관광
- 미디어, 문화, 그래픽
- 오일 및 가스 생산, 정유
- 공공서비스
- 섬유, 의류, 가죽, 신발
- 운수장비 제조
- 식품, 음료, 담배
- 의료서비스
- 금속, 전기 공학
- 광업(석탄 등)
- 우편, 통신
- 해운, 부두, 어업, 수운
- 운수(항공, 철도, 육운)
- 수도, 가수, 전기

4. 회원국의 의무

1) 협약의 비준 및 이행

- ILO는 2014년 현재 189개 협약(convention)과 202개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하고 있음.
- 핵심협약(core convention)은 4개 부문 8개 협약으로, ①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협약 제87호 및 제98호) ②강제노동폐지(협약 제29호 및 제105호) ③아동노동폐지(협약 제138호 및 제182호) ④차별금지(협약 제100호 및 제111호) 등임. ILO는 1995년부터 대대적으로 이들 8개 협약 비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1998년 채택된 ILO 기본원칙선언 및 후속조치(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에 의해 4년 주기로 위에서 언급한 4개 부문에 대해서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연차 글로벌 리포트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한국은 현재 8개 핵심 협약 중 아동노동폐지와 차별금지 협약 관련 4개만 비준하고 있음.

- 협약을 비준하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권고는 국내조치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서 비준의무는 없음.
-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제87호와 제98호는 그 기본내용이 ILO 헌장에 담겨 있으며, ILO 가입시 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사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권고도 낼 수 있음.

2) 협약 관련 보고

- 회원국은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과 권고를 국내 권한 있는 기관(국회)에 통보한 후,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을 ILO에 보고해야 함.
- 미비준 협약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 기간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함. 이 보고서에는 입법, 행정조치 등을 통한 협약 및 권고의 이행 정도, 비준의 장애요인 등이 수록됨. 1998년 이후 미비준 핵심 협약에 대한 보고는 글로벌 리포트에 대한 보고로 대체되었음. 이러한 보고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협약은 비준 후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국은 비준협약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이사회에 연차적으로 보고함.

3) ILO 감독체계 (supervisory system)

- ILO 기준과 이의 집행을 감독(supervision)하는 ILO의 기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체계이며, 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 정기적 감독체계(regular supervision system)는 ①협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와 ②협약권고적용총회삼자위원회(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s Tripartit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의 두 가지가 있음.

- 특별감독 체계(special procedures)는 ①비준 협약에 대한 진정(representation) ②비준 협약에 대한 이의제기(complaint) ③결사의 자유에 대한 이의제기(이사회의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기)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4) 분담금 납부 의무

- 회원국 정부는 회계 연도별로 각국의 경제력, 인구 등을 감안해 책정된 분담률에 의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노사단체의 분담금 납부의무는 없음.
- 우리나라 2013년 분담률은 ILO 전체 예산의 2.261%로서 8,182,116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92억원 정도이며, 분담 순위로는 10위에 해당됨.

5) 주요 활동

- 국제노동기준 설정
- 기술협력
- 연구, 교육 및 출판

6) 노동자활동지원국 (Bureau of Workers' Activities : ACTRAV)

-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강화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조합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게 하는 한편 ILO 협약비준과 이행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사용자활동지원국(Bureau of Employers' Activities: ACTEMP)과 함께 사무총장에게 직접보고하는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ILO의 다른 부서에 비해 보다 유연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함.

5. 주요 간부 및 연락처

1)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 Guy Ryder : Director General(사무총장)
- Sandra Polaski : Deputy Director General for Policy(정책 담당 사무차장)
- Gilbert Houngbo : Deputy Director General for Field Operations & Partnerships(각종 지원사업 담당 사무차장)
- Greg Vines : Deputy Director General for Management & Reform (경영과 혁신 담당 사무차장)
- ILO 본부 주소 및 연락처 : 4 route des Morillons - CH-1211 Genève 22 -Switzerland, Tel: +41 (0) 22 799 6111, Fax: +41 (0) 22 798 8685, E-mail: ilo@ilo.org, website: www.ilo.org

2) 노동자활동지원국 (Bureau of Workers' Activities : ACTRAV)

○ 본부

- Ms. Maria Helena ANDRE, Director(국장), +41/22/799.6476, andremh@ilo.org
- Ms. Anna BIONDI, Deputy Director(부국장),

+41/22/799.7661, biondi@ilo.org

❍ 아시아 지역

- Ms. Christine NATHAN, Regional Specialist in Workers' Education RO-Bangkok, +662.288.17.64, nathan@ilo.org
- Mr. Pong-Sul AHN, Senior Specialist in Workers' Activities SRO-Bangkok, +662.288.22.47, ahn@ilo.org
- Mr. Shigeru WADA, Senior Specialist in Workers' Activities SRO-Manila (c/o SRO Bangkok) +662.288.17.86, wada@ilo.org
- Mr. Arun KUMAR, Senior Specialist in Workers' Activities SRO-New Delhi, +91.11.24602101, 102, a.kumar@itcilo.org

❍ ILO 튜린교육센터, 이탈리아 토리노 소재

- Mr. Giacomo BARBIERI, Workers' Education Programme, +39.011.6936.401, g.barbieri@itcilo.org, actrav_turin@itcilo.org
- Mr. Ariel CASTRO, Workers' Education Programme, +39.011.6936.678, abcastro@ilo.org

제2장 ITUC ▌국제노총,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1. 통합배경과 주체

1) 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에 유럽, 미국, 소련 등 연합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은 파리에서 세계노동조합회의를 개최하고 제국주의, 식민지주의 반대와 사회진보, 민족독립, 평화수호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WFTU(세계노련,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를 창립함.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상과 이념에 따라 분열을 거듭했던 국제노동조합운동이 통합을 이루었지만 전후 좌우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세계노련도 이념에 따라 다시 분열됨. 창립 직후부터 정치이념과 ITS(국제산별노련) 문제 등으로 반공주의 조직과 공산주의 조직 간에 대립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음. 나아가 미국정부에 의한 유럽부흥계획인 마샬플랜에 대한 찬반으로 내부갈등이 첨예해지면서 1949년, 영국(TUC)과 미국(CIO) 등 서구조직이 WFTU를 탈퇴하였음.
- 또한 같은 해 11월 런던에서 51개국 67개 노총 4,800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ICFTU가(국제자유노련,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이 출범함으로써 국제노동조합운동은 통합된 지 불과 4

년 만에 이념적 차이에 따라 다시 분열됨.

- 그 후 WFTU와 ICFTU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상호 대립하면서 국제노동조합운동이 양분되었음. ICFTU는 60년대 말 유럽을 휩쓴 진보적 지식인 및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반공주의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 발전을 기본노선으로 추구하면서 성장을 거듭함. 특히 80년대 말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WFTU 가맹조직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ICFTU의 조직적인 우위가 확연해졌으며 실질적으로 최대 조직으로서 국제노동운동을 주도해 왔음.
- ITUC는 ICFTU와 WCL(세계노동총연맹, World Confederation of Labor)이 2006년 11월 통합되면서 출범함. 그 목표는 보다 강화된 국제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이념이 주도하는 세계화 속에서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것임.

2) 주체

○ ICFTU(국제자유노련)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FTU는 전 세계 각국 노총을 회원조합으로 두었음.
- ICFTU의 탄생과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국제정치구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194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창립된 ICFTU는 그동안 WFTU가 구소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반발한 자유진영 노동조합과 WFTU 미가입 조직이 참여해 출범함(한국노총 전신인 대한노총도 창립 멤버로 참여함). 초기에 WFTU에 참여한 중국과 유고슬로비아도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탈퇴함.
- 냉전 시기 동안 ICFTU와 WFTU는 조직적 라이벌이 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WFTU가 급격히 쇠퇴한 1990년

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음.

- WFTU의 회원조직이었던 동구권과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의 노조들이 조직내부 개혁을 통해 ICFTU에 속속 가입함으로써 ICFTU는 회원조합(150개국 231개 노총 회원조직)과 조합원(1억5천8백만명)이 급증하였음. 이에 따라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있는 국제노동조합단체로 발전하게 되었고, 민주노총도 1996년 회원조직으로 가입함.
- ICFTU는 각 대륙별로 설립된 지역조직의 활동을 통해 지역 특수성과 현실적 필요에 대처하였음. 지역기구는 ICFTU 창립 직후인 1950년대 초에 설립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제자유노련 아시아 태평양지역기구(ICFTU-Asia and Pacific Regional Organisation, ICFTU-APRO), 아프리카의 ICFTU-AFRO, 북 · 남미 지역의 ICFTU-ORIT가 설치됨.
- 유럽의 경우, 초창기에는 ICFTU 지역기구체로 출발했으나, 이후 독립적인 ETUC(유럽노동조합총연맹,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로 발전하여 활동하였음. 특히, ETUC는 ICFTU 회원조직, 공산계통의 WFTU 회원조직, 기독교 계통인 WCL 회원조직을 총망라하는 유럽노조총연맹 조직을 구축함.
- ICFTU-APRO는 1951년 ICFTU-ARO(국제자유노련 아시아지역기구)로 창설되었으나, 1984년 서울에서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태평양을 포함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지역기구 이름을 ICFTU-APRO로 변경하게 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역시 회원조합으로 참여하였음.
- 최고의결기구인 세계총회(world congress)는 4년마다 개최되었으며, 마지막 총회인 제19차 ICFTU 세계총회는 2004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됨.

❍ WCL(세계노동총연맹)

- 유럽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국제노동조합단체로 192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설립됨. 설립 당시 명칭은 IFCTU(국제기독노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ristian Trade Unions)였으나, 1968년 제16차 총회에서 WCL로 개칭됨.
- 가톨릭 신도가 많은 유럽국가의 기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이 세속적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하였음. 혁명적 변화(Rerum Vovarum)를 조직의 원칙으로 자본과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함. 노조결성권 인정, 반공산주의, 방임적 자본주의 반대, 사유재산 인정을 이념으로 함.
- 1930년대 대공황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유럽의 파시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의 나치군 탄압 등으로 조직이 위기에 봉착했음.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던 본부가 나치군에 의해 파괴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활동이 중지되기도 함.
- 1945년 WFTU가 WCL의 동참을 요청했으나 WFTU의 독립성 문제에 의구심을 품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조직적 비판 세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함.
- 1950년대 이후부터는 유럽 이외의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조직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타 종교인 이슬람교도와 불교도와도 접촉을 시도함. 이에 따라 신의 천지창조설을 부정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 정의 및 형제애를 바탕으로 인류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동의하는 조직은 수용하기로 함.
- WCL은 1993년 ILO의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취득하였음. 그러나 조직적으로 WFTU나 ICFTU만큼 성공적이지 못했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공세와 위협 속에서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다른 국제노동단체와의 통합을 고민하기 시작함.

- 2006년 10월 3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마지막 총회에서 조직을 해산하고 ICFTU와 함께 새로운 국제조직인 ITUC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2. 조직

1) 세계총회 (world congress)

- 세계총회기간 사이에 사실상 모든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있으며,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 최소 연 2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executive bureau)에서는 주로 재정과 예산문제를 다루며, 일반이사회가 개최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안건도 다루고 있음. ITUC 지역기구도 본부와 동일한 의사결정기구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과 일반이사회 위원(general council member)은 4년마다 개최되는 최고 의결기구인 세계총회에서 선출됨.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은 회원조직의 추천을 받아 일반이사회에서 선출됨.
- 위원장(president), 수석부위원장(deputy president) 2명, 최소 7명 이상의 부위원장(vice president)은 총회 직후 구성된 일반이사회에서 선임되고, 운영위원회 위원(executive bureau member)도 같은 방식으로 선임됨.
- 회원조직이 분기별로 납부하는 의무금(affiliation fee)이 제일 중요한 재원을 이루고 있음. 4분기 이상 8분기 미만 의무금을 연체한 경우, 참여자격은 주어지지만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음. 특별한 이유 없이 8분기의 의무금을 연체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함. 의무금은 매년 일

반이사회에서 책정할 수 있으며 2011년 책정된 기준으로 할인되지 않은 정상적 기본납부액은 1,000명 당 201.15유로(28만원). 국가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선진국 노동조합과 개발도상국간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등급을 책정하고 있음.

- 총회 대표단의 인원은 의무금에 따라 결정되는데 조합원 5만 명 미만: 1명, 5만 이상~10만명 미만: 2명, 10만 이상~25만명 미만: 4명, 25만 이상~50만명 미만: 6명, 50만 이상~100만명 미만: 8명, 100만 이상~250만명 미만: 10명, 250만 이상~500만명 미만: 12명, 500만 이상~750만명 미만: 16명, 750만명 이상: 20명임. 여성 참여율 50%와 청년 참여율 10% 이상 달성을 실시하고 있음. 각 조직 대표단은 최대 4명의 전문자문위원, 통역 및 서기 등 2명을 대동할 수 있음. 옵저버와 초청인사는 총회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음.
- 회원조직은 의무금 이외에 국제연대기금(international solidarity fund)에 일조하도록 권고 받고 있으나 선진국의 회원조직을 제외하고는 호응이 매우 미약함.
- 국제연대기금 이외에, 선진국의 경우 국내 노동조합단체나 연대지원단체(solidarity support organization) 등을 통해 자국의 공적개발지원금(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노동조합개발협력지원(trade union development cooperation assistance)에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
- ITUC의 지역기구는 본부와 별도로 의무금을 받고 있으며 국제연대기금도 조성하고 있음.

○ 창립 세계총회

- 총회 기간 및 장소: 2006년 11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 주요 내용: 1억5천5백만 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ICFTU와 2천6백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WCL이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 12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개최된 ICFTU 제18차 총회와 연 이은 WCL의 최고 의결 기구의 결의를 통해 통합을 준비해 왔음. 통합 총회 하루 전인 2006년 10월 31일 WCL과 ICFTU는 각 조직의 해산을 위한 마지막 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해체를 선언했음.
- 새로운 통합 국제노동조합 조직인 ITUC는 세계 154개국의 306개 조직, 1억6천8백만 조합원으로 공식 출범함.
- ITUC의 사무총장으로는 가이 라이더(Guy Ryder)가 선출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샤란 버로(Sharon Burrow) 호주노총 위원장이 선출되었음.
- 4년마다 개최되는 최고 의결기구 총회의 하부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의 정이사는 유럽 26명, 남북아메리카 18명, 아시아 · 태평양 15명, 아프리카 11명, 여성위원회 6명, 청년위원회 2명 등 총 78명으로 이루어짐. 한국에는 정이사(titular member) 1석이 배정됨(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교대로 참여).
- 4년 임기의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위원장은 일반이사회에서 선출됨.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는 운영위원회(Executive Bureau) 위원장과 연대기금운영위원회(Solidarity Fund Management Board) 위원장을 각각 담당할 수석부위원장(Deputy President) 2명이 선출되고, 다수의 부위원장(Vice President)이 선출됨.
- 기존의 ICFTU와 WCL의 지역기구 조직의 통합은 2007년 11월 3일 이전에 실시하기로 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ICFTU-APRO, BATU(WCL 아시아지역기구)의 통합은 2007년 10월, 인도에서 이루어짐).

- 기존의 ICFTU 협력조직인 GUFs(국제산별연맹)와 WCL 산별연맹 간의 통합 일원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교원, 건설, 금속, 화학 등), 일원화에 대한 반발로 통합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도 있음.
- ITUC,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GUFs가 CGU(글로벌유니언협의회, Council of Global Unions)를 구성해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제2차 세계총회

- 기간 및 장소: 2010년 6월 21~25일, 캐나다 밴쿠버
- 주제: “이제 인간을 고려할 때: 위기로부터 세계정의로”
  (“Now the People, From the Crisis to Global Justice”)
- 참가단체: 전 세계 127개국 231개 회원조직 대표단 963명, ILO, OECD-TUAC, GUFs, 국제연대지원단체 관계자 등 총 1천여 명(여성 참가율 45%)
- 주요 이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미친 후폭풍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세계의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평화, 청년 문제, 인권, 노동권, 평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짐.
  ITUC 사무총장 선출: ITUC 현 위원장이며 호주노총 위원장인 샤란 버로가 가이 라이더 초대 사무총장 후임으로 선출됨(가이 라이더 전 총장은 ILO 사무차장직을 맡은 후 2012년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됨). ITUC 위원장으로 독일노총 출신 미하엘 좀머가 선출됨.
- 주요 참여 인물: IMF 사무총장, WTO 사무총장, UNDP 대표,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리스 수상, ILO 사무차장

❍ 제3차 세계총회

- 기간 및 장소: 2014년 5월 19~23일, 독일 베를린
- 주제: 노동자의 힘 구축(Building Workers' Power)
- 소주제
  - 노동조합 확대(Union Growth): 2018년까지 2천만 명의 신규조합원 조직화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전략적 리서치와 기획 △조직화 대상 파악과 조직화 목표치 설정 △투명한 계획수립과 평가 △조직화 지원전략 마련 △ITUC의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조직 활동가와 전략적 캠페인 코디네이터 훈련 실시 △글로벌유니온협의회(CGU)와 파트너십 강화 △조직화 기금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여성, 이주자, 청년노동자, 비공식 부문 조직화와 관련해 측정가능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며, 지역별 · 회원조합별로 타깃그룹을 설정해야 함.
  -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정된 소득, 사회보호(Sustainable Jobs, Secure Income, Social Protection):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리서치와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각국의 일자리 목표치 지원 △인프라 투자 목표치 달성, 친환경 경제, 돌봄의 경제, 양질의 훈련제도를 위한 캠페인 전개 △사용자, 정부, IMF, 기타 국제기관의 단체교섭 침해에 대항한 투쟁 전개 △글로벌 프레임워크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위한 국제산별연맹(GUF) 캠페인 지지 △최저임금과 사회보호 관련 타깃국가를 설정하고 노동자 조직화 △착취적 공급체인(supply chain)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UN의 2015년 지속가능성 목표와 관련해 모든 정부가 UN의 목표에 완전고용과 양질의 노동, 사회보호 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함. 투기가 아닌 실물경제에 노동자자본(workers'capital)을 투자하고, 무역협

정에 권리와 환경기준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권리 실현(Realizing Rights): 권리는 타협될 수 없으며, 전 세계 노동조합은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해 전국적 투쟁과 글로벌 투쟁에 전념해야 함. (이를 위해 다음 활동이 필요함: 노동조합권 침해 관련 ITUC 서베이 등 전략적 연구에 기초해 구체적 캠페인 수립. ILO협약 비준 등 정부와 사용자가 단체교섭권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전략 마련. 노동조합이 ILO의 감시기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스킬 향상과 전략 수립. 노동기본권 탄압을 겪는 노동조합 지원 및 캠페인 전개.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노동조합 투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캠페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단체 및 기타 연대단체와의 협력 강화. 노조지도부에 남녀 동수를 위한 "Count us in!" 캠페인지지)

- 주목할 만한 국제 이슈

-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발발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됨.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EU 및 미국 등 서방측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발칸반도의 역사적이고 지정학적 폭발적 성격을 감안하여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큰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
- 2013년 방글라데시 공장 건물 붕괴로 인한 1천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총회 직전 터키 광산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3백 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카타르 2022년 월드컵 건설 현장에서 한해에 1천 명 이상 이주노동자(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들의 사망과 현대판 노예노동(kafala[1] 노동) 등과 관련해 신자유주의

1) 산스크리트어로 '해골'을 의미함. FIFA의 블래터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노동 상

(neo-liberalism) 자본의 욕심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규탄함.

-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심각한 문제 인식에 따라 노동운동이 힘을 구축하여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세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함을 결의함.
- UN의 기능 약화, G20의 이행 불충분, ILO 내 사용자의 공세로 인한 파업권 위협 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화됨.
- 중동지역의 민주화 바람을 몰고 온 "아랍의 봄"이 시작된 튀니지아 노총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부상된 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
-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상하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이 선거의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2].
- 경선을 통한 사무총장 선거에서 현 사무총장 샤란 버로우가 재선되었고, 위원장에는 브라질 노총 CUT 전 위원장인 안토니오 펠리시오가 선임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중요한 의결기구인 일반이사회 1석을 4년 동안 공동으로 확보함.
- 인쇄물이 없는 총회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SNS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론의 활성화를 시도함.

2)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 총회의 하부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통합 당시 ICFTU 측 50명, WCL 측 15명, 신규 가입조직 5명, 여성위원회 대

황과 관련하여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대회 유치권을 가지게 된 것은 FIFA의 실수라고 인정할 만큼 국제여론이 악화됨.

2) 2014년 5월 25일 선거 결과 극우 성향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짐.

표 6명과 청년위원회 대표 2명 등 총 78명으로 안배되어 구성됨. 현재에도 일반이사회 정위원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 26명, 남북아메리카 18명, 아시아 · 태평양 15명, 아프리카 11명, 여성위원회 6명, 청년위원회 2명 등 총 78명임.

- 4년 임기의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위원장은 일반이사회에서 선출됨. 또한 일반이사회에서는 운영위원회(Executive Bureau) 위원장과 연대기금관리위원회(Solidarity Fund Management Board) 위원장을 각각 담당할 수석부위원장(Deputy President) 2명을 선출하며, 다수의 부위원장(Vice President)과 사무차장(Assistant General Secretary)을 선출함(현재는 2명).

3) 운영위원회 (Executive Bureau)

- 세계총회에서 선출된 일반이사회 이사 중에서 선임된 수석부위원장 2명 중 1명이 위원장을 맡음. 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웨덴 LO 출신인 Karl-Petter Thorwaldsson이 선임됨. 운영위원회는 일반이사회 정이사 중 25명으로 구성됨.
- 시기적으로 일반이사회가 개최될 수 없거나 일반이사회의 허락을 받은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며, 재정과 예산에 대해 일반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안건을 다룸. 1년에 최소한 2회 이상 개최됨.

4) 상설위원회

-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 여성위원회 대표 6명이 ITUC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 참여하여 여성노동자의 이슈를 대변함.
- 청년위원회(Youth Committee): 청년위원회 대표 2명이 ITUC 의사결정

기구인 일반이사회에 청년노동자의 이슈를 대변함.

5) 지역기구

- 지역기구(regional organisation)의 임원 선출은 국제노총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데, 4년마다 열리는 지역기구 총회에서 지역기구 사무총장과 일반이사회 위원들이 선출되며, 이들에 의해서 지역기구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됨. 지역별로 아프리카의 ITUC-AF, 아시아·태평양의 ITUC-AP, 남·북 아메리카의 ITUC-TUCA(Trade Union Confederation of the Americas), 유럽의 ITUC-PERC(Pan Europe Regional Council) 등 4개가 설립되어 있음.

6) 다른 국제노동단체와의 관계

❍ ITUC와 GUFs

- ITUC와 GUFs는 국가단위에서와 같이 노총과 산별 회원조합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의 조직이라 할 수 있음. 국제산별연맹의 회원조직은 국가단위의 산별노조나 산별연맹이며, ITUC와 독립적으로 재원과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 실제로 많은 GUFs가 ITUC 전신인 ICFTU나 WCL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되었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단체도 많으며 WFTU와 ICFTU 창설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 1951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상호 긴밀한 조직적 협력을 공식화한 '밀란협정'은 ICFTU와 GUFs 간의 연대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됨. 이러한 협력에 따라 각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대조직의 대표를 초청해 토론도 하고 있음.

❍ ITUC와 OECD-TUAC

-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는 OECD회원국 노총이 참여하는 단체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음. OECD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자문위원회도 선진국노총 단체라고 할 수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원국 문호를 세계경제와 금융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및 남아공 등으로도 확대하고 있음. 이들은 거의 모두 ITUC의 회원조직이어서 OECD에 ITUC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체제로 운영됨.

❍ ITUC와 ILO

- 냉전체제 하에서 ILO는 ICFTU 및 WFTU와 경쟁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했음. 그러나 1990년대 초 시작된 냉전종식 이후에는 ICFTU가 노동자그룹을 주도하였음. ILO 이사회 노동자측 정이사와 부이사는 대부분 ITUC 회원조직이 맡고 있음. 매년 6월에 열리는 ILO총회에서는 ITUC 회원조직 대표가 전체회의와 각종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매년 ITUC 간부가 노동자그룹 서기로 선출되어 노동자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ITUC는 IMF(국제통화기금), World Bank(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참여해 세계화의 사회영역(social dimension of the globalization)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3. 주요 간부 및 연락처

❍ 주요 간부

- Sharan Burrow :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 João Antonio Felicio : 위원장(President)
- Maria Fernanda Carvalho Francisco(여) : 수석부위원장(Deputy President)
- Karl-Petter Thorwaldsson : 수석부위원장(Deputy President)
- Jaap Wienen :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 Wellington Chibebe :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 부서 및 연락처

- 캠페인 · 커뮤니케이션국: Tim Noonan, e-mail: press@ituc-csi.org
- 평등국: Claire Courteille, e-mail: equality@ituc-csi.org
- 경제 · 사회정책국: John Evans, e-mail: esp@ituc-csi.org
- 재정/조직국: Nelson De Macedo, e-mail: finance@ituc-csi.org
- 인권 · 노동조합권국: Stephen Benedict, e-mail: tur@ituc-csi.org

❍ 주소 및 전화

-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ITUC)
  Boulevard du Roi Albert II, 5, Bte 1
  1210 Brussels
  Belgium
- 전화: +32 (0)2 224 0211
- 팩스: +32 (0)2 201 5815
- 이 메일: info@ituc-csi.org
- 웹사이트: www.ituc-csi.org

제3장 WFTU ▌세계노련,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1. 개요

- WFTU는 1945년 국제 노동조합 연합을 대체하여 결성되었음. 원래 WFTU는 공산당에 대해 호의적인 조합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는데 1949년 마샬플랜의 지지 여부에 대한 논쟁 끝에 많은 서구의 노동조합이 탈퇴해 ICFUT를 결성하였음.
- 이후,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회원조합이 대거 이탈하자 조직이 약화되고 재정난도 악화되어 본부를 세계 여러 곳으로 이전하다가 지금은 그리스 아테네에 본부를 두고 있음. 2011년 현재 105개국 210개 노동조직 7천8백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음.

2. 조직

- 각국노총이 가입된 지역기구(regional office)와 산별노련(industrial branch organization)인 TUI(Trade Union International)를 중심으로 구성됨.
- TUI는 식품 · 섬유, 금융, 건설 · 목공, 호텔 · 관광, 에너지 · 화학 · 금속, 광산, 공공, 교원, 운수, 은퇴자(연금) 등 10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음. 세계총회(world trade union congress)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5년마다 개최됨.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조직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조직 당 1명과 국제산별 TUI 당 1명으로 구성됨. 일반이사회는 총회 기간 사이에 1회 개최됨.
- 의장단협의회(presidential council)는 일반이사회 사이의 기간에 개최되며, 일반이사회의 안건 및 보고사항을 검토함. 의장단협의회는 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그리고 선정된 위원으로 이루어짐.
- 사무총국: 사무총장과 서기는 일반이사회 또는 의장단협의회에서 선출되며, 3선에 한해 재선될 수 있음.
- 14명의 부위원장 중 아시아지역의 의장단협의회 참여조직은 북한의 직업총동맹과 베트남노총 VGCL, 인도의 공산계 노총 CITU 대표 등 3명이며,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함.
- 중국은 50년대에 WFTU를 탈퇴한 후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도 구소련 시대를 청산한 이후 의장단협의회에 참여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직적으로 이미 이탈된 것으로 보임. 유럽에서는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 노조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의장단협의회에 참여함. 중남미 국가(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도 다수 참여하며, 현 WFTU 위원장을 포함해 중동국가 노조도 참여함.
- 위원장은 시리아 출신인 M. Shaban Assouz이고(5년 임기로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위원장직을 맡음), 사무총장은 그리스 출신인 George Mavrikos(2006, 2011년 선출되었으며, 2016년 3선 가능)임.
- 제16차 세계총회는 2011년 4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는데, 101개국 828명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ITUC가 IMF와 세계은행에 협조하면서 금융위기 등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지 않음을 비판함.
- WFTU 규약은 지도부(사무총장)의 업무처리가 용이하도록 수시로 본부를 다른 국가로 옮길 수 규정하고 있음(실제로 여러 차례 본부를 옮겼음)[3].

- 지역 사무소
  - 아프리카: 남아공, 가봉
  - 아태지역: 인도 뉴델리
  - 유럽: 키프러스
  - 남미: 쿠바
  - 중동: 시리아
  - 북미: 미국 뉴욕

3. 연락처

- 40, Zan Moreas street Athens 117 45 GREECE
- 전화: +30210 9214417, +30210 9236700
- 팩스: +30210 9214517
- 이 메일: info@wftucentral.org
- 웹사이트: http://www.wftucentral.org

3) 현 사무총장이 그리스 출신이어서 당분간 본부는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음.

제4장 OECD-TUAC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Trade Union Advisory Council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 개요

-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과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임.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체제에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양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 · 사회정책 협의체임. 경제와 사회 각 부문별로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정부간 기구임.
- OECD의 접근방식은 3대 가치관의 공유, 즉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존중이라는 3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게만 문호를 개방하는 가치관의 동질성(like-mindedness).
  - 정책대화: 회원국 정책담당자 간의 정책대화를 통한 정책협의, 공동이슈 파악에서 모범관행과 대응방안의 도출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
  - 실증적 · 전문적 분석: 정책대화의 내용, 방향 및 결론 등은 사무국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에 의해 제시되고 유도
  - 동료압력(peer pressure)의 행사: 정책지침, 정책권고 혹은 국제규범을 도출하고 이에 입각해 각 개별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동료검토(peer review)함으로써 회원국 정책의 개선과 조정을 유도

- 비회원국으로의 전수: OECD 회원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정책대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OECD의 가치관 및 축적된 경험을 전수
- 시민사회로의 전파: 기업,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주요 국제 NGO들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OECD의 가치와 정책을 전파

- OECD는 창설 이후 WTO, IMF, 세계은행, G-7/8 등과 상호 보완해 가며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경제를 창조하고 국제경제의 안정과 무역확대에 기여해 왔음.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선진경제의 구조개혁과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기여하였음. 90년대 이후에는 비선진권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예비회원국 정책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그 영향력이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었음.
- 1948년 서유럽 16개국으로 구성된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를 모체로,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가입하면서 현재의 OECD로 새롭게 출범하였음. 1996년 12월 한국이 29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현재 총 34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사무총장은 멕시코 출신의 Angel Gurría임.
- OECD-TUAC은 1948년 마샬플랜으로 알려진 유럽복구계획의 노동조합 자문기구로 창설되었으며, 1962년 OECD가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옴.
- OECD는 기업,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주요 국제 NGO와의 정책대화를 위해 노동조합자문위원회인 TUAC과 사용자그룹자문위원회인 BIAC에게 공식적 협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OECD에 구성되어 있는 23개 각종 위원회 및 기구 등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기업과 노동조합의 견해를 대변하도록 하고 있음.

2. 조직

- 총회(Plenary Session)는 연 2회(대체로 4월/5월, 11월/12월) 개최되며 예산, 회비 및 활동 전반에 걸친 정책 결정과 임원 선출을 함. 총회에는 회원조직뿐만 아니라 국제노동조합단체도 초청됨. 현재 재선 가능한 4년 임기의 위원장은 미국노총(AFL-CIO) 위원장인 Richard Trumka이고 사무총장은 영국 출신의 John Evans임.
- 운영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는 TUAC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로 총회의제를 준비하고 상정함. 운영위원회는 독일 DGB, 영국 TUC, 캐나다 CLC, 미국 AFL-CIO, 프랑스 FO 및 CFDT, 이탈리아 CGIL, 일본 RENGO, 오스트리아 ÖGB, 스웨덴 TCO, 벨기에 CSC, 위원장, 부위원장(벨기에 CSC, 일본 렌고, 덴마크 LO), 사무총장으로 구성됨.
-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경제정책, 세계무역 및 투자, 교육, 훈련, 노동시장정책을 다루며, TUAC 총회 의제와 OECD와의 협의에 대한 입장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함. 실무그룹회의는 회원조직뿐만 아니라 국제노동조합단체 및 중부유럽과 동유럽의 파트너단체들에게도 개방됨. OECD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특별 실무그룹회의도 개최됨.
-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을 포함해 약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회원조직: 2013년 현재 OCED 회원국은 34개국인데, 이 중 31개국 59개 노동조합단체가 회원조직으로 가입되어 있음.
  - 호주: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 오스트리아: Austrian Trade Union Federation (ÖGB)
  - 벨기에: Centrale Générale des Syndicats Libéraux de Belgique (CGSLB),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Chrétiens de Belgique (CSC),

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de Belgique (FGTB)

- 캐나다: Canadian Labour Congress (CLC),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CSN)
- 체코: 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MKOS)
- 덴마크: Dan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AC), Salaried Employees' and Civil Servants' Confederation (FTF), Dan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LO i Danmark)
- 핀란드: Confederation of Unions for Academic Professionals in Finland (AKAVA), Central Organis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SAK), 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STTK)
- 프랑스: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 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CFTC), Confédération Française de l'Encadrement CGC (CFE-CGC), Force Ouvrière (Cgt-FO), Union Nationale des Syndicats Autonomes (UNSA),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CGT)
- 독일: Germ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DGB)
- 그리스: Greek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GSEE)
- 헝가리: Democratic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LIGA), National Confederation of Hungarian Trade Unions (MSZOSZ)
- 아이슬랜드: Icelandic Federation of Labour (ASI), Federation of State and Municipal Employees of Iceland (BSRB)
- 아일랜드: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ICTU)
- 이스라엘: General Federation of Labour in Israel (HISTADRUT)
- 이탈리아: Confédération Générale Italienne du Travail (CGIL), Confédération Italienne des Syndicats des Travailleurs (CISL), Union Italienne du Travail (UIL)

- 일본: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RENGO)
- 한국: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 룩셈부르크: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du Luxembourg (CGT-LG), Confédération Luxembourgeoise des Syndicats Chrétiens (LCGB)
- 멕시코: Confederation of Mexican Workers (CTM), Federation of Trade Unions in Goods and Services (FESEBES)
- 네덜란드: National Federation of Christian Trade Unions in the Netherlands (CNV), Federation of Dutch Trade Unions (FNV)
- 뉴질랜드: 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s (NZCTU)
- 노르웨이: Norweg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LO i Norge), Confederation of Vocational Unions (YS), Confederation of Unions for Profesionnals (UNIO)
- 폴란드: NSZZ "Solidarnosc"
- 포르투갈: Union Générale des Travailleurs (UGT-P)
- 슬로바키아: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the Slovak Republic (KOZ SR)
- 스페인: Solidarité des Travailleurs Basques (ELA-STV), Union Générale des Travailleurs (UGT), Confédération Syndicale des Commissions Ouvrières (CC.OO), Union Sindical Obrera (USO)
- 스웨덴: The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LO i Sverige), The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SACO), The 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TCO)
- 스위스: Travail Suisse, Union Syndicale Suisse (USS)
- 터키: Confederation of Turkish Trade Unions (TURK-IS)

- 영국: Trades Union Congress (TUC)
- 미국: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 OECD 비회원국 준회원 노동단체

- 브라질: 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 (CUT)
- 인도네시아: Confederation of Indonesia Prosperity Trade Unions (KSBSI)
- 러시아: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Russia (FNPR)
- 남아프리카공화국: Federation of Unions of South Africa (FEDUSA)

3. 역할과 활동

- OECD 사무국 전문가와의 미팅
- OECD 각종 위원회 참여 정부 대표와의 미팅
- TUAC 회원조합에 대해 OECD 관련 활동과 자료 등 브리핑
- 회원조합의 정책토론 등 참여

4. 핵심 이슈

- 경제정책
- 고용
- 노동시장 정책
- 무역과 투자
- 교육과 훈련

- 연금과 퇴직보장 정책
- 세계화 충격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과 반부패 조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금융규제와 거버넌스
- 지속가능 개발 및 기후변화
-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5. 주요 간부 및 연락처

- 사무총장: John Evans(영국출신)
- 연락처
  - TUAC - OECD
  - 15 rue Lapérouse - 75016 Paris, France
  - 전화: +33 (0) 1 55 37 37 37
  - 팩스: +33 (0) 1 47 54 98 28
  - 이 메일: tuac@tuac.org
  - 웹사이트: www.tuac.org

제5장 GUFs ▌국제산업별노동조합연맹, Global Union Federations

- GUFs는 업종(trade) 및 산업(industry)별로 조직된 국제노동조합단체로,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의 약칭인 ITSs로 알려져 왔으나, 2002년부터 Global Union Federations의 약칭인 GUFs로 변경됨.
- 많은 국제산별연맹이 19세기 후반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숙련노동자들의 기능을 상호 인정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음. 1919년 IFTU(국제노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설립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IFT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WFTU가 창립되면서 WFTU는 국제산별연맹을 산하조직연맹으로 편입하고자 했으나 국제산별연맹은 이에 반대하고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사적이었음. 더욱이 WFTU 내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갈등과 중앙집중식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WFTU 조직이 대거이탈하면서 혼란스러운 국면이 발생함.
- 1949년 ICFTU가 출범하면서 ICFTU는 1951년 밀란협정(Milan Agreement)을 통해 국제산별연맹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ICFTU의 모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허용함. 이에 따라 국제산별연맹이 ICFTU의 노선과 정책을 지지하는 관계가 구축됨.
- 국제산별연맹은 90년대 초에는 상당수가 업종 또는 산업별로 운영되고 있었음.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 조합원이 급속

히 줄어들고 연대기금 고갈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지속적으로 통합과정이 추진되었음.

- GUFs 조직통합과 변화

통합 이전	통합 또는 개칭 이후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ITF)	ITF(변경 없음)
FIET(사무금융) + MEI(미디어) + IGF(그래픽) + CI(우정 · 통신) 4개 조직 통합(2000년) → Union Network International(UNI)	UNI Global Union(UNI, 2009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uilding and Wood Workers(IFBWW)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BWI, 2005년),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PSI)	PSI(변경 없음)
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s(IUF)	IUF(변경 없음)
Education International(EI)	EI(변경 없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IFJ)	IFJ(변경 없음)
International Textile, Garment and Leather Workers' Federation(ITGLWF)	IndustriALL Global Union (IndustriALL, 2012년)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IM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e and General Workers' Unions(ICEM)	

- 2002년부터 GUFs는 ITUC, OECD-TUAC 등과 글로벌 유니온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음.
- GUFs는 다국적기업과 글로벌기본협약(Global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해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국제경쟁을 통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1980년대 들어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책임이 국제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다국적기업의 횡포

에 대응해 기업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기업이 이를 준수토록 캠페인을 전개함. 기본협약은 GUFs와 다국적기업 간의 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것으로 약한 수준의 글로벌단위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도 있음. 그 내용은 공급망(supply chain)을 포함한 모든 하청업체에도 적용됨. 유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 중에는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음.

1. ITF (국제운수노련,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896년에 설립되었음.
- 현재 약 150개국 700여개 회원조직, 약 450만 명이 가입돼 있음.
- 조직 분야는 항공, 해운, 부두, 어업, 수운, 육운, 철도, 관광 등임.
-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congress)로 4년마다 개최되며, 집행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5명을 선출함. 이 중 한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고 5명은 각기 다른 지역(region) 출신이어야 함. 사무총장도 총회에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음. 사무총장은 ITF 업무의 일반 행정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
-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총회 사이 기간인 4년 동안 이사회의 역할을 하며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됨. 집행위원은 41명으로 지역 안배로 총회에서 선출되는데 사무총장과 함께 집행위원회를 구성함. 집행위원회는 사무차장을 선출할 수 있고, 사무차장도 집행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는 본부 소재 국가(현재 영국)의 회원조직 출신 5명과 위원장, 5명의 부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가 소집됨.
- 지역기구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현재 유럽(ETF Europe),

북 · 남미(ITF Americas), 아시아 · 태평양(ITF Asia/Pacific), 아프리카(ITF Africa), 아랍권(ITF Arab), 일본 동경(ITF Tokyo) 등에 운영되고 있음. 지역기구의 결정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함.

- ITF는 산별연맹 중 정보공유와 연대활동 및 국제캠페인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임. 특히, 편의취적선(flags of convenience: FOC)에 의한 승선 선원에 대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위험한 근로조건에 대응하는 ITF의 캠페인이 활발함. 예를 들어 FOC의 선원은 해상노련 소속이지만, 이 배가 선적하거나 하적하는 국가의 부두노동조합이 작업을 거부함으로써 연대지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음.
- 한국 가맹조직: 해상노련, 택시노련, 자동차노련, 한국도로공사노조, 대한항공노조, 항운노련, 우정노조, 철도산업노조, 철도노조
- 지도부: Stephen Cotton (사무총장 대행)
- 본부 연락처
  - ITF House
    49-60 Borough Road, London, SE1 1DR
  - 전화: +44 (0) 20 7403 2733
  - 팩스: +44 (0) 20 7357 7871
  - 이 메일: mail@itf.org.uk
  - 웹사이트: www.itfglobal.org
  - 아태지역 사무소장(Regional Secretary): Mahendra Sharma,
    12D College Lane, New Delhi, 110001 India
  - 전화: +91 (0) 11 2335 4408
  - 팩스: +91 (0) 11 2335 4407
  - 이 메일: itfindia@vsnl.com
  - 웹사이트: www.itfasiapacific.org

2. UNI (UNI Global Union)

- 스위스 니옹(Nyon)에 본부를 두고 있음. 2000년까지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전문직과 서비스 업종 및 산업의 4개 국제산별연맹(ITS)인 FIET(사무 · 금융), MEI(Media and Entertainment International – 미디어 · 오락), IGF(International Graphic Federation – 그래픽), CI(Communication International – 우정 · 통신) 등 4개 조직이 통합돼 UNI가 출범함.
- 전 세계 약 900개 회원조직 약 2천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음.
- 조직 분야: 상업, 금융, 청소 · 경비, 카지노게임, 그래픽 · 포장, 이 · 미용, 정보통신, 미디어 · 오락, 우편 · 택배, 스포츠, 비정규직, 관광, 사회보험 · 의료보험 등
-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2010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제3차 총회가 열렸고, 2014년 12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4차 총회가 개최됨. 집행위원회는 총회 기간 사이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집행에 대해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이사회의 기능을 하고 있음.
- UNI는 51개의 글로벌기본협약(Global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할 정도로 다국적 기업과 국제단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특히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에 의해 UN Globlal Compact 회의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위촉되기도 함. 또한 방글라데시 봉제공장 화재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건물 안전과 화재에 대한 협정(Bangladesh Accord)에 100여 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를 내기도 함.
- 중점 사업으로는 조직화(여성조합원 참여 확대 포함), 평화(중동 문제 등), 이주노동,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사회보장(의료보험 등), 직장폭력 퇴치, 청년고용, 기후변화 등임.
- 지역기구는 유럽(UNI Europa), 아시아 · 태평양(UNI Asia & Pacific), 아

프리카(UNI Africa), 북 · 남미(UNI Americas) 등이 있음.

- 한국의 가맹조직과 UNI-KLC: 금융노조, 우정노조, 사무금융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민간서비스노조, IT사무서비스노련
- 지도부
  - Philip Jennings,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영국 출신)
  - Christy Hoffman, 사무차장 (Deputy General Secretary, 미국 출신)
  - Colin Medland, 사업국장(Head of Operations)
  - Richard Elliott, 커뮤니케이션국장(Director of Communications)
- 연락처:
  - UNI Global Union, 8-10 Avenue Reverdil, CH-1260 NYON, Switzerland
  - 전화: +41 22 365 21 00
  - 팩스: + 41 22 365 2121,
  - 웹사이트: www.uniglobalunion.org
- 아태지역 사무소장: Christopher Ng, (Regional Secretary, 싱가포르 출신)
  - UNI Asia & Pacific
  - 170 Upper Bukit Timah
    #14-03 Bukit Timah Shopping Centre
    Singapore 588179
  - 전화: +65 64677888
  - 팩스: Fax: +65 64681410
  - 웹사이트: www.uniglobalunion.org/contact/uni-asia-pacific

3. BWI (국제건설목공노련,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음. 1935년 국제건설노련과 국제목공노련이 통합하면서 창설된 IFBWW(International Federation of Building and Wood Workers)와 WFBW(World Federation of Building and Wood Workers)가 2006년 통합되면서 BWI로 개칭됨.
- 세계 130여 개 국 350개 회원조합 약 1천2백만 회원조합원이 가입돼 있음(2006년 기준).
- 조직분야: 건설, 건설자재, 목재, 기타 관련 산업 및 업종
-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4년마다 열리며,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인 World Council은 매년 1회 이상 개최됨. 운영위원회인 World Board는 매년 2회 이상 열리며 사업 이행과 행정을 결정함. 한국의 가맹조직은 정이사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시아 · 태평양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에는 대만과 2년씩 교대로 정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제3차 세계총회는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고 2014~2017년간의 조직의 사업 전략을 채택한 바 있음.
- BWI는 인권, 노동조합권 수호와 강력한 노조건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고용 증진, 정책 대안 제시와 조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조직화(organizing), 단체교섭/사회적 대화, 정책 참여 등을 실시하고 있음. 조직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이주노동자 보호(카타르 월드컵 준비 공사장에서의 노동착취는 심각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음), 아동노동 철폐, 양성평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사업 분야임.
- 한국의 가맹조직: 연합노련, 건설노련 등
- 지도부
  - Albert Emilio (Ambet) Yuson,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 Marion F. Hellmann-Theurer, 사무차장(Assistant General Secretary)

- 연락처
  - 54, rte des Acacias
    CH -1227 Carouge (GE)
    Switzerland
  - 전화: +41 22 827 3777
  - 팩스: +41 22 827 3770
  - 이 메일: info@bwint.org

4. PSI (국제공공노련,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 프랑스 페르니-볼테르(Ferney-Voltaire)에 본부를 두고 있음. 1907년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기능직공무원(public servants)노동조합의 국제단체로 시작한 후 1935년 전문직공무원(civil servants)노동조합 국제단체와 통합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1958년 조합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면서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PSI)으로 변경됨.
- 세계 154개국 669개 회원조합 약 2천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조합원의 2/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직 분야: 지자체 및 중앙정부 공무원, 공공행정, 의료, 사회복지/보호, 상·하수도, 에너지(가스, 전력 등), 교육행정, 미디어, 문화, 다국적기업 등
-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World Congress)로, 5년마다 개최됨. 제29차 세계총회는 2012년 11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었으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와 노동조합권을 통한 사회정의” 구현을 행동프로그램으로 채택한 바

있음.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는데, 이태리 공무원노조 출신의 Rosa Pavanelli(여)가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덴마크 출신의 Peter Waldorff를 물리치고 새 사무총장으로 선출됨.

- PSI의 정책과 전략 등을 결정하는 이사회인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며,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연 2회 이상 개최됨.
- 또한 4개 지역(아프리카 · 아랍권, 아시아 · 태평양, 유럽, 북 · 남미)별로 지역집행위원회(regional executive committee)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지역총회는 세계총회 사이에 각 지역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개최됨.
- PSI의 주요 현안은 공공서비스의 질, 양성평등, 여성폭력 퇴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노동자, 이주노동, 비정규직, 민영화, 세금, 다국적 기업과 공정무역, 청년, 반부패, 연금, 사회보장 등임.
- PSI에 최초로 가입한 한국 노동조합은 전력노조로 1957년 가입하였으며, 1991년 보건의료노조, 1992년 공공연맹, 2001년 공무원노조, 2002년 공공서비스연맹과 정투노련이 가입해 참여조직이 6개로 늘어남. 2003년에는 한국의 PSI 가맹조직이 PSI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orea Council)를 조직함.
- 2013년 현재 한국 가맹조직과 PSI-KC 회원조직: 공공산업노련(전력노조의 조직 통합으로 교체),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소방협의회
- 지도부
  - Rosa Pavanelli(여),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 Alexandre Kamarotos,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 연락처
  -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45, avenue Voltaire, BP 9
01211 Ferney-Voltaire Cedex, France

- 전화: +33 450 40 64 64
- 팩스: +33 450 40 73 20
- 이 메일: psi@world-psi.org
- 웹사이트: www.world-psi.org

5. IUF (국제식품노련, International Union of Food, Agricultural, Hotel, Restaurant, Catering, Tobacco and Allied Workers' Associations)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음. 1920년에 창설되었지만 1958년에 IUF에 가입한 국제담배노동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Tobacco Workers)을 고려하면 그 역사는 18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 전 세계 126개국 394개 회원조합 1천2백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있음(2009년 현재).
- 조직 분야: 농업, 대농장, 가공식품, 음료, 호텔, 식당, 케이터링서비스, 담배 등
- 최고의결기구인 세계총회(World Congress)는 5년마다 개최되며,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연 1회 이상 개최됨.
- IUF는 코카콜라, 펩시, 다농, 하인즈, 크라프트, 네슬레 등 식 · 음료 및 호텔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강력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공식분야와 비정규직을 조직화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아프리카 아시아 · 태평양, 유럽, 남미, 캐리비안해(Caribbean) 등 5개 지

역에 IUF 지역사무총국이 설립되어 있고, 북미 사무소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사무소가 제네바 본부에 위치하고 있음.

- 한국 가맹조직: 코카콜라북부노조, 코카콜라남동노조, 코카콜라남서노조, 화섬노조OB지부, 화섬노조동서지부, 전국민간서비스노조, 전국여성노조, 한국네슬레노조
- 사무총장: Ron Oswald
- 연락처
  - IUF
    Rampe du Pont-Rouge, 8
    CH-1213 Petit-Lancy
    Geneva, Switzerland
  - 전화: +41 22 793 22 33
  - 팩스: +41 22 793 22 38
  - 이 메일: iuf@iuf.org
  - 웹사이트: www.iuf.org

6. EI (국제교원노련, Education International)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음. 전 세계 171개국 401개 회원조합 약 3천만 명의 회원조합원이 가입돼 있음(2009년).
- 1912년 벨기에에서 유럽의 공립중고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이 International Committee of National Federations of Teachers in Public Secondary Schools(FIPESO, 불어 약자)를 결성함.
- 1923년 World Federation of Education Associations(WFEA)가 결성되고, 1926년에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IFTA)와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 of Teachers(ITST)가 출범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활동이 미진함. ITST는 창립 당시 1919년에 이미 창립돼 있던 국제노동조합연맹(IFTU)에 교원그룹으로 가입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노련(IFTU)이 해체되고 세계노련(WFTU)이 출범하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갈등이 세계노동조합운동의 흐름을 격랑으로 몰고 갔고, 결국 WFTU에서 탈퇴한 조직과 미국 중심의 신규조직이 1949년 영국 런던에서 ICFTU를 출범시킴.
- 이러한 세계노동조합운동의 흐름은 국제교원노동조합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946년에 WFEA(1923년 창립)를 World Organiza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WOTP)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IFTU에 가입해 있던 ITST는 IFTU가 해산되면서 WFTU에 가입하게 됨. 1948년에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교원노동조합이 World Federation of Teachers' Unions(FISE, 불어 약칭)를 출범시키면서 WFTU에 가입함.
- 1951년에 들어서면서 FIPESO(1912년 결성), IFTA(1926년 결성)와 WOTP(1923 결성, 1946년 재출범)가 통합해 World Confederation of Organizations of the Teaching Profession(WCOTP)이 출범함.
- 이렇게 세계 교원노동조합은 두 개의 조직으로 라이벌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음. 그러나 1970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교원노조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NEA)이 가입해 있던 WCOTP가 약 2천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던 반면 다른 보수적 미국의 교원노조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AFT) 가맹조직이면서 반공산주의 성향의 IFFTU는 약 230만 정도의 조합원을 갖고 있어 조직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함.
- 그후, 1993년 1월 덴마크 스톡홀름에서 WCOTP와 IFFTU 두 조직이 통합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미국 교원노조 AFT의 Albert Shanker로 선출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국제산별노련으로 부상하게 됨.
- EI는 질 높은 교육, 교직원의 권익, 사회평등 증진을 사명으로 함.

- 최고 의결기구는 세계총회(world congress)로 4년마다 개최되며 여기서 위원장, 부위원장(다수), 사무총장, 집행위원 등이 선출됨. 총회 참석 대표단은 1만 명 당 1명의 대표가 추가로 배정(1만 명 미만 조직도 대표 1명 배정)되고 최대 50명까지 제한됨. 투표권은 5천 명 단위로 1표씩 추가됨. 임원과 집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추가 두 임기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나 사무총장은 제한이 없음.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26명으로 구성되며 연 최소 1회 개최됨.
- 지역 사무국
  - 아프리카: 가나 아크라
  - 아시아 · 태평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피지(Council of Pacific Education 업무)
  - 유럽: 벨기에 브뤼셀
  - 남미: 코스타리카 산호세
  - 북미 · 캐리비언: 세인트루시아
- 한국의 회원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지도부
  - Fred VAN LEEUWEN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네덜란드 교사 출신)
  - David EDWARDS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미국 출신)
  - Haldis HOLST(여)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노르웨이 출신)
  - Charlie LENNON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아일랜드 출신)
- 연락처
  - Education International(EI)
    5 boulevard du Roi Albert II
    B-1210 Brussels, Belgium
  - 전화: +32-2 224 06 11
  - 팩스: +32-2 224 06 06

- 이 메일: headoffice@ei-ie.org
- 웹사이트: www.ei-ie.org

7. IFJ (국제언론노련,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음. 1926년 창립되었으나 1946년과 1952년 조직의 재출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조직체제를 갖춤.
- 전 세계 134개국 60만 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들은 준회원(associate members)으로만 인정하는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음.
-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로서 3년마다 개최되며, 여기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1명), 부위원장(2명), 재무임원(1명), 사무총장 및 집행위원 16명이 선출됨. 이사회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연 2회 이상 개최되며 총회에서 결정된 정책과 사업계획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과 집행위원 16명으로 구성됨. 사무총장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재정과 관련된 업무 및 집행위원회 제출 안건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administration committee)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로만 구성됨.
- IFJ의 미션은 강력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노조를 통해 출판의 자유와 사회정의 수호, 정치적 중립 유지와 동시에 인권, 민주주의, 다원주의 증진, 차별금지와 갈등 조장 미디어 비난, 정치적 ·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노동조합권과 인권 수호, UN과 노동조합운동에서 언론인을 대변하는 조직, 언론인과 언론노조 지원과 어려움에 빠진 언론인 구제를 위한 국제안전기금(International Safety Fund)을 설립함.
- 4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 태평양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지도부
  - Beth Costa,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 Oliver Money-Kyrle, 사무차장(Assistant General Secretary)
- 연락처
  - IPC-Residence Palace, Bloc C
    Rue de la Loi 155
    B-1040 Brussels
    Belgium
  - 전화: +32 (0)2 235 22 00
  - 팩스: +32 (0)2 235 22 19
  - 이 메일: ifj@ifj.org
  - 웹사이트: www.ifj.org

8. IndustriAll (국제인더스터리올노련)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음. 2012년 6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 IMF),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e and General Workers' Unions – ICEM), 국제섬유노련(International Textiles Garment and Leather Workers' Federation – ITGLWF)이 통합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제조, 에너지, 광산 분야의 전 세계 140개국 5천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거대 통합 국제산별연맹으로 재출범함.

○ IMF (국제금속노련,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 1893년 8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스위스, 미국 등 사회주의 인터내셔널회의 참석차 스위스 취리히에 모인 8개국 30명의 노동조합 대표가 세계 금속노조간의 국제협력과 상호지원을 위해 국제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창립됨. 오랜 역사와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련 중 하나인 국제금속노련은 1904년 암스테르담대회에서 명실상부하게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금속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게 됨. 당시 조합원 수는 44만 명에 불과했으나 1차 세계대전 직후 약 2백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1930년대에는 다소 조합원이 감소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증하면서 2012년 통합 전 조합원 수는 약 2천5백만 명에 이르렀음.

○ ICEM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emical, Energy, Mine and General Workers' Unions)

- 1996년 1월 ICEF(국제화학에너지일반노련)와 MIF(국제광산노동자연맹)가 합병하면서 이름을 ICEM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함.
- ICEF는 '노사분쟁에서의 상호 지원'을 모토로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화학, 제지, 유리 및 요업과 다른 국제산별조직에 속하지 않는 각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국제산업공장노동조합연맹(IFF)'으로 재건됨. 1964년에는 당시 경합관계에 있었던 '국제석유화학노조연맹(IFPCW)'과 조직분야를 구분하기 위해 '국제화학일반노련(ICF)'으로 다시 재편됨. ICF는 1976년 제16차 몬트리올 대회에서 전력노련의 발의로 명칭을 '국제화학에너지일반노련(ICEF)'으로 개칭하고 에너지 부문까지 조직을 확대함.
- MIF는 1일 8시간 노동이나 아동노동, 여성의 탄광노동, 안전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890년 벨기에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의 탄광노동자 대표가 모여 결성됨.
- ICEF와 MIF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경과 기존 산업부문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노동운동의 연대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5년 12월 워싱턴 DC에서 통합대회를 열고 ICEM으로 새롭게 출범할 것을 결의함. 2012년 통합 전 조합원 수는 약 2천만 명에 달함.

○ ITGLWF (국제섬유노련, International Textiles Garment and Leather Workers' Federation)

- 영국 등 유럽의 산업혁명이 섬유 등 의류산업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만큼 이 부문의 노동조합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음. 1892년 국제장갑노동조합(International Glove Workers' Union), 1893년 국제신발노조연맹(International Secretariat of Shoemakers)과 국제섬유노동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Textile Workers' Associations), 1896년 국제가죽노동자연맹(International Secretariat of Leather Workers)과 국제재단사연맹(International Tailors' Secretariat) 등이 설립돼 초기 노동조합운동에 기여한 바가 큼.
- 1970년 국제섬유의류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Textile and Garment Workers' Federation)과 국제신발가죽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Shoe and Leather Workers' Federation)이 통합돼 출범하게 됨. 2012년 통합 전 조합원 수는 약 1천만 명이었음.

- 중점 사업 방향: 강력한 노조 건설, 조직화, 노동조합권 수호 투쟁, 비정규직 투쟁, 글로벌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조합의 힘 구축, 산업정책과 지속가능 증진, 사회정의와 세계화, 평등권과 여성 참여, 작업장 안전,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최소 4년에 한번 개최됨. 향후 4년간의 조직의 전략, 목표 및 활동을 결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차장(3명), 감사, 지역별로 추천된 집행위원을 선출함.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됨. 규정에 따르면 40명으로 구성되지만, 통합 창립총회에서는 잠정적 조치로 2016년 제2차 세계총회까지 6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함. 현재 아시아 · 태평양 8명(6명으로 감소), 남미 · 캐리비언 6명(4명), 중동 · 북아프리카 2명(1명), 북미 9명(6명), 사하라사막 이남 6명(4명), 유럽 25명(17명)으로 배분되어 있음.

-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며 재정 및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룸. 위원장, 부위원장 3명, 사무총장, 지역을 대표해 집행위원회에서 선택된 집행위원 6명으로 구성됨.
- 의무금은 기본으로 연간 조합원 1인당 1.10 스위스 프랑(원화 약 1,200원)인데, 본부에 등록된 조합원 수 x 기본 가맹비(1.10 스위스 프랑) x 기본 가맹비로 계산됨.
- 지역사무소: 북미, 남미 및 캐리비안, 사하라사막 이남,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아시아 · 태평양, 유럽
- 한국의 회원조합: 금속노련, 화학노련, 전력노조, 금속노조, 화섬노련/노조
- 지도부(총장뿐만 아니라 사무차장 3명도 총회에서 선출됨)
  - Jyrki Raina,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핀란드 출신 변호사, ICEM)
  - Kemal Özkan, 사무차장(Assistant General Secretary, 터키 출신, ICEM)
  - Fernando Lopes, 사무차장(Assistant General Secretary, 브라질 출신, IMF)
  - Monika Kemperle(여), 사무차장(Assistant General Secretary, 독일 출신, ITGLWF)
- 연락처
  - IndustriALL Global Union
    54 bis, route des Acacias, Case Postale 1516
    1227 Geneva Switzerland
  - 전화: +41 22 308 5050
  - 이 메일: info@industriall-union.org
  - 웹사이트: www.industriall-union.org

제6장 ETUC ▌유럽노동조합총연맹,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 ETUC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1973년에 설립되었음. EU의 정책과 역할이 노동자에 미치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조합 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됨. ETUC의 목적은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조합들이 단결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함. 현재 ETUC에는 유럽 36개국의 전국단위 85개 노총과 10개의 유럽노동조합연맹(유럽산별노련)이 소속되어 있음.
- 모든 정책은 총회(Congress)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심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됨. 총회(Congress)는 ETUC의 최고의결기구로 4년마다 개최되며, 각 회원단체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대표들이 참가함. 이 총회에서 집행위원, 위원장, 사무총장, 2인의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이 선출됨.
- 집행위원회는 연 4회 열리며, ETUC 차원의 공동성명과 행동을 결정하고 유럽사용자단체와 협상시 전권을 가짐. 집행위원회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이 선출됨.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8회 개최되며,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함. 사무총국(Secretariat)은 대외 관계, 노조행동에 대한 계획 및 권고, 조직운영 등 ETUC의 제반 일상 업무를 담당함.
- ETUI(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는 ETUC의 연구 및 훈련원으로서 EU의 사회영역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및 학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도부
  - Bernadette Ségol(여, 프랑스 출신),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
  - Józef Niemiec(폴란드 출신),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 Patrick Itschert(벨기에 출신), 사무차장(Deputy General Secretary)
- 연락처
  -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Boulevard Roi Albert II, 5
    B-1210 Brussels. Belgium
  - 전화: +32 (0)2 224 04 11
  - 이 메일: etuc@etuc.org
  - 웹사이트: www.etuc.org

제7장 NFS ▌노르딕국가 노동조합협의회, Council of Nordic Trade Unions

- 유럽 노르딕국가 5개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랜드, 파로에섬 포함), 아이슬랜드 등의 16개 전국단위 노총으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 협의단체임. 총 조합원 수는 약 9백만 명이며, 본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함.
- 1972년 창립된 NFS는 노르딕국가 노동조합 활동의 협력 조정을 주 목적으로 하며, 고용과 경제정책 및 기타 사회이슈와 국제연대 지원 등의 문제를 다룸.
- 이사회는 16개 회원노총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1년에 한번 이사회를 개최함. 의장단은 1개국 당 1명이며, 의장은 교대로 맡고 있음. 2011년 11월부터 Loa Brynjulfsdottir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3명의 직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
- NFS는 EU, OECD, ILO, ITUC, OECD-TUAC, GUFs, ETUC와도 긴밀하게 공조하며, 노르딕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함. 발틱해노동조합네트워크[4](Baltic Sea Trade Union Network – BASTUN)와 포럼을 개최하면서 발틱해 국가와 공동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현안과 정보를 공유함.
- 참여국가 및 회원조직

4)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등 발틱해 연안 10개국.

- 스웨덴: LO, TCO, SACO
- 노르웨이: LO, YS, UNIO
- 핀란드: SAK, STTK, Akava
- 덴마크: LO, TFT, AC (그린란드의 SIK, 파로에섬의 Samtak 포함)
- 아이슬랜드: BSRB, ASI

- 지도부: Loa Brynjulfsdottir, 사무총장
- 연락처
  - Nordens Fackliga Samorganisation(NFS)
    Drottninggatan 75,
    S-111 60 Stockholm, Sweden
  - 전화: +46 (0)8 588 925 80
  - 팩스: +46 (08) 588 925 90
  - 이 메일: eva@nfs.net
  - 웹사이트: www.nfs.net

제2부 주요국 노총 현황

제8장 동아시아

1. 대만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50~60년대 국민당 장개석 정권하에서 노동운동은 크게 쇠퇴했으며, 이 시기 좌파노동조직은 모두 소멸됨.
- 1980년대 국민당이 국유사업체에 공회를 설립했으며, 민간기업 사업자는 이러한 조치에 반발함. 이 후 민간부문이 경제성장의 주류가 되면서 노동조직이 쇠퇴했음. 노조간부의 부정부패도 심해져 일부 조직에서는 사업주가 공회 이사장이나 비서장을 맡는 경우도 생겨 어용노조, 꽃병노조라는 말이 등장하였음.
- 이후 사회민주화에 따라 각종 노동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노동자의 의식도 제고됨(1984년 노동기준법 통과).
- 1988년 2월, 약 30만 노동자가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함. 권위적인 국민당 정부에 대항하면서 노동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노동운동도 한층 강화됨. 88년 노동쟁의(八八工潮)는 국민당의 타이완 이주 후 첫 번째 발생한 전국적 노동쟁의로,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직연맹이 연합해 국민당 주도의 CFL(중화민국전국총공회)에 대항하는 계기가 됨.

- 1990년대 들어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이 집권하면서, 각 산업 노조가 결성되었고, 국민당이 주도하는 총공회시스템에 대항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이 출현하였음.
- 2000년 TCTU(전국산업총공회, Taiw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가 창설되면서 제2노총조직으로 출범했으며, 당시 8개 지역노조와 13개 산업노조가 가맹하였음.

2) CFL (중화전국총공회, Chinese Federation of Labor)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48년 중국 남경(南京)에서 제1차 조합원 대표대회를 개최하면서 설립되었고, 내전 이후 국민당 정부와 대만으로 이동해 1951년 다시 설립됨.
- 각 현(縣), 시(市) 총공회, 산업공회연합회, 직업공회연합회, 전국단위 산업공회 등 57개 산하 조직, 91만 명의 조합원이 있음.

(2) 조직현황

❍ 조직체계

- 이사 51명(상임이사 17명, 호선을 통해 이사장 선출), 감사 17명(상임감사 5명)이 있음. 매년 회원대표대회를 개최하고, 매 분기마다 이사회와 감사회를 개최하며, 매월 상임이사회를 개최함.
- 산하연맹: 지역별 총공회(10개), 업종별 공회(44개)
- 회원대표대회: 최고의결기구로 3년마다 개최하며, 회원공회 1/3 이상, 회원대표 1/10 이상의 요구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개최되며, 회원대표의 임기는 3년임.
- 이사회: 상무이사(常務理事), 감사-상무감사(常務監事).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나 연임하는 이사 및 감사의 수는 3분의 2를 넘을 수 없음.
-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장은 1회 연임 가능
- 비서장(Secretary-General), 부비서장
- 산하 6개 부처(조직처, 정책처, 총무처, 신문처, 국제처, 청년부녀처)

❍ 지도부
- 이사장: Chen Jui(陳瑞)
- 부비서장: Ma Chao(馬潮)

❍ 부처별 업무
- 조직처: 조직발전, 쟁의해결, 각종회의 개최, 근로조건 개선, 권익보장 및 사회운동
- 정책처: 노동정책, 노동자 권익 향상 방안 및 단체교섭 연구, 노동자 교육 및 연수, 직업훈련 등
- 총무처: 재무, 인사, 사무, 문서관리 등 사무업무와 노동자 복지, 보험, 위생 및 안전 개선에 관한 건의
- 신문처: 대외홍보, 출판 및 공공분야
- 국제처: 국제업무와 대외교류에 관한 업무
- 청년부녀처: 청년 및 여성 노동자의 권익보호

❍ 재원
- 회원사 조합비는 연 2만 위안(약 58만원)이며, 회원노조의 회원 수에 따라 1인당 2원(약68원)씩 납부(1만 명 이하인 경우 1만 명으로 계산)

❍ 국제활동

- ICFTU 회원조직으로 참여해 왔고, 통합 ITUC 회원조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음. 첸 주이(Chen Jui) 이사장은 홍콩 HKCTU와 교대로 ITUC 집행위원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집행위원도 맡고 있음.
- ILO에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대만은 ILO회원국이 아님)
- 정치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민간외교, 노동외교를 통해 타이완과 세계를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함.

(3) 연락처

- 中華民國全國總工會
- 地址 : 40045 台中市中區平等街1號3樓
- 전화 : (04)2223-4222 傳真 : (04)2223-4999
- 이 메일: cfl.roc@gmail.com

2. 몽골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89년 소비에트가 몰락하자 몽골은 시장경제체제로 변화의 길을 선택함.
-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구소련의 재정지원이 종식되자 몽골의 경제는 악화되고 실업률도 급증하였는데 2004년 1월 기준 실업자 수는 33만 명에 달함. 미등록된 주민을 포함하면 실업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감안할 때 실업률은 25%에 달함. 이에 정부와 노총 등

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주력함.

- 몽골노동자를 외국에 송출해 국내 고용난을 해소하고 외화송금을 기대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특히 몽골 노동자들은 한국취업을 선호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몽골의 지하자원 개발이 활발해지고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10%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1991년 노동조합권리에 관한 법이 제정돼 노조활동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 ILO 핵심협약 8개 중 6개는 비준하였으나 강제노동 관련 2개 협약은 비준되지 않았음.

2) CMTU (Confederation of Mongolian Trade Unio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17년 최초로 몽골에 노동조합운동이 형성되었으며, 1927년 첫 총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 몽골노동조합중앙위원회(Central Council of Mongolian Trade Unions)가 최초로 설립되었음.
- 1990년까지는 소비에트연방 모델에 따라 활동했으며, 연맹 중앙위원회(Central Council)이외에는 별도의 조직이 없었음. 또한 규약에 공산당인 몽골인민혁명당(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을 몽골노총 지도자로 한다고 명시되었음.
- 1990년 6월에 개최된 중앙위원회 특별총회에서 몽골의 민주화에 따라 몽골인민혁명당(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과의 관계가 독립적이 되었으며, 중앙위원회는 몽골노동조합총연맹(Confederation)으로 전환됨.

- 1949년 WFTU에 가입했으나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탈퇴했으며, 1994년 ICFTU에 가입함.
- "노사정 노동사회 협의위원회"가 주요 노사정 3자협의 기구로 설립되어 있으나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2) 조직현황

❍ 조직체계

- 13개 산별조직 및 전문 노동조합과 22개 지역(aimag)노총이 있음.
  - 공무원 노동조합
  - 교육 및 과학분야 노동조합
  - 정부, 예술, 언론매체 분야 직원 노동조합
  - 건강 및 의료 분야 직원 노동조합
  - 사기업 분야 노동조합
  - 건축근로자 노동조합
  - 산업 분야 노동조합
  - 에너지, 지질 및 광업 분야 노동조합
  - 철도 직원 노동조합
  - 운송, 통신, 석유 분야 노동조합
  - 농업 및 식품 분야노동조합
  - 도로건설 분야 노동조합
  - 무역 및 서비스 분야 노동조합
- 조합원: 45만 명 (2013년)
- 총회: 4년마다 개최되며, 최근 총회는 2013년 6월로 대의원 207명이 참가함.
- 집행위원회: 52명

❍ 지도부

- 위원장: Khayankhyarvaa Amgalanbaatar(2013년 취임. 전임 위원장 Ganbaatar Sainkhuu는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 사무총장: Ts. Adiya(전노총 위원장 및 국회의원 역임, 2013년 취임)

❍ 부설기관

- 노동연구원
- 연구 및 훈련센터
- 신문 'Khudulmur' 발행
- 몽골노동조합 문화센터
- 생산 및 서비스, 운송 서비스센터

❍ 국제활동

- 세계노련(WFTU)에서 탈퇴하여 1994년 9월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했으며, 현재 ITUC의 회원조직임.

(3) 연락처

• Confederation of Mongolian Trade Unions
Sq. Sukhbaatar 3
Ulaanbaatar II
Mongolia
• 전화: (976-11) 327 253
• 팩스: (976-11) 322 128
• 이 메일: cmtu@mongol.net
• 웹사이트: http://www.cmtu.mn

3. 일본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일본의 노동조합운동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1897년 근대 노동운동의 씨앗인 노동조합기성회가 출범하였음. 1912년 우애회의 결성과 성장을 거쳐 1922년에 근대 노동조합의 최초 전국 단일조직인 일본노동총동맹(총동맹)이 창립됨.
- 1923년 관동대지진사건 직후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을 둘러싸고 총동맹은 좌우로 분열하였음. 1925년 좌파가 일본노동조합평의회를 결성함으로써 일본 노동운동의 특징인 좌우대립과 갈등의 역사가 시작됨.
- 군국주의로 치닫던 일본정부는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급진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였음. 1930년 세계대공황과 만주침략을 거치면서 노사 협조적 노동운동마저 허용하지 않았으며, 1938년 노동조합을 산업보국회 조직으로 대체하면서 1940년에 총동맹이 해산됨.
-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의 노동운동은 미군정의 민주화조치를 배경으로 격렬한 투쟁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함. 1945년 12월에는 509개 노조, 38만 여 명의 조합원이었으나 1949년에는 34,688개 노조, 조합원수 6,655,483만 명(조직률 55.89%)으로 급증하였음. 1946년 8월, 사회당계열의 일본노동총동맹(총동맹)과 공산당계열의 전일본산업별노동조합회의(산별회의)가 각각 출범함.
- 1950년 7월 미군정의 지원 아래 기존 산별회의의 분파조직인 '민주화동맹' 세력과 총동맹이 연합하여 반공주의와 국제자유노련(ICFTU) 가입을 내건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總評)를 결성함. 이후 총평은 결성 당시의 운동기조를 버리고 평화 4원칙(전면강화 · 중립견지 · 군사기지반대 · 재군비반대)과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이라는 계급투쟁노

선을 채택하면서 체제변혁을 운동기조로 전환하고 강경투쟁을 전개함.

- 1954년에 총평의 노선전환에 반대하여 탈퇴한 조직들이 총동맹과 연합하여 '전노회의'를 결성하고, 총평이 추진한 산업별 조직개편 방침에 반발한 조직들이 신산별회의(1949년), 중립노련(1956년) 등의 새로운 전국조직을 창설함. 이에 따라 일본의 노동운동은 총평과 전노회의(1964년에 도메이(同盟)로 개편)와 함께 노동 4단체 체제가 구축됨(총평-사회당, 동맹-민사당).
- 1970년대 들어 일본경제가 안정성장기조로 돌아서자 1950년대 후반부터 실시해 온 '춘투'에 의한 임금인상 중심의 운동방식보다는 정책제도개선 투쟁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이 가운데 노동조직의 재편통일문제가 다시 부상하여 1979년에 중립노련과 신산별이 '총연합'으로 통합되었음. 이어, 1982년에는 41개 산업별조직, 425만 명을 포괄하는 전민노협(전일본민간노조협의회)으로 확대됨.
- 이후 전민노협은 착실히 참가조직을 확대하고 정책제도 개선과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유지 · 개선 등 활동영역을 확장하여 1987년 11월에 민간부문의 전국중앙조직으로서 '전일본민간노동조합연합회'(연합)로 발전됨. 이에 따라 기존의 동맹, 중립노련, 신산별이 해산하고 전후 30여년 동안 지속되어온 노동 4단체 체제가 종식됨.
- 연합이 출범하자 공공분야 노조를 장악하고 있던 총평은 주도권 회복을 위한 방침을 세우고 연합과 대화에 나섰음. 또한 일교조와 자치노조 통일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음. 그 결과 1989년 11월 21일 78단산 약 800만 명이 참가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RENGO)가 결성됨에 따라, 총평은 그날로 해산함.

2) 노사관계 개요

- 가문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된 19세기 말부터 노조운동이 시작되었으나, 1920~30년대에 일본기업의 온정주의적 전통이 발전되면서 노동조합이 기업에 종속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8~43년 사이에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정부에 의해 해체되고 전쟁에 협력하기 위한 '산업보국회'라는 조직이 등장함.
-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연합군 총사령부가 전후 재건조치의 일환으로 재벌견제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를 복원시켰음. 1955년부터 춘투가 시작되면서 쟁의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1980년대 중반까지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임금인상 중심의 경제적 조합주의에서 국민적 조합주의로 전환됨(사회계약적 노조운동 노선).
- 전후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 기업별 노동조합 등 일본노사관계의 특수한 전통이 확립되었음. 이 가운데, 중앙단위 산업노동 간담회와 산업별 노사회의 및 산업구조 심의회를 통해 정부정책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미시적 협조주의(Micro Corporatism)의 노사관계가 형성됨.
- 1990년대 이후 춘투에 의한 공동임금투쟁의 전통이 약화되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던 단체교섭을 2년 단위로 하는 복수년 교섭이 등장하였고, 춘투의 성격도 임금인상보다는 고용보장 추구에 주력함.
-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심사, 노동조합 자격심사 관할 노동위원회 설치 등을 목적으로 노, 사, 공익 3자위원회 형태의 노동위원회가 1946년에 설립됨. 2002년에는 기존의 경제 4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1946년 창립), 경제동우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 1928년 창립), 상공회의소 중 경단련과 일경련이 통합되어 새로운 종합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가 발족됨.

3) JTUC-RENGO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89년 11월 21일 78개 산별노련 720만 명이 참가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Rengo)가 결성됨에 따라 '힘과 정책'을 운동기조로 내세운 렌고는 결성대회에서 '1000만 연합의 실현', '조직률 30% 회복'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1990년 11월에는 '1000만 연합의 실현을 위한 조직화 방침'을 채택한 데 이어 1992년 11월에는 전국중앙조직, 산업별조직, 지방연합, 기업별 조합 등 각급 조직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한 '조직방침'을 채택함.
- 그러나 이러한 노동전선의 통일에 대해 기존의 총평 내 좌파그룹은 '노동전선의 우익적 재편'이라고 비판하고 새로운 결집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공산당계인 통일노조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렌고가 출범한 날 140만 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을 결성하였음. 12월 9일에는 사회당 좌파계의 노연센터를 중심으로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 약 50만 명)가 결성됨.

(2) 조직현황

❍ 조합원 수

- 출범당시에는 78개의 산업별 연합체(單産)에 조합원수는 720만 명(전체 조직노동자의 약 60%)이었음. 그러나 2013년 현재, 산별조직 통합노력의 결과로 산별 회원조합이 52개로 축소되었고 조합원수는 약 675만 명으로 감소됨.

❍ 가맹조직(조합비 납부 순서, 조합원)

- UA ZENSEN(섬유유통서비스, 145만)
- JICHIRO(자치단체, 85만)
- JIDOSHA SOREN(자동차산업, 76만)
- DENKI RENGO(전기전자, 60만)
- JAM(금속, 35만)
- NIKKYOSO(교원, 29만)
- KIKAN ROREN(기간, 25만)
- SEIHO ROREN(생명보험, 25만)
- ICTJ(정보통신, 22만)
- JPGU(우정)
- DENRYOKU SOREN(전력)
- JEC RENGO(석유화학)
- UNYU ROREN(운수, 10만)
- KOKKO RENGO(공공)
- SHITETSU SOREN(사설철도 · 버스, 10만)
- Food RENGO(식품, 10만)
- SONPO ROREN(손해보험, 8만8천)
- JR-RENGO(철도, 8만)
- KOTSU ROREN(운수, 5만5천)
- JR SOREN(철도)
- GOMU RENGO(고무)
- Service RENGO(서비스)
- KAIIN KUMIAI(선원)
- ZENJIKO ROREN(택시, 3만3천)
- KOKU RENGO(항공, 3만3천)

- KAMIPA RENGO(펄프제지)
- ZEN DENSEN(전선)
- TOSHIKO(교통)
- ZEN SUIDO(수도)
- ZENKOKU GAS(가스)
- INSATSU ROREN(인쇄출판)
- Ceramics RENGO(세라믹)
- ZENGIN RENGO(은행)
- ZENKOKU NODANRO(임업 · 농수산)
- NHK ROREN(NHK국영방송)
- SHINRIN ROREN(임업)
- Health Care ROKYO(의료 돌도미)
- ZEN ROKIN(노동금고)
- KENSETSU RENGO(건설)
- ZENSHIN ROREN(지역금고)
- ZEN INSATSU(인쇄)
- JICHI ROREN(지자체)
- ROKYO ROREN
- ROSAI ROREN(노동공제)
- ZENKOKU Union(지역공동체)
- ZENKOKU KEIBA RENGO(승마 기수)
- JA RENGO(농협)
- ZENZOSEN-KIKAI(조선)
- KOUN-DOMEI(부두)
- ZEN ZOHEI(화폐주조)
- ZEN-EIEN(영화)

❍ 연합회

- 지방연합회: 해당 지역의 렌고 가맹조직으로, 지역단위에서 렌고의 목적과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조직임. 현재 전국에 47개의 지방연합회가 있으며, 관할지역 내 시 · 군 단위에는 260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 블록연합회: 지방연합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9개 권역별로 설치됨.

❍ 운영체계

- 전국대의원대회: 최고의결기구로서 맹비 납부 조합원 비율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며, 2년 마다 대회를 개최함. 사업보고, 재정보고, 예산 및 운동방침 수립, 임원선출, 렌고의 진로 및 규약의 개폐, 렌고 해산, 국제조직 가맹 및 탈퇴, 가맹조직 및 지방 렌고의 제안 등을 심의 의결함.
- 중앙위원회: 렌고 임원과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옵저버 및 지방조직에서 선출된 특별중앙위원, 여성특별중앙위원으로 구성됨. 회의는 6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렌고 활동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임원보선, 사무국 구성, 규약이 위임한 제규정의 개편 등을 의결함.
- 가맹조직별로 선출되는 중앙위원수 배정은 맹비 납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7년 현재 94명임. 옵저버조직 대표 특별중앙위원은 1명, 지방조직 대표 특별중앙위원은 47개 지방렌고 및 9개 지방블록을 대표하는 56명, 여성특별중앙위원은 산업부문별 1명씩 총 12명임.
- 중앙집행위원회: 렌고 임원(회장, 회장대행 2명, 부회장 12명, 사무국장 1명)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사무부국장 5명 및 주요 가맹조직에서 선출된 위원 19명) 24명과 상임위원 9명 등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감사는 4명임. 중앙집행위원회는 매달 개최되며, 렌고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고 재정수지 등에 관련된 집행방침을 결정함. 중앙위원회 사이의 긴급 주요안건을 심의결정하고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준비 등의 기능도 수행함. 9인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위원 중에는 렌고 사무총국 내 종합국장(본부장급) 4명이 참여함.

❍ 지도부 (제1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 임기 2년)

- 회장: 코가 노부아키(전기 · 전자 출신)
- 사무국장: 코주 리키오(기간산업 출신)

❍ 부처별 업무

- 조직그룹(조직확대센터 - 조직대책국과 지역추진국; 종합조직국 - 조직조정국과 국민운동국)
- 정책, 노동그룹(종합정책국 - 경제정책국과 사회정책국 및 생활복지국; 종합노동국 - 노동조건국, 고용노동국, 노동법제국, 중소대책국, 노동조정국; 종합남녀평등국 - 남녀평등국)
- 국제그룹(종합국제국 - 국제국, 국제정책국)
- 기획그룹(종합기획국 - 기획국, 정보기획국)
- 종합총무재정국(총무국, 재정국)
- 비서실
- 정치센터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정책위원회 : 경제정책소위, 사회정책소위, 복지·사회보장정책소위, 행정개혁소위

- 환경위원회, 다국적기업위원회
- 노동조건위원회, 고용·노동대책위원회, 노동법제대책위원회
- 남녀평등추진위원회 : 남녀평등정책소위, 여성노동소위
- 조직위원회 : 조직확대소위, 지방활동강화소위, 조직행동소위, 시민·지원자소위
- 중소노동운동위원회 : 중소공투소위, 중소정책소위
- 국제위원회 : 국제협력추진소위, ILO소위
- 총무재정위원회, 재정확립검토위원회

❍ 재원

- 조합원 1인당 월 85엔을 징수하며 조합비 징수율은 90%에 이름. 조합비 중 5엔은 국제연대기금으로, 30엔은 지역 렌고 교부금으로 사용됨(지방 렌고들은 75엔~150엔을 독자적으로 거출하고 있음).
- 렌고 본부의 연 예산은 약 50억 엔 정도이며, 지역렌고의 예산은 전 지역을 합산해 100억 엔 정도임.

❍ 관계 단체

- 연합종합생활개발연구소, 국제노동재단(JILAF), 교육문화협회(ILEC), 일본고령·퇴직자단체연합, 워크넷

❍ 국제활동

- 1980년대 말 렌고 출범 이후 ICFTU의 중심조직으로 역할을 함. 특히 ICFTU 아태지역조직인 ICFTU-APRO의 사무총장에 렌고 산별 회원조직인 젠센(일본섬유노련) 출신이 선출되면서 조직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옴.
- 2006년 통합조직으로 출범한 ITUC에서 렌고는 부위원장, 일반이사

회 정이사 2석,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차지하고 있음. ITUC 아태지역 기구인 ITUC-AP에서도 사무총장이 렌고 출신이며, ILO 이사회에 노동자그룹 정이사, OECD-TUAC 부의장단에 포함되어 있어 국제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렌고의 산별회원조합도 GUFs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 대만, 중국 등 동북아 노동조직과 정기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미국노총(AFL-CIO), 독일노총(DGB), 영국노총(TUC) 등 세계 주요 노동조직과 정례적인 정책협의와 교류를 해나가고 있음.
- 렌고출범과 함께 설립된 국제노동재단(JILAF)을 매개로 아시아 각국의 노조간부를 정기적으로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을 폭넓게 전개하고 있음.

❍ 한국과의 교류

-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직후인 10월에 전일본노동총동맹(同盟)에서 친선사절단이 방문하여 상호교류 협력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다음 해인 1966년 3월 11일 한국노총 창립20주년 기념식에 일본대표단이 참석하여 '한일노동조합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교류가 본격화되었음. 또한 섬유, 철도, 광산, 전력, 화학, 금속, 해상 등 양국 산별노조 간의 교류협정체결 및 교류활동의 계기가 됨.
- 1971년 연락협의회와 72년 3월과 6월의 연락협의회를 거쳐 72년 10월부터 한국노총의 제1기 기술연수생을 일본에 파견하면서 노조기술협력사업으로 발전하였음. 이 사업은 일본정부가 추진한 '국제기능개발계획'에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72년

16명, 73년 9명, 74년 16명의 기술연수생을 파견함.

- 1973년에는 도메이와 한국원폭피해자 진료센터 건립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기도 하였음. 1982년을 '노동외교강화를 위한 출발의 해'로 정한 한국노총은 도메이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노동절에 도메이 대표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지속함(83년, 85년 등).
- 1989년 11월 21일 개최된 렌고통합대회에 한국노총 대표단을 파견한 이후 대회 때마다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음.
- 1995년부터 한일 노총 간에 정기문화교류가 시작되었음. 그러나 2005년 한국노총은 양국 간 교류의 내용과 형식을 양 조직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실질적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따라 2006년 9월 일본에서 양국 노총 지도부가 회동하고, 2007년부터 특정주제에 대한 실무단위의 공동워크숍 형태의 정기교류를 개최하기로 함.
- 렌고 출범과 함께 설립된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이 노조간부 초청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90년 이후 매년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 간부를 초청해오고 있음.
-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노동운동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2000년 12월과 2001년 7월, '한일노총 포럼'을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개최하였음. 2003년 들어 양국정부가 한일FTA 체결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과 2004년 8월에 '한일FTA 공동대응을 위한 한일노총 실무연석회의'를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개최함.
- 2004년 11월 1-3일, 제6차 한일FTA 협상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일FTA 협상 저지 민중투쟁단이 일본에서 원정투쟁을 전개하였음. 이 투쟁에서 '한일FTA 교섭에 관한 한일 3개노총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적도 있으나 투자협정 논의 중단으로 양 노총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자연히 중단됨.

- 한국노총이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ILO에 제기한 일본정부의 성노예 문제에 대해(ILO협약 제29호 강제노동 위반) 렌고는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3) 주요 현안

- 노조조직률이 1940년대 말 이미 50%를 상회하였고 이후 70년대까지 35% 전후의 안정적 추세를 지속하였음. 그러나 1978년부터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이후 2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3년 말 현재에는 17.7%대로 하락함[5].
- 현재 렌고의 조합원 수는 6백75만 명으로, 2020년까지 1천만 명 조합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고용악화가 심화되자 춘투의 성격이 임금인상요구대신 고용안정협정 등의 체결을 요구하는 고용춘투로 변화되고 있으며, 임금교섭도 격년마다 실시하는 복수년 교섭방식이 도입되고 있음.
-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등 일본노사관계의 전통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이후 능력별 승진, 연봉제 확대, 고령 무능력자 고용조정, 중도채용 등 새로운 인사제도와 노사관계 관행이 나타나고 있음. 기존의 집단적 노사관계관리에서 개별적 인사관리로 이행하고 있는 추세임.
- 렌고는 2013년 개최된 제1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불안전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

5) 2013년 말 일본노동후생성의 "노동조합 기초조사" 발표에 의하면 전체 고용노동자 5,571만 명 중 987만5천 명이 조합원임.

합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조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행동계획을 채택함.

-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렌고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 속에서 노동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정책행동으로 채택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외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청년 및 여성노동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호응도를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을 하고 있음.

(4) 연락처

- 3-2-11 Kanda-Surugadai, Chiyoda-Ku, Tokyo 101-0062, Japan
- 전화: +81-3-5295-0526
- 팩스: +82-3-5295-0548
- 이 메일: jtuc-kokusai@sv.rengo-net.or.jp
- 웹페이지: http://www.jtuc-rengo.or.jp

4. 중국

1) 노동조합 운동 개요

- 13억 인구 중 7억 5천만 명이 노동자이며, 매년 2천4백만 명의 노동자(신규노동력 1천만 명과 농민공 및 실업자 1천4백만 명)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서 고용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도시에 유입된 농촌인구를 의미하는 농민공의 숫자가 1억2천만 명에 달하면서 도시빈민층을 형

성하고 있음.

- ACFTU는 유일한 노동조직으로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으나, 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정부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를 안고 있음. 이로 인해 국제노동계로부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최근에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총공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조직운동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관심과 압력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최근 삼성전자 하청회사 아동노동 건 부각).
-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단체교섭제도가 확산되고 있음. 한편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노동계약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노사정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국 및 각 성 단위에 노사정기구(三方委員會)를 설치하고 시 단위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중앙단위에서는 중화전국총공회와 중앙정부간의 연석회의를 통해 고용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

2) ACFTU (중화전국총공회,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22년 중화전국노동조합회의(All-China General Labour Congress) 창립총회 이후, 1925년 5월 1일 중화전국노농총연맹(All China

General Labour Federation)이 설립되었으며 1927년에는 조합원수가 3백만에 달함.

- 1927년에 노동조합에 적대적이었던 장개석 국민당(KMT)정권이 상해에 설립되면서 많은 노조간부들이 처형되었음. 또한 산업연맹과 전국단위 총연맹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이 금지되고 불법단체가 되어 지하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공산혁명에 기여함.
- 1948년 중국공산당은 중화전국노동총연맹을 현재의 중화전국총공회(ACFTU;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로 이름을 변경했고,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제외한 전국을 완전히 장악한 1949년에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됨.
- 1966년 문화혁명으로 모든 노동조합이 반동으로 몰리고 혁명위원회로 교체되면서 중화전국총공회는 강제로 해산되었음. 이후 1976년 모택동이 사망하고 사인방이 체포된 이후 문화혁명 당시에 채택된 많은 정책들이 변화되면서 1978년 10월 중화전국총공회가 재건됨.
- 중화전국총공회는 유일한 전국단위 노동조합총연맹으로,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성격과 공산당의 강령과 노선을 준수하면서 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을 관철하는 사회 · 정치단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중국의 공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받고 있음. 중국헌법은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단결권은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 단체교섭권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파업권은 1982년 개정 헌법에서 삭제됨.
- 중화전국총공회 주석은 중국 내 권력 서열 24위 이내에 위치하는 중앙정치국 위원이 맡거나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실력자가 맡는 경우도 있음.
- 지역별로는 성(省)총공회, 시(市)총공회, 현(縣)총공회 등 하부조직

을 갖추고 있고, 이들 지역 총공회 주석도 권력 서열 4위(당서기-성장/시장-당부서기-총공회주석)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음. 공회는 주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에 참여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음.

(2) 조직현황

❍ 조합원 및 노조활동

- 31개 성(省)급 총공회[6]와 170만 개 이상의 단위노조인 기층공회로 구성됨. 조합원수는 약 2억 6천만 명임(2012년 현재).
- 공회 회원 가입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관리직도 가입 가능).
- 기층 사업단위에서 공회회원이 25인 이상인 경우 공회위원회가 설치됨.
- 공회활동은 조업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임자 선임이 가능하며 전임자 수는 노사간 협상으로 결정됨.

❍ 운영체계

- 전국대의원대회(National Congress): 최고의결기구로서 5년마다 개최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보고, 예결산보고 검토 승인, 규약개정 등의 권한을 가짐. 집행위원 및 회계감사를 선출함.
- 집행위원회의(Executive Committee):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 284명으로 구성되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됨. 중화전국총공회의 주석, 부주석, 집행위원, 서기 등 의장단 56명이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됨.

6)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 최고간부회의(Presidium):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39명의 최고간부로 구성됨. 집행위원회 회의 기간 사이에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함.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되며, 총공회 주석이 의장직을 수행함.

❍ 지도부 (제16차 집행위원회에서 선출)

- 주석: 李建国(리젠궈) - 중앙정치국 위원[7],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
- 부주석: 陈豪(서기처제1서기 겸임), 刘国中(서기처서기 겸임), 张少琴, 徐福顺, 陈荣书(서기처서기 겸임), 尔肯江, 张世平(女, 서기처서기 겸임), 王瑞生(서기처서기 겸임), 李世明(서기처서기 겸임), 邱小平, 焦开河(서기처서기 겸임), 范继英(女, 서기처서기 겸임), 崔郁(女), 江广平(ILO 이사, 서기처서기 겸임), 李守镇(공식적으로 부주석은 아니지만 차관급으로 당에서 파견), 许振超, 郭明义,
- 서기처서기: 赵世洪, 郭军

❍ 부처별 업무

- 상임위원회 산하에서 총공회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의 부주석 겸 서기처 제1서기(사무총장 격), 8명의 부주석 겸 서기처 서기(부사무총장 격), 2명의 서기처 서기(사무차장 격)의 지휘 하에 16개 부서 약 600명의 상근간부가 있음. 노동대학, 국제교류센터, 기술협회 등 8개의 부설기관이 있음.
- 판공청(辦公廳)
  - 담당직위: 주임, 부주임

7) 중앙정치국은 24명이며, 상임위원은 최고권력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화전국총공회 李建国(리젠궈) 주석은 24명 중 서열 8위임.

- 종합처, 비서처, 문서처, 감찰실, 서류처, 정보실(근로자 권익보호 핫라인), 보건위생처, 정보센터(정보처, 기술처, 홈페이지)
- 비서처의 업무 조율, 감독. 지방 공회 및 조합원의 주요 상황 점검. 각 성(省) 공회, 전국 산별노조 및 직속기관의 의견 접수 및 관리 감독. 총공회의 주요회의 및 활동 협조. 총공회의 문건 및 지도부 연설문 초안 작성. 총공회 지도부 일상업무. 총공회의 보안, 정보 통계, 보건 및 각종 의견 수렴.

- 단체계약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종합조정처, 계약지도처, 임금협상처
  - 평등협상, 단체계약 제도 수립과 감독. 평등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도. 지방노동조합의 단체계약 관리감독. 지방공회의 3자협의 체제 추진 지원.
- 조직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조직처, 기관간부처, 지방간부처, 간부교육처, 종합처
  - 공회 조직제도와 지도체제 연구. 각 기관 및 직속기관 관리. 성, 자치구, 직할시 당 위원회와 협조하여 성급 총공회 간부 관리. 중앙국가기관 담당부서와 협조해 산별노조 간부 관리. 총공회 및 직속기관 간부의 배치 및 관리. 직무 및 인사 편제 관리. 총공회 인사관리 제도의 개혁방안 연구. 총공회 전국대표대회, 집행위원회의, 주석단회의의 인사 문제. 간부 교육 기획 및 종합관리.
- 선전교육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감독관
  - 이론선전처, 직공교육처, 신문처, 문화체육처, 종합처
  - 홍보, 교육업무. 근로자의 사상, 교육, 문화체육에 대한 정책방침

제정 및 기획. 모범근로자 사례 홍보. 공회의 중점 활동에 대한 선전. 공회의 문화활동 독려. 근로자 사상의 연구조사. 언론과의 연락 및 공회 뉴스 브리핑. 공회의 신문, 출판 및 중국직공문화체육협회 지도.

- 연구실
  - 담당직위: 주임, 부주임
  - 종합처, 조사연구 1처~5처, 공회이론연구회 사무실
  - 노동운동 및 공회의 역할에 대한 중요이론 정책 연구. 근로자의 이익과 밀접한 경제사회 정책 조사 · 연구. 총공회 비서처가 확정한 주요 연구과제 협력. 총공회 당 지부, 서기처가 담당하는 회의 문건 및 중요 발표원고의 초안 작성. 근로자 및 공회의 중요 문헌, 정보, 자료의 연구와 편집. 중국 노동운동이론 연구소에 대한 지도.
- 기층조직건설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기층1처, 2처, 종합처
  - 기업노조 설립 지원. 기업노조 회원 관리. “직공의 집” 건립 활동 지원.
- 민주관리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종합처, 민주관리1처, 2처
  -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와 관리 감독을 통해 직공대표대회 제도 확립. 기업 내 근로자 이사, 근로자 감사 제도 추진. 지방과 산별 공회, 관련 정부부문에 연석회의제도 실시.
- 노동보장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노동처, 임금처, 보험처, 생활처, 종합처

• 노동자의 취업, 수익배분, 사회보험에 관한 정책, 법규 등의 초안 연구 참여. 근로자 이익에 직결되는 사회지원, 물가. 주택 등 정책 입안. 취약계층 지원. 퇴직근로자 정책 참여. 요양 휴양 사업의 계획 및 지도.

- 노동보호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감독1처, 2처, 종합처, 직업안전 및 위생정보 연수센터
  •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 법률 연구 및 제정 참여. 상해, 사망사고 및 직업병 조사 및 처리. 국가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위생 설비 검수. 지방공회에 대한 산업안전 지도. 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교육 진행.
- 경제기술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경제기술혁신처, 기술협력처, 모범근로자관리처, 종합처
  • 지방공회의 경제, 기술 분야 혁신 지도. 정부의 노동절 모범노동자 선정 작업 담당. 노동자의 기술협력 지도. 중국 직공기술협회 업무.
- 법률공작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법규처, 노동쟁의처리처, 법률감독처, 종합처
  • 노동자와 노조에 관한 입법 작업. 공회의 입법과정 참여에 대한 조율 및 지도. 주요 노동분쟁 안건 조사 처리. 노동쟁의 처리 정책과 법률 제정. 법률지원 서비스. 관련 정부부문과 법률 홍보. 총공회 법률고문 위원회 업무.
- 여직공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권익1처, 2처, 종합처
- 여성노동자 권익보호에 관한 정책연구 제정. 여성보호 업무. 이론 및 정책 연구. 여성노동자조직 건설 지도. 여성노동자 권익침해 조사 처리. 총공회 여직공위원회 업무.

- 재무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종합제도처, 경비처, 사업처, 기관재무처, 회계감사처
  - 공회 재무관리 체제 및 제도 연구. 성급 총공회와 자체적으로 경비를 관리하는 산별노조, 총공회 기관 및 직속부문의 예산, 결산을 심사. 자체 예산 관리. 복지사업 재무관리 시스템 제정 및 지도. 공회 자산과 총공회 행정경비 관리.
- 국제연락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사무처, 종합처, 연수처, 아태처, 미주처, 서아시아 및 아프리카처, 유럽처, 국제조직처
  - 총공회의 국제연락업무 총괄 관리. 각국 노총 상황 및 국제 노동운동의 주요 문제 연구 및 대외 홍보. 해외방문 및 초청업무. 국제대회 협조. 국제노총총회 및 다자간 회의 참여.
- 경비심사위원회
  - 담당직위: 주임, 부주임
  - 종합처, 회계감사1처, 2처
- 기관 퇴직간부국
  - 담당직위: 국장, 검사관 겸 부국장, 부국장, 부감독관
  - 사무실, 1처~3처
- 기관 당위원회
  - 담당직위: 상임 부서기, 기율위원회 서기

  • 사무실, 조직처, 선전교육처, 기율위원회 사무실, 정신문명사무실, 기관공회, 기관 공청단위원회
- 기관공회
  • 담당직위: 주석, 부주석
  • 사무실
- 자산감독관리부
  • 담당직위: 부장, 부부장
  • 종합처, 자산관리1 · 2처, 문화사업처, 요양사업처, 편집부, 기금회
- 중국노동관계학원
  • 담당직위: 소장, 부소장
  • 사무실, 기초이론연구실, 경제사회정책연구실, 종합연구실, 노동관계 및 법규연구실
- 중국 직공대외교류센터
  • 담당직위: 비서장
  • 사무실, 국제연락처, 기술교류처, 타이완, 홍콩, 마카오처
- 기관서비스 센터
  • 담당직위: 주임, 부주임
  • 행정처(관리과, 접대과, 통신과), 기초건설처, 부동산관리처(부동산관리과, 자산과, 프로젝트과, 운영과), 경영처(초대소, 식음료과, 교통과), 기관응급부, 사무실(재무과)
- 중국공산당 중앙 직속 공회연합회
- 중앙국가기관 공회연합회
- 당조직 기율검사팀
  • 담당 직위: 기율위원회 서기, 감독관
  • 종합실, 검사실
- 국유기업 개혁 판공실

❍ 산업별공회(전국위원회)[8]

- 중국 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공회 전국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문화부, 보건체육부, 조사연구처, 〈중국교공〉(간행물) 편집부
- 중국 선원건설공회 전국위원회: 선원부, 도로운송부, 건설부, 도시건설부
- 중국 에너지화학 공회 전국위원회: 석탄부, 전력부, 석유 및 석유화학부, 화학의약부, 국토자원부
- 중국 기계, 금속, 건설자재 공회 전국위원회: 기계부, 야금부, 건설자재부
- 중국 국방 우정 공회 전국위원회: 국방과학부, 우정부, 전신부, 전자정보부
- 중국 재정, 무역, 경공업, 방직, 연초 공회 전국위원회: 관광 및 식음료부, 무역부, 경공업 및 연초부, 방직부
- 중국 농림수리공회 전국위원회: 농업부, 임업부, 수리부
- 중국금융공회
- 중국민항공회
- 중국철도공회

❍ 재원

- 공회 조합원은 임금의 0.5%를 조합비로 납부함.
-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기업, 기관은 노동자 전체 임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회에 납부함.

8) 중국금융공회, 중국민항공회, 중국철도공회를 제외한 7개 산업공회는 중화전국총공회 본부 건물에 위치하고 있음.

(3) 주요 현안

- 노동계약법 개정 및 노무파견: 2011년 전국적으로 파견노동자 수는 4천2백만 명에 이름. 파견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한 노동계약법 관련 조항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자 법률적으로 노무파견을 규정하려는 입법기관의 의도를 반영하고 학계의 연구를 적극 참고하여 2013년 개정함. 향후 노무파견과 관련해 더욱 보완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감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비정규 노동: 2007~2011년 동안 중국 도시지역의 비정규 혹은 임시 고용은 매년 1억 4천~1억 5천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도시지역 고용인구의 40% 수준으로, 이미 도시와 농촌의 저숙련 노동자 특히 취업애로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낙후지역의 높은 비정규 취업자 비중, 업종별 장벽으로 인한 비정규 취업자 양산, 저임금 구조, 사회보장 강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
- 농민공: 2011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2억 5천만 명 규모이며, 주로 제조업, 건축,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전체 노동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임금, 고용안정,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등에 있어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음.
- 중국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 8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세대가 노동시장 진입의 주력세력이 되면서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와 관련해 신세대 노동자 조직화 방안 마련과 차세대 공회지도자 육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조화로운 노동관계, 양질의 일자리: 중국공산당 18차 대회의 관련 보고에는 “노동조합, 공청단, 여성연합회 등의 단체가 교량의 역할을 수행해 민중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음. 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노동조합의 신성한 직무이며, 그 핵심은 노동자의 노동경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각급 노조의 조정과 협상능력을 강화해 노조 조직화 및 단체협상 제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기업노조의 조직률을 제고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함.

- 거시조정과 사회관리: 완벽한 노동법률 체제 정비, 지속적인 소득분배제도 개혁, 3자 협상제도 강화, 노동경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관리
- 노동조합의 서비스 기능 강화: 노동관계와 함께 사회적 관계를 함께 중시하고 있음. 사회적으로 업무영역의 외연을 확대해 조화로운 노동관계와 사회관계를 건설하고자 함. 노동조합 서비스는 청취, 존중, 상호 보완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매개로 기업, 노동자, 시민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연락처

- 10 Fuxingmenwai Street, Beijing 100865, China
  中國 北京 復興門外大街 10號
- 전화: +86-10-6859-3625
- 팩스: +86-10-6856-2031
- 웹사이트: www.acftu.org

5. 홍콩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20세기 초반부터 노동조합운동이 일어났으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은 것은 1948년 중국의 국공내전이 종료될 즈음이었음. 홍콩에는 공단연합총회(工團聯合總會, 공단회-친국민당/대만, HKTUC)와 공회연합회(工會聯合會, 공연회-친공산당/중국, HKFTU)가 설립되었으며, ICFTU 가맹조직인 HKTUC와 친 중국계 HKFTU 간에 조직적 갈등이 지속됐음.
- 정부정책, 사회상황, 중국의 대홍콩정책 등의 영향으로 노동조직은 정치활동보다는 노동자의 경제원조 위주의 활동을 해야 했으며 그 결과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1970년대 홍콩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였으나 노동자들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였음.
- 1980년대 노동자 권익을 내세운 노동조직은 공무원노조를 위시한 독립노조였음. 1977년 약 4만 3천여 명에서 87년에는 약 10만 명으로 증가함.
- 홍콩 중국반환을 준비하던 시기에 정부와 사용자에 대항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친 중국과 친 대만 계열이었던 두 노조와 구분되는 독립공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0년 HKCTU(홍콩직공회연맹)가 창립됨.
-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HKTUC는 친대만적 성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자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함. 오히려 HKTUC를 대체하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노조단체로 HKCTU가 부상하고 친중국 성향의 HKFTU와 대조되는 조직으로 발전함.
- 홍콩노동조합과 NGO에 의한 '민간최저임금쟁취연맹' 결성 노력의 결

실로 2011년 5월부터 최저임금이 도입됨.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 최저임금은 별도로 책정됨. 2013년 5월 1일부터 적용된 내국인노동자 최저임금은 시간 당 HK$30(약 4천원)로 책정되었음(2012년은 HK$28).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약 32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10%에 해당함.

- 홍콩은 필리핀(50%), 인도네시아(47%) 등 동남아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 조직화 및 국제연대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임. 2012년 ILO에서 가사노동협약(Domestic Work Convention)이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함. 2013년 9월 30일부터 적용된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정부가 정한 계약시점의 임금)은 월 HK$4,010(약 53만원)임.
- 홍콩은 아직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장시간 노동 및 초과근로 계산 혼란 등의 문제가 존재함.

2) HKCTU (홍콩직공회연맹, Hong Kong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HKCTU는 1990년 7월, 홍콩 독립노조의 단결을 통해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를 타파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을 위한다는 기치로 창립됨.
- 현재 90여 회원조합이 가맹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17만 여명임.
- 설립 목표는 연대, 노동권과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 정의, 민주주의임.
- 홍콩에서는 각기 다른 총연합단체 간에 연대활동이 거의 없지만 독립노조(HKCTU)의 경우 홍콩 내 NGO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음.
-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콩에 6개 훈련센터(train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2) 조직현황

❍ 운영체계

- 회원대회(會員大會):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소속 회원사가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표를 파견하고, 매년 3월이나 4월에 집행위원회가 소집함. 회원대회와 특별회원대회가 있으며,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함. 주석이 사무총장(비서장)과 사고(司庫, 총무)의 협조 하에 회의를 진행함.
- 집행위원회(26명): 회원대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회원대회 사이 기간 동안 정책을 결정함.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함.
-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8명): 집행위원회 산하의 상무이사회는 감찰 및 긴급한 정책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 노동위원회(Labour Affairs Committee)
- 사회위원회(Social Affairs Committee)
- 여성위원회(Women Affairs Committee)
- 노조교육센터(Union Education Center)
- 여가 · 복지위원회(Recreational and Welfare Affairs Committee)
- 재정위원회(Financial Committee)

❍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

- 기금모금위원회(Fundraising Committee)
- 공공서비스위원회(Civil Service Affairs Committee)
- 공공단체노조위원회(Public-Funded Organization Unions Committee)
- 신서부지역위원회(New Territories West District Committee)

- 단체협상그룹(Collective Bargaining Group)
- 정치참여그룹(Political Participation Group)
- 조직화그룹(Organizational Group)

❍ 지도부

- 사무총장: 李卓人 Lee Cheuk-yan(홍콩입법회의원/홍콩 노동당대표), 1990년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재임(2011년 12월 재선)
  사무차장: Cyd Ho, Fernando Cheung, Howard Cheng
- 집행위원: 총 26명

❍ 국제활동

- ITUC, GUFs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노동자교육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 Association), 아시아여성위원회(Committee for Asia Women), 글로벌 네트워크 등 국제 비정부기구와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음.

(3) 연락처

- 香港九龍彌敦道 557-559號 永旺大廈19樓
  19/F, Wing Wong Building,
  557-559, Nathan Road,
  Kowloon, Hong Kong
- 전화: 852-2770-8668
- 팩스: 852-2770-7388
- 이 메일: hkctu@hkctu.org.hk
- 웹사이트: www.hkctu.org.hk

3) HKTUC (홍콩 · 구룡공단연합총회, Hong Kong and Kowloon Trades Union Council)

❍ 친 국민당(대만지지) 성향의 노동조합으로 1948년 설립되었음. 국제자유노련(ICFTU) 가입과 친대만 국민당지지 성향에 따라 반공산주의 전선을 이루면서 대만의 CFL(Chinese Federation of Labour)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대체하면서 UN에 가입(1971년)하고, 소련 등 동구권 몰락과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대만의 영향력과 지지도 하락과 함께 조직적으로 쇠퇴함. 현재 조합원은 약 24,000명임.

❍ 지도부

-위원장(주석): 李國强

- 사무총장: 司徒添

❍ 연락처

• 港九工團聯合總會 九龍油麻地彌敦道456號 安昌大廈11字樓

4) HKFTU (홍콩공회연합회, Hong Kong Federation of Trade Unions)

❍ 1948년 창립된 조직으로 설립 당시부터 친 중국 성향으로 출발했으며,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조직입지가 매우 강화됨.

❍ 현재 홍콩에서 제일 큰 노동조합단체로 조합원은 약 38만 명에 이름(2012년). 정치적 입지도 강화되어서 입법의회에 4명(의원 수: 70명), 지방의회에 24명(의원 수: 412명)이 진출함. 조직의 기본원칙은 애국

심, 연대, 노동자 권리, 복지혜택, 참여임.

❍ 퇴직금 보장 등에 관한 노동자보상법(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 제정과 최저임금 입법화에 기여했고, 일-가정 양립, 표준 근로시간 도입 등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음.

❍ 지도부

- 위원장(주석): Lam Suk-yee
- 사무총장: Wong Kwok
- 사무차장: Chen Xiong Zhi, Ma Kwong Yu

❍ 연락처

• Hong Kong Federation of Trade Unions
12 Ma Hang Chung Road, Tokwawan,
Kowloon, Hong Kong
• 전화: (852) 3652 5700
• 팩스:(852) 2760 8477
• 이 메일: info@ftu.org.hk
• 웹사이트: www.ftu.org.hk

제9장 동남아시아

1. 말레이시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초기의 노동조합운동은 중국과 인도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종전 이후 말레이공산당이 일반노조(General Labour Union)를 설립했고, 이는 나중에 전국말레이노조연맹(Pan-Malay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PMFTU)으로 변경됨.
- 영국 식민정부는 공산당의 노동조합 결성과 확산되는 분규 및 소요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선언하였으며 PMFTU를 해산하였음. 또한 1949년 말레이시아노총(Malaysian Trades Union Congress: MTUC)이 결성되도록 지원함.
- 말레이시아 노동조합운동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공산주의자에 대한 내부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당한 노조활동에 많은 구속과 제한이 따랐음.
- 1980년대 이후 개별 사업장 노조 확산으로 전체 노동조합 숫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장 노조의 협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

는 실정임. 전체 노동조합의 50% 이상이 조합원 500명 이하의 노동조합임.

- 1989년에는 MTUC가 분열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음. 정부의 묵시적 협조 하에 금융과 상업 및 석유화학 분야 노조가 탈퇴해 MLO (Malaysian Labour Orgnization)를 설립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많은 특혜를 받게 되었으나, 분리의 정당성이 상실되면서 1996년 MTUC로 복귀하게 됨.
- MTUC는 설립 초기에는 대농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나 점차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었음. 2000년대에 들어 교원노조가 가입하면서 조합원 수가 50만 명에 달했음. 반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CUEPAC(Congress of Unions of Employees in the Public and Civil Services)는 조합원이 12만 명에 달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98호 ILO협약을 비준했으나 법정기관 직원과 그 노동조합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정부와 CUEPAC은 5년마다 임금 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말레이시아 노동조합은 1959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이 아닌 1966년 제정된 사회법(Societies Act)의 적용을 받으며, 정부의 노동조합국장이 노동조합 인정이나 인정중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노동조합법은 초기업단위 노조의 결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자산업의 노조연맹 결성 거부가 국제적인 노동이슈가 되기도 했음. 조직률은 약 9%임.

2) 노사관계 개요

○ 고용법

- 고용법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단체교섭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

한 최소한의 지침을 명기한 것임. 고용법은 단지 가이드라인으로서 최저임금이나 기타 수당에 대한 지침은 제시하지 않음. 신생기업 중에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부 규정을 제정하거나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법이 그 이상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노사관계법

- 노사관계법은 민간부문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결성과 가입을 보장하고, 관련절차를 명기하고 있음. 본 법은 노동조합이나 노조원에 대한 자격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합법적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한을 가짐.
-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산업관계 담당 부처는 고용 관련 단체협약을 기초로 중재에 나섬.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모든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관계법에 의거해 해당 사항을 신고하고 복직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공무원 또는 법정기관 직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노사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
-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은 3년임. 원칙적으로 노사관계법은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사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의하고 있음.

❍ 노동조합법

-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활동영역 결정과 관련에 대해 노조 등록관이 전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조 운영지침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음. 노동조합법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노조 운영진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집행부가 합의로 결정한 사안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임.

-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정부가 지정한 감사관이 실시함. 회계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로 하며, 감사 후 결산 보고서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노동조합법은 노조에게 불리한 법으로, 노조결성 및 노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3) MTUC (Malaysia Trade Union Congress)

(1) 창립과정 및 발전

- MTUC는 1946~48년 공산주의자의 폭동에 의해 최초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등장하기 시작함. 자유노동조합운동을 지향하는 지도자들이 영국식민정부의 우호적 지원 하에 1949년 2월 27~28일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계기로 민간기업 노동조합으로 설립됨. 1955년 사회법령(Societies Act)에 의해 등록되면서 말레이시아 최초의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로 인정받게 되었음. 현재 산하에 정부, 민간부문, 공공기관을 포함해 240개 단위 노동조합[9]과 50만 명의 조합원이 있음.
- 1996년 공공부문노동조합회의(CUEPACS, 1957년 설립)가 MTUC에 가입하였음. MTUC는 국가노동자문위원회 (National Labour Advisory Council)와 노사정위원회 회원으로, 말레이시아경영자총협회 (Malaysian Employer Federation)가 사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함.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회

9) 산별노조/연맹 결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위노조가 노총에 직접 회원조직으로 참여함.

의에도 노동자를 대표하여 참석함.

- 역할과 목표: 가맹조직의 권익을 대변하며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지원함. 완전고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 최저임금보장 및 주당 44시간 법정 최장근로시간 확립, 노동자 훈련원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을 목표로 함. 질환, 실업, 고령, 부상 등에 대해 법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모든 직장에서의 건강, 위생, 복지를 증진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주요 활동: 가장 큰 과제는 노동조합법, 노사관계법, 고용법 제한적 조항을 개정하는 것임. 노동조합의 승인, 노동조합 간 불화 조정, 노동조합 협상 지원, 노동조합 활동 지원, 노동조합 행정업무 지원, 단체협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노동자 조직화 지원, 안전과 생산성 향상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함.

(2) 조직현황

❍ 회원조합: 산업분야 별 단위 노동조합 수: 240개 (2013년)

- 농업: 13개 노조
- 전기, 수도: 13개 노조
- 건설: 1개 노조
- 제조업: 73개 노조
- 서비스: 30개 노조
- 광산, 석유: 9개 노조
- 상업, 금융: 16개 노조
- 운수, 통신: 51개 노조
- 정부, 공공: 34개 노조

❍ 운영체계

- MTUC의 최고기구는 3년마다 열리는 대표자대회 (Delegates Conference)임. 가맹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에 따라 1명~42명의 대표자를 참석시킴. 대표자대회는 보통 이틀간 개최되며, MTUC 활동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주요 임원을 선출하며 주요 정책과 행동지침을 결정함.
- 운영위원회 (Working Committee)는 위원장, 부위원장 (Deputy President),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재무서기, 부재무서기와 11명의 부위원장 (Vice President) 으로 구성됨. 11명의 부위원장 중 6명은 민간부문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3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대표하며, 2명은 정부기관을 대표해 선출됨. 운영위원회는 대표자대회와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결정된 사안을 집행함.
-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의 여성위원회 대표자대회와 청년위원회 대표자대회에서 선출되며 역시 부위원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함.

❍ 지도부

- 위원장(President): Mohd. Khalid bin Atan
-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N. Gopal Kishnam

❍ 국제활동

- ITUC에 가입해 있고, 사무총장 N. Gopal Kishnam은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정이사로 선출됨.

(3) 연락처

• Malaysian Trade Union Congress
Wisma MTUC
10-5 Jalan USJ 9/5T
47620 Subang 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 전화: (60-3) 8024 2953
• 팩스: (60-3) 8024 3225
• 이 메일: mtucgeneral@gmail.com

2. 미얀마/버마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초기 노동조합운동은 1920년대 영국 식민지 하에서 인도와 중국 이주 노동자의 유입 속에서 자국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출범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독립까지 많은 파업이 발생하기도 함.
- 영국 식민정부는 1926년에 이미 노동조합권을 허용했으며, 1940년 All Burma Trade Union Congress(ABTUC), 1949년 Trade Unions Congress of Burma(TUCB), 1950년에 Burma Trade Union Congress(BTUC), 1958년 Union of Labor Organization (ULO) 등이 출범한 적이 있음.
- 1955년 버마 정부는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협약)를 비준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음. 실제 조합원 수는 도시노동자 약 1백만 명 중 6만 명 정도였음.

- 1964년 네윈(Ne Win)장군은 모든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여당인 버마 사회주의자프로그램당(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BSPP) 통제 하에 노동부장관이 정부가 세운 노총의장을 맡는 체제로 변경하였음.
- 1974년 6월, 전국 파업 시위에 네윈 군사정부가 발포하여 파업참가자 및 학생 1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1988년 버마에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도 랭군(Rangoon)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총파업이 발생했으나 군부가 이를 제압하고 작업장 복귀명령을 내렸음. 새로 출범한 신군부 정권도 여전히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정책을 고수했고, 버마출신 해외선원의 국제운수노련(ITF) 활동참가마저 금지함.
- 버마 군사정부는 지난 20여 년 간 ILO로부터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위반으로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받아왔음. 한때 ILO는 버마에 대한 기술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미국도 일반관세특혜(GSP) 자격을 정지시킨 적이 있음.
- 1988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설립된 버마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Burma: FTUB)은 지하로 숨어들어갔으며, 인도나 태국 등 국경 근처나 해외에서 제한적 활동을 해 왔음.

2) 일반 개요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1962년 네윈(Ne Win)장군이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후 여당(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BSPP)만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해체됨.
- 1988년 신군부가 정권을 잡자 국명을 미얀마로 변경하고 국가법질서

회복위원회(State Law &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를 설치해 국정을 운영함. 1990년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NLD)가 압승하자 군부는 국회개원을 거부하고 군사독재를 실시함. 1997년 SLORC가 국가평화개발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정당활동은 금지됨.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조치가 발효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점증하였음. 이에 따라 2003년 8월 30일 당시 킨늉 수상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7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헌법 제정을 위한 향후 정치일정을 발표하였음. 또한 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집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가 헌법제정에 착수함.
-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는 2008년 5월 10일 실시되어 통과되었음. 이로써 미얀마의 신헌법에 의거해 미얀마 국명은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개칭되었음.
- NLD의 선거 거부 속에서 2010년 11월 7일, 국회구성을 위한 의원선거가 실시되었음. 예상대로 군부의 후원을 받은 연방결속발전당(USDP)이 유효투표의 80%를 획득한 압승을 거두었음(국민의회 330석 중 259석 차지). 이에 11월 13일 아웅산수치의 가택연금이 해제되었음. 2011년 3월 30일 국군총사령관이었던 딴쉐의 명령에 의해 군부의 통치기구였던 SPDC가 해체되면서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군부지배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
- 2011년,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출범 이후 경제자유화를 위한 정부의 개혁 · 개방 조치와 함께 미얀마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임.
- 정치상황의 호조에 힘입어 의류, 봉제, 전자제품 조립 등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가 증대하였음. 2012년 이후 외국계 기업에서 임금인상 및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미얀마 현지 노동자

의 파업이 급증하였음.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노동조합법(2011년 10월)[10], 노동분쟁조정법(2012년 3월) 등 노동관련 법률을 입법화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3) FTUM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Myanmar)

(1) 창립과정 및 발전

- FTUB(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Burma)는 1991년 설립되었으며, 1988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노동자와 학생이 주축을 이루었음. 1990년 선거에서 압승하고도 군부에 의해 정권을 잡지 못한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와 긴밀한 연대활동을 계속함.
- 민주화운동이 군부에 의해 좌절되자 FTUB의 활동은 위축되어 지하활동이나 국경지대에서 활동하였음. 집행위원 중에는 군사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하거나 종신형을 받은 사람도 있음. 2011년 떼인 세인(Thein Sein)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FTUB 지도부는 태국,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 망명노조를 운영하였음.
- 2010년부터 미얀마 국내 정치상황이 그 동안의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발전의 기미를 보이자 FTUB는 2012년 9월 미얀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조직명도 버마 대신에 미얀마를 사용해 FTUM(Federation of Trade Unions – Myanmar: FTUM)으로 변경함.
- FTUM은 미얀마로 돌아간 후 6개월 만에 약 130개의 회원조합을 구축하고, 16,000명의 노동자를 조직하였음. 그러나 20여 년의 공백으로 어려움이 있어 Myanmar Industrial Trade Union (MITU)과

10) 30인 이상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고 파업권도 인정됨.

Agricultural and Farmers Federation of Myanmar (AFFM)는 FTUM의 회원조합에 참여할 것을 거부함.

(2) 조직현황

❍ 지도부

- 사무총장: 마웅 마웅(Maung Maung)은 ILO 이사회의 노동자그룹 부이사로 선출되어 미얀마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ILO와 국제노동단체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

❍ 국제활동

- FTUM은 ITUC의 회원조합이지만, 귀국 후 조직운영과 의사정책 결정 과정이 하향식(top down)이어서 다시 민주노동운동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일본노총 렌고(JTUC- Rengo) 전직 간부가 ITUC 미얀마 사무소장으로 파견되어 있음.

(3) 연락처

- No.86, 1st Floor,
  164 Street, Tamwe Gyi (Kha) Ward,
  Tamwe Township, Yangon
  Myanmar
- 전화: +95 94 201 225 42

3. 베트남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VGCL(베트남노총)은 1929년 북베트남 지역에 설립된 적색노조(Red Federation of Trade Unions, 1929-35)를 기원으로 하고 있음. 적색노조는 식민지 정부에 대항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후에도 외국의 침탈에 대항한 자유독립운동의 역할에 주력하면서 노동운동을 전개함.
- 북베트남이 프랑스에서 독립을 쟁취한 1946년 이후 베트남 공산당(VCP) 및 베트남조국전선(Vietnam Fartherland Front)의 대중조직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VFTU(Vietnam Federation of Trade Unions)로 조직명칭을 변경해 1988년까지 그 명칭이 사용됨.
- 한편, 프랑스에 이어 미국의 실제적 지배하에 있던 남베트남에서는 1949년에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건 CVT라는 노동조직이 결성되었음. CVT는 1975년 남베트남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으며, 남북베트남 내전 중 기독교계 세계노련인 WCL에 가맹하였음.
- 남북베트남이 통일을 이룬 1975년 이후 VFTU는 베트남 전역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활동내용도 기존의 정치적 활동에서 노동자 이익 보장과 권리 확보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역점을 두기 시작함. 1988년의 제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현재의 VGCL로 조직명을 변경함.

2) 노사관계 개요

- 1957년 제정, 1992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사회주의 개혁정책에서 노조의 역할을 규정하는 한편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장, 고용주의 이익 보장, 생산성 향상 등을 추구하고 있음.

- 14개의 ILO협약이 비준되어 있으며, 노동법해석과 관련해 ILO의 지원을 받은 바 있음. 베트남은 ILO협약 제87호와 제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노총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는 불법으로 규정돼 결사와 참여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함.
- 주요 노사 현안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됨. 노동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직접 혹은 노조간부를 통해 사용자와 고충을 상담해 문제를 해소함. 회사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재판소(People's Court)에서 분쟁조정을 요청하게 됨.
- 파업은 노동자 50%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최근 개인과 외국투자기업의 파업이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 미지급, 장시간근무, 초과근무 등이 주요 이슈인데 외국투자기업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도 노사관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수출자유지역(EPZ)내에서 부당처우와 저임금 문제 이외의 파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협의를 하기 전에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연금과 재해보상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노동자임금의 20%로 규정된 보험료는 노동자가 5%, 기업이 15%를 각각 부담함.
- 노동부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총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연2회 정기 모임을 통해 노동문제 전반을 협의하고 있음. 사용자단체로는 베트남상공회의소(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VCCI)가 있음.
- 법정 최저임금은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총, 베트남상공회의소 등 노사정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의장: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의 결론을 총리실에서 최종 발표함. 현재 최저임금은 4개 지역에 차등 적용되고 있음.
- 헌법은 노조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헌법 제10조).

3) VGCL (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

(1) 조직 현황

❍ 조직체계

- 베트남의 노동력 인구는 약 4천 7백만 명이며, 임금노동자는 약 1천 5백만 명임.
- 임금노동자의 노조가입은 자유이나 모든 단위 노조는 노총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됨. 따라서 베트남에서 독립노조를 조직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 VGCL은 산별보다는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점점 산별조직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 64개 지역조직과 18개 산별조직이라는 두 축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은 약 11만 3천 개임. 공공분야 390만 명과 민간분야 382만 명으로 총 772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데(2012년 현재)[11], 국영기업과 외국투자기업 노동자도 가입되어 있음.
- 산하 18개 산별노조 : 교원노조, 교통노조, 항공노조, 선원노조, 은행노조, 건설노조, 의료노조, 농업농촌노조, 산업상업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체신전신노조, 철도노조, 석유가스노조, 전력노조, 고무노조, 석탄광업노조, 국방노조위원회, 경찰노조위원회
-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대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각급 조직에서 선출된 9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5년마다 개최됨(2013년 7월 28-31일에 수도 하노이에서 제11차 대의원대회 개최). 대회에서는

11) 베트남노총대표단 국가보고서(2013년 노사발전재단 초청 세미나 발표 자료)

임원 등 지도부선출, 운동기조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이 이루어짐.
- 집행위원회 : 172명의 산별연맹 및 지역/지방 조직 대표로 구성됨.

❍ 지도부 (Presidium)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4명의 부위원장, 노총본부와 산하기관 · 산별연맹 · 지역조직 등에서 선출된 상임위원 20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됨.
- 위원장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으로, 국회 부의장직도 겸임함.
- 현 지도부 (2013~2018년 임기)
  - 위원장 : Dang Ngoc Tung
  - 수석부위원장 : Mai Duc Chinh
  - 부위원장 (4명) : Tran Thanh Hai, Tran Van Lo, Nguyen Van Ngang, Nguyen Thi Thu Hong

❍ 부처별 업무
- 사무총국에는 재정, 행정, 조직, 여성, 법률, 교육, 경제사회정책, 회계, 국제 등 9개 본부가 있으며, 노동신문, 노동조합대학, 출판부, 여행사 등 기타 부설기관도 갖추고 있음.
- 노총본부 상근간부 150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노총이 임금을 지급하는 8,000명의 노조간부가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자원봉사자이며 관광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

❍ 재원
- 조합원 개인이 월급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하며, 2013년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노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전체 노동자 임금의 2%를 매달 노조에 기부함.

❍ 국제활동

- ITUC와의 협력 관계
  - ICFTU-APRO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안에 따라 직접 참여
  - ICFTU-APRO의 "21세기를 향한 노조조직화"사업에 참여
  - ICFTU APEC노동조합회의(APLN)에 참관조직으로 참여
  - ITUC 제3차 세계총회(2014년 5월 베를린)에 참관조직으로 초청
- 국제협력위원회(International Cooperation Council)가 국제활동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
- 강력한 노동운동을 위해 국제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미국 및 ILO 등 국제조직과 대표단교환, 세미나개최, 국제논문번역 등의 사업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70여개국 노동조합 및 30여 국제조직과 협력관계를 유지함.

❍ 한국노총과의 관계

- 1995년 박종근 노총 전위원장이 비공식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으며, 1997년 8월 박인상 전위원장 등 6인의 대표단이 베트남노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공식교류가 시작됨.

(2) 연락처

- 82 Tran Hung Dao Street, Hanoi, Vietnam
- 전화: +84 4 942 1794/1517
- 팩스: +84 4 942 3781
- 웹사이트: www.congdoanvn.org.vn

4. 싱가포르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기본적 노사관계 틀은 1960년 제정된 노사관계법에 의해 제공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198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다수의 기존 노조가 노조등록기관으로부터의 인정을 상실하였음(자영업자와 계약자그룹간의 노동조합 등록취소).
- 싱가포르 정부 여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과 싱가포르노총은 유기적 상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정부는 노동조합에 각종 사회적 대화기구의 정부부처 보직(장관급)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주며, 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코포러티즘체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어 파업발생의 여지는 없음.
-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싱가포르노총은 이를 조합원에게 홍보 · 교육하며, 사용자협회는 고용안정과 재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1986~87년 경기불황 중 SNTUC는 임금인상 억제와 조합원의 중앙적립기금 (Central Provident Fund)의 사용자 기여금 삭감을 수용하였음. 그러나 다시 경기가 회복되자 사용자협회와 SNTUC는 임금인상에 대한 의견으로 대립함. SNTUC는 1988년 중반 노동시장에서 사용자들이 기존인력 유지를 원할 경우, 임금인상과 더 많은 이윤배당을 요구할 것을 노조에 독려하였음. 이에 대해 사용자협회는 노동조합의 대폭적인 임금인상 압력에 대한 지침서를 발행하였지만 노사분규는 발생하지 않았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중에도 국가경쟁력 유지라는 맥락에서 사용자협회와 SNTUC는 중앙적립기금(CPF)의 사용자 기여율을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데 동의함.

- 싱가포르에서는 1977년 발생한 파업이 마지막 주요 파업이었음. 1991년 전국임금협의회는 최고의 사업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저임금인상을 요청하였음. 1992년에도 전국임금협의회는 비슷한 요청을 하였으며 중앙적립기금의 기업측 기여금을 5% 인상하면서 그 인상분을 임금협상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음.
-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상황에서 싱가포르노총은 구조조정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해고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재훈련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음. 싱가포르노총이 교육훈련기금(N-ETF)으로 1천만 달러를 모으자 정부는 이에 호응해 3천만 달러를 매칭펀드로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신뢰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싱가포르는 외국자본이 많이 투자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싱가포르사용자협회(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SNEF) 이외에 외국인기업가협회도 정부의 임금위원회 등에 사용자대표로 포함되어 있음.
- 노사정기구인 전국임금협의회 (National Wage Council)가 1972년 설립되어 연간 임금 지침을 지정하고 단체협상을 위한 틀을 제공하였음.

2) SNTUC (Singapore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1) 창립과정 및 발전

- 조국 독립투쟁을 위한 선봉에 서기 위해 1954년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설립되었을 때 노동조합은 이 당을 전폭 지원했음. 1959년 인민행동당이 집권하자 노동조합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했음. 1961년 친 공산주의 세력이 인민행동당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인민행동당을 지지했던

SNTUC 소속 노동조합 간에 분열을 초래했음. 이로부터 SNTUC와 인민행동당간의 공생적 관계가 시작되었음.

- SNTUC 전 사무총장인 옹텡청은 1985년부터 1993년 최초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두 번째 부총리로 재임했음. 옹텡청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SNTUC를 사임했음.
- SNTUC는 산업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정부 및 사용자와 긴밀한 협력 하에 활동함. 파업은 노동조합의 무기로 존속하지만 노사관계의 각 단계에서 노사정 삼자주의가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음. SNTUC와 가맹조직은 소득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 및 생산성제고라는 국가정책을 지지함.
- SNTUC는 수퍼마켓, 보험, 육아, 치과 등 노동자와 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시설은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며 노사정 이사회의 감독을 받음. SNTUC는 다수의 유통매장을 운영해 소비자운동도 정착시키고 있음. 그밖에도 리조트휴양지와 컨트리클럽(골프장)을 운영하여 조합원들에게 혜택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음.

(2) 조직현황

❍ 조직현황

- 설립년도: 1961년
- 조합원 수: 80만 명(2013년)
- 가맹 조합 수: 61개: 60개 노조와 1개 협회(택시). 7개 준회원 조직(2013년 현재)

❍ 회원조합

- 금속산업노동조합 (Metal Industries Workers' Union)
- 조선/해양엔지니어링노동조합 (Shipbuliding and Marine Engineering Employees' Union)
- 전기/전자노동조합 (United Workers of Electronic and Electrical Industries)
- 식품/음료노동조합 (Food Drinks Allied Workers Union)
- 화학산업노동조합 (Chemical Industries Employees' Union)
- 전국운수노동조합 (National Transport Workers' Union)
- 건축/목재노동조합 (Building, Construction & Timber Employees' Union)
- 싱가포르산업/서비스노동조합(Singapore Industries and Services Employees' Union)

❍ 부설기관:

- 싱가포르 노동재단 (Singapore Labour Foundation: SLF)
- 옹텡청 노동연구소 (Ong Teng Cheong Institute of Labour Studies: OTC Institute)
-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Consumers Association of Singapore: CAS)

외국인노동자센터(Migrant Workers' Center)

고용연구소(Employment and Employability Institute: eZi)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변경됨)

NTUC Choice Homes(주택)

NTUC Club(오락)

NTUC Eldercare(요양)

NTUC FairPrice(수퍼마켓)
NTUC First Campus(유치원)
NTUC Foodfare(식품)
NTUC Healthcare(의료)
NTUC Income(보험)
NTUC LearningHub(역량강화 재훈련)
NTUC Link(신용카드)
NTUC Media(방송)
NTUC Thrift & Loan(융자)

❍ 운영체계

- 지부위원회 (Branch Committee): 지부단위의 전 임원은 지부 조합원에 의해 선출됨. 단체교섭에서 노동자와 노조본부(Union Headquarter) 및 내셔널센터 지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함.
-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Union Executive Committee): 주요 지부 임원은 자신의 지부를 대표해 노동조합본부에 참석함. 또한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각각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노사관계, 조직화, 재정, 교육, 기술향상, 산업안전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레크리에이션 등 구체적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고 있음(임무: 다양한 지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총연맹과 긴밀한 접촉 유지, 노사관계 및 기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지부위원회 지도, 단체교섭에서 적극적 역할).
- 중앙위원회 (Central Committee): 중앙위원회는 4년 마다 개최됨. 21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로, 일상업무는 행정연구팀(Administration and Research Unit)에서 담당함. 중앙위원회 위원 중 사무총장, 위원장, 재무서기, 부위원장이 선출됨.

❍ 지도부

- 위원장: Diana Chia Siew Fui(여, 보건의료노조 출신)
- 사무총장: Lim Swee Say(총리실장관 겸임, 전자공학전공, 일반상업노조 출신)

❍ 국제활동

- ITUC, ITUC-AP, ACTU (ASEAN Council of Trade Unions) 가입

(3) 연락처

-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
  One Marina Boulevard
  NTUC Centre
  Singapore 018989
  Republic of Singapore
- 전화: (65) 6213 8000
- 팩스:(65) 6327 3752
- 전화: (65) 6213 8220 (국제국)
- 팩스:(65) 6327 3752 (국제국)
- 이 메일: iad@ntuc.org.sg
- 웹사이트: http://www.ntucworld.org.sg/

5. 인도네시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20세기 초 네덜란드 식민지하에서 노동운동이 태동하였으며, 1945년 독립 이후에는 노조활동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정당에 조직적으로 예속되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됨.
- 수하르토 대통령 집권 이후인 1968년부터는 노조활동이 군사독재정권 통치에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전국에 단일노조만을 허용하고 노조를 어용화함.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접수를 거부함으로써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1973년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21개 노조연맹이 인도네시아전노동자총연맹(FBSI)으로 흡수 합병된 후, 1985년 정부주도로 전국 규모의 유일 합법노조인 SPSI(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로 재출범함. 중앙에는 SPSI본부가 있고, 지역별로 SPSI지부로 구성됨. 대부분의 SPSI 노조간부는 여당인 Golkar당 당원이었고, 상징적 국가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협의회의(People's Consultative Assembly: MPR)의 직능대표로 활동함으로써 진정한 독립노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정부와 군부(경찰)의 비호 하에 운영되어 온 SPSI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에 저항하는 운동이 발생함. 1992년에는 비합법 독립노조인 SBSI가 출범하고 위원장이 투옥되는 등 조직적 탄압을 받았으나 상당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기도 함.
- 1994년부터 정부는 어용노조인 SPSI에 대한 노동자의 기피현상, 독립자유노조에 대한 욕구 상승, 노동조합권 침해에 대해 인도네시아정부에 대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적용금지 등 외압 강화로 SPSI에 가입하지 않고 노조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공무원과 교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으며, 별도로 KOPRI(공무원협회)와 PGRI(교원협회)가 설립되어 복리후생 차원의 활동을 전개함.
- 1997/8년 아시아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정치경제적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32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한 수하르토 대통령이 퇴진하고 민주화 운동과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옴.
- 인도네시아는 ILO 협약 제87호를 포함해 8개 핵심조약을 모두 비준하였으며, 1998년 10월 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됨(20인 이상의 노동자의 찬성으로 노조설립).
- 2000년부터는 복수 노동조합연합체 결성이 가능해짐. 인력이주부(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2006년 통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는 5개의 노동조합총연맹(Konfederasi), 91개 노동조합연맹(Federasi), 약 45,000개 단위노조(SPTP: Serikat Pekerja Tingkat Perusahaan)가 등록되어 있음.
- 대표적인 노총은 KSPSI, KSBSI, KSPI 등 3개임. 수하르토 시절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KSPSI는 조직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KSBSI는 수하르토 독재정권 하인 1992년에 설립되었으며 변호사 등 엘리트들이 많이 참여한 독립적 노동운동 주도 세력으로 강력한 국제연대와 지지를 받았음. 2010년 노조총회에서 위원장은 자바 출신, 사무총장은 수마트라 출신이 선출됨에 따라 수마트라와 자바지역 균형이 유지되고 조직발전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됨. 2003년 결성된 KSPI는 수하르토 몰락 후, 혁신을 추진한 그룹에 의해 출범함. 현재 지도부 세대교체를 이루었고 최저임금 인상과 아웃소싱 철폐 등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운동투쟁을 주도해 가고 있음.
- 2005년~2006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조직노동자 수는 약 600만명이지만 각 노총이 모두 수백만 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음.

- KSPSI는 2012년 2월 말랑(Malang)에서 개최된 총회 이후 지도부가 분열돼 혼란상태에 있음. 지도부와 조직의 이합집산으로 KSPI와 KSBSI에 비해 위상은 약화되었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KSPI는 2000년대 초반 친정부적인 KSPSI의 개혁세력이 분열되어 나오면서 설립된 노동조합총연맹임. 40대 젊은 위원장이 노동운동의 개혁을 이끌면서 2012년 최저임금 인상과 아웃소싱 폐지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음. 특히 우리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회사점거 농성(seeping)을 주도한 금속연맹(SPMI)도 KSPI 소속임.
- KSBSI는 1990년대 수하르토 대통령의 철권통치 하에서 출범한 민주노조로, 초대 위원장인 목따르 빡빠한(Mochtar Pakpahan)은 투옥을 경험하기도 하였음. 1990년 대 말 수하르토 정권이 퇴진하고 민주화되면서 KSBSI는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정부의 인정을 받았음. 설립 초창기와 같은 투쟁성은 없지만 ILO와 국제노동조합단체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민주노동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주요 노총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5개 이상 사업장 노조연합으로 구성된 주요 노조연맹(Federasi)도 정당정치와 조직 노동운동의 연계성으로 무시할 수 없음.

2) 노사관계 개요

- 1990년대 말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지기 전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사분규를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노동운동을 강력히 통제하였음. 이를 위해 기업에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친기업적인 노조설립을 권장하고, 국가 5대 통치철학인 Pancasila[12] 정신을 바

12) 유일신에 대한 믿음(Ketuhanan yang Maha Esa), 올바르고 문명화된 인간성(Kemanussiaan

탕으로 한 노사관계 정립을 강제함.

- Pancasila 노사관계 이념에 따르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사회적으로 공정한 대우와 대화를 요구할 수 있으나 노사협조를 깨뜨리는 쟁의행위는 금지됨.
  - Pancasila 노사관계 기본정신
    - 노동은 노동자의 생계유지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헌신이라고 믿음.
    - 노동자는 생산요소로서뿐만 아니라 존귀한 인간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함.
    - 노사의 이익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
    - 노사 문제는 형제애의 정신으로 상호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야 함(파업과 직장폐쇄는 기본정신에 어긋남).
    - 노사는 상호협력과 정의, 공평무사를 바탕으로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짐.
  - Pancasila 노사관계 실천기구
    - 이자협의체(사업장 단위): 노사 동수
    - 삼자협의체(지역 및 중앙): 정부, 노조, 사용자협회. 분쟁해결을 위해 지방노동위원회(P4D)와 중앙노동위원회(P4P)가 있음.
    - 노사문제중재재판소
    - 단체협약(KKB)
    - 회사내규
  - 사업장에서 단체교섭권은 전체종업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노

yang adil dan beradab), 인도네시아 통일(Persatuan Indonesia), 현명하고 지혜롭게 인도되는 대의민주주의(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hikmat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tan/perwakilan), 전 국민을 위한 사회정의(Keadilan soc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

동조합에게 부여됨(다수인 경우 군소노조 연합 가능). 소수노조가 교섭에서 제외될 경우 별도의 요구안을 내고 교섭을 요구하면서 결렬시 소수 노조 주도의 파업이 발생하기도 함.

- 최근 몇 년 동안 회사의 노동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의 복지개선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아웃소싱 철폐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3개 주요 노총 간의 연대집회도 개최되고 있음.
- 2014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도 활성화되었음.

3) KSPI

❍ 조직현황

- 설립년도: 2003년 2월 2일
- 조합원 수: 290만 명(자체 통계), ITUC 등록 조합원 수: 75만 명
- 가맹 산별노련: 11개

❍ 전국위원회 (National Council)

- 위원장: Syaiful DP
- 위원 23명
- 각 노동조합 회원은 위원회에서 2명의 대표를 지명할 수 있음. 위원회의 기능은 산하 단체 조합원의 통제, 자문, 가입 또는 가입해지 등임.

❍ 지도부

- 위원장: Said Iqbal
- 부위원장 4명

- 사무총장: Muhammad Rusdi
- 부사무총장 3명
- 재정임원 2명
- 집행부의 기능은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정한 대로 조직의 일상활동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임.

❍ 연락처

• KSPI(Kongress Serikat Pekerja Indonesia)
JI. Raya condet No.9, Masjid Al Hawi, Cilitan,
Jakarta Timur 13640
Indonesia
• 전화: +62 21 80877277
• 팩스: +62 21 80877277
• 이메일: kspi_citu@yahoo.com

4) KSBSI

❍ 조직현황

-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초창기에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국제노동단체의 연대적 지지로 발전해 옴.
- 자체적으로 조합원 수가 210만 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ITUC에 등록된 조합원 수는 52만 명임.
- 수하르토 정권이 몰락하고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되면서 KSBSI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제도권으로 진출하여 정부의 각종 사회적 대화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음. 또한 초대 위원장인 목타르 팍파한(Mochtar Pakpahan)은 정당을 만들어 정치진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함.

- 2006년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련(WCL)이 통합하면서 ITUC에 가입함.

❍ 지도부

- KSBSI 지도부는 수마트라 출신 위주였지만 현재는 자바 출신 위원장 Mudhofir와 수마트라 출신 사무총장 Togar Marbun이 조직을 이끌고 있음.

❍ 연락처

- Jl. Cipinang Muara Raya No. 33 Jatinegara
  Jakarta Timur - Indonesia 13420
- 전화: +62 21 709 84 671
- 팩스: +62 21 857 76 46
- 이 메일: info@ksbsi.or.id

5) KSPI와 KSBSI

- 친정부적이며 수하르토 정권하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노총이었던 KSPSI는 지금까지 ITUC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조의 독립성으로, 군부 출신의 노조 참여가 문제됨.
- 반면 군부 정권 속에서 살아남은 KSBSI와 수하르토 정권 퇴진 이후 기존 노동조합운동 개혁을 내걸고 설립된 KSPI는 ITUC와 국제산별연맹(GUF)의 지원으로 조직과 국제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
- KSBSI는 2011년 6월부터 ILO 노동자그룹 정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 2년씩 교대로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를 맡고 있음.

6. 캄보디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와 냉전 종식으로 정부는 정부통제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였고, 1991년부터 미국의 AID 자금이 공급됨. 특히 AFL-CIO의 국제연대센터(Solidarity Center)와 독일 에버트재단(FES)의 노동조합교육 지원이 시작되면서 1990년대에 노동조합 연맹체 형태의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함.
- 아시아 외환위기가 노동조합 조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2000년대 경기가 회복되자 사업장 단위노조와 노조연맹 조직화가 활성화됨.
- 노조설립 제한: 사업장 단위의 노조 임원 선출권은 해당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전과가 없으며 25살 이상인 자에 한해 국한됨. 노조 창립자는 창립선거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거 후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창립선거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임원후보는 선거 45일전과 45일 후까지 해고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게 되지만 사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음.
- 캄보디아 노동법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됨.
  - 독립 이전: 프랑스 식민지시기를 포함하며 특별한 노동법 규정을 두지 않았음. 프랑스 식민치하인 1920년 민법이 제정되고 1927년 수상의 명령(Sub-decree)에 의해 일 10시간의 노동시간과 기타 노동법 규정을 두었음. 1951년 노동사회복지부(노동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가 설치됨.
  - 1953년 독립 이후 1970년까지: 행정이 프랑스로부터 캄보디아 정부로 이양되면서 여러 법률이 제정되고 기존 노동관련 법규가 규율하

는 범위가 확장됨.

- 1970년부터 1975년: 크메르 공화국(Khmer Republic)이 현재의 노동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노동법 초안을 작성하였음. 197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
- 1979년부터 1992년: 1985년 사회 및 상이군인부처(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Disable Veterans)가 설치되고 새로운 노동법이 1992년 10월 공포됨.
- 1993년부터 현재: 1997년 노동법과 2002년 사회보장법(Law on Social Security)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규가 제정됨. 캄보디아 시장경제체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함.

2) 노동조합 현황

❍ 노동조합 현황

- 1997년 노동부에 등록된 노동조합 수는 20개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245개로 증가하여 조합원이 약 160,000명에 달함. 2009년에는 노동조합 수가 1,000여개로 급증하였음.
- 노동조합 조직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2010년 조직률은 전체 노동인구의 1%, 산업노동인구의 13%로 추정됨.
- 대부분의 조합원은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의류산업 노동자 294,470명의 60%가 조합원으로 구성), 고무와 담배산업은 25%(노동자 309,000명), 건설업 5%(노동자 150,000여 명), 관광업 0.06%(노동자 666,600여 명), 공무원 5%(노동자 150,000여 명)임.
- 캄보디아의 노조는 노총, 산별연맹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조직 간 경쟁이 심함.

- 캄보디아 노동조합은 계열별로 캄보디아 인민당(CPP) 계열의 노조와 통합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계열로 크게 양분되어 있음.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이 크며, 반대급부로 캄보디아 정당은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기 위해 주요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노조를 관리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특징

- 노동조합의 역사가 짧으며 섬유 · 봉제 분야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음. 충분한 노조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노조간부와 조합원, 사업장단위 노조 간부와 노총 간부 간 소통 체계가 정착되지 않았음.
-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다수 존재해 노조의 통합성과 단결력은 매우 낮으며, 서로 경쟁적인 관계임.
- 정당, 특히 집권당과 관계를 맺는 노동운동 지도자가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고 출마하는 경우도 많음.
- 친정부 노조계열인 CCTU가 가장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야당 지지 노조들은 물가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생활임금(living wage)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지지 노조들은 단계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함.
- 이념적으로 여당, 야당과 독립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운동 지도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자신의 지향에 따른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음.

❍ 캄보디아 노동조합의 문제

- 외적 문제: 소규모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고용, 부실한 노동법 이행 및 준수, 만연한 부패, 초기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

사용자의 노조 회피

- 내부 문제: 섬유, 봉제 분야에 집중된 조직화, 조합원 교육 재원 부족, 재정 자립도 취약과 대외 의존(국제지원, 정당 및 정부 지원), 제한된 조합원 서비스, 낮은 수준의 단체교섭력, 노동조합 간부의 리더십 부족, 제한된 지도력 및 조직력, 노사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DB 부족, 제한된 노동지원 연구, 제한된 지적역량과 정보 공유

❍ 조직현황

- 1996년 설립된 캄보디아 자유노조(FTUWKC, Free Trade Union of Workers in the Kingdom of Cambodia)는 설립 초기부터 독일 FES재단 등으로부터 교육프로젝트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섬유, 봉제 사업장을 조직화함. 야당 지도자인 Sam Rainsy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구축해 정치적인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2004년에는 위원장이었던 Chea Vichea가 피살되는 사건도 발생함. 현재 조합원은 6만 명 정도로 설립 당시와 큰 변동이 없음. 봉제노동자 중심의 연맹체로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에 적극적인 대표적인 야당성향의 노동조합임.
- 1999년 설립된 캄보디아독립섬유노조연맹(National Independent Federation Textile Union of Cambodia, NIFTUC)과 2000년에 설립된 캄보디아의류노동자민주노조연대(Coalition of Cambodian Apparel Workers Democratic Unions, C.CAWDU)는 중립적 성향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mmiittee)에 참가함(노동계대표 7명 중 2명, 5명은 친정부 노조대표가 참여). 2014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함.
-2003년에는 캄보디아노동조합총연맹(Cambod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CTU)이 설립됨. 이 연맹은 ICFTU와 GUFs의 후원으로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연맹체들의 국제사업과 교육프로젝트 등을 협의하기 위해 결성됨.

- 2005년 친여당 성향의 캄보디아전국노조총연맹(Cambodian National Confederation, CNC), 2006년 친야당 성향의 캄보디아노조총연맹(Cambodia Confederation of Unions, CCU)과 중립적인 캄보디아노동총연맹(Cambodian Labor Confederation, CLC), 2007년 친여당 성향의 캄보디아전국노조동맹회의소(National Union Alliance Chamber of Cambodia, NACC) 등이 창립되었지만 연맹체로서의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

7. 태국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58년 모든 노동조합이 해산된 후 1972년까지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지 않음. 1975년 노동관계법(Labor Relations Act)이 제정되면서 10명 이상 노동자의 노조설립이 가능해짐. 노조결성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공공분야는 어느 정도 조직화가 활성화되었음. 민간분야에서 노조결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보호제도가 마련되지 않음.
- 전국 단위의 소규모 연맹체가 설립되기도 했으며, ICFTU 회원조직으로 LCT(Labor Congress of Thailand)와 TTUC(Thai Trade Union Congress)가 있었음. WCL 조직으로는 NCTL(National Congress of Thai Labor)이 활동했음.
- 1991년 다시 군사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노동조합이 어려움을 겪게 되

었음. 농민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제외되었음. 공공부문 노동자는 국영기업노동관계법(State Enterprises Labor Relations Act)의 적용을 받아 노조가 아닌 협회(association)로만 설립될 수 있었으며, 단체교섭권도 허용되지 않아 전체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함.

- 이러한 군부통치 하에서 LCT 위원장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국제적 지지와 노조의 투쟁이 계속돼 1992년 군사정부가 하차하게 됨.
- 1992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국영기업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조결성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2000년이 되어서야 이 법이 통과됨. 이에 따라 33만 명의 국영기업 노동자협회가 노동조합으로 전환됨.
- 1919년 창설된 ILO의 창립회원국이며 ILO 핵심협약인 제87호(결사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모두 비준함.

2) LCT (Labor Congress of Thailand)

- 1972년 결성되었으나 군사쿠데타로 활동이 금지된 후 1978년에 재설립되었으며, ICFTU에 가입하였음.
- 1982년에는 정부와 군부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조직내부 갈등으로 분열됨. 독립적 조직 운영을 주장하던 그룹은 이탈하여 TTUC(Thai Trade Union Congress)를 결성함.
- 1985년에는 군사쿠데타 모의세력을 지지한 혐의로 LCT 지도부가 체포되기도 함. 1991년 군사쿠데타 이후 태국 노동계 지도자였던 Thanong Poarn LCT 위원장이 실종되면서 조직이 크게 위축되기도 함.
- 2006년, ICFTU 회원조직으로서 자동으로 ITUC 회원조직이 되었으며, 등록 조합원 수는 2만5천 명임.

3) TTUC (Thai Trade Union Congress)

- 1982년 LCT에서 이탈한 그룹이 설립했으며, 1987년 ICFTU에 가입함.
- 1991년 국영기업노동관계법(State Enterprises Labor Relations Act)이 제정되면서 국영기업 노조가 해산되자 TTUC 조합원이 급감함.
- 2006년, ICFTU 회원조직으로서 자동으로 ITUC 회원조직이 되었으며, 등록 조합원 수는 8천 명임.

4) NCPE (National Congress Private Industrial of Employees)

- ITUC 회원조직으로 15만 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음

5) SERC (State Enterprises Workers' Relations Confederation)

- ITUC 회원조직으로 5만 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음.

8. 필리핀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필리핀의 노사관계는 1890년대 초 미국 식민지 시대에 대농장 플랜테이션과 수출을 위한 1차 산업이 경제의 주류를 이루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감.
- 1953년 산업평화법(Industrial Peace Act) 제정으로 노동조합주의와 단체교섭이 인정되고 노사관계제도가 강제중재에서 단체교섭으로 전환됨.

- 필리핀 노사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노동자 단체 내의 뿌리 깊은 파벌주의로, 노동조합운동을 통일시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함. 또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교섭을 통해 노사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삼자의 알선이나 조정에 의존하고 있음.
- 필리핀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은 1960년대에는 협상에 의한 산업평화, 1970년대~198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행위 규제, 1980년대는 노사정주의, 1990년 후반 이후에는 개방노동의 취약성(open-labor vulnerability)으로 변화함.

2) TUCP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48년 TUCP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PTUC(Philippine Trade Union Congress)가 PTGWO 등 16개 노조의 통합으로 설립됨. 당시 PTUC 창립에 참여했던 조직 중 일부는 아직도 TUCP에 존재함. 1959년 KMP(Katipunang Manggagawang Pilipino)가 설립됨.
- 그러나 많은 노조들이 조직적 대립으로 단명하고 1975년 당시 마르코스정권의 후원으로 KMP/TUCP가 설립됨. 설립 당시 KMP/TUCP는 최소 1만명의 조합원확보, 최소 10개의 단체협약(CBA)이라는 '더블10'이라는 목표를 세움.

(2) 조직현황

❍ 개요

- TUCP는 필리핀 최대의 전국규모 노총으로 필리핀 전체노동력의 8%

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회원조직은 농업, 제조업은 물론 공공부문 및 공무원까지 포괄하는 전국 30개 노조와 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비공식 부문, 운전기사, 도시빈민, 청소년단체, 협동조합, 연대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 등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조합원 수: 1백20만 명(ITUC 등록 47만5천명)

❍ 운영체계

- 필리핀노총은 총회(Convention),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로 구성됨.
- 총회(Convention): 총회는 노총의 최고권력 기구로 5년마다 개최됨. 총회대의원은 의무금을 완납한 조합원 1,000 명 당 1명이 배정됨.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일반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상정된 모든 정책 문제를 결정하며, 회칙개정 사항을 심의하거나 권고함. 위원장이나 집행위원회의 요구, 또는 일반이사회 위원 1/3의 요구에 따라 개최되며, 최소한 6개월에 1회 개최되어야 함.
-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일반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행정을 담당하며, 위원장, 사무총장, 총무, 총회에서 선출된 12개 회원단체장,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에게 지명하고 일반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6개 단체장, 직권상의 자격을 지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의장 등으로 이루어짐.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부위원장 자격을 가짐. 집행위원회는 최소 월 1회 개최됨. 주요 기능은 회원가입신청 심사, 전년도 예산 심의, 차기 연도 예산을 결정하며, 노총의 이해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회원에 대한 징계 등임.

❍ 지도부

- 위원장: Ernesto F. Herrera

❍ 부처별 업무

- 본부: 교육, 멤버십 서비스, 홍보, 조사, 여성, 청년 등 5개의 부서와 아동노동, 가족복지 등 2개의 과가 있음.

❍ 국제활동

- ITUC 가입

(3) 연락처

- TUCP-PGEA Compund
  Masaya & Maharlika Sts.
  Diliman, 1101, Quezon City
  Philippines
- 전화: (632) 924 7551
- 팩스: (632) 921 9758
- 이 메일: secrtucp@tucp.org.ph
- 웹사이트: www.tucp.org.ph

3) FFW (Federation of Free Worker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50년 기독교 사회강령에 기초한 필리핀 최초의 노동조합연맹으로 건립되었으며, 창립자인 Juan C. Tan은 FFW 위원장뿐만 아니라 50여년 간 WCL의 아시아지역 대표 역할을 담당함.
- FFW는 필리핀 노동운동이 사측과 동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하

지 못하던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동시에 사용자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은 대안으로서의 노동조합운동을 추구함.

- 1950대에 막사이사이대통령 시절에는 FFW가 필리핀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았으며, 1960대에는 기독사회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 1970년대에는 일부 간부들이 필리핀 민사당(Philippine Democratic Socialist Party: PDSP) 창설에 앞장서기도 함.

(2) 조직현황

❍ 조합원 수

- 20만 명 중 의무금 납부 조합원은 약 8만 명(ITUC 등록 5만2백 명).

❍ 운영체계

- 총회(National Convention): 5년마다 개최되며, 최근 총회는 2011년에 개최돼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었음.

❍ 지도부

- 위원장: Sonny G. Matula(변호사 출신)
- 부위원장(대외담당) :
  - Antonio Asper, E-mail: acasper1951@yahoo.com

  부위원장(연구, 교육, 프로젝트)
  - Julius Cainglet, E-mail: dabigdyul@gmail.com

(3) 연락처

- Federation of Free Workers
  1943 Taft Ave, Malate 1004
  Manila, Philippines
- 전화: (63 2) 521 9435, 521 9464 또는 400 6656
- 팩스: (63 2) 400 6656

4) SENTRO (Sentro ng mga Nagkakaisa at Progresibong Manggagawa)

- 2013년 8월 30~31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신생조직으로,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를 추구하고 있음.
- 조직대상은 민간,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청년, 여성 등 비공식분야 노동자도 포함됨.
- ITUC 회원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8만 명으로 등록되어 있음.

제10장 남아시아

1. 방글라데시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71년 인도 군부의 지원으로 파키스탄에서 분리 · 독립된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함.
-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은 영국 식민통치시절 인도의 벵골지역 노동운동이었던 1920년 차 농장노동자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감. 이 해에는 인도 최초의 대표적인 좌파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AITUC(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가 창설되기도 하였음. 즉, 당시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은 인도 노동운동의 일부였음. 1947년 인도에서 동파키스탄으로 분리 · 독립될 당시 동파키스탄노련(East Pakistan Federation of Trade Unions)이 결성되기도 했으나 곧 분열의 길을 걷기 시작함.
- 1971년 방글라데시로 분리 · 독립한 후에도 노동운동의 분열은 심화되었음. 거의 모든 노동조합연맹이 정당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 대부분의 기업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친여당파 친 야당파가 대립하기도 함. 노조를 지원하는 정당으로는 양대 정당인 아와미 리그

(Awami League)와 BNP(Bangladesh National Party)를 포함해 여러 정당이 있음.

- 대부분 저학력자 위주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선동에 의해 단시간 내에 집단행동화하며,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에 쉽게 이용되기도 함.
- 방글라데시 정치인은 개인적인 이익과 소속정당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하는 경향이 뚜렸함. 노조지도자도 노조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노조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며 동시에 노동운동의 분열을 고착시키고 있음.
- 전국 규모의 파업은 대부분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소규모 파업은 노동조합에서 주도하고 있음.
- 노조는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목요일이나 일요일을 파업(Hartal)일로 잡고 있음. 이는 관공서가 금요일,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파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임.
- 수출자유지역(EPZ) 지역의 노조결성이 금지되었으나 선진국과 국제노동단체의 개입으로 2004년부터 노조결성이 자유로워짐.
- 대부분의 단체교섭 쟁점이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정치적) 수준의 중앙정부와 전국노조연맹 간의 교섭에 의해 해결됨.
- 해외투자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경직되고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 2014년 발생한 글로벌 브랜드사 공급망(supply chain)업체 공장건물 붕괴와 화재는 전 세계 노동운동의 우려와 관심을 촉발시켰음. 이에 대응해 100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사와 국제산별노련(GUF)인 IndustriALL과 UNI, 방글라데시 노조, 인권단체, ILO 등이 화재건물안전협약서(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를 채택하기도 함.

2) 조직현황

❍ 개요

- 사업장 노동조합은 전체노동자 3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결성될 수 있음. 즉, 하나의 회사에 각기 이념을 달리하는 3개의 노조가 결성될 수 있음. 노조는 정부에 등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전체노조를 대표해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CBA(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노조가 선출됨. 전체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CBA 노조는 2년 동안 단체교섭 당사자로 결정돼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과 파업을 주도해 나가는 독점적 권리를 지니게 됨.
- 방글라데시 노총은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지만, 대외적 또는 국제적으로는 함께 협의에 참여하는 형태를 구축하고 있음.

❍ ITUC 회원조합

- Bangladesh Free Trade Union Congress (BFTUC)는 1983년 전국단위 노조와 연맹으로 설립되었으며, ITUC에 85,000 명이 등록되어 있음.
- Bangladesh Jatyatabadi Sramik Dal (BJSD)은 ITUC에 18만 명이 등록되어 있음.
- Bangladesh Labour Federation (BLF)은 102,000명 등록됨.
- Bangladesh Mukto Sramik Federation (BMSF)은 204,000명 등록됨.
- Bangladesh Sanjukta Sramik Federation (BSSF)은 155,000명 등록됨.
- Jatio Sramik League (JSL)는 과거 세계노련(WFTU)에 가입되었으나 지금은 ITUC에 15만 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음.

❍ WFTU 회원조합

- Bangladesh Jatyo Sramik Jote
- Bangladesh Trade Union Kendra
- Jatio Sramik Federation
- Jatyo Sramik League
- Socialist Labour Front

❍ SKOP(Sramik Karma-chary Oikya Parishad, Labours And Employees United Council)

- 약 10개 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현안 발생 시 전국규모의 동맹휴업을 선언하여 사회전반을 마비시킬 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2. 인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초기의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복지협회(workers' welfare association)의 형태로 출현하였음. 봄베이공장노동자협회(Bombay Millhands Association, 1890년), 인도공공노동자협회(Servants of India Society, 1905), 철도노동자협회(Amalgamated Society of Railway Servants, 1907), 사회서비스협회(Social Service League, 1910) 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됨.
- 1910년대와 1920년대 임금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노동계급 의식도 향상되었음. 1917년에는 아흐메다바드공장(Ahmedabad Mills)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복지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가 봄베이(뭄바이) 지역

공장에까지 확산됨. 1920년에는 봄베이에서 약 150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이 발생하기도 함.

- 이러한 노동자투쟁은 사업장 노조설립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연맹 결성에도 기폭제 역할을 함. 1920년 AITUC(All-India Trade Union Congress)가 출범해 1947년 인도가 독립할 때까지 인도 노동운동의 중심 역할을 함(1944년경 AITUC 조합원은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
- AITUC에는 독립 이전에 이미 성향이 다른 두 그룹인 공산주의자 계열과 민족주의자 계열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의회당(Congress Party)이 1947년, 공산주의자를 배제한 INTUC(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를 조직함으로써 조직이 분열됨. AITUC의 잔류 노조들은 인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을 지지함.
- AITUC가 인도공산당(CPI)을 지지하는 잔류파와 의회당을 지지하는 INTUC로 분열되자 노동운동의 정당정치 예속화를 거부한 노동조합이 1948년 HMS(Hind Mazdoor Sabha)를 설립함. 이에 따라 사실상 인도에는 AITUC, INTUC, HMS 세 개의 중앙조직이 존재하게 됨.
- 1955년에는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BJP당과 연계된 BMS(Bharatiya Mazdoor Sangh)가 설립되었음. BJP당의 정치적 약진에 따라 1996년 조사에서는 인도 최대의 조직으로 부상하기도 함.
- 1970년에는 인도의 마르크스 공산당(CPI-M)이 집권하고 있던 서벵갈, 케랄라, 트리푸라 지역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중앙조직인 CITU(Center of Indian Trade Unions)가 출범함.
- 1980년대부터 시작된 규제완화 및 구조조정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1979년 등록된 노동조합은 약 3만4천개였으나 1981년에는 1만5천여 개로 감소됨. 그러나 1991년에는 다시 등록된 노동조합이 약 5만3천 개로 증가함.

2) 노사관계 개요

❍ 노동법

- 1926년 노동조합법 제정으로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음. 일단 노동조합이 등록되면 노동조합은 법적 단체가 되고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됨. 상호토론을 통해 서비스 조건을 결정하며 교섭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이 서명함으로써 종결됨. 정부의 노사관계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체결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 민간부문 노사관계는 주로 1947년 제정된 노사분규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조직화된 분야에만 적용됨. 공무원의 서비스 조건은 별도로 정부가 수시로 도입하는 각종 법과 규정에 의거함.

❍ 노사분쟁 판결

- 노사분쟁은 알선을 위해 노사관계기구에 회부됨. 알선과 중재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노사관계기구가 노동법원(Industrial Tribunal)으로 송부함. 노동법원은 모든 증거와 기록을 검토한 후 최종판결을 내리며, 이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됨.

❍ 고용상황

-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인도의 공업과 서비스 단체들은 다국적기업과의 험난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 흡수 · 합병이 빈번하며, 조직화된 분야의 고용기회 축소는 대학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또한 정규직고용 축소와 계약직, 임시직, 단기계약고용 확대가 늘어나고 있음.

❍ 경영참여

- 경영참여제도가 크게 수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은행과 같은 주요 공익 사업장은 1983년 발표된 노동자경영참여제도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민간부문의 경영참여도 아직 요원한 실정임.
- 민간부문의 모든 회사는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인도정부는 노동자경영참여 법제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정부부문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행정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제도가 설립되어 있으며 순조롭게 운용되고 있음.

❍ 노동력 분포

- 총 노동인구는 약 4억이며 그 중 약 7%가 조직화되어 있음.

❍ 사회보장제도

- 조직화된 분야 노동자들은 적립기금, 연금 및 퇴직금 등이 규정된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1999년 정부에 의해 임명된 제2차 전국노동위원회는 2002년 보고서에서 미조직 분야 노동자를 위한 모법을 권고했음.
- 이 법 초안은 전국노동위원회의 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의회에 소개되지는 못했음. 그러나 정부는 전국 50개 지역 미조직 노동자 3천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음. 이 시범 프로젝트의 목적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주요 현안

- 공식 및 비공식부문에서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비공식부문에는 약 4억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어업 및 임업노동자, 중소기업 계약노동자와 임시노동자, 경제특구 노동자, 서비스 업종 신종 직업 종사자임. 비공식부문 조직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셔널센터에서는 노조결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음.
- 38개의 ILO협약이 비준되어 있지만, 기본노동기준을 정하는 종합적인 노사관계법이 없음. 인도의 헌법이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아무런 의무조항도 없음. 노동조합은 협의메커니즘, 협력제도, 경영참여를 통해 사업장 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음.
- 인도에는 매년 7~8백만 명의 신규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지만 공식부문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인도 인구의 25%가 빈곤층이며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사회보장과 생존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함.
-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공공보건과 교육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구매력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감소돼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립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재정적 능력이 없음.
- 노동운동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재정적으로 취약함.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전통적 산업에서 비전통적인 분야와 보험 등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노동조합간 의사소통과 노조간부의 단체협상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활동도 해결과제가 되고 있음.

3) HMS (Hind Mazdoor Sabha)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90년 인도 최초의 노동조합인 봄베이직공협회가 설립된 이후 인도의 노동운동은 1세기에 걸쳐 지속되어 옴. 대영제국 식민지하에서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항해 섬유, 마직과 철도산업 분야에서 시작된 인도의 노동운동은 인도의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 1947년 인도 독립 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삶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인도의 경제, 사회 및 정치발전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
- 1926년 이전까지는 노동조합이 합법적 사회단체로 인정받지 못했음. 권력의 지원을 받는 사용자들이 공공연하게 철저한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했음. 그러나 마침내 영국식민정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되었고, 1926년 노동조합법 통과로 노조간부는 노동운동과 관련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권을 부여받았음. 이 법은 노조결성의 기폭제가 되어 1927년~28년 29개 노동조합, 100,619명의 조합원 수에 머물렀으나 현재에는 66,000개 노동조합 4천만 명의 조합원으로 증가하였음. 비록 전체노동력의 10%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임금노동자의 약 25%가 조직화되었음.
- 인도 최초의 노동조합총연맹인 전국인도노동조합협회(AITUC)는 1920년 10월 출범하였음. AITUC는 당시 유일한 노총이었으며 좌파, 우파 등 모든 정치적 스펙트럼의 노조지도자들을 총망라하였음. AITUC는 노동자 단결과 노동단체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 1947년 물러난 영국식민정부에 대한 항의, 보이콧트, 집회 등을 조직하기도 함. 그러나 독립이후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노동운동이 분열되어 현재

BMS, INTUC, CITU, HMS, AITUC를 비롯해 8개의 노총이 존재함.

- HMS는 유일하게 정치정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노조임. 1948년 12월 24일~26일 서부 벵갈의 캘커타에서 427개 노조 60만 노동자를 대표해 6백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개최하였음. 독립적 노동운동을 추구한다는 정책은 창립대회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음.
- HMS는 노동조합이 국가발전을 위해 협조하는 동시에 정부와 사용자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대해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투쟁도 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러한 조직철학은 많은 지지를 받아 60만명 조합원에서 오늘날 5백30만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HMS는 철도, 항만, 부두, 광산, 섬유, 화학, 토목, 철강, 농업, 건설 및 민간부문 기업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설립년도: 1948년 12월
- 조합원 수: 550만 (여성 조합원 15%), 조합 수: 2,510개

❍ 회원조합

- All India Port & Dock Workers Federation
- Steel, Metal and Engineering Workers Federation of India
- All India Sugar Workers Federation
- Textile Workers Federation of India
- Hind Khadan Mazdoor Federation
- All India Port & Dock Workers Federation

- Chemical Mazdoor Federation of India
- Road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of India
- Electricity Workers Federation of India
- Hotel Workers Federation of India
- Federation of Indian Plantation Workers
- Hind Khet Mazdoor Sabha
- All India Beedi, Cigar, Leaf and Tobacco Mazdoor Sabha

❍ 운영체계

- 56명의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의 산별연맹을 갖고 있음. 산별연맹은 정부에 의해 선정된 산업별위원회에 각 산업을 대표하여 참석하고 있으며, 각 산업의 사용자대표와 임금 및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있음.

❍ 지도부

- 위원장: Mr. Thampan Thomas
- 사무총장: Mr. Sh. Umraomal Purohit

❍ 국제활동

- ITUC, ITUC-AP, SARTUC (남아시아노동조합협의회) 가입

(3) 주요 현안

❍ 비공식부문

- HMS는 농업, 건설업, 포터, 인력거기사, 행상인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비

공식부문 조합원이 120만 명을 상회하였음. 미조직부문에는 약 4억 명 이상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어업 및 임업노동자, 중소기업 계약노동자와 임시노동자, 경제특구 노동자, 서비스업종 신종직업 종사자임.

- 미조직부문 조직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HMS는 미조직부문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연금, 이주노동자법, 계약노동법, 사회보장제, 건설/담배 노동자 복지기금 도입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여성노동자

- HMS는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비공식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HMS는 인도노총 중 유일하게 HMS 전국집행위원회의 조직의 하나로 내셔널센터에 여성위원회를 두고 있음.
- 여성위원회는 공식부문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이미 HMS의 여성노조원 수는 상당하지만 지금까지 남성의 일자리로 여겨지던 기사, 수위, 철도역장, 엔지니어, 석공, 기능공의 일을 다수의 여성이 수행하면서 여성조합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임.

❍ 아동노동

- HMS는 문자해독률 제고, 아동노동 폐지를 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그 결과, 정부에서는 아동노동 폐지를 위해 'Sarva Shiksha Abhiyan' 등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HMS는 집회, 사진전시회, 대량의 포스터 인쇄 및 전시, 스티커 부착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노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아동특별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음.

(4) 연락처

- 델리 사무소
  - 120, Babur Road, New Delhi 110 001 India
  - 전화: 91 11 3315519
  - 팩스: 91 11 3736037
  - 이 메일: hms@nde.vsnl.net.in

- 뭄바이 사무소
  - 57 D B Pradhan Road, Hindu Colony Dadar(E)
  - Mumbai 400 014 India
  - 전화: 91 22 414436
  - 팩스: 91 22 4102759
  - 이 메일: admin@MKI.iibom.ernet.in
  - 웹사이트: http://members.rediff.com/hms/

4) INTUC (Indian Trade Union Congress)

(1) 창립과정 및 발전

- 인도의 노동운동은 독립운동과 함께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음. 최초의 노동조합은 1926년 설립되었으나 1940년대 초반까지 많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투옥돼 민족주의자 노동조합이 발전하기는 어려웠음. 이러한 공백기 동안 유일하게 공산계 노조총연맹이 노동조합 운동을 주도했음. 인도 독립에 즈음해 모든 민족주의자 노조지도자가 모여 민족주의자 노동조합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1947년 5월

3일 인도노동조합회의(Indian Trade Union Congress - INTUC)가 출범하였음.

- 그 이후 정치적 노선에 따라 여러 노동조합센터가 설립되면서 노동운동이 분열양상을 보이게 되었음. 현재 인도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동조합센터는 8개임(4개 주에 걸친 44개 산업분야의 50만 명 조합원).
- INTUC의 정책은 간디의 노동운동이념에 기초해 인간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INTUC는 노사관계에 있어 갈등 및 대립의 문화를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인도노동자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설립년도: 1947년 5월
- 조합원 수: 800만 명

❍ 지도부

- 위원장: G Sanjeeva Reddy. ITUC-AP 위원장(비상임)으로 선출되었으며 ITUC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의 정이사이기도 함.

❍ 국제활동

- ITUC, ITUC-AP, SARTUC(남아시아노동조합협의회) 가입

(3) 주요 현안

- 인도의 경제특구 노동자를 조직화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는 경제특구에서 근무하지 않는 노조간부의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임. 노동법이 미약해 많은 노동착취가 자행됨. 인도노총들은 경제특구 조직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전체 노동력의 93%가 미조직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조직화와 법정최저임금 보장이 주요 과제임.
- INTUC는 현재 인도 노동조합 상황을 분석하면서 2001년 개최된 제26차 전국총회에서 노동운동은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통합되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INTUC는 이미 다른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

(4) 연락처

- 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
  "Shramik Kendra"
  4 Bhai Veer Singh Marg
  Near Gole Post Office
  New Delhi 110001
  INDIA
- 전화: (91 11) 2374 7768/374 7767
- 팩스: (91 11) 2336 4244
- 이 메일: intuchq@del3.vsnl.net.in
- 웹사이트: http://members.rediff.com/intuc/

5) SEWA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72년 노동조합으로 등록됨. 고용인구 4억7천만 명 중 93%가 비공식 미조직 분야인 인도에서 이 분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임.
- 전통적인 노사관계 틀을 갖춘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운동과 여성운동을 전략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세계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비공식 및 비정규직의 조직화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

(2) 조직 현황

- 조합원은 모두 여성이며, 업종별로 노점상, 가내노동자, (일당)육체노동자, 육체노동자영업자 등이 있음. 노동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육체노동자가 약 70%로, 전체조합원 수는 약 96만 명(2008년 현재)임. 초기에는 본부가 소재한 아메다바드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지방으로 조직화를 확대하고 있음.
- 조합비는 연 1인당 5루피(85원)로 책정되어 있음. 의결기구로는 업종별로 조합원 10명당 1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총회 격인 업종회의(Trade Council)가 있음. 3년마다 개최되는 업종회의(Trade Council)에서는 25명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회 구성은 업종별 조합원 수에 의해 배정됨. 임원은 집행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제일 큰 업종별 조직 출신이 위원장에 당선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됨.
- INTUC, HMS와 함께 ITUC에 가입되어 있음. 인도의 거대한 비공식

미조직 노동자라는 특징과 여성노동자라는 상징성이 결합해 국제적으로 매우 인지도가 높음.

- ITUC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Jyoti Macwan이 정이사 및 부위원장(비상임)으로 선출됨.

(3) 연락처

- SEWA Reception Centre
  Opp. Victoria Garden
  Bhadra Ahmedabad – 380 001
  India
- 전화: 91 79 255 06 444
- 팩스: 91 79 255 06 446
- 이 메일: mail@sewa.org

6) CITU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1) 조직현황

- 1970년 설립된 좌파 공산주의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320만명임(자체 주장). 조합비는 연 1인당 1루피(17원)이지만 회원조합은 최소 40루피(680원)이상을 지불해야 함.
-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conference)이며, 주별로 배정인원이 다르게 구성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와 각종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가 있음.
- 위원장은 A.K. Padmanabhan, 사무총장은 Tapan Sen, 재무임원은

Ranjana Nirula임.

- 공산계 좌파계열 세계노련(WFTU)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 Padmanabhan 위원장은 WFTU의 부위원장으로서 WFTU 의장단협의회(Presidential Council)에 참여하고 있음.

(2) 연락처

-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CITU)
  B. T. Ranadive Bhawan, 13 A,
  Rouse Avenue New Delhi 110 002
  India
- 전화: +91 11 23221288, 23221306
- 팩스: +91 11 23221284
- 웹사이트: www.citucentre.org

3. 파키스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49년 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과 서파키스탄 노동조합을 회원조합으로 한 APCOL(All-Pakistan Confederation of Labour)이 출범하고 국제자유노련(ICFTU)에도 가입함. 그러나 1962년, 석유와 담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불만세력이 조직을 이탈해 PNFTU(Pakistan National Federation of Trade Unions)를 결성하고 1964년에는 오히려 APCOL을 ICFTU에서 축출시키고 대신 회원조직이 됨.

- APCOL의 잔류조직 중 일부가 조직명칭을 APFTU(All-Pakistan Federation of Trade Unions)로 변경하고 후에 ICFTU에 가입함.
- 1951년 노동운동가 Rahmatullah Khan Durrani에 의해 설립된 APFOL(All-Pakistan Federation of Labour)도 ICFTU 회원조합으로 가입함.
- 1970년 Yahya Khan 장군이 총선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으로 분리됨. 서파키스탄은 Ali Bhutto가 이끄는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이, 동파키스탄은 Mujibur Rahman이 영도하는 Awami League가 대승함. 이후 Awami League가 주도한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인도-파키스탄 3차 전쟁이 발발했으며, 1971년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함.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도 오래되고 과격한 노조 활동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음.
- 파키스탄의 ICFTU 회원조합(APFOL, APFTU, PNFTU)과 공산계 세계노련(WFTU) 회원조합단체들은 조직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연대노력을 기울여 1994년 PWC(Pakistan Workers' Confederation)를 결성함. PWC는 조직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간에 일종의 신사협정을 체결해 서로 조합원 탈취경쟁을 하지 않고 노동 현안에 대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 2005년 ICFTU 회원조합인 APFOL, APFTU, PNFTU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PWC를 벗어나 ITUC 전신인 ICFTU 회원조합에 통합조직으로 가입하기 위해 PWF(Pakistan Workers' Federation)를 결성했음.
- 기독교계 WCL의 회원조합이었던 APTUC(All-Pakistan Trade Union Congress)는 2006년 ICFTU와 WCL 통합으로 통합국제노총(ITUC)의 회원조합이 되었음. 따라서 현재 파키스탄에는 PWF와 APTUC 두 개의 ITUC 회원조직이 있음.

- 공산계 WFTU에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단체도 다수 있음. 대표적 조직인 APTUF(All-Pakistan Trade Union Federation)는 1948년 설립되었으며 비공식분야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됨.
- 비공식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제구조에서 조직률은 2~3%대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의 정치화 성향은 강하지만 의회진출은 전무할 만큼 조직의 독립적 역량이 부족함.

2) 노사관계 개요

- 파키스탄 노사관계는 파키스탄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억압과 정부의 간섭을 겪었음.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한 이후 노조활동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1977년 실시된 계엄령 하에서 노조활동은 수많은 탄압과 제약을 경험함.
- 파키스탄 경제는 주로 벼와 목화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로, 15세 이하 아동노동자가 천만 명에 육박함.
- 또한 급속한 인구증가로 실업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파키스탄 정부는 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창출, 인구증가억제, 기술 및 직업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
- 1969년 노사관계령(Industrial Relations Ordinance)이 제정되었으나 농촌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음.
- 1985년 계엄령이 해지되면서 상당수 규정이 완화되었으나 공공서비스 부문의 노조조직과 단체교섭은 1952년 제정된 필수공익서비스유지법(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Act)에 의해 계속 금지됨.
- 파키스탄 노사관계령(IRO)에 의해 공인단체교섭노조(Certified Bargaining Agent)가 설립되었으며, 이 교섭노조가 실시한 단체협상만 인정됨. 사용자측 보험료 납부를 명시한 복지규정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50인 이상 기업체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파키스탄은 1951년에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조직결사의 권리 보호)를, 1952년에 제98호(결사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비준했고, 1957년과 1961년 강제노동에 관한 ILO 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비준했음. 1961년 차별에 관한 ILO 협약 제111호를 비준하였음.
- 1988년 Benazir Bhutto 정권이 복귀함으로써 1977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Zia ul-Haq 정권의 계엄령이 종식됨. 그러나 부패문제로 실각하였고, 1990년 Nawaz Sharif 정권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으나 역시 부패문제로 실각함. 부토 정권이 다시 복귀해 제2차 부토 정권이 시작되었으나 1997년 나와즈 샤리프 정권이 다시 복귀함. 그러나 1999년 군부와 샤리프 정권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쿠데타가 발생하여 무샤라프 장군이 정권을 장악함.
- 2005년 정부의 파키스탄 텔레콤(PTCL)사 민영화에 대해 PTCL노조가 반대하자 정부는 PTCL 노동자 600명을 구금하고 노조지도자 28명을 해고함으로써 파키스탄 노동계와 ICFTU의 강력한 규탄을 받은 바 있음.
-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오고 있는데, 2014년 6월 Nawaz Sharif 총리는 민영화위원회(Privatization Commission)에 2015년 6월까지 발전과 배전 전력산업 민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지시함. 이에 파키스탄전력노조인 WAPDA노조가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 등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3) PWC (Pakistan Workers' Confederation)

- 전국 단위 노동조합연맹이 이념적 ·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공동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1994년에는 ICFTU 3개 회원조직인 APFTU, APFOL, PNFTU도 참여하게 됨.

- 2005년 PWF(Pakistan Workers' Federation) 결성과 관계없이 여전히 최대 연대조직의 역할을 담당함.

4) PWF (Pakistan Workers' Federation)

❍ 개요

- 1994년 7월 11일 PWC 참여를 결정한 ICFTU 소속 3개 회원조합 대표가 다음과 같은 아보타바드선언(Abbottabad Declaration)에 서명함(3조직의 궁극적 통합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ICFTU-PC(Pakistan Council)를 설치하고 규약안을 마련함(Zahoor Awan이 책임자로 선정됨).
- 2005년 9월 이슬라마바드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새로 선출된 PWF 집행위원들은 조직을 해체하고 통합조직을 실현시킬 것을 선언함(사무소 소재는 라왈핀디,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419개 회원조합에 88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함(ITUC에는 50만 명으로 등록).

❍ 중앙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Board)

- 위원장 1명, 의장 1명, 사무총장 1명, 부위원장 9명, 부의장 8명, 사무차장 8명, 재무서기장 1명, 중앙집행위원

❍ 지도부

- 위원장: M. Ajab Khan(President@pwf.com.pk)
  의장: Syed Hadi Hussain Shah(chairman@pwf.com.pk)
  사무총장: M. Zahoor Awan(gs@pwf.com.pk), 2014년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부이사로 선출됨.

❍ 연락처

- Union Plaza, 3/62, Bank Road, Sadar Rawalpindi, Pakistan
- 전화: +92 51 5520137
- 웹사이트: www.pwf.com.pk

5) APFTU

- 1947년 파키스탄이 독립하던 해에 서파키스탄노동연맹(West Pakistan Federation of Labour)으로 설립되었음. 1949년 APCOL이 출범할 당시 참여하기도 했으나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서파키스탄노동연맹으로 개칭한 후 현재의 APFTU로 공식화됨.
- ICFTU 회원조직이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노동운동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1994년 PWC에 참여했으며, 사무총장이었던 Khurshid Ahmed는 PWC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함.
- 파키스탄전력노조인 WAPDA노조가 조직의 중심이며, Khurshid Ahmed는 WAPDA 노조 출신임. 2005년 통합조직인 PWF에 가입했으며 라호르에 본부를 두고 있음.

6) PNFTU

- 1962년 APCOL(All-Pakistan Confederation of Labour) 지도부의 조직운영과 방향에 불만을 가진 석유와 담배 노동조합 등이 이탈해 결성함. ICFTU 회원조직이었으며, 1994년에 PWC에 참여하였고, 2005년 통합조직인 PWF에 가입함. 카라치에 본부를 두고 있음.

7) APFOL

- 1951년 설립되었으며, 설립자이며 초대 위원장이었던 Rahmatullah Khan Durrani이 1985년 사망 때까지 종신 위원장을 함. ICFTU 회원조직이며, 1994년 PWC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Zahoor Awan이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던 2005년 통합조직인 PWF에 가입함. 라왈핀디에 본부를 두고 있음. Zahoor Awan은 ITUC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정이사와 ILO 이사회의 노동자그룹 부이사로 선출되어 있음.
  웹사이트: www.pwf.com.pk

8) APTUC

- 기독교계 세계노동총연맹인 WCL에 가입했던 APTUC는 정부와 정당으로부터 독립적 입장을 견지하였음. 2006년 ICFTU와 WCL이 통합해 ITUC가 출범하자 ITUC 회원조합이 됨. 본부는 카라치에 위치함.
  웹사이트: www.aptuc.org

제11장 서아시아(중동)

1. 이스라엘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이스라엘노총인 Histadrut은 이스라엘 건국(1948년) 이전인 1920년 시온주의 노동당(Labor Zionist parties)세력에 의해 하이파에서 설립되었으며, 이스라엘 건국과 경제 및 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함.
- Histadrut은 농업, 제조업, 지주회사, 교통 및 은행 등의 분야에 회사를 세워 이스라엘 최대 노조이자 최대 사용자로 군림함. 1970년대 이스라엘 경제의 30%, 노동력의 70%가 Histadrut 조합원이었음.
- 또한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해 Histadrut 제2대 의장이 이스라엘 초대총리[13]를 역임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Histadrut 의장은 이스라엘 의회(Knesset)의 의원이나 정부각료 등을 겸임했음.
- Histadrut은 일반의료기금(Kupat Holim Clalit, General Health Fund)을 통해 조합원에게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조직률을 제고함. 당시 Histadrut 재정의 1/3이 의료서비스 수익에서 발생함.
- 그러나 1977년 정권을 장악한 리쿠드(Likud) 연합정부가 자유시장경제, 개인주의를 선호함에 따라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집단주의는 붕괴

13) David Ben-Gurion (1921-1935)

되기 시작하고 Histadrut은 내리막길을 걷게 됨.

- 1980년대 중반의 탈규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여파로 국공유 기업의 민영화가 확산됨에 따라 1970년대 이스라엘 노동인구의 1/4 이상(28만 명 고용)을 차지하던 Histadrut 소유의 기업은 매각이나 폐쇄되기 시작함.
- 또한 이 시기에 노동인구의 40%가 단체협약에서 개별노동계약으로 전환하여 Histadrut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함.
- 1994년 정권을 잡은 RAM당은 Histadrut의 비노조 자산 및 활동을 폐지·축소하고 명칭을 신 Histadrut으로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함. 1995년 이스라엘국가의료보험법(Israel's National Compulsory Health Insurance Law) 발효로 모든 이스라엘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제공됨에 따라 Histarut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상실하게 됨.

2) Histadrut

(1)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는 70만 명(2005년)[14]으로, 조직률은 26%임.
- 이스라엘 전체 노동자는 270만 명, 조직률은 40%. 그 중 Histadrut의 주요 라이벌정당인 National Workers' Organization(Histadrut Haovdim Haleumit)이 조합원 30만 명으로 11%, 나머지 독립노조가 3% 정도를 차지함.

14) 1983년에는 조합원 160만 명으로 전인구의 1/3, 전체 임금노동자의 85%가 가입. 그러나 2014년 ITUC 등록 조합원 수는 45만 명.

❍ 조직체계

- Hitadrut 총회(Histadrut Council, Veida): 4년마다 개최되며,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위원과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위원을 선출함.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부(Executive Bureau)와 사무총장을 선출함.
- 그 밖에 국가노동협의회(National Labor Council)와 72개의 지역노동협의회(Local Labor Council)가 있음. 1980년대 정치인들은 이들 노동협의회 선거와 총회 선거결과가 종종 총선이나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 선거에 출마하였음.

❍ 지도부

- 위원장: Avi Nissenkorn(현장 출신이 아닌 Histadrut의 노동조합본부장 출신 전문직으로, 2014년 당선됨)

❍ 국제활동

- 국제노총(ITUC)에 가입돼 있고, 위원장인 Avi Nissenkorn은 ITUC 부위원장(비상임)과 일반이사회 정이사로 선출됨.

(2) 최근 현안

- 건설업 및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조직률이 1967년 32.2%에서 2005년 21%로 감소됨.
-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제공하던 여러 사회적 기능이 입법으로 약화됨.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평등한 고용기회 등에서 노총의 역할이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적 보호의 입법추진에 이스라

엘 노총은 적극 참여함.

- 2005년 현재 약 25만 명의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s)가 존재하며, 이는 총 노동인구의 9%를 차지함. 이에 따라 비정규직 조직화가 주요 문제로 부상함. 그러나 낮은 교육수준, 잦은 이동, 권리에 대한 무지 등으로 조직화가 쉽지 않으며 조합비 납부문제 등으로 조직화를 거부하는 실정임.
- 2003년 벤자민 나타나휴 정권의 재무부는 조직노동의 붕괴(breaking)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밝힐 정도로 노총의 정치적 입장이 약화됨. 또한 이스라엘 의회는 노총의장의 의회 의원 겸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스라엘 노총은 청년, 임시직, 전문직, 여성 노동자 조직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공장이전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동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고자 함.
-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8~9%를 차지함.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의료보험 및 각종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
- Histadrut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무관심하다는 국제노동계의 비난을 받다가 2009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시작함.
- Histadrut은 기업이 알선업체를 통해 임시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9개월이 지나면 정년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법(grant tenure)의 이행을 실행을 2007년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했음.
- 가자지구의 무력충돌이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노동조합과 팔레스타인 노동조합 간의 국제연대가 심각한 딜레마로 부상되고 있음.

(3) 연락처

- Histradut Building 93 Arlosoroff Street, 62098 Tel Aviv, Israel
- 전화: (3) 692 1111
- 팩스: (3) 696 9906
- 웹사이트: www.histadrut.org.il

2. 터키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최근 터키의 노사관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 사회경제적 · 정치적 · 법적 · 이념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 터키의 노동조합은 매우 적대적인 법적 조건 하에 운영되고 있음. 1980년 이후 정책입안자들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강력한 반노동 조치를 강요하고 있음. 1982년 헌법, 노동조합법은 모두 노동자의 조직화된 행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총파업, 동정파업, 정치파업, 태업, 연좌농성 등이 모두 불법화되어 있음.
- 급속한 노동관련 규제 완화로 임금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토대가 붕괴되고 있음. 전일제 임금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대신 대다수 노동자가 불안정한 방법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음. 공공부문에서는 단체협약 적용에서 배제된 계약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임시직, 계약 하청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비

공식 부문의 여성고용도 급증하고 있음.

- 2004년 신노동법에 의해 해고노동자 복직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이 보호조항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 또한 많은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대체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음.
- 터키의 조직률과 조합원 수 통계는 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공식 등록된 노동자 수는 1천만 명이며 조직노동자는 약 3백10만 명이지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1백만 명 정도임. 특히 비공식경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 미등록 고용, 시간제 노동, 가내노동, 임시직, 계약노동, 노동력 구조 변화, 여성 및 아동노동 증가, 실업,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조합원 감소를 초래함.
- 사회보험기관의 보험가입자만을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민간부문은 6%만 조직화된 것으로 나타났음(2005년 전체 조직률은 8.2%), 이렇게 조직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비공식경제 노동자를 포함해 사회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많기 때문임. 노조 조직률은 1999년에는 10.6%였으나 2012년 기준 4.5%로 하락함.
- 전통적으로 노조조직률은 국영기업으로 운영되는 식품, 국방, 에너지, 광산업 부문이 높고, 민영화된 운송, 미디어, 관광업 부문이 낮음. 여성의 노조가입률은 전체 노동력의 약 15.6%로 나타남.
- 터키에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자유는 1961년에 인정되었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파업권 존중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통과되었음. 또한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단결권)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제151호(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조합권 보호)도 비준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아 2004년의 경우 노조조직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 수는 11,968명에 달하고 있음.

- 198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과 '단체교섭, 파업, 직장폐쇄법' 상 노동조합이 한 산업 노동자의 10%를 대표하지 않거나 한 작업장 내 노동자의 50%를 대표하지 않을 경우 교섭권이 없음.
- 교원 및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총인 KESK(Confederation of Public Employees' Trade Unions)의 간부 수 십 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등 공공분야의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음.
- 서구 국가에 비해 여성에 대한 투표권과 선출권이 일찍 보장되었지만 의사결정기구의 여성참여는 매우 낮음. 또한 사회양극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1천 8백만 명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80만 명 이상이 기아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2014년 5월 발생한 광산붕괴 사고로 수백 명의 광부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고조됨.

2) TURK-IS

(1) 창립과정 및 발전

- TURK-IS는 터키가 사회적·정치적으로 자유화를 누리던 시기인 1952년에 설립됨(1952년 7월 31일 설립 이후, 9월 6일 이즈미르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했으며, 설립 당시에는 10개 산별조직으로 출범). 본부는 앙카라(Ankara)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3년 제2차 총회에서 ICFTU 가입을 결의함.
- 1967년, TURK-IS 소속 몇몇 조합원이 좌익계열의 DISK를 설립했으나 이후에도 TURK-IS가 최대노총으로 유지되었음. TURK-IS는 정치적으로 중도파의 입장을 취함.

- 1980년 쿠데타 이후 DISK의 운영은 정지되었으나, TURK-IS의 활동은 허용되었음. 당시 사무총장이 사회보장장관으로 취임하자 ICFTU는 TURK-IS의 회원조직 자격을 정지시켰음.
- 그러나 정부에 지나치게 화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TURK-IS는 1985년 이후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점차 강화하기도 하였음.
- 1986년 TURK-IS는 1980년 쿠데타 이후 최초로 경제개혁과 노동조합자유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였음. 1986년 총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친노동자정책을 위해 적극적 투쟁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1987년 3월에는 TURK-IS 대표의 국회 청원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이 노총본부를 막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 1987년과 1988년에 TURK-IS 전 간부가 노동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정부와 TURK-IS 간에 해빙기가 있었으나 민영화 반대와 고임금 요구로 대정부관계가 다시 악화됨.
- 1991년 약 90%의 조합원이 민주적 체제, 시민권 및 노동조합권을 요구하며 업무를 중단하였으나 정부는 노조간부 대량구속으로 대항하였음.
- 1996년에는 1995년 총선에서 TURK-IS 간부들이 정지된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1999년에 무죄로 모두 판결나기도 함.
- 1999년에는 TURK-IS 사무총장이었던 Semsi Denizer가 광산노조 대회에서 살해되기도 하는 사건이 발생함.

(2) 조직현황

❍ 개요

-조합원 수 : 170만 명

- 9개 지역본부(İstanbul, Bursa, İzmir, Adana, Sivas, Diyarbakır, Samsun, Eskişehir, Erzurum)와 81개 지방대표자가 있음.
- 28개 산별, 35개 회원조합

❍ 총회

- 정책결정, 집행위원회, 감사선출과 관련된 최고 기구로, 4년마다 개최됨.
- 각 회원조합 조합원 수에 따라 회원조합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됨.

❍ 집행위원회

- 총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 사무총장, 재무·교육·조직 담당책임자 등 5인으로 구성됨.
- 총회 회기 사이의 최고 기관으로, 조직 활동을 지휘하고 총회의 결정과 권고를 집행함.

❍ 감사위원회

- 총회 대의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3인으로 구성되며, 6개월마다 조직 회계감사를 실시함.

❍ 징계위원회

- 총회에서 선출된 5인으로 구성되며, 터키노총 규약을 위반한 총연맹

및 회원조합 간부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조사·청문을 실시함.

❍ 임의기구: 노조위원장협의회
- TURK-IS 회원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노동운동 전반적 문제와 TURK-IS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권고를 시행함.

❍ 지도부(2013년 제22차 총회에서 선출)
- 위원장: Ergun Atalay(철도노조 출신)
- 사무총장: Pevrul Kavlak(금속노조 출신)
- 재무처장: Ramazan Agar
- 교육처장: Nazmi Irgat
- 조직처장: Eyup Alemdar

❍ 간행물
- 월간지: "Turk-Is"
- 계간지: "Ekonomide Durum"를 발간하고 있음.

❍ 국제활동
- 1960년 ICFTU 가입(2006년, ITUC)
- 1973년 ICFTU-APRO 가입
- 1988년 ETUC 가입
-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가입

❍ 한국노총과의 관계: 2004년 12월 5일-10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개최된 국제자유노련(ICFTU, 현 ITUC의 전신) 세계총회 당시 한국노총과 TURK-IS 대표단이 국제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를 위해 양국 노

총 간에 정기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3) 연락처

- Baymdir Sok. No. 10, Kizilay Ankara 0640, Turkey
- 전화: +90 312 433 31 25
- 팩스: +90 312 433 68 09
- 이 메일: intdept@turkis.org.tr
- 웹사이트: www.turkis.org.tr

3) HAK-I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76년 설립되었으며, 수도 앙카라에 본부를 두고 있음. 설립 초기에는 이슬람주의자(Islamist)의 NSP(National Salvation Party)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 1980년 군사쿠데타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직활동이 정지되기도 했으나 1981년 다시 해금이 되면서 NSP당을 대신해 창립된 RP당(복지당)을 지지함.
- 1995년 총선에서 15년간 HAK-IS 위원장을 지낸 Necati Celik이 RP당의 공천으로 국회위원에 당선되었음. 이 총선에서 RP당이 최대의 당으로 부상했고, 오토만제국 이후 처음으로 이슬람주의자가 정권을 잡게 되었고 Necati Celik은 1996년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됨.
- 1993년 HAK-IS는 ICFTU와 ETUC 가맹신청을 했으나, 기존 회원조직인 TURK-IS와 DISK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음. 이후 정강을 개정

해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1997년 12월 ICFTU 집행위원회에서 회원조직으로 가입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 55만 명
- 11개 산별회원조합, 140개 단위노조

❍ 총회
- 4년마다 개최되며,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 등 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함.

❍ 집행위원회
- 위원장: Mahmut Arslan
- 사무총장: Osman Yildiz
- 재무처장, 교육처장, 조직처장 등 5명

❍ 국제활동
- ITUC, ETUC 가입
- OECD-TUAC 가입 안함

(3) 연락처

- TUNUS CADDESİ. NO: 37 06680 KAVAKLIDERE-ANKARA
- 전화: +90 0312 417 80 02 - 417 79 00

- 팩스: +90 0312 425 05 52
- 웹사이트: www.hakis.org.tr

4) DISK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67년 TURK-IS로부터 이탈한 좌파그룹이 설립한 노동단체로 이스탄불에 본부를 두고 있음. 설립 당시 대부분의 핵심간부가 노동당(TIP)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마르크스주의 급진좌파 노동조합운동을 추구하면서 많은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음.
- 1980년경에는 조합원이 80만명에 이르면서 제2노총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으며, 주로 민간분야를 조직화했음.
- DISK의 좌익성향으로 인해 우익성향 단체로부터 테러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음. 1980년 7월에는 DISK 설립자이자 위원장이었던 Kemal Turkler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 1980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DISK와 회원조합이 해체되고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수천 명의 조합원과 노조간부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음.
- 군사재판 기간 동안 ICFTU, ETUC, WCL 등 국제노동단체는 끊임없는 지지를 보냄.
- 결국 구속 노조간부가 석방되었고, 1987년 개최된 총선에서 DISK 위원장인 Abdullah Basturk와 사무총장인 Fehmi Isiklar가 국회위원으로 당선됨.
- 1991년 DISK 폐쇄조치가 해제되었고 1992년 헌법재판소는 압류재산을 DISK와 회원조합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음.

- 이러한 투쟁성과 독립적 ·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추구하는 DISK의 정강은 ICFTU 가맹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1992년 가입했으며 ETUC에도 가입함.
-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조직적 입지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ISK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 32만 명

❍ 총회
- 4년마다 개최되며,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 등 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함.

❍ 집행위원회
- 위원장: Kani Beko
- 사무총장: Dr. Arzu Gerkezoglu(여)
- 재무처장, 교육처장, 조직처장 등

❍ 국제활동
- ITUC, ETUC 가입
- OECD-TUAC 가입 안함

(3) 연락처

- 본부(이스탄불)

- Abide-i Hurriyet Cad. Nakiye Elgun Sok. No:91, Sisli, Istanbul, TURKEY
- 전화: 90 212 2910 005
- 팩스: 90 212 2342 075
- 이 메일: disk@disk.org.tr
  international@disk.org.tr

- 앙카라 사무소
  - Gank ı r ı Caddesi No:28 Kat:8 Ulus, Ankara TURKEY
  - 전화: 90 312 3091 547
  - 웹사이트: www.disk.org.tr

5) KESK (Confederation of Public Employees' Trade Unions)

❍ 개요
- 조합원 수: 24만 명(교원노조를 포함한 공공분야)

❍ 총회
- 4년마다 개최되며,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 등 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함.

❍ 집행위원회(7명): 위원장, 사무총장, 처장 5명

❍ 국제활동
- ITUC, EUTC 가입(공무원노조 총연맹으로 가입됨)
- OECD-TUAC 가입 안함

❍ 연락처

- Selanik2 Caddesi No:44/1 Kat:1 K ı z ı lay Ankara Turkey
- 전화: 90 312 436 7111
- 팩스: 90 312 436 7470
- 이 메일: kesk@kesk.org.tr
- 웹사이트: www.kesk.org.tr

제12장 태평양

1. 뉴질랜드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894년 산업알선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 제정되었고, 1973년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이 제정됨. 이렇게 노동권이 법과 관행으로 잘 정착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60%에 이를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 1980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도입되면서 1987년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이 개정돼 노동조합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보호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함.
- 1991년의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은 87년의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을 대체하는 법으로, 고용 시 노조가입 강제와 노조의 교섭권 부여(Award) 규정이 폐지되자 노조조직률은 급격히 하락함.
  - 결사의 자유: 유니언숍을 금지하고, 노조가입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함.
  - 교섭권: 사용자와 노동자가 교섭권을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는 지명된 교섭 대리인(노조, 변호사 등)을 인정해야 함. 기존노조와의 임 · 단협 결과가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던 관행이 없어짐.

- 고충처리: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상당히 축소됨. 노동법원의 경우 사실이 아닌 법률 해석만을 다루도록 변경되었으며, 개별고용으로 변경돼 해고가 용이해짐.
- 파업과 직장폐쇄: 파업권과 직장폐쇄는 노사 간에 집단고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됨. 필수공익사업에는 사전 예고가 필요함.

- 고용계약법 제정으로 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이 제한되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함. 전국단위 노조 또는 산별교섭이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종식됨.
- 노조에 불리한 고용계약법으로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노조조직률이 45%나 감소함.
- 뉴질랜드노총(NZCTU)은 1993년 정부를 ILO협약 제87호와 제98호 위반으로 ILO에 제소했으며, 1994년 ILO는 고용계약법이 상기 두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 결정함.
- 1999년 총선에서 노동당(Labour Party)이 승리함에 따라 2000년 10월에 고용계약법(Employment Contracts Act)이 폐기되고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지지한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이 제정되었음. 노조권 보호와 노동시장 규제완화 규정이 개선되어 성실교섭(good faith)이 강조되었으며, 성실교섭 강령(code of good faith)이 제정됨에 따라 노조의 교섭대표성이 인정됨.
- 1973년 노사관계법(IRA)과 1987년 노동관계법(LRA)은 노사가 협정을 체결하고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였지만 1991년 고용계약법(ECA)은 정부 개입 없이 노사협정 체결을 자유에 맡기고 있음.
- 고용관계법(ERA)에서는 고용법원(Employment Court), 고용관계 담당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조정서비스(Mediation Service) 등

이 규정되었으나 유니언숍제도는 복원되지 않아 노조조직률은 상승하지 못함.

- 고용관계법(ERA)에 의하면 최소 15명 이상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독립적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담당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뉴질랜드는 ILO핵심협약 8개중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보호)와 제138호(고용최저연령)를 비준하지 않았음.
- 2008년 총선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야당인 국민당(National Party)이 노동당(Labour Party)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하였고 2011년 총선에서도 승리함. 재집권한 국민당은 2009년 고용관계법(ERA)을 재개정하였는데, 임금, 휴가, 사회보장 등에 대해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예를 들어, 2010년부터 고용된 지 3개월 미만의 노동자는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4주 연차휴가 중 1주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소비세 인상정책을 실시했으며, 노동당 정부에 비해 임금인상폭도 매우 적었음.

2) NZCTU (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최초의 노동조합은 1909년 설립된 적색연맹(Red Federation)임. 1913년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연계된 연합노동연맹(United Federation of Labour)이 창립되었고 1919년에는 노동동맹(Alliance of Labour)으로 재편됨.
- 1935년 노동당(Labour Party)이 집권하면서 강제적 유니온숍이 도입

되면서 조합원은 2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으며,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전체노동자의 조직률이 60%에 달한 경우도 있었음.

- 1937년 뉴질랜드노동연맹(New Zealand Federation of Labour: NZFL)이 설립되면서 초기의 분열된 민간분야 노동진영이 단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후 1987년까지 50년간 활동함.
- 뉴질랜드노동연맹(NZFL)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인 CSU(Combined State Unions)가 1987년 통합되면서 뉴질랜드노총(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s: NZCTU)이 출범함.
- NZCTU 출범 이후, 통합 때 참가하지 못한 금융노조와 부두노조, 통신 에너지 및 유통 분야 노조도 참여함.

(2) 조직현황

❍ 개요

- 35만 명 조합원과 40개 가맹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협의회

- Unions Northland, Unions Auckland, Unions Tauranga
- Unions Waikato
- Unions Gisborne
- Unions Hawkes Bay
- Unions Taranaki
- Unions Whanganui
- Unions Manawatu
- Unions Wellington
- Unions West Coast

- Unions Canterbury
- Unions Otago
- Unions Invercargill
- Retired Unionists' Movement(은퇴자조합)

❍ 회원조합

- Alloy Yachts Employees Federation
- Amalgamated Workers Union (Central) (AWUNZ)
- Association of Ritchies Employees (Albany Branch) Inc
- Association of Salaried Medical Specialists (ASMS)
- Aviation & Marine Engineers Association Inc. (AMEA)
- Cape Foulwind Drivers, Operators & General Workers Union Inc.
- Corrections Association of New Zealand (CANZ)
- Customs Officers Association (COA)
- Engineering, Printing & Manufacturing Union (EPMU)
- FIRST Union
- Flight Attendants & Related Services Association (FARSA)
- Furniture, Manufacturing & Associated Workers Union
- Independent Schools Education Association (ISEA)
- Maritime Union of NZ (MUNZ)
-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
- Midwifery Representation & Advisory Services (MERAS)
- NZ Dairy Workers Union Te Runanga Wai U (NZDWU)
- NZ Educational Institute Te Riu Roa (NZEI)
- NZ Meat Workers & Related Trades Union (NZMWU)
- NZ Merchant Service Guild Industrial Union of Workers Inc (NZMSG)

- NZ Nurses Organisation (NZNO)
- NZ Post Primary Teachers' Association Te Wehengarua (PPTA)
- NZ Professional Firefighters Union (NZPFU)
- NZ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 NZ Tramways & Public Transport Employees Union, Auckland, Wellington & Dunedin
- NZ Writers Guild (NZWG)
- Postal Workers Union of Aotearoa (PWU)
- Public Service Association (PSA)
- Rail & Maritme Transport Union (RMTU)
- Service & Food Workers Union Nga Ringa Tota Inc. (SFWU)
- Southern Local Government Officers Union (SLGOU)
- Tertiary Education Union Te Hautu Kahurangi o Aotearoa (TEU)
- Tertiary Institutes Allied Staff Association (TIASA)
- TUIA Union
- UNITE Union

❍ 지도부

- 위원장: Helen Kelly(2007년 당선, 교원노조 출신). ILO 이사회의 노동자그룹 정이사로 선출됨(2014.6~2017.6).
- 사무총장: Carol Beaumont(2003, 2007, 유통노조 출신)

❍ 국제활동

- ITUC 가입(20만 조합원으로 등록), ITUC-AP 가입

(3) 연락처

- P.O. Box 6645
  Wellington 6030
  New Zealand
- 전화: +64 4 3851334
- 팩스: +64 4 3856051
- 이 메일: ctu@nzctu.org.nz
- 웹사이트: www.union.org.nz

2. 호주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호주의 노동조합운동은 1904년 제정된 진보적 "조정 및 중재법(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15] 덕분에 높은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음.
- 그동안 클로즈드숍과 유니온숍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던 호주의 노동조합은 1980년대 들어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 새로운 직장 형태, 시장의 탈규제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함.
- 1983년 연방 선거에서 승리한 노동당(Australia Labor Party)은 호주노총(ACTU)과 사회계약(Accord)을 체결하고 중앙집중식 노사관계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추진에 동참함. 1991년 취임한 폴 키팅

15) 1894년에 제정된 뉴질랜드의 산업알선조정법(Industrial Conciliation & Arbitration Act)의 산파역을 하였으며 남호주 주지사를 지낸 진보적 정치인인 Charles Kingston이 초안을 마련함.

(Paul Keating) 수상은 노사관계 분권화를 위해 직종 또는 산별협약보다는 기업별 단체협약에 중점을 둔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함. 이 기간 동안 ACTU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하락하기 시작함.

- 1980년대 이후의 조직률 하락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제대로 조직화하지 못했음을 보여줌. 특히 비정규직 조직률이 정규직보다 더욱 급속히 감소함.
- 1996 보수정권인 John Howard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사업장관계법(Workplace Relations Act)을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클로즈드숍 제도는 법으로 금지됨. 그동안 노동당 정부와 체결한 중앙사회계약(Accord)에 따른 노동자혜택 감축, 직종 또는 산별 최저임금 설정으로 인한 임금 통제, 개별계약 도입 등이 입법화되어 ACTU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됨.
- 11년간 장기 집권을 한 John Howard 보수연합 정부는 2007년 11월 24일 총선에서 노동당에게 패배함. 정권창출에 성공한 노동당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별계약을 2009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으로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별근로계약을 금지함.
- 2013년 실시된 총선에선 집권 여당이었던 노동당이 Tony Abbott이 이끄는 보수연합(Liberal/National Coalition)에 다시 패배함.

2) ACTU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27년 설립된 ACTU는 CNT(Confedracion Nacional del Trabajo)와

같은 노동조합주의자와 IWW(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와 같은 급진산별연맹들이 모색하던 단일거대노조(One Big Union)라는 원칙을 최초로 적용한 노조 중의 하나였음.

- 호주의 경우, 단일거대노조 형성운동은 1911년, 급진 노조운동을 표방하던 IWW의 호주조직과 친중재(pro-arbitration)주의를 표방하던 호주노동자조합(Australian Workers Union, AWU)에 의해 시작되었음.
- 1927년 스탠리 브루스(Stanley Bruce) 총리가 이끄는 호주 연방정부가 호주노사관계위원회(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를 해산시키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호주의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총연맹을 형성하기에 이름.
- 호주의 선구적 노동조직으로는 빅토리아 직능협의회(Victorian Trades Hall Council)[16], 뉴사우스웨일즈 노동조합협의회(Labor Council of New South Wales)[17]와 같은 주별 노동조합협의회가 있었으며, ACTU의 전신인 식민지주 상호간 노동조합총회(Inter-Colonial Trade Union Congress)가 1879년 설립됨.
- 1927년 설립 당시 ACTU는 생산직 노동자만을 대변하였으며, 1931년 조합원 수는 76만 명에 달함. 1948년 들어서야 사무직노동자총연맹[18], 1969년에는 공무원총연맹[19]의 지지를 받게 되었음.

---

16) 1856년 멜버른직능회관위원회(Melbourne Trades Hall Committee)로 시작.

17) 1870년에 시드니직능노동협의회(Sydney Trades and Labor Council)로 형성.

18) 사무직 조직으로는 '전문직 및 상업직 노동조합(Council of Professional and Commercial Employees Association)'이 1948년 설립되어 1954년 사무직연합노조(Council of White Collar Associations)로 조직 개편되었으며 같은 해에 뉴사우스웨일즈 임금노동자협의회(Salaried Employees Consultative Council of New South Wales)로 합병되어 1956년 호주임금 및 전문직 연합노동조합(Australian Council of Salaried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ACSPA)을 탄생시켰음.

19) 공무원 조직으로는 1969년 연방공공서비스조직연맹(Council of Commonwealth Public Service Organisations)이 창립되어 1975년 호주공무원노동조합(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Employee Organizations, CAGEO)으로 조직개편 되었음.

- ACTU는 1981년 상기 조직을 성공적으로 합병하였으며 이후 호주 정부와 언론은 ACTU를 호주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호주의 조직률은 1920년 ~ 1980년 사이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50% 이상을 기록하였음. 1980년 ~ 1990년에 조직률은 40%대로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조직률뿐만 아니라 총 조합원수도 감소하여 1990년 270만 명에서 2005년 190만 명으로 줄었음. 2011년 조직률도 18.4%로, 20년 사이에 절반 이상 감소함.

〈1990 – 2011년 호주 조합원 수와 조직률 추이〉

년도	조합원 수 (천명)	조직률 (%)
1990	2,659.6	40.5
1995	2,251.8	32.7
2000	1,901.8	24.7
2005	1,911.9	22.4
2011	1,837.7	18.4

- 이러한 상황에서 ACTU는 조직화 사업을 위해 신규조합원에게 금융, 퇴직연금, 재무계획 및 관리, 보험, 자동차 구입 및 렌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ACTU Member Connect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음(www.memberconnect.com.au).

(2) 조직현황

❍ 업종/산별 회원조합(46개)

- Association of Hospital Pharmacists(병원 약사)
-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Scientists and Managers Australia(과학기술)
- Australian Meat Industry Employees Union(육류산업)
- Australian & International Pilots Association(파일럿)
- Australian Education Union(교육)
- Australian Institute of Marine and Power Engineers(해양기술자)
- Australian Licenced Aircraft Engineers Association(항공기술자)
- Austra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제조업, 현 사무총장 출신 노조)
- Australian Maritime Officers Union(해운산업 간부 · 전문직)
-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간호사, 현 위원장 출신 노조)
- Australian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호주식 축구선수)
- Australian Salaried Medical Officers Federation(채용직 의사)
- Australian Services Union(서비스)
- Australian Workers' Union(100년 이상의 가장 크고 오래된 노조, 호주노총, 노동당에 큰 영향)
- Australian Writers' Guild(작가)
- Blind Workers Union of Victoria(시각장애인)
- Breweries & Bottleyards Employees Industrial Union of Workers WA(서호주, 주류)
- Civil Air Operations Officers Association of Australia(민간항공)
- Club Managers Association Australia(클럽 매니저)
- Communications, Electrical and Plumbing Union of Australia(통신, 전기, 배관)
- 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 PSU Group(공공 부문)

- 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 SPSF Group(국영 공공서비스 부문)
- Construction, Forestry, Mining and Energy Union(건설, 임/광업, 에너지)
- Finance Sector Union(금융)
- Flight Attendants Association of Australia - Domestic/Regional Division(국내선 승무원)
- Flight Attendants' Association of Australia - International Division(국제선 승무원)
- Funeral and Allied Industries Union of NSW(장례식장)
- Independent Education Union of Australia(교육)
- Maritime Union of Australia(해상, 부두)
- Media, Entertainment & Arts Alliance(미디어, 예술)
- Medical Scientists Association of Victoria(의료과학자)
- 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대학)
- National Union of Workers(여러 직종의 6개 통합 노조, 100년 이상의 역사)
- New South Wales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NSW 간호사)
- Pilot Association for Virgin Australia Group(파일럿)
- Police Federation of Australia(경찰)
- Rail, Tram and Bus Union(철도, 전차, 버스)
- Salaried Pharmacists Association of WA Union of Workers(약사)
-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Employees Association(유통)
- Textile, Clothing and Footwear Union of Australia(섬유, 신발)
- Transport Workers Union of Australia(운수)
- Union of Christmas Island Workers(크리스마스 아일랜드의 일반)
- United Firefighters Union of Australia(소방)

- United Voice(주류, 접객, 간호보조사 및 보조교사, 제조 등 일반)
- Victorian Psychologists Association Incorporated(심리치료사)
- Western Australian Prison Officers' Union of Workers(간수)

❍ 주 노동협의회(Trade & Labor Councils)

- Queensland Council of Unions(퀸스랜드 노조협의회)
- Unions ACT(수도권 노조협의회)
- Unions NSW(뉴사우스웨일즈 노조협의회)
- Unions NT(노던테리토리 노조협의회)
- Unions Tasmania(타스마니아 노조협의회)
- SA Unions(사우스오스트렐리아 노조협의회)
- Unions WA(웨스트오스트렐리아 노조협의회)
- Victorian Trades Hall Council(빅토리아 노조협의회)

❍ 운영체계

-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약 50명으로 구성. 1년에 2~3회 개최. 집행위원회 위원은 ACTU 지도부와 8,000명 이상 노조의 대표, 청년위원회 대표, 호주 본토인 대표, 추가 여성 대표로 이루어짐(여성이 집행위 50%를 구성해야 할 경우).
- 대의원대회 (National Congress): 각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80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3년마다 대회 개최

❍ 지도부

- 위원장(President): Ged Kearney(2010년 당선, 간호사노조 출신)
- 사무총장(Secretary): Dave Oliver(2012년 선출, 제조노조 출신)
- 사무차장(Assistant Secretary): Tim Lyons, Michael Borowick

❍ 부처별 업무

- 국제업무, 조직, ACTU 노동자 라인(ACTU Workers' Line), 노동조합 교육재단(Trade Union Education, 노동조합연수기관(Trade Union Training Authority), 산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Unit), 호주 노동조합해외개발지원단(Australian People for Health, Education and Development Abroad, APHEDA),

(3) 최근 현안

❍ 캠페인

- 고용안정과 보다 나은 내일
- 육아휴직
- 안전보건
- 노동조합권
- 동일임금과 여성노동
- 퇴직연금
- 기후변화

❍ 이슈

- 일 · 가정 양립
- 근로계약 차별 구제
- 최저임금 인상(2014년 전국단위 최저임금: 1시간 당 18.70호주달러, 약 18,000원)
- 양질의 일자리
- 기업임원 연봉 감시
- 선주민 노동자

- 석면
- 외국인노동자
- 공정무역

(4) 연락처

- Level 6, 365 Queen Stree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
- 전화: (03) 9664 7333
- 팩스: (03) 9600 0050/0542
- 웹사이트: www.actu.org.au

제13장 서유럽

1. 그리스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그리스의 노동조합운동은 19세기 말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늦은 편이었음. 노동조합총연맹인 GSEE(General Confederation of Greek Labour)가 1918년에 설립되었으나 정치적 환경이나 사용자들의 저항으로 노동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
- 유럽의 노동운동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였지만 그리스의 경우는 노동운동이 늦게 시작돼 당 체계에 복속되는 형태로 존립함으로써 독자성을 갖고 활동하지 못함.
- 제2차 세계대전과 연이은 정부군과 공산주의계 간의 내전(1946년~1949년) 이후 1974년까지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독재정권의 노동조합운동 통제전략으로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정치공간이 제한되기도 함.
- 1974년 민주화 이후, 거의 양당제 구도가 제도화되었는데 사회주의 성향의 PASOK당(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과 보수 성향의 ND당(New Democratic Party)이 집권 쟁탈전을 하였음.

- 1974년의 민주화가 노동운동 활성화로 연결되면서 1980년대 초 노동조합 조직률이 40% 이상에 달하였음. 다만 조직화는 기업별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 분열이 극심했음[20].
- 노동재원은 1931년 설립된 정부기구인 OEE(Workers' Welfare Foundation: 노동자복지재단)로부터 제공됨. 기금조성은 사용자와 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강제되는 징수금으로 이루어지며, OEE 이사회는 노사정으로 구성됨.
-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로존을 강타하면서 그리스는 심각한 국가부채로 위기를 맞이하였고 2012년 6월 실시된 총선에서 신민당 DA가 연정을 구성해 집권함.
- GSEE는 그리스의 대표적 노총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가 가입돼 있고, ADEDY는 공무원노총임.
- ADEDY는 1999년에 이르러서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역사는 길지 않음. 그러나 2012년 유럽경제위기의 중심에 있던 그리스가 연금삭감 등을 시도하자 GSEE와 ADEDY는 여당인 신민당(DA당)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과 집회를 개최하면서 연대투쟁을 전개함.
- 2013년 실업률은 27.9%로 노동시장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만, 유로존 전체가 점차 안정되면서 그리스도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2) GSEE (General Confederation of Greek Labour)

❍ 개요

- 1918년 설립되었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정상적인 노조기능을 하지

20) 20명 이상으로 노조결성 가능

못하다가 1974년 민주화되면서 점차 독립적 기능을 회복함. 그리스 최대의 노총임.
- 2년마다 사용자단체와 전국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이는 산업별 기업별 협약의 지침으로 사용됨.
- 조합원 수: 200만명 (ITUC에는 30만 명으로 등록되어 있음)
- 가맹 회원조합: 83개
- 연구부설기관으로 노동연구원(INE)을 운영하고 있어,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지도부
- 위원장: Giannis Panagopoulos
- 사무총장: Zoe Lanara(여),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ADEDY (Civil Servants' Confederation)

❍ 개요
- 전국단위 공무원 노동조합단체로, 이 분야의 조직률은 약 90%에 이름.
- 1999년에 임금과 연금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됨.
- GSEE와 ADEDY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조합원 수: 80만명
- 가맹 회원조합: 60개

❍ 지도부

- 위원장: S. Papaspyros

❍ 국제활동

- ETUC (ITUC와 OECD-TUAC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연락처

- 2 Psilla Street & Filellinon Street, 10557 Athens, Greece
- 전화: +30 210 3246 109
- 팩스: +30 210 3246 165
- 웹사이트: www.adedy.gr

2. 네덜란드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네덜란드의 노동조합운동은 크게 일반총연맹인 NVV(Nederlands Verbond van Vakverenigingen)와 가톨릭계 연맹 및 기독교계 연맹 등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 종전 후 이들 노동조합 간의 협력은 점차 강화되었으며, 50년대부터는 공식 채널을 통해 정책 조정을 하는 수준까지 발전함.
- 1976년 NVV와 가톨릭노동조합연맹인 KNV(Nederlands Katholiek Vakverbond)가 통합해 네덜란드노총인 FNV(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가 출범하게 되는데, 기독교계 연맹인 CNV(Christelijk Nationaal Vakverbond)는 독자 노선을 주장하고 참여하지 않음.

2) 노사관계 현황

-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는 1950년 발족된 사회경제협의회(Social Economic Council, 노사공익 참여)와 전국경제발전협의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정부도 참여)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두 기관의 권고는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음.
- 네덜란드 조합주의 모델은 중앙집권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산업의 모든 노동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됨. 따라서 기업단위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노총 단위의 지원이나 개입이 약한 편임. 1950년대 이후 기업단위 단체협상은 노사협의회(work council)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 협의회 근로자대표는 노조가 아닌 전체 노동자에 의해 선출됨.
- 1982년 바쎄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실업률 10%라는 상황에서 노사대표가 고용정책관련 중앙권고에 합의한 것으로, 약 20년 만에 본격적인 중앙합의가 재개된 것임. 이후 중앙협의는 지속되고 있음.
- 바쎄나르협약은 중앙노사단체가 산하조직의 교섭에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산하노동조합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가이드라인, 공동의견, 권고, 합의 등 78개 조항에 합의했는데, 핵심은 임금안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었음.
- 1992~93년 불경기를 겪으면서 네덜란드 노사정은 임금인상 정책을 재검토하였고 정부는 임금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1992~94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10만개나 없어지고, 실업률이 6.8%로 증가함.
- 유럽연합 결성을 위한 마드리드협약 체결, 유럽통화제도의 붕괴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정부는 장애보험의 급부수준을 낮추고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로 인해 노정간 대립이 심화되었음.

- 1993년 신노사협약을 통해 노사는 임금동결과 근로시간단축(주36시간)이라는 빅딜을 이루게 되었음. 다만, 금속연맹이나 필립스 같은 대규모 결정자들은 근로시간 단축대신 임금인상을 택함으로써 주36시간 노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지는 않았음. 신노사협약을 통해 노사자율교섭기반이 확대되고 교섭의 분권화와 유연화가 진전됨.
- 노동조합 조직률은 2000년 22.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2011년에는 18.2%로 하락하였음.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파트타임제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조직률이 낮은 편임. 이에 노동조합들은 새로운 조직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즉, 인터넷 베이스 노동조합(DE Unie, CNV Dienstenbond)을 만들거나 파트타임 노동자, 학생, 연금 및 사회보험 수혜자에게는 조합비를 할인해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06년 5월부터 EU 합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주의 문호를 개방하고 이주노동허가를 간소화하였음. 그러나 의회, 노조 등은 동유럽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음.
- 2006년 이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노조는 아직 임금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해고관련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FNV

(1) 창립과정 및 발전

- FNV(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는 1976년 1월 일반노조총연맹인 NVV와 가톨릭노동조합연맹인 KNV(Nederlands Katholiek

Vakverbond)가 통합하면서 네덜란드 최대 조직으로 출범함.

- FNV는 1980년대 네덜란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1982년 고용안정을 대가로 임금동결을 받아들이는 바쎄나르협약을 지지하였음.
- 1976년 통합조직으로 출범한 FNV 전 위원장 Wim Kok은 1994년~2002년까지 수상을 역임하기도 함.
- 2004년 노령자법(AOW) 및 장애인법(WAO)과 관련해 FNV는 정부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조직한 바 있음.
- FNV는 "Keer het Tujd (Turn the Tide)"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네덜란드판 세계사회포럼인 '네덜란드 사회포럼(Dutch Social Forum)'을 2004년, 2006년에 조직하였음.
- FNV는 사회민주당과 밀접한 연대를 갖고 좌파적인 경향을 유지해 옴.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110만 명(전체 조직노동자의 63%).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교원과 경찰 등 공공분야의 조합원 수는 증가함.

❍ 회원조합(18개)

- FNV Bondgenoten(제조, 농업, 서비스, 47만)
- AbvaKabo FNV(공공, 35.5만)
- FNV Bouw(건설, 11.5만)
- Algemene Onderwijsbond(교원, 8.4만)
- FNV Kiem(예술가 및 정보, 3.4만)
- FNV Horecabond(호텔, 요식업, 2.3만)

- NPB(경찰, 2.4만)
- AFMP/Marver(군인, 2.5만)
- FNV Zelfstandigen(자영업자, 1.5만)
- FNV Mooi(이 · 미용사, 8,000)
- NVJ(언론인, 6,000)
- Nautilus NL(선원, 5,500)
- FNV Vrouwenbond(여성, 3,000)
- FNV Sport(구기선수, 1,100)
- VVCS(축구선수, 875)
- NL Sporter(운동선수, 400)
- FNV Jong(청년)

❍ 운영체계

- 총회(Federation Congress):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최소 4년에 한번 개최. 연맹위원회를 선출. 500명 규모의 대의원
- 연맹이사회(Federation Council): 18개 노련 의장과 4명의 연맹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FNV 정책 관련 결정 담당
- 연맹위원회(Federation Board):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재무담당 등 4명으로 구성

❍ 지도부

- 위원장: Ton Heerts,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 부처별 업무

- 노동국, 소득국, 특별조직대상국, 국제국, 통신국 등 5개 부서로 구성됨.

- FNV 법률구조본부: FNV와 주요 노조가 함께 만든 것으로 근로조건에서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연 15만 건의 법률상담을 하고 있음.

❍ 재원

- 조합비는 산별노조로 납부하며, 원천징수 없이 각 개인이 통장으로 납부함.
- 조합비는 임금총액의 1%임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FNV Vakcentrale
  Naritaweg 10
  1043 BX Amsterdam
- 전화: 31 020 581 6300
- 팩스: 31 020 684 4541
- 이 메일: info@vc.fnv.nl
- 웹사이트: www.fnv.nl

4) CNV

- 1909년 신교와 구교의 구분 없이 기독교계 노동단체로 설립되었으나 신교 중심의 노동단체로 급속히 변화함.

- 기독교계 세계노총인 WCL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WCL이 ICFTU와 통합하여 국제노총(ITUC)이 출범하자 ITUC의 회원조직이 됨.
-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와 노동재단(STAR)에 FNV와 함께 노동계 대표로 참여함.
- 조합원 수: 46만
- 가맹 회원조합: CNV Vakmensen(제조업, 건설, 목공, 11만명), CNV Public(공공, 8만 4천명), CNV Onderwijs(교원, 5만 6천명), CNV Dienstenbond(서비스, 3만 7천명), CNV Kostersbond(교회종사), CNV Jongeren(청년, 1천 3백명)
- 위원장: Jaap Smit
- 국제활동: ITUC, ETUC, OECD-TUAC 가입
- 연락처
  - CNV
    Postbus 2475, 3500 GL Utrecht
    Tiberdreef 4, 3561 GG Utrecht
    Netherlands
  - 전화: 030 751 1100
  - 이 메일: cnvinfo@cnv.nl
  - 웹사이트: www.cnv.nl

3. 노르웨이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899년 노총 LO(Landsorganisasjonen i Norge)가 출범할 정도로 노동조

합 역사가 오래됨.

- 조직률은 1999년 54.8%이었으며, 2012년에도 54.7%를 기록해 큰 변화가 없음.
- 공공부문 조직률은 80% 이상인 반면 민간부문은 40%대를 보이고 있음.
- LO는 민간과 공공부문 구분 없이 블루칼라 노동자 위주로 조직됨. YS(Yrkesorganisasjonenes Sentralforbund)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무직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UNIO(Utdanningsgruppenes Hovedorganisasjon)는 전문직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함.
- ITUC 일반이사회에 LO위원장과 UNIO위원장이 모두 정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2) Norwegian LO (Landsorganisasjonen i Norge)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99년 창립된 LO는 처음에는 Abreidernes Faglige Landsorganisasjon i Norge로 시작되었음.
- 1935년 체결된 기본협정(Basic Agreement)에 의해 LO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이 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르웨이의 사회복지국가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함.
- 제1노총 조직으로서 특히 제조업이 강세를 보임. 1970년 이후 사무직 및 전문직을 조직한 전국단위 노총이 생겨나면서 조합원 수가 감소함.
- 전통적으로 노동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1990년대까지는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노동당에 가입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치적으로 독자노선을 선언하는 노동조합이 늘어나고

있음.

- 1990년대 초 노르웨이 경제가 침체되자 LO는 노동당정부와 사용자 단체인 NHO(Naeringslivets Hovedorganisasjon)와 사회협약인 '연대적 대안(solidarity alternative)'을 체결하였음. 이는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1993년 6%였던 실업률이 1997년에는 3%대로 하락하는 효과를 거둠.
- 중소기업과 다른 노총들은 LO와 NHO의 중앙교섭에 대해 비판적이었음.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선거에 패하고 각종 삼자위원회(tripartite committee)에 다른 노총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LO의 입지가 위축됨.
- LO의 이미지는 제조업 남성노동자 위주의 노동조합이었으나 서비스업과 공공분야가 확대되고 여성노동자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조직적 이미지 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90만 명

❍ 회원조합

- Norwegian United Federation of Trade Unions (FF)
- Norwegian Engineers' and Managers' Association (FLT)
- Norwegian Union of General Workers (NAF)
- The Electrician and IT Workers' Union (El & IT)
- Norwegian Union of Social Educators and Social Workers (FO)
- Norwegian Prison and Probation Officers' Union (NFF)

- Norwegian Union of Employees in Commerce and Offices (HK)
- Norwegian Union of Railway Workers (NJF)
- Norwegian Manual Therapist's Union (Norsk Manuellterapeutforening)
- Norwegian Musicians' Union (MFO)
- Norwegian Union of Municipal and General Employees (NUMGE)
- National Union of Norwegian Locomotivemen (NLF)
- Norwegian Union of Military Officers (NOF)
- Norwegian Union of Industry and Energy Workers (IE)
- Norwegian Union of Postal and Communication Workers (POSTKOM)
- The Labour Press Union
- Norwegian Seafarers' Union (NSF)
- Norwegian Union of School Employees (SL)
- Norwegian Civil Service Union (NTL)
- Norwegian Transport Workers' Union (NTF)
- Norwegian Players' Association (NISO)
- Norwegian Food and Allied Workers' Union (NNN)
- Cabin Crew Union Norway

❍ 지도부

- 위원장: Gerd Kristiansen(여, 지자체노조 출신),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 사무총장: Peggy Hessen Fø lsvik(여, 사무직노조 출신)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3) 연락처

- Landsorganisasjonen i Norge
  Youngsgate 11
  0181 Oslo, Norway
- 전화: +47 930 63 617
- 이 메일: vidar.bjornstad@lo.no
- 웹사이트: www.lo.no

3) UNIO (Utdanningsgruppenes Hovedorganisasjon)

❍ 개요

- 대졸 고학력 전문직 노동단체인 AF연맹이 1997년 분열되면서 2001년에 설립된 노총으로, 급속한 조직성장을 이룩해 LO 다음의 제2노총으로 부상함.
- 조합원 중 교사와 간호사의 비중이 큼.
- 조합원 수: 32만 명

❍ 회원조합

- Utdanningsforbundet (Union of Education Norway) - 15만2천 명
- Norsk Sykepleierforbund (Norwegian Nurses Organisation) - 9만5천 명
- Forskerforbundet (Norwegian Association of Researchers)
- Politiets Fellesforbund (Norwegian Police Federation)
- Norsk Fysioterapeutforbund (Norwegian Physiotherapist Association)
- Det norske maskinistforbund (Norwegian Union of Marine Engineers)
- Norsk Ergoterapeutforbund (Norwegi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 Akademikerforbundet (Union of University and College Graduates)
- Norsk Radiografforbund (The Norwegian Society of Radiographers)
- Presteforeningen (Norwegian Association of Clergy)
- Skatterevisorenes Forening (Norwegian Association of Tax Auditors and Accountants)
- Det Norske Diakonforbund (Norwegian Association of Deacons)

❍ 지도부

위원장: Anders Folkestad,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 연락처

- UNIO
  Stortingsgata 2,
  0158 Oslo. Norway
- 전화: +47 2270 8850
- 팩스: +47 2270 8860
- 이 메일: post@unio.no
- 웹사이트: www.unio.no

4) YS (Yrkesorganisasjonenes Sentralforbund)

❍ 개요

- 1977년, 정치적으로 LO와 노동당과의 관계에 대한 대안으로 설립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무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60% 이상이 여성임.
- 조합원 수: 22만7천 명(2014년 1월)

❍ 회원조합

- AVYO, Befalets Fellesorganisasjon, Bibliotekarforbundet, Delta, Finansforbundet, Kriminalomsorgens Yrkesforbund, Lærernes Yrkesforbund, NBFF, Negotia, Norges Politilederlag (NPL), Norsk Tollerforbund, Norske Meierifolks Landsforening (NML), Parat, Personellforbundet, SAFE, Skatteetatens Landsforbund (SkL), Skolelederforbundet, STAFO, Yrkestrafikkforbundet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 연락처

• Yrkesorganisasjonenes Sentralforbund
Lakkegata 23, Oslo, Norway
• 전화: +47 2101 3600
• 이 메일: post@ys.no
• 웹사이트: www.ys.no

4. 덴마크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세기에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1898년 LO (Landsorganisationen i Danmark)가 출범함.
- LO가 결성된 다음해인 1899년, 사용자단체인 DA와 단결권 및 사업장 파트너십에 관한 기본합의를 체결해 노동조합 성장과 노사관계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함.
- 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실업보험을 위탁 · 운영함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와 조합원 관리가 가능해짐[21].
- 제일 큰 노총은 LO이고, 다음으로 1952년 설립된 사무직과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총인 FTF(Salaried Employees' and Civil Servants' Confederation in Denmark), 1972년에 설립된 대졸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AC(Dan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가 있음. 각 노총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LO가 주도적 역할을 함.
- 기능직을 중심으로 한 LO의 조합원 수는 줄고 있지만, 서비스 업종 및 지식경제 발전으로 인해 FTF와 AC의 조합원 수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거나 오히려 늘어났음.
- 1990년대 조직률은 84%를 유지한 적도 있지만, 조직률이 하락해 2010년 기준 약 67%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사무직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를 조직한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인 TFT와 대학졸업자를 조직한 AC와는 달리 LO는 전체 노동자를

21) 노르딕국가의 노조조직률이 높은 이유는 노동조합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대상으로 조직함으로써 제1노총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덴마크의 노동운동 3대 축은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D)과 협동조합운동(cooperative movement), 노동조합운동(trade union movement)임.
- 사민당과 노동조합 간의 전통적인 관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상호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y)에 참여하는 것은 중단되었지만 아직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노동조합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은 공동으로 노동운동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of the Labour Movement)를 설치해 정부의 경제, 산업 및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도 함.
- 1924년 설립된 노동자교육협회(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AOF)는 매년 약 50만 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노동문화 행사도 주관하고 있음.
- 덴마크의 노사관계는 법보다는 노사간 협상을 통한 합의에 기반을 두었는데 덴마크가 EU에 통합될 시점에는 이러한 상생협력과 신뢰의 전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부상하기도 함. 정부는 전통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함.
- 전통적인 중앙교섭 방식이 90년대 들어서면서 분산교섭으로 변화되면서 민간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카르텔(cartel)을 형성해 교섭함. 산업분야별 교섭을 포괄하는 전반적 교섭은 LO와 사용자단체인 DA가 공공알선위원회(Public Conciliation Service)의 지원 속에서 대타협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중앙단위 교섭은 임금보다는 연금이나 복지혜택을 주로 다루며, 대타협의 유효기간은 3년임.
-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쟁의행위로 가지 않도록 알선인(conciliator)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며,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재(arbitration)가 이루어져 노동손실일 수는 매우 적은 편임.

2) Danish LO (Dan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1) 조직 현황

❍ 개요

- 1898년 설립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조합원 수: 약 100만 명(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50%, 전체 조직노동자의 2/3에 해당함), ITUC 등록 조합원 수는 83만9천 명임.

❍ 회원조합(18개 중 주요 회원조합)

- HK(Union of Commercial and Clerical Employees in Denmark); 상업 및 사무직
- FOA(Trade & Labor): 공공분야
- 3F(United Federation of Danish Workers): 운수, 건설, 목공, 농업, 임업
- DANSK METAL(Danish Metal Workers' Union): 금속, 정보통신

* 산별회원조합을 5개 분야로 묶어 카르텔(cartel)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노조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과 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운영체계

- 총회: 4년 마다 개최, 400 여명의 대의원
- 일반이사회: 연 4~6회 개최, 47명의 이사
- 집행위원회: 주 1회 개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차장 2명, 회원조합대표 10명 등 참여

❍ 지도부

- 위원장: Harald B ø rsting(2007년 선출됨, 어부 출신)
- 부위원장: Lizette Risgaard(여), ITUC 부위원장 겸 ITUC 여성위원회 대표로 일반이사회 정이사로 참여
- 사무차장: Marie-Louise Knuppert(여), Ejnar K. Holst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2) 연락처

- Landsorganisationen i Danmark
  Islands Brygge 32 D
  2300 K ø benhavn S
  Denmark
- 전화: +45 3524 6109
- 팩스: +45 3524 6304
- 이 메일: sag@lo.dk,
- 웹사이트: www.lo.dk

3) Danish FTF

(Salaried Employees' and Civil Servants' Confederation in Denmark)

(1) 조직현황

❍ 개요

- 1952년, LO에 가입하지 않은 11개 사무직 노동조합단체로 설립되었음. LO가 기능직 조직노동자 중심인 데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한 사무직 노동자의 교섭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설립되었음.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함.
- 조합원 수: 45만명. ITUC 등록 조합원 수는 35만2천 명.
- 가맹조합: 75개
- 설립 당시에는 LO가 FTF를 우호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1973년에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 1987년에는 개발도상국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등 개발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LO-FTF 협의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주요 회원조직

- Danish Union of Teachers (Danmarks Lærerforening, 교원)
- Danish Nurses Organization (Dansk Sygeplejeråd, 간호사)
- Danish National Feder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Youth Educators (BUPL, 유치원교사)
- Financial Services Union (Finansforbundet, 금융)
- Dan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Dansk Socialrådgiverforening, 사회봉사자)

❍ 지도부

- 위원장: Bente Sorgenfrey(2003년 선출됨, 사회교육 전공)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2) 연락처

- FTF
  Niels Hemmingsens Gade 12
  Postbox 1169
  1010 K ø benhavn K
  Denmark
- 전화: 33 36 88 00
- 팩스: 33 36 88 80
- 이 메일: ftf@ftf.dk

4) Danish AC (Dan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1) 조직 현황

❍ 개요

- 1972년 대졸노동자를 대상으로 22개 노동조합단체를 회원조합으로 하여 출범함. 정당과의 연계를 통한 정치활동은 하지 않음.
- 조합원 수: 32만5천명(2014년), 고학력 임금노동자. ITUC 등록 조합원 수는 14만7천 명.
- 가맹조합: 25개
- 다른 2개 노총인 LO와 FTF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LO와 FTF를 대신해 덴마크 대표조직으로 EUROCADRES(Council of European Professional and Managerial Staff: 유럽전문직 · 사무직직원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함.

❍ 지도부

- 위원장: Finn R. Larsen(2013년 12월에 선출되어 임기는 2014년 1월부터 2년)
- 사무국장: Martin Teilmann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EUROCADRES 가입

(2) 연락처

- The Dan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P.O. 2192 · N ø rre Voldgade 29 · DK-1017 Copenhagen K
  Denmark
- 전화: 45 33 69 40 40
- 팩스: 45 33 93 85 40
- 이 메일: ac@ac.dk
- 웹사이트: www.ac.dk

5. 독일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독일 노동운동의 시초는 1844년 슐레지엔 방직공 파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1860년대부터 위로부터의 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하였음. 그 예로 일반독일노조연맹

(ADGB)이 14만2천명의 조합원을 갖고 1868년 창립되었음. 그러나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합하고 군국주의적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주의자탄압법으로 인해 독일 노동운동은 큰 시련을 맞게 되었음.

- 1890년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지된 후 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기반으로 '독일노동조합중앙위원회'가 설립되어 이른바 '자유노조'(Freie Gewerkschaften)가 탄생하였음.
- 1918년 독일 노동운동은 11월 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11월 혁명과정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였음. 1918년 11월 협정은 독일 노사관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으로, 이 협정을 통해 집단적 노동관계에 입각한 새로운 틀이 형성되었음. 이후 1920년 제정된 노동자평의회법으로 노사 공동의사결정이 명문화되었음.
- 1933년, 나치당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후 독일 노동운동은 암흑기를 맞이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포디즘(Fordism)적 발전체계의 기초가 형성되어 1950년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종전 후 독일 노동운동은 본격적 산별노조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1949년, 16개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한 DGB(Deutscher Gewerkschaftsbund)가 결성되었음. 독일 산별노조의 3대 기본원칙은 1산업 1노조 원칙, 1기업 1노조 원칙, 정치적 독립 원칙(조직적 자주성)이었음. 한편 동독의 노총은 FDGB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정점기에는 조합원이 9백60만 명에 달했음.
- 1966/67년 공황을 거치며 독일은 산업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였음. 독일의 노조지도부는 산업합리화 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의 입장을 합리화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와 형성정책을 내세웠음.
- 1990년 베를린장벽 붕괴 후 FDGB는 DGB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음. 이에 1990년 12월 20일 FDGB는 자체해산을 결

의하고, 노동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DGB의 해당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음. 동독노동자의 가입으로 독일노총은 조직노동자수가 급증해 당시 약 49%의 조직률 제고가 이루어졌음.

- 통일독일과 유럽통합의 간접적 영향을 받은 DGB는 건설농업환경(1995), 광산화학에너지(1997), 미디어(1989), 금속목제합성수지(1999, 2000), 공공서비스(2001) 등의 통합 산별노조를 설립하면서 정치경제적 변화에 적응해 왔음. DGB는 2001년 5월, 5개 산별노조를 공공서비스노조(Ver.di)로 통합시켜 8개 산별노조로 재정비하였음.

2) 노사관계 개요

○ 단체교섭

- 독일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원적 구조임. 단체교섭을 그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산별 지역별노조와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협약, 공장 단위 근로자평의회(Betriebsrat)와 사용자간의 평의회협약(또는 공장협약)이 있음. 산별수준의 단체협약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결정하고, 공장단위 단체협약은 해당기업 수준에 적합한 구체적인 규정을 결정하게 됨.
- 이러한 이중적 구조에서 업종별 단체협약으로 결정되는 단일임금인상률은 기본적으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인상률의 성격을 갖게 됨. 즉, 해당 업종의 노사관계 당사자인 산별 노조와 사용자 단체는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기준으로 업종별 단일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높은 대기업은 이러한 인상률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독일의 단체교섭은 교섭 영역에 따라 임금교섭, 만텔협약 및 공장협약의 세 가지로 구분됨. 시급 및 월급 등에 관한 조건을 결정

하는 임금교섭은 협정기간이 대개 12개월임. 급여를 제외한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만텔협약은 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장기계약임. 공장단위 근로자평의회와 사용자간의 공장협약에는 노동시간, 임금지급 시기 및 방법, 휴가, 산업안전, 사회복지 등 노동자의 이해관계와 관계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됨.

- 그러나 최근 구 동서독 간의 기업별 격차, 기업의 유연성 요구 등으로 업종별 단체협약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기업별 노사협약의 규제력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업종별 노사관계 당사자인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약의 예외조항(Oeffnungsklausel)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음. 그러나 독일 기업들은 업종별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임함으로써 협약체결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사관계의 민감한 부분인 분배 문제를 기업 차원에서 다루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노사관계 당사자가 협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로의 교섭 위임을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별 노사협약의 영향력 강화는 업종별 단체교섭 구조를 보완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합의

- 독일 노사관계의 두 번째 큰 특징은 사회적 합의주의로, 이는 구조조정기에 노사정의 당면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었음. 그러나 독일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상설화 ·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와 달리 경제위기가 대두될 때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연한 모형을 구축하였음.
- 이처럼 독일의 사회적 합의 모델은 제도화되지 않아 쉽게 깨지기 쉬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시장경제원리의 바탕에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음.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어느 일방을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규율하기보다는 공동체 원칙 하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호혜성의 근본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역사적으로 세 번 시도되었음. 첫 번째 시도는 서독의 경제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최대 성장기 이후 고물가속에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1960년대 말에 등장하였음. 이후 동독 경제의 붕괴로 엄청난 통일 후유증을 겪으면서 독일 노동자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콜 수상에 의해 시도된 '연대협정'이 있었음. 그리고 최근에는 통일의 여진과 세계화로 인해 독일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노동을 위한 연대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주의가 시도되었음.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집중적 산별노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노동권 또한 가장 잘 보장되어 있음. 공동결정권을 특징으로 하는 경영참여는 노동자에게 실질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있음. 근로자평의회와 감사역회의 노동자 대표는 실질적 경영파트너로서 기업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

3) DGB (Deutscher Gewerkschaftsbund)

(1)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총 614만 명(2013년 기준)
- 지역조직: 지역별로 지역지부와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4년마다 대의원대회를 개최함.

❍ 산별노조

- IG Bauen-Agrar-Umwelt (IG BAU: 건설, 농업, 환경) 29만 명
- IG Bergbau, Chemie, Energie (IGBCE: 광산, 화학, 에너지) 66만 명
-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GEW: 교육, 과학) 27만 명
- IG Metall (금속) 227만 명
- Gewerkschaft Nahrung-Genuss-Gaststätten (NGG: 식품, 음료, 호텔, 식당) 21만 명
- Gewerkschaft der Polizei (GdP: 경찰) 17만 명
- TRANSNET (운수) 20만 명
- ver.di (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연합서비스) 206만 명

❍ 운영체계

- 전국대의원대회: 연맹의 최고기관으로, 4년마다 개최됨. 대의원 수: 약 400여 명(주요 역할: 노동조합정책의 기본방향 확정 및 기본 강령 의결, 중앙집행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사업보고의 접수 및 그 승인의 의결, 규약개정 의결,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된 안건 의결, 이의 및 재심 의결, 중앙상무집행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선출)
-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 기간 사이의 최고기관으로 최소 연 2회 개최됨. 가맹노동조합에서 파견된 100인의 위원, 중앙집행위원회 및 각 지부위원장으로 구성(주요 역할: 노동조합 정책상의 문제 및 조직상의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연맹 예산과 결산 의결, 전국대의원대회 기간 사이에 필요할 경우 연맹 각 기관의 보궐선거 실시, 중앙상무집행위원의 해임 의결, 지부별 집행위원회의 승인, 연맹 직원의 보수 및 채용조건 승인, 연대기금 사용 의결,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장소 및 일시 결정)
-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상임집행위원 5인 및 가맹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됨.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상임집행위원 5인은 상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함. 월 1회 소집되며, 규약 및 각급기관의 의결에 따른 정책과제와 조직과제 및 위임사항을 이행하고, 연맹의 모든 시설에 대한 인사권 및 재정권을 행사함.

- 감사위원회: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연맹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행하고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함. 연맹에 대한 회계감사는 분기별로 실시함.

❍ 의사결정

- 총연맹 가입: 연맹 가입은 중앙위원회 재적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함.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은 당해 조직대상에 있어 이미 연맹에 가입된 단수 혹은 복수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음.
- 규약 변경: 전국대의원대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 선거: 연맹, 지부, 지방사무소의 선거에서는 비밀투표에서 최고득표자이자 재적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당선됨. 재적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당선됨.
- 연맹 해산: 해산의결을 위해 소집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3/4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해산됨.

❍ 지도부

- 위원장: Reiner Hoffmann (2014년 총회에서 선출됨),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 사무총장: Elke Hannack(여),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ITUC의 일반이사회에 2명의 정이사가 배정됨)

❍ 재원

- 의무금: 가맹 노동조합은 조합비 수입의 12%를 의무금으로 총연맹에 납부해야 함. 조합비 수입에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전액(정규조합비, 인정조합비, 자발적 조합비)이 포함됨.
- 연대기금: 총연맹 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기여금으로, 그 액수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됨.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2) 연락처

• Deutscher Gewerkschaftsbund
Bundesvorstand
Henriette-Herz-Platz 2
10178 Berlin, Germany
• 전화: +49 30 240 600
• 팩스: +49 30 240 60324
• 이 메일: info.bvv@dgb.de
• 웹사이트: www.dgb.de

6. 벨기에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초기의 업종별 길드 형태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9세기에 업종별 노동조합 형태로 발전돼 왔음.
- 전통적으로 언어(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별로 노동조합이 분리되었으나 기독교계와 사회주의 계열 2개 노총이 주축을 유지해 왔음.
- 현재 3개 노총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1조직인 기독교 계열의 CSC (Confederation des Syndicats Chretiens), 제2조직인 사회주의 계열의 FGTB(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de Belgigue), 산별조직이 아닌 지방조직으로 구성된 소규모 자유주의 계열의 CGSLB(Centrale Generale des Syndicats Liberaux de Belgique)가 있음.
- 조직률은 1999년 50.9%에서 2006년 54.1%, 2011년 50.4%를 기록하고 있음.
- 4년마다 민간기업에서는 직장협의회와 산업안전위원회 내에서 선거를 하는 데 이 선거에서 노조대표를 선출함.
- 벨기에에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음. 산업간, 산업내, 회사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경제정책, 사회정책, 산업안전 분야별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 있음. 2년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임금, 고용, 훈련 등의 문제를 결정함.
- 공동파업기금(Confederal Strike Fund)으로 노총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산하 조직과의 연대와 활동의 지지기반이 됨.
- 전국단위 교섭은 1952년 설립된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raad van de Arbeid, National Labour Council)'에서 담당하며, 이 기구는 노사대표로 구성됨. 사용자측으로 중소기업협의회와 소규모사업협회, 농업협

회 등이 참가함. 전국단위 교섭에서는 노동시간, 최저임금, 조기퇴직 등 전체노조에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며, 그 결론은 통상 개별기업이나 영역별 협상에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이 됨.

-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과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기구와의 교섭에 의해 체결됨. 대개 협약은 2년마다 갱신되지만, 범산업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더 김. 각 부문에서는 생산직노동자위원회, 사무직노동자위원회, 혼합직위원회 등의 상임대표자로 구성되는 형평성위원회(parity committee)가 있음.
- ITUC본부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 회원조직인 CSC와 FGTB의 협력과 지원이 ITUC 활동에 매우 중요함. 이를 고려해 양 조직 위원장이 각각 ITUC 부위원장과 일반이사회 정이사로 선출되고 있음.
- 노동력 인구는 약 515만 명으로 2013년 실업률은 8.8%임.

2) CSC (Confederation des Syndicats Chretie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벨기에 노동운동은 시작부터 사회주의와 기독교주의 간의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음.
- 1886년에는 CSC 탄생의 씨앗이 된 겐트(Ghent)지역 직조노동자협회가 결성되었음. 이는 1864년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해 시작된 사회주의노동운동단체인 제1인터내셔널[22]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1901년까지 여러 개의 기독교노동자협회가 결성되었음.
- 1909년 기독자유노동조합총연맹(Confede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22) 정식 명칭은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ingmen's Association).

Chretiens et Lebres)이 설립되고 1912년에는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노동조합들을 포함한 첫 통합총회가 개최되었음. 1923년에 CSC 명칭을 사용하게 됨.

- 1970년대에 CSC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발전을 하였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160만 명(ITUC 등록 조합원 수)

❍ 산별회원조합

- 16개(금속노조, 목재 및 건설노조, 화이트칼라노조 등)와 22개 지역연맹, 산업별 노조연합과 지역노조연합으로 구성됨.

❍ 지도부

- 위원장: Mark Leemans,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Haachtsesteenweg 579,
  1030 Brussel, Belgium
- 전화: +32 2 246 3111

- 팩스: +32 2 246 3010
- 웹사이트: www.acv-online.be

3) FGTB (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de Belgigue)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98년 벨기에노동당(POB)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위원회(Trade Union Committee)가 FGTB의 모체가 되었고, 1937년 노동조합위원회는 벨기에노동조합총연맹(Belgian Trade Union Confederation)으로 재탄생함.
- 1945년 현 명칭 FGTB(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de Belgigue)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느 정당에도 예속되지 않는 정치적 독립 원칙을 바탕으로 노조연맹을 조직함.
- FGTB는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고 불어권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조직적 열세를 보이고 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153만 명(ITUC 등록조합원 수)

❍ 회원조합
- Algemene Centrale(AC)
- Bond der Bedienden, Technici en Kaders van België(BBTK)

- ABVV-Metaal
- Algemene Centrale der Openbare Diensten(ACOD)
- Belgische Transportbond(BTB)
- Centrale van de Voeding - Horeca - Diensten(HORVAL)

❍ 연합지역 회원조합

Vlaams ABVV(Flanders)

Waals ABVV(Wallonia)

Brussels ABVV(Brussels)

❍ 지도부

- 위원장: Rudy De Leeuw,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 사무총장: Anne Demelenne(여)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FGTB Fédérale (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de Belgique)
  Rue Haute 42 - 1000 Bruxelles
  Belgium
- 전화: +32 2 506 8211
- 웹사이트: www.abvv.be

4) CGSLB (Centrale Generale des Syndicats Liberaux de Belgique)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91년 설립된 ACLVB를 모태로, 1939년에 공식적으로 CGSLB (Centrale Generale des Syndicats Liberaux de Belgique) 명칭을 사용하게 됨.
- 벨기에 자민당과 조직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별조직은 없고 지역노조(local, regional)를 조직화하고 있음.
- 사회적 대화 기구인 CNT와 CCE에 대표로 참가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27만 명(ITUC 등록조합원 수)

❍ 연합지역(inter-regional) 회원조합
- Vlaams ABVV(Flanders)
- Waals ABVV(Wallonia)
- Brussels ABVV(Brussels)

❍ 지도부
- 위원장: Jan Vercamst
- 사무총장(2인): Olivier Valentin, Sabine Slegers(여)
- 연합지역 회원조합 본부장(3인)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Koning Albertlaan 95 - 9000 GENT
  Belgium
- 전화: +32 9 222 5751
- 팩스: +32 9 221 04 74
- 이 메일 : aclvb@aclvb.be
- 웹 사이트: www.aclvb.be

7. 스웨덴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880년대에 상당수의 사회주의자 성향 노조가 결성되었고, 이들이 결집하여 1889에 사회민주노동당(Social Democratic Labour Party: SAP)을 창당했음. SAP는 당으로서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센터 역할을 겸함.
- SAP는 1898년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인 LO(Landsorganisationen i Sverige)를 별도로 출범시킴.
-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은 기본적으로 블루칼라 기능직 중심으로 조직된 LO와 사무 · 전문직을 대상으로 1931년 설립된 TCO(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대졸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1947년 출범한 SACO(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로 구분됨. LO는 정치적으로 SAP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TCO와 SACO는 SAP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있음.

- TCO는 SACO와의 통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고임금 노동자들이 잘 조직된 SACO는 오히려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 LO와 TCO의 조합원은 SACO 조합원에 비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연대가 가능한 반면 SACO는 홀로서기의 전략을 선택함.
- LO와 TCO는 동유럽국가와 개발도상국 "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지원 LO-TCO 사무소"(LO-TCO Secretariat for Trade Union Development)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스웨덴의 고용관계는 4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음.
  - 1단계는 노동조합이 시작된 1890~193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노동조합의 체계가 갖추어졌음.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으며 노동쟁의 발생 수준도 상당히 높았음. 정부는 수동적이거나 자본가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 2단계와 3단계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이며, 이 기간은 사민당이 정권을 잡았던 44년간과 일치하는 기간임. 협조적 노사관계로 일컬어지는 스웨덴모델은 이 기간 중 확립되었으며, 매우 낮은 노동쟁의 발생률, 사회연대 임금정책, 적극적인 인력정책과 노사협력 등의 특징을 갖고 있음. 경제성장에 기반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은 임금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노사분규가 거의 없었음.
  - 4단계는 1970년대에 나타났는데, 노조의 보다 급진적 산업민주주의 정책, 이에 대한 보수정당 및 사용자 단체의 저항, 1990년대 초 사회민주당 정권의 퇴진, 스웨덴의 EU 가입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분권적 집중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노사관계 활동, 경영자단체의 기업별 단체교섭 노력,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의 합의에 의한 변동급 임금제도의 점진적 확산, 중재위원회법을 통한 정부의 노사관계에 대한 중재를 통한 직접적 개입, 노동조합 간 합병노력,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투자의 강화 등이 최근 스웨덴 노사관계의 특징임.
- 스웨덴노총 LO와 TCO, SACO는 자조직 조합원의 이해에 따라 LO는 중앙교섭을 회복하고자 하는 반면 SACO는 분권화된 교섭을 선호하고 있음.

2) LO (Swedish Trade Union Confederation)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98년 스웨덴 사회민주당에 의해 전국적인 노조정책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LO가 설립되었음. 1980년대까지는 노동조합 회원이 단체로 사회민주당에 가입하는 집단가입제도가 존재했고 사회민주당과 스웨덴 노총간에 조직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졌음. 최근에는 이러한 조직적 차원의 협력은 사라졌으나 아직도 두 조직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감은 여전히 강한 편임. 전통적으로 LO 위원장은 사회민주당 집행위원회 위원이고, 지역차원에서는 노조간부들이 사회민주당내 고위직을 맡고 있음. SAMAK(Joint Committee of Nordic Social Democratic Labour Movement, 노르딕사회민주노동운동 공동위원회)을 통해 스웨덴 노총과 사회민주당과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음.
- 조직률은 1986년 최고치인 86%를 기록한 후 하향세를 보여 왔고, 1999년에는 80.6%를 유지했으나, 2008년부터 70%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 기준 67.7%로 급락하였음. 근본적 이유는 2006년 총

선에서 중도우파 연정(Alliance)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실업보험 가입비를 급격히 인상했기 때문임.

- LO는 1956년 석간신문 Aftonbladet를 매입했으며, 1996년 5월 신문 지분의 49.9%를 노르웨이 미디어 회사인 Schibsted에 매각했음.
- 노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인해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2006년 1월 금속노동조합과 산업노동조합이 통합해 IF Metall이라는 하나의 노조로 통합되었음.
- LO 지도자들은 지역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Board)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시장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있음.
- 노조는 실업수당 등 노동관련 재원을 운영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재원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음.

(2) 조직 현황

❍ 개요

- 조합원수: 1백50만 명
- 14개 회원조직이 있으며, 17개 지구 노총조직(LO districts)과 시도별 노동조합이 있음. 산하연맹에서는 전국에 500여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기업별 노동조합들을 통합하고 있음.
- 본부에는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집행이사회를 보좌함. Folksam(보험회사), ABF(근로자 교육협회), Bilda(출판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회원조직

- Building Maintenance Workers' Union
  (건물보수유지, Fastighetsanställdas Förbund)

- Building Workers' Union
  (건설, Svenska Byggnadsarbetareförbundet, colloquially “Byggnads”)
- Commercial Employees' Union
  (상업, Handelsanställdas Förbund, “Handels”로 칭함)
- Electricians' Union (전기, Svenska Elektrikerförbundet, “SEF”)
- Food Workers' Union (식품, Svenska Livsmedelsarbetareförbundet)
- Hotel and Restaurant Workers' Union
  (호텔 식당, Hotell och Restaurang Facket, “HRF”)
- GS Union (산림 목재, GS Facket för skogs-, trä- och grafisk bransch, 2009년 그래픽노조와 통합)
- IF Metall(금속, 2006년 Industrial Union/Industrifacket과 Metalworkers' Union/Svenska Metallindustriarbetareförbundet 통합)
- Municipal Workers' Union (공무원, Svenska Kommunalarbetareförbundet, “Kommunal”로 칭함)
- Musicians' Union (음악가, Svenska Musikerförbundet, "SMF")
- Painters' Union (화가, Svenska Målareförbundet)
- Paper Workers' Union (제지, Svenska Pappersindustriarbetareförbundet, colloquially “Pappers”)
- Transport Workers' Union (운수, Svenska Transportarbetareförbundet, “Transport”로 칭함)
- Union for Service and Communications Employees (서비스 및 통신, Facket för Service och Kommunikation, “SEKO”)

❍ 운영체계

- 총회 (Congress): 최고 의결기구로서 4년마다 개최됨. 대의원 300명과 100명의 일반이사회 위원으로 구성됨. 집행이사회에서 제출한 보

고서와 각종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4년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임.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산별노련 대표로 구성되며, 2012년 5월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100명의 이사가 선출됨. 연 2회 개최됨. 주요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 임금인상 요구안을 결정함.
-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 11명의 산별노조 대표, 총회 의장과 3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됨. 2주마다 소집되며 주요현안을 결정함.

❍ 지도부(2012년 총회에서 선출)

- 위원장: Karl-Petter Thorwaldsson(금속출신, 임기 2년, 연임 가능)
- 수석부위원장: Tobias Baudin
- 부위원장: Ingela Edlund
- 교섭단장: Torbjörn Johansson

❍ 국제활동

- ETUC, ITUC, OECD-TUAC, NFS, BASTUN(Baltic Sea Trade Union Network) 등 가입

(3) 주요 현안

- 완전고용 실현을 위한 수요 유지, 수요유지를 위한 실질임금 인상 등을 추진
- 능력개발 및 훈련 확대
- 남녀평등 증진
- 노동법 입법: 1970년대 근로조건 관련 법안이 통과돼 노총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음. 최근 노사 공동

결정, 근로환경,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내 노조활동 보장, 비사회주의 정당의 반격 등에 대비한 새로운 노동법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실업수당 등 근로혜택의 확대 및 개선
- 이주노동의 사회통합: 스웨덴 노총내 이주노동자 비율이 여타 전문직 노조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상황 (14%)

(4) 연락처

- 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Barnhusgatan 18. Karta här, 105 53 Stockholm
  Sweden
- 전화: 08 796 2500
- 팩스: 08 796 2690
- 이 메일: birgitta.heijer@lo.se
- 웹사이트: www.lo.se

3) TCO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31년 민간부문 사무직 노동자를 조직한 DACO가 출범하고 1936년 단결권과 단체교섭을 쟁취하게 되자 1937년 공공부문 사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TCO가 조직되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쟁취를 위한 활동을 전개함.
- 1944년 DACO와 TCO가 통합되고, 1966년에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허용되었는데, 경찰과 군인도 TCO

의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됨.
- LO와는 달리 사무직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LO와 조직경쟁으로 충돌하지 않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졸출신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SACO와는 조직 대상이 중복돼 그다지 협력적이지 않음.
- 정치적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독립적임.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120만 명 (60%가 여성)

❍ 회원조합
- Unionen: 민간 사무직 50만 명
- Lärarförbundet: 교원 22만 명
- Vision: 지차체공무원 18만 명
- Vårdförbundet: 보건의료 11만 명
- ST: 공공부문 8만 명
- Finansförbundet: 금융 4만 명
- Polisförbundet: 경찰 2만3천 명
- Journalistförbundet: 언론 1만8천 명
- FTF: 보험 1만5천 명
- Teaterförbundet: 극장, 연극, 방송 8천 명
- Försvarsförbundet: 군속민간인 7천 명
- Farmaciförbundet: 약국 7천 명
- TULL-KUST: 세관 및 해안경비 4천 명

- Symf: 음악가 2천 명
- SLF: 농업, 임업 1천 명

❍ 지도부

- Eva Nordmark(여)

❍ 국제 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3) 연락처

- Linnégatan 14, Stockholm, Sweden
- 전화: +46 08 782 91 00
- 이 메일: tco@tco.se
- 웹사이트: www.tco.se

4) SACO

❍ 개요

-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5년에는 공무원노조(SR)를 흡수 통합하였음.
- 조직 대상이 대졸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임금 노동자이며, 노동시장의 변화로 고용이 증가해 조합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회원조합

- 22개로, 주로 교원노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협회 (associa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Association of Architects (건축사, Sveriges Arkitekter)
- Association of Graduate Engineers (엔지니어, Sveriges Ingenjörer)
- Association of Graduates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경영경제전문가, Civilekonomerna)
- Association of Graduates in Documentation, Information and Culture (문화정보전문가, DIK-förbundet)
- Association of Graduates in Law, Economics and Personnel Management (변호사, Jusek)
- Swedish Association of Graduat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ork (행정사회복지전문가, Akademikerförbundet SSR)
- Association of Head Teachers and Directors of Education (교장, Sveriges Skolledarförbund)
- Association of Military Officers (군장교, Officersförbundet)
- Association of Military Officers in the Reserve (예비군장교, Sveriges Reservofficersförbund)
-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직업치료사, Förbundet Sveriges Arbetsterapeuter)
- Association of Registered Physiotherapists (물리치료사, Legitimerade sjukgymnasters Riksförbund)
- Association of Scientists (과학자, Naturvetareförbundet)
-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교수, Sveriges Universitetslärarförbund)
- Association of Church of Sweden Employees (교회종사자, Kyrkans Akademikerförbund)
- National Union of Teachers in Sweden (교원노조, Lärarnas Riksförbund)
-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 (전문가, SRAT)

- SACO Association for Traffic and Railway (교통철도, SACO-förbundet Trafik och Järnväg)
- Swedish Dental Association (치과의사, Sveriges Tandläkarförbund)
- Swedish Medical Association (의사, Sveriges Läkarförbund)
- Swedish Pharmaceutical Association (약사, Sveriges Farmacevtförbund)
- Swedish Psychological Association (심리상담사, Sveriges Psykologförbund)
- Swedish Veterinary Association (수의사, Sveriges Veterinärförbund)

❍ 운영체계

-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 4년마다 개최되며, 이사회는 위원장과 이사 8명으로 구성됨.
- 대표자회의(Presidents' Conference)는 회원조합 위원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수시로 열리며 중요한 결정을 함.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 연락처

• Box 2206,
S-103 15 Stockholm
Sweden
• 전화: +46 8 613 48 00
• 팩스: +46 8 24 77 01
• 이 메일: kansli@saco.se
• 웹사이트: www.saco.se

8. 스페인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840년 무렵 스페인에서는 섬유, 철강, 광산부문에서 최초로 노동자협의회가 구성되었음.
- 1936년~39년 스페인 내전 이전에는 노동조합운동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었으며, 무정부주의자 노조단체인 CNT(Confederacion Nacional del Trabajo)와 사회주의자 노조단체인 UGT(Union General Trabajadores)가 가장 큰 조직이었음.
- 프랑코(Franco) 독재정권하에서는 코퍼러티즘(corporatism)을 바탕으로 수직적 조직구조가 강요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주요 역할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었으며 파업도 불법이었음.
- CNT, UGT, 바스크(Basque)지역 노조인 ELA-STV는 지하활동을 계속했으며 지도부는 망명생활을 해야 했음.
- 프랑코가 사망하고 독재정권이 물러난 후 1975년부터 민주화가 진행되자 오랜 일당독재 조직이 해산되고 다시 자유노조가 창설되었음. 1977년에는 단체협약, 노사분쟁, 파업권, 해고 등을 규정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었음.
- 군인과 사법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자영업자, 실업자, 퇴직자의 노조결성은 허용되지 않고 가입만 가능)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됨.
- 민주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합원 수가 230만 명(조직률 30%)에 이를 정도로 노동조합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파업도 빈번하게 발생함.
- 1980년대에는 경제상황 악화로 조합원 수가 급감해 1990년 초반에는

170만 명으로 줄었음.

- 오늘날 스페인에는 노동총연맹(UGT, 12개 산별노조로 구성), 노동자위원회(CC.OO, 12개 산별 협의회가 참여), 바스크노동자연대회의(ELA/STV: 바스크 지역 9개 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 등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UGT와 CC.OO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적 갈등이 존재함.
- 노조 조직률은 2000년 16.7%, 2010년 15.6%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2) 노사관계 현황

- 스페인의 두 노총인 UGT와 CC.OO는 각각 사회당(PSOE), 공산당(PCE)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1980년 제정된 '노동자지위법'에 따라 해고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을 지역/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1984년 '노동자지위법' 개혁조치를 통해 모든 형태의 임시직 고용 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함.
- 1990년대 후반 들어 스페인 노사관계는 매우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은데, 이는 사회적 변화와 산업 · 기술 구조 변화, 정치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80-90년대 스페인 노동조합 운동은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시련의 시기였음. 기술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정치구조 변동으로 인한 대량실업은 노동조합운동의 전통적인 기반을 흔들어 놓았음. 고실업과 더불어 임시직 고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노동시장이 분절화되고 이중화되면서 노동자 계급의 내부 균열이 확대됨.
- 1994년 노동법 개정은 상용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해고의 사유의 범위를 대폭 완화함.

- 1980년 초반까지만 해도 집권 사회당(PSOE)과 스페인 노총(UGT)은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곤잘레스 총리 사회당 정부(1982-1996)도 노조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집권한 바 있음. 그러나 사회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José María Aznar López 총리(국민당 소속)가 집권한 1997년 이후 정규직 해고보호가 완화되고 임시직이 늘어나면서 노조와 정부는 불편한 관계에 빠졌음. 사용자 역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음.
- 1997년 스페인 정부와 사용자단체(CEOE), 두 노총은 기존의 고용계약 시스템과 단체교섭구조를 대폭 변경하는 중앙노사협약(4월 협약)을 맺었음. 협약의 목적은 임시직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 채용되는 상용노동자의 해고보상금을 감소시키는 데 있었음.
- 2006년까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719만 명, 전년도 대비 7.4% 증가), 단체협약 체결건수(967건)도 높아지고 있음. 중앙단위 단체교섭은 CC.OO와 UGT, 스페인사용자단체(CEOE), 중소기업연합(CEPYME) 간에 이루어짐.
-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되고 있음. 이는 2004년 설립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선언에 기초한 3자 협의를 통해 마련된 '고용과 성장을 위한 협의 (2006년 7월 31일 체결)'에 따른 것임. 고용안정을 위해 4년간 500~2,200유로의 범위 내에서 신규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임시고용계약에 대해 8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음.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2006년 후반기 정규직 고용이 41% 증가했고, 217만 임시 고용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 스페인은 노사정 3자 대화 시스템을 구축해 협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법제화하고 있음.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전국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기업 수준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기업노동자위원회 또는 노동자대표)의 10% 이상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함. 또한 노사관계가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15% 이상(최소 1,500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지역노동조합 대표기구로 인정됨.
- 지난 10년 간 스페인 내 이주노동자는 4백17만 명이 증가(인구의 10.7% 증가에 해당)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민 인구비율은 8.4%이며, 약 1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음. 2005년 67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했는데 이는 내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까지 이주노동자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됨. 주로 이주노동자는 임시직에 채용되고 있어 이들의 근로조건, 임금 등이 노사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의 경제위기의 중심에 선 스페인은 100%가 넘는 국가부채와 계속되는 적자예산으로 EU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으나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함.
- 2011년 11월 총선 결과, 대중당인 PP가 186석인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Mariano Rajoy Brey가 수상으로 선출됨.

3) UGT (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88년 8월 12일 Pablo Iglesias Posse의 주도 하에 사회주의 진영 노동조합인 노동자총연합(UGT)을 창설함.

- 프랑코 독재에 맞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망명하면서 투쟁했던 스페인노동총연맹(UGT)과 공장위원회(workers' commission) 전통 속에서 힘겹게 조직을 재건한 노동자 위원회(CC.OO)로 노동운동이 대별됨.
- 다양한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노동조합들은 1936년 시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여러 정치적 색채에 따라 분열되어 있다가 1939년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시련의 시기를 맞이함.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팔랑헤당 산하의 '스페인노동연합(OES)'으로 통합되었음.
- 1976년 망명 지도부가 스페인으로 귀국한 후 제30차 총회를 개최해 조직을 재건했으며, 1977년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
- UGT 및 사회주의노동자당(PSOE)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100만 명(ITUC에 88만 명 등록)

❍ 회원조합

- 금속 및 건축노련
- 운송, 통신 및 해상노련
- 무역, 케이터링, 관광 및 게임노련
- 공공노련
- 연금자노련
- 식품 및 농업노련
- 경공업노련

- 교육노동자노련
- 서비스노련
- 독립노동자노련
- 영세농업인노련
- 전문직 및 자율노동자노련

❍ 지도부

- 사무총장: Cándido Méndez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Hortaleza, n으 88
  28004 Madrid, Spain
- 전화: +34 915 897 100
- 팩스: +34 915 897 603
- 웹사이트: www.ugt.es

4) CC.OO (Confederación Sindical de Comisiones Obreras)

(1) 창립과정 및 발전

- CC.OO는 스페인 공산주의자와 긴밀히 활동했으며, 1960년대에 사업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위원회(workers' commission)를 조

직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1967년 대법원이 CC.OO를 불법단체인 스페인공산당(PCE)의 하부조직인 불법조직으로 판결하면서 수백 명의 조합원이 구속되기도 함.

- 이후 은밀하게 활동해온 노동자위원회는 1975년 프랑코 정권의 종말에 따라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음. 1976년 바르셀로나 총회를 통해 단일 노동자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됨.
- 현재 스페인에서 가장 큰 노총조직이며, 2010년 9월 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정부의 퇴직연령 연장과 예산삭감 등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감행하기도 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수: 110만 명 (ITUC에 80만 명 등록)

❍ 회원조직

- 연합
- 금속 및 광산노련
- 운송 및 통신 노련
- 무역, 케이터링, 및 관광노련
- 건축 노련
- 연금자노련
- 식품 및 농업노련
- 교육근로자노련
- 서비스노련
- 금융 및 행정서비스 노련

- 보건노련
- 공공행정노련

❍ 지도부

- 사무총장: Ignacio Fernandez Toxo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Calle Fernandez Sickle, 12 28010 - Madrid, Spain
• 이 메일: ccoo@ccoo.es
• 웹사이트: www.ccoo.es

9. 아이슬랜드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아이슬랜드는 1944년 덴마크에서 독립했으며, 어업과 어업관련 생산품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노동조합운동 발전에 영향을 미침.
- 20세기 초 이미 발전한 덴마크 노사관계의 영향으로 노조설립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1916년에 대표노총조직인 ASI(Alþýðusamband Íslands)가 창립되었음.
- 1942년에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BSRB(Bandalag

Starfsmanna Ríkis og Bæja)가 결성됨.

- 초기에는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규모가 크지 못한 관계로 단위노조가 직접 노총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점차 특정 산업분야가 발전하면서 산별연맹이 조직돼 노총에 직접 가입하는 단위노조는 감소함.
- 전체 노동인구수는 약 15만 명인데, 현재 ASI와 BSRB 조합원 수를 합치면 약 12만 명에 달함.
- 노조조직률은 1999년 87.4%, 2004년 99.1%, 2008년 79.3%를 나타냄.

2) 일반 현황

- 총 63석의 4년 임기 국회는 단원제이며, 제1당의 당수 또는 연합정부의 리더가 수상으로 선출됨.
- 총인구 31만 명의 아이슬랜드는 복지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를 추구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국가였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은행이 도산하는 등 아이슬랜드 금융 분야가 붕괴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다시 2012년 유로존 경제위기 여파로 대외여건도 악화됨.
- 수출 주력산업이 어업 및 어업관련 제품인 상황에서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하이테크, 전기 및 석유 등 산업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3) ASI (Alþýðusamband Íslands)

❍ 개요

- 조합원 수: 10만 명

- 회원조직: 5개

❍ 지도부

- 위원장: Gylfi Arnbjörnsson
- 사무총장: Ari Skulason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 연락처

- Guðrúnartúni 1, Reykjavik 105, Iceland
- 전화: +354 535 5600
- 이 메일: asi@asi.is
- 웹사이트: www.asi.is

4) BSRB (Bandalag Starfsmanna Ríkis og Bæja)

❍ 개요

- 1942년 창립되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의 공무원을 조직함.
- 조합원 수: 2만1천 명
- 회원조직: 27개

❍ 지도부

- 위원장: Elín Björg Jónsdóttir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PSI 가입

❍ 연락처

- Grettisgata 89, 105 Reykjavik, Iceland
- 전화: +354 525 8300
- 팩스: +354 525 8309
- 이 메일: bsrb@bsrb.is
- 웹사이트: www.bsrb.is

10. 아일랜드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현재 아일랜드노총인 ICTU(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의 전신인 ITUC(Irish Trade Union Congress)가 1894년 설립됨.
- 아일랜드 노동조합 중에는 영국노총 TUC에 가입된 조직도 있고, 영국의 북아일랜드 노동조합 중에는 TUC와 ICTU에 모두 가입된 노조도 있음.
-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가 경제위기에 빠지자 ICTU는 1987년부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초로 한 '삼자파트너십협약(tripartite partnership agreement)'을 3년마다 계속 체결함.
- 조직률은 1999년 38.7%를 기록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현재 29.6%임.

2) 노사관계 개요

- 아일랜드는 1955년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 1948)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1949)를 비준하였음. 헌법은 협의회와 노동조합을 결성할 시민의 권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1990년 제정된 노사관계법은 면책권과 평화적 피켓팅을 허용하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 부문의 자발적 중재를 위한 실행강령(Code of Practice)도 도입하였음. 기타 고용법은 1993년 연립내각에 의해 재검토되었음.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은 노사정 합의에 의해 1987~90년 국가복구프로그램과 1990~93년 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에 의해 조정되었음. 이는 노동조합과의 심각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의해 성공적으로 계승되었음. 1994년 2월 노사정 합의에 의해 민간부문은 1996년까지 8%를 초과하지 않고 공공부문은 1997년까지 11%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1987년 이후 파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노사분쟁도 임금인상 관련은 아니었음.
- 1992년 42건의 파업이 발생했는데 4분의 3이 서비스부문에서 발생하였음. 은행, 우체국, RTE 등 세 개 부문의 노사분규가 손실일수의 80%를 차지하였고 191,000명이 노사분규에 참여함.
- 1990년 제정된 노사관계법은 화해와 자문서비스를 통해 전반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증진하고 실행강령(Code of Practice)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는 노동위원회를 설립하였음. 1992년 노동위원회는 1,935 건의 노사분규를 조정하였고, 그 중 3/4은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음. 1988년 제정된 노동자참여법 (Workers Participation Act)은 35개의 공공기업에서 참여구조를 제공하였고, 경영자협회 (Federation of Irish Employers)와 민간부문기업의 노동자참여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음.

- 아일랜드 노사정 삼자주의의 특징은 ICTU와 경영자단체(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가 지명하는 동수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독립적 기관인 노동법원(Labour Court)임. 판결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 모두 분규를 노동법원에 이관하고 있음.
- 특정 산업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노동법원이 공동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최저임금안을 비준한 경우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1994년 정부는 '경쟁력과 노동을 위한 프로그램' 이라는 새로운 협력적 전략을 제안하였으나 2000년에 가서야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이 발효되었음.
-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파산과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은 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음.

3) ICTU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ITUC (Irish Trade Union Congress)는 1894년 설립되었으며, 1945년 영국 소재의 노동조합을 제외시키면서 두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었다가 1959년 다시 현 명칭인 ICTU(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로 통합됨. 영국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단결된 아일랜드의 노동조합센터는 북아일랜드의 노동조합을 분리시키자고 주장함.
- ICTU는 정치적 독립을 지향함. ICTU는 3년마다 실시되는 중앙협약, 경쟁력과 노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협상자 중 하나임.
- ICTU는 1980년대, 장기실직자 대책마련과 경기활성화 대안 마련을

위해 26개 지역을 포괄하는 전국조직인 CCN(Congress Centre Network)을 설립함으로써 실직자에게 재훈련을 통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조직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CCN은 FAS(Foras Alseanna Saothair: 아일랜드어로 훈련고용국), 보건복지부, 농림부, 지역개발사업부 등으로부터 운영기금 및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며, 중앙조직 이외에 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2) 조직 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83만 명(ITUC 등록 조합원 수)

❍ 회원조합

- 일반노조
- 교직원노조
- 체신, 통신노조
- 기타 공공노조
- 전기, 엔지니어링, 건설노조
- 기타 산업노조
- 소매유통, 교통노조
- 전문직, 사무직노조
- 기타 노조

❍ 지도부

- 위원장: Jack O'connor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31/32 Parnell Square
  Dublin 1
  Ireland
- 전화: +353 1 889 7777
- 팩스: +353 1 887 2012
- 이 메일: congress@ictu.ie
- 웹사이트: www.ictu.ie

11. 영국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7세기에 세계 최초로 자본주의가 출현, 발전한 영국에서는 1700년대 중반인 18세기에 노동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 우애협회(Friendly Society)가 생겨나면서 노동자 조직화도 확산되었음. 이러한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1799년~1800년 '노동자단결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이후 단결금지법 폐지운동(1816~24년), 기계파괴운동(Luddite Movement, 1811~1817년), 권리청원운동(Chartist Movement, 1836~48년) 등을 통해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 1770~80년대에는 면방부문의 숙련공이 중심이 된 직업별 노조로 발전하였는데, 1810년에 설립된 방직공총연맹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직업별 노동조직과 지역을 단위로 한 노동조합이 조직됨.
- 1822년 최초의 전국단위 노동조합협의체인 유용계급위원회(Committee of the Useful Classes)가 출범하였음. 이어 1824년 단결금지법이 철폐된 후 1833년에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로버트 오웬(Robert Owen) 주도로 전국노동조합대연합(Grand National Consolidated Trades Union)이 결성됨. 이 연합은 조합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함. 그 결과 1866년 설립된 영국 조직노동연맹 (United Kingdom Alliance of Organised Trades)이 1868년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TUC)가 공식 출범함.
- 1899년, 기존의 TUC보다 중앙집권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일반노동조합연맹(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이 설립되기도 했으나 주요 가맹노조가 TUC를 영국노동운동의 중앙조직으로 인정하였음. 이후 TUC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1900년대 초에 조합원수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고, 1920년대에 이르러 800만 명을 돌파함.
-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산업연합(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FBI), 영국제조업자전국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British Manufacturers: NABM), 영국사용자단체연맹(British Employers' Confederation: BEC) 등 3개의 사용자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다가 1965년 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으로 통합되었음. 영국정부는 물론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로비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체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음.

2) 노사관계 개요

- 1875년 제정된 공모죄 및 재산보호법(Conspiracy and Protection of Property Act)과 1906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규율법(Act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Trade Unions and Trade Disputes)을 통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권이 부여되었음. 1917년 발표된 Whitely 보고서를 통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권장하면서 노동삼권을 축으로 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됨.
- TUC 주도로 노동자 대표 의회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노동당, 사회민주연맹, 페비안협회(Fabian Society)가 1900년 노동대표위원회(Labour Representation Committee)를 결성함. 이후 1906년에 노동당(Labour Party)으로 조직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1918년 사회주의강령을 채택함으로서 정당으로서의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됨.
-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 2차 대전이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60년대까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실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었음. 그러나 70년대 들어 이러한 합의에 대한 회의, 만성 인플레로 인한 경제위기(1976년 IMF 구제),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1978-9년의 불만의 겨울)으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형성됨.
- 1979년에 등장한 마가렛 대처 보수당 정부는 강제노조가입 형태인 클로즈드숍을 불법화하고, 경기침체와 잦은 파업에 염증을 느낀 일반유권자의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1984년 광산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등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였으며, 199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정부가 들어서기까지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함.
- 1997년에 '새로운 노동, 새로운 영국'을 주창하면서 집권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통

한 '제3의 길'을, 경제적으로는 사회 모든 세력의 이해와 조화를 도모하는 이해관계자 경제학(Stakeholder Economy)을 추구하였음. 또한 최저임금제 부활, 단체교섭 의무제 도입, EU 사회헌장 비준 등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집단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조화를 모색하였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강국인 영국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는데, 주택가격 하락과 물가상승 등이 심각해지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함.
- 2010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보수연정(보수당 + 자민당)에 패배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하게 되었음. 연이은 유로존 위기는 영국의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게 함. 정부는 부가세 인상(17.5% → 20%)으로 소비세를 증가시킨 반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21%로 낮추는 정책을 실시함. 2013년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7.2%를 기록함.
- 불문법의 전통에 따라 노사관계나 노동삼권에 대한 법이 발전하지 못하고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 규정되었음.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역할도 제한적인 '자율주의'의 전통이 강함.
- 노동조합 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적 · 행정적 절차가 미비해 노조인정도 사용자의 자발성에 기초함. 단체교섭도 강제적이지 않고, 정부는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노조의 파업에 대한 면책권(immunity)이 부여되며, 자율적인 조정제도[23]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함.
- 북유럽이나 게르만 국가와는 달리 노사관계에 있어 사회적 합의체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노사쌍방의 대등한 계약에 기초한 대립적 노사관계가 특징임. 제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수물자생산 등을 위해 정부

23) 자문알선중재위원회(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CAS)는 1896년 정부가 설립한 자발적인 알선 · 중재기구로 1984년 광산파업에 중재역할을 하기도 했음. 그러나 80년대~90년대 보수정부 시대에는 기능이 축소되기도 했고, 점차 고용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사업장의 분쟁예방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www.acas.org.uk

주도로 노사 간에 사회적 합의가 성립되기도 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했음. 1962년 설립된 국가경제발전위원회(NEDC)를 통해 60~70년대에 노사정 정책협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음. 1974년 노동당정부와 TUC 간에 임금안정 등에 관한 사회협약을 추진했으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반발로 실패함.

- 단체협약은 강제적이 아닌 신사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없고 사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단체교섭 파트너로 인정됨. 1999년 제정된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에서 노동조합의 의무적 인정조건을 명시함.

3) TUC (Trades Union Congres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68년 설립된 영국 유일의 전국단위 노총으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노동조합을 총 망라하고 있음.
- 초기에는 직종별 노조, 일반노조, 산업별노조, 사무직노조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조합원의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으며, 복잡한 복수노조체계를 갖고 있음.
  - 본조(National Union) - 지역본부(Intermediate Organisation) - 지부(Branch)
  - 복수노조 : 노조설립 사업장 중 57%를 차지(전체사업장의 30%)
- 강제노동조합 가입제도인 클로즈드숍 제도로 인해 1970년대 말에는 조합원이 1천2백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강력했으나 이 제도가 불법화되면서 2013년 현재 재정이 취약한 소수 회원노동조합이 통폐합돼 54개로 축소되었음. 조합원 수도 지난 40년 동안 500백만 명 이상

감소해 6백2십만 명 수준임.

- 1980년대 이후의 노조운동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운동 혁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함. 1993년 '새 출발 운동', 1996년 '뉴 유니오니즘 운동' 등을 추진함.
- 1980~98년 기존 대형노조 22개가 합병하면서 TUC 가맹 노조 수가 186개에서 2014년 현재 54개로 감소됨. 1993년 UNISON(NLGOA+ NUPE, 130만 명), 2007년 UNITE (TGWU + Amicus, 160만 명)의 통합이 대표적 사례임.
- 노사관계 안정화 및 노사협력 확대 사업으로 분쟁예방 조정사업, 영국정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노사정 사회적 파트너십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유로존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반면 노조는 임금인상을 통한 수요촉진으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입장임.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는 2014년 10월 대규모 임금인상 집회를 주도함.

(2) 조직현황

❍ 개요

- TUC는 1979년 사상 최대 조합원수 1,350만 명(조직률 55.4%)을 기록한 이후, 1980년 대처정부부터 시작된 반노동 정책으로 쇠퇴를 거듭해 1997년에는 조합원수가 620만 명(조직률 40%)으로 급감함.
- 노동당정부가 집권한 다음해인 1998년부터 조직감소 추세가 반전돼 2006년에는 조합원수 650만 명, 조직률 30% 내외(민간부문 19%, 공공부문 60%)를 유지함. 2000년 조직률은 30.2%이었으나 계속 하락하여 2013년 기준 25.4%로 감소함.

❍ 회원조합(2013년 현재)

- Association of Teachers and Lecturers(교원), 13만명
- Communication Workers Union(우정, 정보통신), 20만명
- GMB(일반), 61만명
- NASUWT(교원), 29만명
- National Union of Teachers(교원), 33만명
-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공공, 민영화된 사업장), 26만명
- Prospect(민간, 공공 각 분야의 전문기술직), 12만명
- National Union of Rail, Maritime and Transport Workers(운수), 7만8천명
- Union of Construction, Allied Trades and Technicians(건설), 8만4천명
- UNISON(민간, 공공부문의 공공서비스), 130만명
- Unite(제조 중심으로 일반포함), 132만명
- Union of Shop, Distributive and Allied Workers(소비, 유통), 43만명

❍ 주요 회원조합의 조직률 변화와 통합

노 동 조 합	조합원수(천명)		증감률 (1980~2000)	비 고
	1980	2000		
UNISON—공공서비스노동조합 (1993년 공공부문 3개조직 통합)	1,697	1,272	–25%	NALGO(공무원노조) +NUPE(공공부문노조) +CHSE(의료보험서비스노조)
TGWU(운수일반노동조합)	1,887	872	–54%	2007년 통합돼 최대조직인 UNITE 창립
Amicus(통합기계공·전자노조)	1,690	727	–57%	
GMB(일반·지방정부·보일러제조공노조)	1,180	694	–41%	
MSF(제조업·과학 및 금융노동조합)	683	405	–41%	2001년에 Amicus에 통합

노 동 조 합	조합원수(천명)		증감률 (1980~2000)	비 고
	1980	2000		
USDAW(상점·유통 및 관련업종 노조)	450	310	−31%	소매업 주축
NUT(전국교원노동조합)	273	295	+8%	
CWU(통신노동조합) (1995년 통신부문 2개노조 통합)	334	281	−16%	통신노조(UCW) +전국통신노조(NCU)
PCSU(공공 및 상업서비스노조)	–	259	–	민간서비스 통합노조
NASCUWT (전국학교교장협의화·여성교원노동조합)	156	252	+62%	
ATL(교원 및 강사협회)	90	183	+103%	학교 및 일부 대학 교원

자료 : 그렉 J. 뱀버 et al. (2005), 『국제비교 고용관계』, p.45, 한국노동연구원

❍ 지역본부 및 지부

- 북부, 요크셔와 험버사이드, 북서, 중부, 남동부, 남서부 등 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음. 산하 각 지역 노조대표자로 구성되는 TUC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s) 및 집행위원회를 통해 운영됨.
- 전국 300여 도시에 지부격인 노동조합평의회(Trade Union Councils)를 두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내 다양한 노조대표자로 구성됨.

❍ 특별지역조직

-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지에 TUC 지역본부 혹은 위원회 조직을 두고 있음.

❍ 운엉체계

- 전국대의원대회(National Congress): 최고의결기구로, 맹비 납부 조합원수 5,000명당 1명의 비율(조합원수 5,000명 미만 노조는 2명의

대의원)로 파견된 대의원으로 구성됨. 실업하더라도 대의원자격은 유지됨. 매년 9월초, 4일간 대회가 개최되며, 1962년부터 지금까지 대회 주요장면이 TV로 생중계 되고 있음.

- 중앙위원회(Central Council):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60여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며(여성, 흑인, 청년, 장애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소수그룹에도 의석 할당), 매년 대의원대회의 중간에 개최돼 TUC의 정책을 이행함. 노동쟁의 조정, TUC가 지향하는 노동법령 입법, 회원조합간 분쟁 조정,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 대정부 및 대사용자 공동행동, 조직화사업, 국제연대, 노총의 기금관리 및 투자 등을 논의함.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중앙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됨. 매월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정책실행 및 재정관리와 긴급한 사안을 취급하며 중앙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

❍ 지도부

-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사무차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됨.
- 사무총장: Frances O'Grady(여, UNITE에 통합된 운수노조인 TGWU 출신으로 조직켐페인 전문가),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사무총장 외에 1명이 추가로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회에 참여함).
- 사무차장: Kay Carberry(여, TUC 평등본부장 출신), Paul Nowak (GMB, UNISON, CWU 등의 노조를 거쳐 TUC 조직본부장 역임)

❍ 부처별 업무

-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 본부 : 행사국, 로비국, 프레스국, 캠페인국, 출판국, 공고국

- 경제사회본부 : 경제노동시장정책국, 사회적파트너십/노사관계/단체교섭국, 연금국
- 평등권본부 : 여성평등국, 동일임금관련 간부교육국, 성소수자담당국, 인종평등국
- 유럽연합 및 국제관계본부 : 유럽담당국, 국제관계국
- 경영 및 관리행정 본부 : 인사국, 재정국, 건물관리국, 노총본부건물국, 정보통신기술국, 정보서비스국
- 교육훈련센타 : 교육훈련 및 개발국, 마케팅국, TUC파트너십연구소
- 조직화 및 서비스본부 : 노동조합과 고용법국, 노조간부훈련국, 학습서비스국, 보건 및 산업안전국, 교육훈련국, 신노조주의국
- 비서실 : 노조관계, 커뮤니테이션
- TUC 브뤼셀 사무소 : 브뤼셀에 있는 ITUC 본부 내에 사무실을 두고 ITUC와 유럽노련(ETUC)과의 연대활동, EU와 관련된 각종 활동과 사업 수행

❍ 위원회 및 부설기관

- 각종 태스크 그룹(Task Group) 및 위원회: 태스크 그룹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정책영역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작업결과는 중앙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됨. 여성위원회, 인종위원회, 동성애자위원회, 청년포럼 등이 있음.
- 실업자센터(Centre of the Unemployed):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실업자센터에서 실업자를 위한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는 등 실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능을 담당함.
- 중앙교육센터 : 전국에 2개의 중앙교육센터를 두고 매년 수만 명의 노조활동가를 교육하고 있으며, 그밖에 지역본부에서도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함.

❍ 재원

- 조합비는 조직에 따라 정률제(임금총액의 1% 내외)나 정액제(주당 2파운드 내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액제를 적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음. 그밖에 일반조합비와는 달리 청년노동자, 저임금노동자, 파트타임노동자, 훈련생, 퇴직자,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훨씬 적은 액수의 조합비를 거출함.
- 총예산 규모는 2002년 약 2200만 파운드였음. 이중 조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이고, 정부지원금 등 외부지원금의 비중이 24%임. 갈수록 조합비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외부지원금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국제활동

-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연합국인 영국과 소련의 노동조합이 결성한 반파시즘 연합체인 '영/소 노동조합위원회'가 계기가 되어,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 세계노동조합연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이 창립되는 과정에서 영국노총(TUC)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세계노련(WFTU)내에서 식민지 국가의 독립과 미국의 마샬플랜에 대한 좌우익 노조의 입장대립과 국제산별노련(ITSs)과의 관계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1949년 11월 영국노총(TUC)과 미국노총(CIO) 주도로 국제자유노련(ICFTU)이 창립됨. 이후에도 ICFTU 사무총장 등 주요 지도부 구성과 정책방향 수립에 영국노총(TUC)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 영연방노조협의회(Commonwealth Trade Union Council): 과거의 영국식민지 혹은 현재의 영연방국 40여 개 국으로 구성된 영연방노조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국제연대 및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Trades Union House, Great Russell Street, London WC1B 3LS
- 전화: +44-20-7636-4030
- 팩스: +44-20-7636-0632
- 이 메일: info@tuc.org.uk
- 웹사이트: www.tuc.org.uk

12. 오스트리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870년에 이미 노조결성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최초의 노동조합 연맹체는 1893년 설립된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준비위원회(Provisional Committee of the Austrian Trade Unions)임.
- 노동조합운동은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큼. 1934년 내전 종식 이후 사민당과 지지노조들은 해체되었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연합노조(United Trade Union)가 결성됨.
- 1938년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방으로 연합노조는 해산되고 독일노동전선(German Labor Front)에 편입됨. 1945년 소련군이 비엔나에 입성하면서 현 오스트리아노총인 ŐGB(Őesterreichischer Gewerkschaftsbund - Austrian Federation of Trade Unions)가 기독교와 사회주의 및 공산주

의 계열을 모두 망라한 노동조합을 출범시킴.
- 산별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기능직은 업종구분 없이 한 노조에 가입하지만 사무직은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임.
- 2000년 36.6%를 기록한 조직률이 2011년에는 27.8%까지 감소했으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2) 노사관계 개요

- 오스트리아에는 약 320만 명의 모든 임금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회의소 AK(Arbeiterkammer)'가 있는데, 노총인 ÖGB에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AK는 회원들이 월급 총액의 0.5%를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됨. 전국에 9개 지부가 있으며, 각 지부장은 선거로 선출됨. 1920년 설립된 AK는 오스트리아식 사회적 파트너십에 의거해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며 ÖGB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24]
- 2012년 실업률은 4.3%로 EU국가 중 가장 낮으며, 2011년 국가 재정적자도 2.6%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3) ÖGB (Österreichischer Gewerkschaftsbund – Austrian Federation of Trade Unio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45년 16개 직종별노조, 8개 지역조직, 3당(사회주의자, 공산주의

24) www.arbeiterkammer.com 또는 http://www.akeuropa.eu/en/home.html 참조.

자, 공화주의자)이 모두 참여한 다원주의적 조직으로 출범함.

- 전후 오스트리아가 자주적인 영세중립국을 선언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했으며, 전후 복구를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조함.
- ÖGB는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해 있었으나, 조직 내 기독교성향 계열은 별도로 세계노총(WCL)에 이중으로 가입하기도 하였음.[25]
- ÖGB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회원조합의 지지 성향을 반영하는 매우 현실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음. 1999년 총선에서 이주노동에 반대하는 인종혐오주의 극우정당인 자유당 FPÖ가 23.4%를 득표해 급부상했을 때 자유당이 참여하는 연정에 반대하지 않은 적도 있었음.
- 그러나 맹목적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2000년 연금 · 복지와 관련된 정부 개혁안에 반대해 전국 규모의 1일 집회와 단시간 철도파업도 감행하였음.
- 오스트리아 인구는 약 8백50만명에 불과하나 1981년 ÖGB의 조합원 수는 1백67만 명에 달하기도 했음. 이후 조합원 수가 계속 감소해 현재는 122만 명 정도임.
- ÖGB는 산별노조 단체협약의 혜택이 조합원에게 확산되는 것이 입법을 통한 혜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예: 근로시간, 휴가, 연말보너스 등), 단체협약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조합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5) 2006년 ICFTU와 WCL의 통합대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것도 ÖGB의 이중가입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122만 명 (ITUC 등록 조합원 수)

❍ 회원조합

- GPA-DJP(Union of Salaried Private Sector Employees and of Printers, Journalists and Paper Workers: 민간, 인쇄, 저널리스트, 제지)
- GÖD(Union of Public Services: 공공서비스)
- GdG-KMSfB(Union of Municipal Employees, Art, Media, Sport and Freelance Workers: 지자체, 예술, 미디어, 스포츠, 프리랜스)
- GBH(Union of Construction and Woodworkers: 건설 목공)
- vida(Transport and Service Union: 운수서비스)
- GPF(Union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Workers: 우정통신)
- PRO-GE(Union of Production Workers: 제조)

❍ 지도부

- 위원장: Erich Foglar(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Österreichischer Gewerkschaftsbund
Johann-Böhm-Platz 1

A- 1020 Wien
- 전화: +43 1 534 44 39
- 이 메일: oegb@oegb.at
- 웹사이트: www.oegb.at

13. 이탈리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10년대 사회주의자에 의한 일반노동자총연합(CGL)과 가톨릭계에 의한 이태리노동총연맹(CIL)이 설립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CGL의 조합원이 2백만에 이르고 CIL의 조합원은 1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농민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었음. 그러나 무솔리니 정권 하에서 1927년에 모든 노동조합이 폐쇄되었음.
- 연합군과 독일군이 남북으로 대치하던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6월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노동조합주의자들은 로마협약(Pact of Rome)을 맺고 통일된 전국노동연맹인 이탈리아노동일반총연맹(CGIL)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음. 세 그룹은 집행위원회에 동등한 대표권을 갖기로 함.
- 그러나 1950년경 기독민주계가 정치적으로 급부상하면서 CGIL은 세 그룹으로 다시 분리되었음. 공산주의 계열은 CGIL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기독민주주의자 계열은 CISL로, 사회민주주의자 및 공화주의자들은 제일 작은 조직인 UIL로 분열됨.
- 그 후 3개 조직 간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경쟁구도에서 다른 노총보다 의무금을 높게 책정할 수 없어 재정난을 겪고 있음. 노총의

재원부족은 사회복지지원과 관련된 정부 지원(patronati)으로 충당함.

- 1980년에는 3개 노총의 총 조합원 수가 전체 노동력의 약 49%였으나 1990년대와 2000년에에는 조직률이 35%대에 머물고 있음. 2011년 기준 조직률은 35.6%임. 그러나 퇴직노동자가 퇴직연금자노조(pensioners' union)를 결성하고 노총에도 가입할 수 있어 조직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음.
- 1968년부터 CGIL, CISL UIL은 조직의 독립성은 유지한 채 협력을 유지해 왔지만 1985년 정부의 임금체계 정책으로 인해 서로 의견충돌을 겪게 됨.
- 공공분야에는 3개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의 활동도 주목할 만한데, 특히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교원노조(Gilda, Cobas)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철도노조(FS)가 파업을 주도함.
- 2004년 정부의 연금축소 시도에 대해서는 3개 노총이 연대해 총파업을 실시하기도 했음.

2) 노사관계 개요

- 이탈리아 노사관계는 고도의 정치성, 빈곤한 제도화, 경쟁적 노동조합 조직 구조, 정치적 주고받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고용관계 측면에서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사회합의나 사회계약에 기초한 대정부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어려웠음. 이는 친노동자적 주요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했고, 경쟁적 노동조합으로 인해 노동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협정에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임.
- 그러나 노동문제에 대한 주요 입법은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노사관계 역사에서 거시적 중앙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탈리아 노사관계에서는 중앙수준의 교섭이 노사관계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50년대에는 대산업부문을 커버하는 총연합 간 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7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정치적 위기 국면에서도 계속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음.
- 특히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정치적 교환은 더욱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노사정 삼자합의보다 양자교환(정 · 사, 노 · 정, 노 · 사)의 형식을 통해 임금억제와 고용창출,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세 및 복지체계 간의 교환관계이 시도되고 있음.
- 산별협약은 노동총동맹(CGIL), 노동조합연맹(CISL), 노동연합(UIL) 소속 산별노조에 의해 체결되며 금속, 섬유, 화학, 건설 등 네 개의 주요협약이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음. 산별노조들은 교섭시기에 교섭단을 구성해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전개함. 3년마다 이루어지는 산별 단체교섭에서의 역할로 인해 전국적 산별노조는 1970년대에 강력한 존재가 되었음. 그러나 시장변동과 기술혁신, 국제경쟁 등에 따른 개별기업의 유연성 요구에 산별노조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1980년대 이후 산별교섭은 거의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음.
- 80년대 이후 경제의 재구조화에 따라 이탈리아 사용자는 기업조직을 합리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유연한 시장전략과 생산전략을 추구하였음. 이 과정에서 기업마다 상이한 조정전략을 채택해 전국적 산별노조가 기업재조직에 대한 통일적 조정과 교섭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였음. 이에 따라 지방노조가 근로조건, 직무분류를 표준화하고자 했던 전국협약에 거부감을 보이자 산별노조의 리더십이 약화되었음.
- 작업장 차원의 유연성이 확대함에 따라 공장교섭의 중요성과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공장협약은 기업의 특수성과 노동시장 상황, 작업장 유연성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약 1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공장에 한정됨.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노사관계구조가 확립됨에

따라 산별수준에서 합의된 조항을 보충하는 전통적인 통합적 교섭의 역할을 뛰어넘어 공동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교섭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분권화 과정에서 기업협약 혹은 공장협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1990년 38%의 기업이 기업협약 혹은 공장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즉, 산별교섭이 약화되는 반면, 공장차원 교섭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동시에 전국수준의 집중화된 교섭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은 1991년 참여를 노조운동의 적극적인 과제로 설정하는 노선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참여적 노사관계가 시도됨. 1991년 자누시 협약, 1996년 피아트 협약이 그 대표적 사례임. 이 협약에 따르면 자율적 분쟁조정기구, 회사의 투자전망 · 경쟁상황 · 고용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기구, 노사관계를 다루는 기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사공동기구가 설치되었음. 직업훈련, 산업안전, 기술혁신과 조직변동 등의 문제를 협의하는 노사공동위원회도 설립되었음.

3) CGIL (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1) 창립과정 및 발전

- CGIL은 1944년 로마협약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노동단체로 창립됨.
- 1945년 이후 기독교 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공산주의자의 폭력시위 등에 반대해 탈퇴함으로써 CGIL은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노동조합으로 남게 됨.
- 과거 이탈리아 공산당(PCI)과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

부 사회주의자도 잔류하고 있음.
- WFTU에 가입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1978년에 탈퇴하였음.
- 1991년, 공산당이 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CGIL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와해되었고 새로운 헌장과 강령을 채택해 노사관계에 집중하는 단체로 변화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수: 577만 명 (2011년 기준)

❍ 회원조합
- FIOM(Federazione Impiegati Operai Metallurgici, 금속)
- SPI(Sindacato Pensionati Italiani, 연금생활자)
- FLAI(Federazione Lavoratori dell'Agro-Industria, 농장노동자)
- FILLEA(Federazione Italiana dei Lavoratori del Legno, dell'Edilizia, Industrie affini ed Estrattive, 건설목재)
- FILT(Federazione Italiana Lavoratori Trasporti, 운송)
- FILTEA(Federazione Italiana Lavoratori Tessili e Abbigliamento, 직물)
- FILCEM(Federazione dei Lavoratori della Chimica, dell'Energia e delle Manifatture, 화학에너지제조업).
- FILCAMS(Federazione Italiana Lavoratori Commercio, Albergo, Mensa e Servizi, 상업서비스)
- FISAC(Federazione Italiana Sindacale Lavoratori Assicurazione e Credito, 보험 및 신용카드)
- NIDIL(Nuove Identità di Lavoro, 새로운 형태의 노동)

- SLC(Sindacato Lavoratori Comunicazione, 커뮤니케이션)
- FLC(Federazione dei Lavoratori della Conoscenza, 지식)
- FP(Federazione dei Lavoratori della Funzione Pubblica, 공공부문노동자)

❍ 운영체계

- 대의원대회: 4년마다 개최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
- 지도위원회: 대의원대회 중간에 개최되는 최고 의결기구로, 연맹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방향 내에서 연맹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함. 사무총장(서기장)과 사무국을 선출함.
- 집행기구/사무국: 지도위원회의 결정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구임.

❍ 지도부

- 사무총장: Susanna Camusso (2010년 선출됨)

❍ 국제활동

- ETUC, ITUC, TUAC 가입

(3) 연락처

- 주소: Corso d'Italia, 25, 00198 ROMA
- 전화: (+39) 6 847 61
- 팩스: (+39) 6 884 5683
- 웹사이트: www.cgil.it

4) CISL (Confederazione Italiana dei Sindacata Lavoratori)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44년 6월 사회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노동조합주의자가 전국적 노동연맹인 이탈리아 노동일반총연맹(CGIL)을 만들기로 합의함.
- 1950년경 CGIL은 공산주의 계열 CGIL, 기독교 민주주의 계열 CISL, 사회민주주의 및 공화주의 계열 UIL(이탈리아 노동연맹)로 분리됨. 이에 따라 CISL은 비종교적인 노동조합운동으로 결성됨.
- 설립 이후부터 친서방적 성향으로 인해 로마가톨릭 종단과 미국노총(AFL-CIO)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수: 450만 명 (2008년 기준)

❍ 회원조합
- FAI (Federazione agro-alimentare/ 농업 및 음식산업)
- FIM (Federazione italiana metalmeccanici/ 금속)
- FILCA (Federazione italiana lavori costruzioni e affini/ 빌딩 · 목재 · 연합)
- FEMCA (Federazione lavoratori dell'energia, risorse, chimica e affini. Lavoratori tessili e dell'abbigliamento/ 광산 · 화학 · 에너지/의류)
- FLAEI (Federazione lavoratori aziende elettriche italiane/ 전기)
- FISTEL (Federazione dello spettacolo, dell'informazione e delle

telecomunicazioni / 쇼산업, 정보, 텔레콤)
- UGC (Unione generale coltivatori/ 농부)
- FISASCAT (Federazione italiana addetti servizi commerciali, affini e del turismo/ 상업서비스 · 관광)
- FIBA (Federazione italiana bancari e assicurativi/ 은행 · 보험)
- FIT (Federazione italiana trasporti/ 운송)
- FLP (Federazione dei lavoratori delle poste/ 체신)
- FPS (Federazione dei servizi territoriali e del pubblico impiego/ 공익사업 · 공무원)
- FNP (Federazione Nazionale pensionati/ 연금생활자)
- FIR (Federazione Innovazione e Ricerca/ 공공부문 리서치)
- Cisl Scuola (학교)
- Cisl Università (대학)
- Cisl Medici (병원 · 의료)
- FEDERAZIONE Vigili del Fuoco (Sindacato nazionale lavoratori del corpo dei vigili del fuoco/ 소방)
- Clacs (Coordinamento lavoratori autonomi commerciale e servizi/ 상업서비스)

❍ 운영체계
- 총회 (Congress): 최고 의결기구로서 4년마다 개최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총회 사이의 최고 의결기구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총회의 일상적인 업무 결정

❍ 지도부
- 사무총장: Raffaele Bonanni (2006년 선출)

❍ 국제활동

- ITUC, TUAC
- ICFTU에 1994년 가입하였으며, 회원수는 380만 명으로 등록됨. 이 중 150만 명은 퇴직자임.
- CISL은 ETUC(유럽노동조합위원회)의 창립멤버이자 ITUC 창립 멤버임.

(3) 연락처

- Via Po 21, 00198 Rome
- 전화: 39.06.8473357
- 팩스: 39.06 8413782
- 이 메일: internazionale@cisl.it
- 웹사이트: www.cisl.it

5) UIL (Unione Italiana del Lavoro)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50년 CGIL과 CISL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와 공화주의자 노동운동가에 의해 설립된 세번째 규모의 노총임.
- CGIL이나 CISL와 달리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정부에 의존하지도 않음. 노조조직 내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함. 때때로 3개 노총 통합 논의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성공한 적은 없으며, CGIL과 CISL를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교량역할도 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219만명(2011년 기준)
  - 산별가입 회원조합원 수: 133만명
  - 퇴직노동자 회원조합원 수: 57만명
  - 비산별 회원조합원 수: 29만명

❍ 회원조합

- FeNEAL, UILA, UILCA, UILCEM, UIL COM, UIL FPL, UILM, UIL OO.CC., UILPA, UIL Pensionati, UIL POST, UIL Scuola, UILT, UILTA, UIL Tem.p@, UILTuCS

❍ 지도부

사무총장: Luigi Angeletti(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사무차장: Carmelo Barbagallo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Via Lucullo 6, 00187 Rome Italy
- 전화: +39 6 475 31
- 팩스: +39 6 475 3208
- 이 메일: info@uil.it
- 웹사이트: www.uil.it

14. 포르투갈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20세기 초 포르투갈의 노동운동은 혁명적이며 무정부주의 성격이 강했음. 1914년 최초의 전국단위 노동조합단체인 UON(Uniao Operaria Nacional)이 결성되었으며, 1918년에는 총파업을 주도하기도 함.
- UON은 이후 CGT(Confederacao Geral de Trabalhadores)로 조직명을 변경해 활동하다가 1933년 살라자르(Salazar) 독재 파쇼정권 하에서 해체되고 1974년까지 어용노동조직이 대체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은 오랜 기간 동안 암흑기를 맞게 됨.
- 1970년 독재자 살라자르가 사망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가 풀리면서 공산주의자 주도의 노동조합 단체인 Intersindical이 활동하기 시작함.
- 1974년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최고혁명위원회는 공산주의자 주도의 Intersindical Nacional(IN)만을 유일 노총으로 인정함으로써 모든 노동조합이 IN에 가입하도록 함.
- 1976년 사회주의 정부가 정권을 잡자 IN의 유일 독점적 법적 지위를 취소하면서, 대안 조직으로 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포괄하는 UGT (União Geral dos Trabalhadores)가 결성됨.
- 현재 포르투갈은 공산주의 성향의 CGT-P(Confederação Geral dos Trabalhadores Portugueses)와 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성향의 UGT-P (União Geral dos Trabalhadores Portugueses)로 양분되어 있는데, CGT-P가 조직적으로 더 강력함.
- 공산주의 성향의 CGT-P와 사회주의자 성향의 UGT-P의 정치적 성향에 비판적인 일부 조직노동자가 이 두 조직의 대안으로 2000년 USI(União de Sindicatos Independentes)를 결성함.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조직노동자의 수는 약 1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CGT-P 60만~70만명, UGT-P 약 50만 명임. 조직률은 1999년 22.5%에서 2010년 19.3%로 하락함.
- CGT-P는 ITUC와 OECD-TUAC에 가입하지 못하고, UGT-P만 양 조직에 가입되어 있음. 다만 이념을 따지지 않는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에는 양 조직 모두 참여하고 있음.

2) 일반 개요

-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함께 유로존 경제위기에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으며 국가부채비율이 139%까지 치솟기도 함. 2040년이 되어야 IMF와 EU의 부채(794억 유로)를 갚고 국가부채비율이 60%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1990년대에 포르투갈은 EU가입을 위해 경제개방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EU 평균치를 상회했으나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포르투갈 경제는 201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있음.
- 2011년 6월 실시된 4년 임기 단원제 23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결과, 사민당인 PSD 38%(108석), 사회당인 PS 28%(74석), 대중당인 CDS/PP 11%(24석), 유일민주연맹(공산당, 녹색당 등)인 PCP/PEV 7%(16석), 좌파블럭인 BE 5%(16석) 및 기타 11%로 나타났으며, 수상은 사민당의 Pedro Passos Coelho가 선출됨.

3) UGT-P (União Geral dos Trabalhadores Portuguese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78년,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CGTP의 대안 노조로 출범했는데 정치적으로 사회당(PS) 및 사민당(PSD)과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CGT-P보다 조합원 수는 적지만 사무직 노동자 조직화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40만 명(ITUC 등록조합원 수는 26만 명)
- 50개 회원조합

❍ 지도부
- 사무총장: Carlos Silva(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UGT - União Geral dos Trabalhadores
Av. Almirante Gago Coutinho, n으 132
1700-033 Lisboa

Portugal
- 전화: +351 213 931 200
- 팩스: +351 213 974 612
- 이 메일: geral@ugt.pt
- 웹사이트: www.ugt.pt

15. 프랑스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791년 샤쁠리에(Chapellier) 법에 의해 노동자 단결 및 결사가 금지되었으나 1864년부터 노동자에게 파업권이 인정되었음. 1884년 법률제정 이후 프랑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자발적 조직으로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복수노조의 길이 열렸으며 1966년 시행령으로 복수노조가 법제화되었음.
- 프랑스 노동조합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소속노조에 대한 총연맹의 통제력이 매우 약하며 조직률도 낮음. 단체교섭을 통한 자치적 규율의 전통도 약해 노사관계의 중요한 틀이나 규칙이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프랑스 노동조합은 무정부주의적이고 무산계급의 영향을 받은 생디칼리즘 때문에 전체 노조 또는 개별기업에서도 계급투쟁적 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질적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노사 간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 성격이 강함. 그 결과 노동계는 온건한 단체교섭보다는 총파업으로 요구를 관철하려 해 왔고, 정부도 총파업 시 입법을 통해 노동계 요구를 수용해 온

전통을 갖고 있음(주40시간, 산별노조의 공장지부 허용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조합은 사회적 대화 구조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려는 사용자 및 정부의 주요 협상파트너가 되고 있음.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나 고용정책 입안 시 노조의 의견 청취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소수노조의 협약만으로도 전체 피고용인에게 협약이 적용되는 노동법을 갖고 있음.
- 프랑스 노조는 산별체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역별 조직을 갖고 있는 산별노조도 있음. 따라서 프랑스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산별노조이며, 각 기업에는 산별노조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음. 기업에 설치된 지부는 산별노조의 통제를 받으며 주로 교섭과 협약체결을 산별노조에 위임하고 있음.
- 프랑스의 대표적 사용자단체로는 1946년 CNPF로 설립돼 1998년 개명된 MEDEF가 있음. 이 MEDEF가 전국 차원의 대표적 5개 노총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나 기타 협약은 프랑스 전역에 적용됨.
- 프랑스의 사용자들은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으로 출혈경쟁을 하기보다는 산별협약 활용을 선호함. 이 제도는 1950년 산별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에 적용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정착됨.
- 프랑스에서는 다음 5개 전국적 총연맹이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음.

• CFDT(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 CGT(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 CGT-FO(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 CFTC(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 CGC(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Cadres)

- 프랑스에서는 산별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동자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식으로 교섭대표자를 선출함. 조합원 수에 따르면 CFDT, CGT, CGT-FO, CFTC, CGC 순이지만, 2008년 투

표에서는 CGT가 34.0%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으며, CFDT 21.8%, CGT-FO 18.5%, CFTC 8.7%, CGC 8.2%의 순서로 나타났음.

2) 노사관계 개요

- 1960년대 중반에 비해 노총직원이 3-5배 증가하였고, 이들이 공공기관 선출직 및 임명직 대표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노동운동은 조합원 수 감소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 1970년대 중반에 23%에 달했던 조직률은 점차 하락하여 1985년에는 16%, 1990년대에는 10% 선으로 하락함. 2002에는 8.1%, 2010년에는 약 7.9%에 머물고 있음. 이처럼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산별 단체협약이 단위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협약 적용률은 90%에 달함. 따라서 조직률이 높은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비견될 정도로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음.
- 또한 사업장 대표기구와 사회보험운영기구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승리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 예를 들어 프랑스산업재판소인 prud'hommes 선거의 득표 수가 1979년 7백80만 명에서 2002년 5백20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선거참여율도 급속히 감소하고(1979년 60.95%에서 2002년 31.52%) 비노조 출신후보가 점차 늘어났음.
- 프랑스 노동운동은 기술직, 중간관리자, 관리자, 여성 등 보다 다양한 임금계층을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특히 서비스 부문의 급성장에 대응해 여성조합원 조직화에 주력해 현재 여성은 전체 조합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조집행기구의 약 15-2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조조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취약계층, 소규모사업장, 기간제, 시간제, 실업자 조직화에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세계화도 노동조합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음. 현재 공식실업률은 9%에 달하며, 실업기간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여성과 청년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 또한 하청, 지불체계 변화, 업무 분절화, 노동시간 재조직화는 노동자를 더욱 고립시켜 노사관계의 개별화를 초래하였음.
- 이에 따라 각 노총은 임금계층에 포함되지 않거나 불안정고용상태의 노동자를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예를 들어 CGT는 실업자, 시간제노동자를 위한 2개의 특별조직을 설립했으며, 모기업과 하청기업 노조 간의 관계도 정립시키려 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각 노총은 웹 사이트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려 하고 있으나 많은 노동자의 고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대량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CFDT (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64년, CFTC(기독교노동연맹)의 소수집단이 종교적 입장과 강령을 포기하고 민주사회주의 노총의 형태로 설립하였음.
- 1968년 노사불안 시기에 정치화의 시기를 선도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1978년 이후에는 경제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음. 이를 두고 비평가들은 '강령 없는 실용주의' 접근이라 비난하기도 함.
- CFDT는 프랑스 노동운동의 일반적 쇠퇴에 따라 1980년 이후 공식 조합원 수가 1백만 명 이하로 급감했는데 특히 민간부문의 감소율이 컸음.
- 실용주의를 표방한 CFDT는 노동시간 단축, 신기술 도입 협상 합의,

청년층에 대한 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평등, 여성의 평등권, 작업장 내 위계관계 수정 등을 추진하였음.

- 국가, 정당, 교회, 기타 조직과의 독립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1988년까지 사회당(PS)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 이후 규약에서 사회주의라는 언급은 삭제됨.
- 1990년대 CFDT는 사회당과의 독립전략을 취하고 알랑 주페의 복지국가계획을 지지하였음.
- 2003년 CFDT의 새로운 지도자 François Chérèque에 의한 연금개혁 계획 지지는 심각한 내부 위기를 낳았음. 이 시기에 6만-8만 명의 조합원이 CFDT를 탈퇴하고 CGT나 독립노조 SUD에 가입하였는데 주로 운송과 금융부문의 조합원이 많이 탈퇴하였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86만 명(ITUC 등록 조합원 수)

❍ 회원조합

- Fédération communication, conseil, culture (F3C, 통신, 상담, 문화 노조)
- Fédération chimie et énergie (FCE, 화학, 에너지노조)
- Fédération nationale construction bois (FNCB, 목공건설노조)
- Fédération des syndicats généraux de l'Éducation nationale (Sgen, 교육일반노조)
- Fédération des établissement et arsenaux de l'État (FEAE, 국가 병기창 및 직영사업장 노조)
- Fédération des finances et affaires économiques (재정 경제 노조)

- Fédération formation et enseignement privés (Fep, 사교육기관노조)
- Fédération générale métallurgie et mines (FGMM, 제련 광산 일반노조)
- Fédération protection sociale, travail, emploi (PSTE, 사회보장 노조)
- Fédération des services (서비스노조)
- Fédération des services de santé et services sociaux (건강 · 사회서비스노조)
- Fédération générale agroalimentaire (FGA, 농업·식품 일반노조)
- Fédération générale des transports et de l'équipement (FGTE, 운송 및 시설 일반노조)

❍ 지도부

- 사무총장: Laurent Berger
- 사무차장: Véronique Descacq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Boulevard de la Villette 4
F - 75955 Paris Cedex 19, France
• 전화: +33 14 203 8000
• 팩스: +33 14 203 8074
• 이 메일: international@cfdt.fr
• 웹사이트: www.cfdt.fr

4) 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95년 리모주에서 창립된 CGT는 처음부터 사회주의자와 생디칼리스트 등의 이념적 분리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 1914년 이전에는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나 제1차 세계대전 중 CGT 사무총장이 장관으로 복무하기도 하였음.
- 처음에 30만여 명에 불과했던 조합원 수가 1920년에는 2백50만 명으로 급증하였음. 그러나 러시아혁명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야기된 긴장에 의해 혁명적 소수회원이 추방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1921년 CGTU가 결성되었음.
- CGTU 및 CGTU와 연대한 프랑스공산당(PCF, 1920년 결성)은 CGT와 심한 이념적 투쟁을 벌였음. 그러나 인민전선시기인 1936년, CGTU는 다시 CGT에 결합했고, 이 통합조직이 주도한 일련의 파업으로 조합원 수가 급증하였음.
- 1936년 말까지 CGT는 조합원 수가 4-5백만 정도의 강력한 조직이었으나 비우호적 정치상황으로 인해 1939년까지 조합원 수가 4분의 1로 감소하였음.
- 1939년 독일-소련협정 결과 공산주의자가 축출되었고, CGT도 비쉬정부에 의해 해산되었음. 그 후 CGT는 지하조직으로 활동하였으나 1943년 5월 공산주의자가 다시 CGT에 수용되었음. 공산주의자가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거나 공동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1946년부터 1947년에는 공산주의자가 대부분의 CGT 기구를 장악했음.
- 1977년 이후 프랑스공산당의 쇠퇴 등 정치적 변화로 CGT 조합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강력했던 중공업이 쇠퇴하고

사회적 경제적 근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소기업 부문 사무직 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이 조합원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됨.

- 1990년대 CGT는 공산당과의 유기적 관계를 단절하고, CFDT와 함께 산업재판소, 노동위원회 등에서 유사한 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오늘날 프랑스 노사관계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68만 명(ITUC 등록 조합원 수)
- CGT 총연맹은 지부, 지역노조평의회, 주(département) 노조평의회 및 가맹 전국 산별노조로 구성됨.

*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광역단위인 레지옹(région), 그 밑의 데파르트망(département),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으로 구분됨. CGT는 21개 레지옹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음.

❍ 회원조합

- FD CGT Agro-ALIMENTAIRE ET FORESTIERE(농업-식품 · 임업노조)
- FD CGT AUDIO-VISUAL SPECTACLE(오디오 · 비디오 연예노조)
- FD CGT DE L'EDUCATION, DE LA RECHERCHE ET DE LA CULTURE(교육, 연구 및 문화 노조)
- FD CGT L'EQUIPEMENT ET DE L'ENVIORNNEMENT(시설 · 환경노조)
- FD CGT DE LA SANTE ET DE L'ACTION SOCIALE(건강 · 사회활동 노조)
- FD CGT DES FINANCES(재정관련노조)

- FD CGT DES INDUSTRIES CHIMIQUES(화학산업노조)
- FD CGT DES JOUNALISTES(저널리스트노조)
- FD CGT DES MINES ET DE L'ENERGIE(광산 및 에너지노조)
- FD CGT DES OFFICIERS DE LA MARINE MARCHANDE(해상 · 상업 관련 사무직노조)
- FD CGT DES PERSONNELS DES ORGANISMES SOCIAUX(사회기구 종업원노조)
- FD CGT DES PERSONNELS DU COMMERCE DE LA DISTRIBUTION ET DES SERVICES(분배와 용역에 관한 상사종업원노조)
- FD CGT DES PORTS ET DOCKS(항만노조)
- FD CGT DES PROFESSIONNELS DE LA VENTE (판매업노조)
- FD CGT DES SALARIES DE LA CONSTRUCTION(건설노동자노조)
- FD CGT DES SERVICES PUBLICS(공공서비스노조)
- FD CGT DES SOCIETES D'ETUDE, DE CONSEIL ET DE PREVENTION(연구, 상담 및 예방관련 기관 노조)
- FD CGT DES SYNDICATS DE TRANSPORTS(운송조합노조)
- FD CGT DES SYNDICATS MARITIMES(해상조합노조)
- FD CGT DES TABACS ET ALLUMETTES(담배 · 성냥제조노조)
- FD CGT DES TRAVAILLEURS CADRES ET TECHNICIEMS DE CHEMINS DE FER(철도기술직노조)
- FD CGT DES TRAVAILLEURS DE L'ETAT(정부기관 노동자노조)
- FD CGT DES TRAVAILLEURS DE LA METALLURGIE CGT(CGT 제련노동자노조)
- FD CGT DES TRAVAILLEURS DES INDUSTRIES DU BOIS, DE L'AMEUBLEMENT ET CONNEXES(목조산업, 실내장식 및 관련 산업노조)

- FD CGT DES TRAVAILLEURS DES INDUSTRIES DU LIVRE, DU PAPIER ET DE LA CERAMIQUE(출판, 제지 및 도자기산업 노조)
- FD CGT GENERALE DES SYNDICATS DE LA POLICE (경찰 일반노조)
- FD CGT TEXTILE HABILLEMENT CUIR(직물, 의류, 피혁산업노조)
- FD NATIONALE DES SALARIES DU SECTEURE DES ACTIVITES POSTALES ET DE TELECOMMUNICATIONS CGT(CGT 체신 및 전기통신노조)
- FEDERATION DES SYNDICATS DU PERSONNEL DE LA BANQUE ET DE L'ASSURANCE CGT(CGT 은행 및 보험노조)
- UNION GENERALE DE FEDERATIONS DE FONCTIONNAIRES CGT(CGT 공무원 연합 일반노조)

❍ 특별조직

- 전국연금수령자조합(UCR): 연금수령자를 위한 조합으로, 총연맹과의 연락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함. “신생활”이라는 특별 전국저널을 발행하고 있음.
-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일반노조(UGICT): CGT의 조합원인 전문직, 관리직, 감독직, 기술자를 위한 특별조직으로, “옵션(Options)”이라는 특별 전국저널을 발행하고 있음.

❍ 재원

- 의무금은 개별 조합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됨. 액수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총액의 1% 또는 연금(국민연금 및 기업연금) 총액의 0.5%임.

❍ 국제활동

- ITUC(CGT는 1995년 공산주의 지향적인 WFTU에서 탈퇴해 2006년 ITUC에 가입), ETUC, OECD-TUAC 가입

(3) 주요 현안

- 노동시간 유연화 반대 투쟁: CGT는 근대화와 신기술이 노동시간 단축과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사용자들이 24시간 기계를 가동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데만 신기술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난함. 또한 노동시간과 임금의 유연화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초래했다고 보고 1987년 여성에게 야간노동을 허용하는 쉬락 법제에 강력 반대했으며, 규제완화와 유연성 증대에 동의한 다른 노총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음.
- 연금개혁 반대투쟁: CGT는 알랑 주페의 복지국가개혁(특히 연금과 관련된)에 반대하는 1995년 총파업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

(4) 연락처

• 263 Rue de Paris
F - 93516 Montreuil Cedex, France
• 전화: +33 14 818 8000
• 팩스: +33 14 818 8460
• 이 메일: cabsg@cgt.fr
• 웹사이트: www.cgt.fr

5) CGT-FO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Force Ouvrière)

(1) 창립과정 및 발전

- CGT의 공산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룹이 이탈해 1948년 창립하였음. 조직 내부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1947년 말 대대적인 공산주의자 주도 파업이 중도좌파 정부가 이끄는 전후 프랑스의 복구 노력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이탈의 이유였음.
- 또 다른 이탈의 이유는 미국의 유럽원조정책인 마샬플랜에 대해 CGT 지도부는 이를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라며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CGT-FO는 찬성했기 때문임.
- 이탈 당시 조합원 수는 약 1백만 명이었는데, 대부분 사무직 및 공공분야 노동자였음. 1906년 CGT가 창립될 때 천명한 민주적 원칙을 고수한다는 의미에서 조직의 이름도 여전히 CGT를 사용하였고, 프랑스에서 유일한 회원조합으로 국제자유노련(ICFTU)에 가입함.
- ICFTU의 유일한 회원조직이었으나 CGT-FO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음. 그 이유는 CGT 지지기반이 워낙 강력했고,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의 대안 조직으로 CFDT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임(CFDT는 1979년에 ICFTU에 가입).
- CGT-FO가 정치적 · 종교적으로 독립을 강조한 데 반해 CGT는 공산당, CFDT는 사회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 CGT와 CGT-FO의 조직적 긴장관계는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이 와해로 해빙무드에 돌입하였음.
- 1996년 총회에서는 선거에 패배한 불만 그룹이 이탈해 UNSA(Union National des Syndicats Autonomes)를 결성하였는데, UNSA는 현재 ETUC와 OECD-TUAC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해 있음.

- 2000년대에 들어 조직내부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도부가 안정되기 시작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70만 명(ITUC 등록 조합원 수)
- 지역본부: 100여 개

❍ 회원조합
- ACTION SOCIALE, ADMINISTRATION GÉNÉRALE DE L'ÉTAT, AGRICULTURE, ALIMENTATION, BATIMENT, CHEMINOTS, COIFFURE, DÉFENSE, ENSEIGNEMENT, EMPLOYÉS ET CADRES, ÉNERGIE ET MINES, FEETS-FO, FINANCES, FONCTIONNAIRES, FÉDÉCHIMIE, LIVRE, MÉTAUX, MINEURS, PHARMACIE, POLICE, POSTES ET TÉLÉCOMMUNICATIONS, SERVICES PUBLICS, TRANSPORTS ET LOGISTIQUE, SPECTACLE, PRESSE, AUDIOVISUEL, UNION DES CADRES ET INGÉNIEURS

❍ 지도부
- 위원장: Jean-Claude Mailly(2004~현재),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141 Avenue du Maine,
  75680 Paris, France
- 전화: +33 1 4052 8200
- 팩스: +33 1 4052 8202
- 웹사이트: www.force-ouvriere.fr

6) CFTC (Confédération Française des Travailleurs Chrétie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19년, 가톨릭 사회주의 성향의 321개 노동조합, 10만 여명의 조합원으로 결성됨.
- 1920년 세계노련(WCL)의 전신인 IFCTU(International Federation of Christian Trade Unions)의 창립에도 참가함.
-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동조합이 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하운동으로 활동하였고 CGT와의 협력도 강화했지만 조직통합에는 반대함.
- 가톨릭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1947년, 규약을 변경하고 가톨릭교회와의 관계를 이완하는 등 개혁을 통해 조직화 사업 확장을 시도함. 1964년에는 개혁파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조직명을 CFDT(Confédération Française Démocratique du Travail)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 CFTC의 소수파가 된 가톨릭 사회주의자들은 이탈하여 기존명칭인

CFTC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조합원에게 가톨릭교도를 강요하지 않게 됨.

- CFTC는 노동자 계급투쟁과 노조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14만 명(ITUC 등록 조합원 수)

❍ 지도부

- 위원장: Jacques Voisin
- 사무총장: Jacky Dintinger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13 rue des Ecluses – Saint Martin
  75483 Paris, France
- 전화: +33 1 4452 4900
- 팩스: +33 1 4452 4918
- 이 메일: communication@cftc.fr
- 웹사이트: www.cftc.fr

16. 핀란드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했는데 독립 이전인 1907년, 핀란드 사민당에 의해 18개 회원조합 2만5천 명의 조합원을 가진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핀란드노총 SAJ가 출범함.
- SAJ는 1930년 정부에 의해 해체되고, 같은 해에 현재의 제1노총인 SAK(Suomen Ammattiliittojen Keskusjärjestö)가 출범함.
- 제2차 세계대전 후 SAK는 SAJ 그룹의 부활로 조직분열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1960년에 재통합을 하게 됨.
- 1950년, 대졸 전문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국단위 노조인 AKAVA(Confederation of Unions for Academic Professionals in Finland)가 설립됨. 1922년 설립된 사무직 노동조합 단체인 TVK를 통합한 STTK(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가 있음.
- 조직률은 1999년에 76.3%였으나 2011년 기준 69.0%로 하락함.
- 단체협약 적용률은 94%이며, 유효기간은 3년임.
- 조합비는 산업별로 다르며 임금 총액의 1~2%임. 노조가입 권장을 위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음.

2) SAK (Suomen Ammattiliittojen Keskusjärjestö)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07년에 창립된 SAJ가 1930년 정부에 의해 해체되자 SAJ를 이어받아 SAK(Suomen Ammattiliittojen Keskusjärjestö)가 출범함.

- 정치적으로 독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사민당과의 관계는 긴밀함.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를 조직화함.
- 산별교섭에 참여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1백만 명
- 지역본부: 약 110개

❍ 회원조합
- 제조산업
  - Construction Trade Union (건설)
  - Finnish Electrical Workers' Union (전기)
  - Finnish Food Workers' Union (식품)
  - Industrial Union TEAM (인더스티리얼 유니온)
  - Metalworkers' Union (금속)
  - Paperworkers' Union (문서업무)
  - The Wood and Allied Workers' Union (목재)
- 공공부문
  - Trade Union for the Public and Welfare Sectors (JHL, 공공복지)
  - Border Security Union (JHL cooperation union, 국경보안)
  - Finnish Customes Officers' Union (JHL cooperation union, 세관)
  - Finnish NCOs' Union (JHL cooperation union, 하사관)
  - Finnish Prison Officers' Union (JHL cooperation union, 형무소)

- 민간서비스
  - Finnish Elite Athletes Union (운동선수)
  - Finnish Musicians' Union (음악가)
  - Service Unions United (서비스노조)
  - Theatre and Media Employees in Finland (극장 · 미디어)
  - Union of Foremen in Commerce (SAK's member via the Palvelualan Unioni PaU)
- 운수
  - Finnish Aviation Union (항공)
  - Finnish Cabin Crew Union (승무원)
  - Finnish Locomotivemen's Union (기관사)
  - Finnish Post and Logistics Union (체신 · 물류)
  - Finnish Railwaymen's Union (철도)
  - Finnish Seamen's Union (선원)
  - Finnish Transport Workers' Union (운송)
  - Railway Salaried Staff's Union (철도임금노동자)
- 언론
  - Finnish Social Democratic Journalists' Union (사회민주주의 언론)
  - General Union of Journalists (일반 언론)

❍ 운영체계

- 총회는 5년마다 개최되고 일반이사회는 연 2회 개최됨. 집행위원회는 20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도부

- 위원장: Lauri Lyly

Eija Hietanen(여), ITUC 부위원장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3) 연락처

- Hakaniemenranta 1 A, 3rd fl.
  00530 Helsinki
  Finland
- 전화: +358 20 774 000
- 팩스: +358 20 774 0225
- 이 메일: sak@sak.fi
- 웹사이트: www.sak.fi

3) STTK (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22년 설립된 사무직노동조합의 경쟁조직인 TVK가 1990년 초에 파산하자 STTK의 조합원 수는 배가 됨.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등 모든 분야의 사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 핀란드 제2노총조직으로, 산별교섭에 참여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65만 명

❍ 회원조합

- TEHY(의료), TU(사무직), Pardia(공공), KVL(지자체), SuPer(간호사), SUORA(금융)

❍ 지도부

위원장: Antti Palola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3) 연락처

- Mikonkatu 8 A, 6. krs,
  00100 Helsinki, Finland
- 전화: +358 9 131 521
- 이 메일: sttk@sttk.fi
- 웹사이트: www.sttk.fi

4) AKAV (Confederation of Unions for Academic Professionals in Finland)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50년 설립되었으며, 대졸 전문직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여성 조합원이 남성보다 많음.
- 서비스분야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제조분야와 달리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0년 조합원 수는 37만명이었으나 2012년 56만명으로 크게 늘어남.
- 민간과 공공부문 조합원이 각각 50%이며, 산별교섭에 참여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56만 명

❍ 주요 회원조합

- Academic Engineers and Architects in Finland – TEK (엔지니어 건축)
- Association of Finnish Lawyers, Finnish Dental Association (법률가, 치과의)
- Finnish Medical Association (의료)
- Finnish Pharmacists' Association (약사)
- Finnish Union of Experts in Science (과학전문가)
- Finnish Union of Public Health Nurses (공공보건간호)
- Managers and Specialists in the Private Sector-YTY (민간부문 매니저/전문가)

- Sales and Marketing Professionals-SMKJ (판매 마케팅)
- Social Science Professionals (사회과학 전문가)
- Society of Finnish Professional Foresters (전문임업종사자)
- Finnish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산업안전간호사)
- Trade Union of Education in Finland (교육)
- Union of Finnish University Professors (대학교수)
- Union of Municipal Technical Professionals,-KTK (지자체 기술전문가)

❍ 지도부

- 위원장: Sture Fjader

❍ 국제 활동

- ITUC, ETUC, OECD-TUAC, NFS 가입

(3) 연락처

- Akava
  Maistraatinportti 2, FI-00240 Helsinki, Finland
- 전화: +358 20 7489 400
- 팩스: +358 9 142 595
- 웹사이트: www.akava.fi

제14장 동유럽

1. 러시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881년 농노해방으로 러시아의 공업이 시작되었으며, 소수의 소규모 노동자연합이 결성되었음. 대규모 노동조합 동맹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설립 목적은 노동자 경제 상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였음. 1895년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자 노동자그룹을 결집해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을 결성함.
- 1898년 제1차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대회가 개최되면서 마르크스주의자 단체가 전국적으로 결집했고 1903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당 대회에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음. 황제가 지배하는 전제군주국하에서 비합법적 당이었으며, 레닌의 혁명적 전략 전술을 주장하는 볼세비키에 의해 주도됨.
- 1905년 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총파업에 이어 평화시위를 하던 14만 명의 노동자에 대한 발포로 분노의 물결이 러시아 전역을 휩쓸면서 제1차 러시아혁명(1905~1907)이 촉발됨.
- 대규모 노동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1905년 가을, 산별 또는 기업별 노

동조합의 개별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중앙단체가 설립되었고, 1905년 9월 24일~10월 7일 모스크바에서 제1차 전러시아노동조합연맹대회가 개최됨.

- 제1차 러시아혁명이 와해되면서 노동운동은 1907년부터 암흑기를 맞이하지만, 1912년 레나광산 파업을 시작으로 혁명적 파업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
- 1917년 2월 제2차 러시아혁명(볼셰비키혁명)으로 공산당이 권력을 잡으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발전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함.
- 1922년 출범한 소련체제 하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혁명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으며, 노조 중앙조직으로 AUCCTU(All-Union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가 설립됨.
- AUCCTU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주도적 노조운동세력과 함께 세계노련(WFTU) 창립에 참여하였음.
- 1985년 Mikhail Gorbachev가 당서기로 임명되면서, AUCCTU는 과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기비판을 통해 조직혁신에 동참하는 듯 했으나 미온적이었음.
- 1989년 여름, 파업의 물결과 함께 AUCCTU와 무관한 노동자위원회가 결성되기 시작하자 1990년 AUCCTU는 외압을 무마하기 위해 GCTU (Gener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the USSR)를 출범시킴.
- 독립노조들이 우후죽순으로 결성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1990년에 광산노조가 설립됨.
- 1990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노동조합설립대의원대회에서 대다수 산별 및 지역별 노동조합연합체를 포괄하는 러시아노총 FNPR(Federatsiya Nezavisimykh Profsoyuzov Rossii)의 결성이 선포됨. 출범 당시 조합원 수는 9천만 명에 달함.
- 1992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사회노동관계 3자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4명의 노동계 대표 중 9명을 FNPR에 배정할 정도로 FNPR을 핵심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함.

- 1993년 FNPR이 중대한 조직적 위기에 처함. 당시 FNPR 위원장이었던 이고르 클로크코프가 옐친을 지지하지 않자 FNPR에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할이 박탈되었고 미하일 쉬마코프가 새 위원장이 됨.
- FNPR은 2000년에 ICFTU의 회원조합이 됨.
- FNPR은 집권 러시아연합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러시아 노동조합의 최우선 과제는 실업방지 및 고용보장으로, 국내 최초로 실업자위원회를 조직해 국회 예산을 지원받아 공공사업 부문에서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음. 또한 FNPR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체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2) 일반 개요

- 6년 임기의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2012년 3월에 실시된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63.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
- 2011년 11월 총선에서 드미트리브 메드베데프 수상이 이끄는 러시아연합당(United Russia)이 49.6%(238석), 러시아공산당 CPRF 19.2%(92석), 정의당 Just Russia 13.2%(64석), 자민당 LDPR 11.7%(56석), 6.3%를 확보함.
- 1990년 중앙 통제의 계획경제 체제였던 소련의 붕괴 후 러시아는 시장중심으로 경제체제를 개혁하면서 WTO에도 가입하고 점차 세계경제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거쳤음.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군수산업 이외의 경쟁력 있는 민간분야는 많지 않지만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전이 민영화를 동반함에 따라 부의 편중과 불평등이 심화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관계 냉각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3) FNPR (Federatsiya Nezavisimykh Profsoyuzov Rossii;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of Russia)

(1) 창립과정 및 발전

- 소연방 통치 하에서 생산성 증진과 혁명목표 달성을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전국노동조합중앙위원회(All-Union 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 AUCCTU)가 설립되었으나 1932년~1949년 동안 대의원대회가 한 차례도 개최된 바 없음.
- 1990년 AUCCTU가 내부개혁을 단행할 상황에 처하자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소련노동조합총연맹(General Confederation of Unions of the USSR: GCTU)으로 재출범함. 그러나 변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광산노동자 파업위원회 대표들이 독립된 노동조합을 신설함.
- 1991년 대규모 가격인상을 둘러싼 파업 등 새로운 국면에 직면한 GCTU는 정부와의 협상기반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결성된 FNPR이 1991년 2월 러시아 정부와의 대화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게 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수 : 2천7백80만 명(2007.1.1 현재), 러시아 노동조합 총 조합

원수의 95% 이상을 차지함.

- 구성 비율 : 전체 조합원 중 노동자가 78.8%, 대학생 및 학생이 13.7%, 퇴직 연금생활자가 7.5%임. 여성조합원이 전체의 56.9%이며, 35세 미만이 전체조합원의 26.3%에 달함.

❍ 주요 회원조합

- 러시아연방 국민교육 및 과학노동자 노동조합
- 러시아연방 농공산업체 노동자 노동조합
- 러시아연방 보건노동자 노동조합
- 러시아 철도 및 교통건설 노동자 노동조합
- 전국 생계보장 노동자 노동조합
- 러시아연방 석유가스산업 및 건설노동자 노동조합
- 러시아연방 국가 기관 및 공공노동자 노동조합
- 러시아 광공업 노동조합 등

❍ 운영체계

- 총회(Congress): 러시아노총 최고 의결기구로, 5년마다 소집됨. 노총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가 됨. 총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활동 보고 승인, 규약 확정, 개정 등의 업무. 위원장, 총 위원회 위원 선출 및 조기 해임. 일반이사회 위원 선출.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러시아노총(FNPR)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174명의 위원으로 구성(5년 임기, 여성 위원은 28명). 위원장, 부위원장,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일반이사회 위원. 총회가 열리지 않는 연도마다 최소 2회 개최. 러시아 사회-노사관계조정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할 노총대표들을 승인. 집행위원회 위원 선출.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단체행동 결정, 전년도 회계보고 심의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노총위원장의 결정 또는 집행위원회 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되며 2개월마다 1회 개최. 임기는 5년. 청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승인. 기타 총회 및 각종 위원회가 부여한 기능 수행
- 회계감사위원회: 임기 5년

❍ 지도부
- 위원장 : Mikhail Shimakov(1993년~현재),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ILO 정이사

❍ 부처
- 13개 부서(노조운동 준비개발부, 사회-노동관계 및 사회적 파트너부, 법률부 등)
- 산하기관 : 2개의 고등교육시설(모스크바 노동-사회관계 아카데미,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조합인문대학, 현재는 러시아 10여개 지역 및 CIS 국가에도 이 시설의 분교가 운영됨)
- 본부 사무총국 직원 : 약 150명

❍ 재원
- 조합비: 월 임금의 1%
- 기타 수입(강연료, 기부금 등)

❍ 국제활동
- ITUC, OECD-TUAC 준회원[26]

26) 러시아는 OECD 가입국이 아니지만 OECD-TUAC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노총대표

(3) 연락처

- 42, Leninsky Prospect,
  Moscow, 119119,
  Russian Federation
- 전화: +7 495 938 7720
- 팩스: +7-495 137 0694
- 이 메일: intersng@fnpr.ru
- 웹사이트: www.fnpr.org.ru

2. 체코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노동조합운동은 매우 분열되어 있었으며, 전쟁 중에는 노동조합들이 해체됨. 이후 1944년에 기독교계와 사회주의자 및 공산주의자 노동조합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조직을 재건함.
- 1948년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자 노동중앙조직인 URO(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만이 유일노동조직이 됨.
-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실패하자 노동조합운동도 소련체제로 변경돼 구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됨.
- 1989년 말 벨벳혁명 이후 공산당이 통제하는 URO와는 별도의 자유노동운동을 주도하는 ASC(Association of Committees)가 결성됨.
- ASC 계열은 URO의 노선과 강령에 찬성할 수는 없었지만 노동조합운

등을 준회원 자격으로 초청함.

동 분열을 막기 위해 노력했음. 1990년 3월 전국 사업장별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총회에 참석해 체코슬로바키아노동조합총연맹인 CSKOS를 결성했으며, 조합원 수는 약 550만명에 달함.[27]

-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단현실을 반영해 CSKOS는 출범 한 달 뒤인 1990년 4월, CSKOS의 체코-모라비안회의소(CMK; Czech-Moravian Chamber)와 슬로바키아노동조합총연맹(KOZ SR)으로 각각 출범함.
- 90년대 조직률은 30% 이상이었으나 2009년에는 17%대로 하락함.

2) 노사관계 개요

- 구소련 개혁의 영향으로 공산정권이 퇴진하고 1990년 6월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자유총선을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만성적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룩해 동유럽 내 체제전환 선도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경제위기로 체코의 경제는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 이후 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단결권이 법으로 보장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쟁의행위는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가능함. 단체교섭은 기업단위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함.

27)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인구는 약 1천5백만 명.

3) CMKOS (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1) 창립과정과 발전

- 1990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가 민족을 중심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체코족과 모라비안족을 중심으로 체코-모라비안노동조합회의소(CMKOS)가 결성됨[28].
- 1990년 6월 체코-모라비안노동조합회의소(CMKOS)는 체코-슬로바크노동조합총연맹(Czech and Slovak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으로 변경되면서 1992년 슬로바키아가 공식 분열되기 전까지 조직통합 노력을 계속함.
- 그러나 결국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1992년 11월에 체코-모라비안노동조합회의소(Czech-Moravian Chamber of Trade Unions)가 공식 분리되어 출범하였음. 1998년에는 '회의소(chamber)' 대신 '총연맹(confederation)'을 사용하면서 CMKOS(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로 개칭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77만 명(ITUC 등록 조합원 수는 37만 명)

❍ 회원조합

- Trade Union of Workers in Mines, Geology and Oil Industry

28) 전체인구 중 체코족이 64%, 모라비안족이 5%, 구분 불가능한 그룹이 26%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체코어를 사용해 언어적 동질성이 높음.

(광산 · 지질 · 석유)
- OS ECHO (Trade Union of Energy and Chemical Workers, 에너지 · 화학)
- Czech Metalworkers' Federation (OS KOVO, 금속)
- Trade Union of Building Workers of the Czech Republic (OS STAVBA, 건설)
- Universities Trade Union (대학)
- Trade Union of Workers in Woodworking Industry, Forestry and Management of Water Supplies (삼림 · 물 공급)
- Trade Union of Workers in Textile, Clothing and Leather Industry of Bohemia and Moravia (섬유 · 의류 · 피혁)
- Trade Union UNIOS (Communal Services, 공중서비스)
- Independent Trade Union of Workers in the Food Industry and Allied Trades of Bohemia and Moravia (식품산업)
- Trade Union of Workers in Postal, Telecommunication and Newspaper Services in the Czech Republic (체신 · 텔레콤 · 신문)
- Trade Union of Workers in Commerce (상업)
- Trade Union of State Bodies and Organisations (정부기구)
- Trade Union of Banking and Insurance Workers (은행 · 보험)
- Trade Union of Health Service and Social Care in the Czech Republic (건강서비스 · 사회보호)
- Czech - Moravian Trade Union of Workers in Education (교육)
- Czech - Moravian Trade Union of Civilian Employees of the Army (군대 민간직원)
- Czech Moravian Trade Union of Catering, Hotels and Tourism (케이터링 · 호텔 · 관광)

- Trade Union of Fire Fighters (소방)
- Trade Union of Transport (운수)
- Trade Union of Workers in Science and Research (과학 · 연구)
- Trade Union of Workers in Production and Specialised Organisations of Culture (문화창조)
- Trade Union of Employees in Aviation (항공)
- Trade Union of Workers of Cultural Facilities (문화시설)
- Trade Union of Workers of Culture and Nature Protection (문화 및 자연보호)
- Trade Union of Employees in Libraries (도서관직원)
- Actors' Association (배우)
- UNIE - Trade Union of Professional Singers of the CR (전문가수)
- UNIE - Professional and Trade Union of Orchestral Musicians of the CR (오케스트라 음악가)
- North-Bohemian Association of Trade Union Organisations in Mining Industry (광산)

❍ 지도부

위원장: Josef Stredula (2014년 선출)

부위원장: Vit Samek, Radka Sokolova(여)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CMKOS
  nám. W. Churchilla 2, 11359 Praha 3, Czech Republic
- 전화: +420 23 446 1111
- 이 메일: cmkos@cmkos.cz
- 웹사이트: www.cmkos.cz

3. 폴란드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70년대 공산당 치하에서도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시도와 분규 · 파업이 발생해 사상자와 해고자가 발생하기도 함.
- 유일 노동조합단체는 노동조합중앙협의회(Central Council of Trade Unions)였지만, 1980년 '자유노조(Solidarność)'가 조직되었고 대중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가 자유노조를 인정함.
- 자유노조는 전성기 때 거의 모든 임금노동자가 가입돼 조합원이 950만 명에 달한 적도 있었음.
- 1982년 노동조합법에 의해 자유노조 Solidarność가 해체되고, 1984년 전국노동조합연합(All-Poland Alliance of Trade Unions)이 결성됨.
- 자유노조 Solidarność는 지하활동을 계속했으며, 1980년 후반기에 다시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함.
- 1989년 폴란드 공산당 정부는 정치적 압박과 경제위기로 인해 자유노조 Solidarność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자유선거를 실시하였

으며, 이에 따라 Solidarność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함.

- 1980년대 자유노조의 연대적 투쟁에 힘입어 조직률이 80%에 달했으나 현재 15%까지 하락해 EU 국가 중 조직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감소된 이유는 첫째, 노조가 노동자 권익보호보다 정치활동에 중점을 두어 노동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다는 점 둘째, 주로 대규모 국영기업체(광업, 제철업, 기계산업 분야 등)에는 조합원이 많았으나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분야의 고용이 감소했으며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점 셋째, 만성적인 높은 실업률로 노동자들이 노조활동보다는 취업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임.
- 2013년 현재 실업률이 10% 이상이며, 구직을 위해 다른 유럽국가로의 노동이주가 많음.

2) 노사관계 개요

- 폴란드는 동유럽과 중부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체제전환을 이룩한 국가임. 1989년 사회주의 진영과 반대파의 원탁회의에서 자유노조(Solidarność)의 합법화와 1989년 6월 4일의 자유선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짐.
- 노조활동과 관련해 노동조합법(Act of 23 May 1991 on Trade Union)을 별도로 두고 있음.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위임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음(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 퇴직 또는 장애연금수급자 및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음(노동조합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등기소(Krajowy Rejestr Sadowy)에 등기를 해야 함(노동조

합법 제14조).

- 중앙통계국(GUS) 자료에 따르면 1993년 파업이 7,443건에 달했으나 1997년 35건, 2001년 11건, 2002년 1건 등으로 감소하였음. 2003년에서 2004년에는 EU가입을 둘러싼 체제개혁으로 공공부문 파업이 적지 않게 발생했지만 2005년 이후 안정세를 되찾음.

3) NSZZ "Solidarność"

(1) 창립과정과 발전

- 1980년 9월, 36개 지역노조가 바웬사를 위원장으로 Solidarność를 결성하여 바르샤바법원에 등록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등록을 취소함.
- 1982년에는 대대적인 자유노조 탄압으로 모든 노동조합이 금지되고 바웬사를 포함한 많은 노조지도자가 구속되었으며, 7,000여 명이 강제수용소에 수용됨.
- Solidarność가 조직부활을 이룩한 것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경제상황이 심각했던 1989년 하원의원 선거였음. 당시 경선이 이루어진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Solidarność 지지 후보가 당선됨.
- 1990년에는 바웬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1995년 선거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함.
- Solidarność가 정치세력인지 혹은 노동조합인지의 의문은 계속되고 있음. 노조의 정치 활동에 실망한 노동자의 이탈이 Solidarność 조합원 수 감소와 관계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임.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ITUC 등록 조합원 수: 62만 명)

❍ 회원조합

- 16개 지역노조

❍ 지도부

- 위원장: Piotr Duda
- 재무총장: Jerzy Jaworski

❍ 국제활동

- ITUC, ETUC, OECD-TUAC 가입
-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Andrzej Adamczyk

(3) 연락처

- NSZZ "Solidarność",
  80-855 Gdańsk ul. Wa ł y Piastowskie 24
  Poland
- 전화: +48 58 308 4232,
- 팩스: +48 58 308 4482
- 이 메일: zagr@solidarnosc.org.pl
- 웹사이트: www.solidarnosc.org.pl

4. 헝가리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최초의 노동조합은 1860년대에 결성되었으며, 1899년에는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에 의해 중앙노동조합협의회(Central Trade Union Council)가 설립되었음.
- 호르티 집권기인 1920년에서 1944년까지 모든 노동조합운동이 금지되었음. 공산당 집권후 중앙노동조합협의회는 헝가리노동조합중앙협의회(Central Council of Hungarian Trade Unions; SZOT)로 변경돼 소련과 동구권이 와해되기 전까지 약 40년간 유일 노동조합조직으로 존재하였음.
- 정치적 격변과 자유시장경제 전환 과정에서 1989년 단일노조체제가 와해되고 다수의 신설노조가 조직됨.
-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염원하는 약 2/3의 노동조합이 SZOT를 탈퇴해 새로운 헝가리노동조합총연맹(MSzOSz)을 결성하지만, MSzSz도 분열과 이탈의 과정을 겪게 됨.
- SZOT를 중심으로 한 단일노조체제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주요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음.
  - 헝가리전국노동조합연합(MSzOSz: Confederation of Hungarian Trade Unions): SZOT의 후계노조로 최대노조이지만 대표성과 정통성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음. 노사정 3자 협의기구체인 국가이익조정위원회(Interest Reconciliation Committee)에 참여했으며, ICFTU, ETUC에 가맹하였음.
  - 독립민주노동조합연합(LIGA: Democratic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SZOT 산하 민주과학자노조가 중심이 되어 1988년 신

설된 노조로, 국가이익조정위원회에 참여했으며 ETUC에 가맹하였음.

- 전국독립노동조합협회(ASzSz: Autonomous Trade Union Confederation):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140여개 협회가 연합해 1989-1990년에 조직된 ASZOK가 확대 개편된 노조로, 국가이익조정 위원회에 참여했으며 ETUC에 가맹하였음.
- 전문지식인노동조합협의회(ESZT: Confederation of Unions of Professionals): 1990년 SZOT에서 탈퇴한 고등교육노조가 중심이 돼 신설한 노조임. 주로 교원, 교수, 연구원 중심으로, 국가이익조정위원회에 참여했고 ETUC에 가맹하였음.
- 노동조합협력포럼(SzEF: Forum for the Cooperation of Trade Unions): SZOT에서 이탈한 교원노조가 중심이 되어 신설한 노조임. 국가이익조정위원회에 참여했으며 ETUC에 가맹하였음.
- 노동자평의회연합(MOSz: 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Councils): 각 기업 내에 조직되어 있던 직장협의회의 연합체로 1990년에 출범함.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다른 노조와 달리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조와 차이가 있음. WCL과 ETUC에 가맹하였음.
- 연대(Solidarity)연합: 이미 직장협의회가 존재하는 개별 사업장내 노동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MOSZ와 유사함. 국가이익조정위원회에 참여함.

- 조직률은 90년대초 3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는 17% 이하로 하락함.

2) 노사관계 개요

- 1989년의 정치 · 경제 · 사회적 변화에 따라 노동관계법 체계가 본격 정비되기 시작했음. 노동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자유로운 단체교섭을 방해했던 법적 장애물이 폐지됨. 파업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파업의 절차가 규정됨.
- 1991년 고용법 제정으로 전국직업훈련협의회(National Training Council)와 국가이익조정협의회 산하에 노동시장위원회(Labour Market Committee)가 설치됨.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재산공개와 재산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노조탈퇴를 금지함. 노동조합 선거결과에 따라 구노조의 재산을 배분토록 하였으며, 1992년에는 신노동법 발표해 노동법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규율함.
- 1992년 제정된 헝가리의 노동법(Labour Code)은 집단법과 개별법을 아우르는 단일법체계를 취하고 있음. 이는 민간부문의 집단적 노동관계 및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최저기준이라는 데 의의가 있음. 공공부문 노동관계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됨.
- 헝가리의 노동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설립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노조의 설립 또는 기능에 국가의 승인,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노동조합은 법인체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어 재산에 관한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3) MSzOSz (Magyar Szakszervezetek Szövetsége: Confederation of Hungarian Trade Unions)

-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로 대변화가 이루어지자 1990년 3월에 SZOT

가 해산되고 MSzOSz가 새로 출범함.
- 조합원 수: 약 70만 명 (2014년 현재 ITUC 등록 조합원 수: 35만 명)
- 국제활동: ITUC, OECD-TUAC, ETUC 가입
- 연락처
  - Magyar Szakszervezetek Szövetsége MSZSZ Városligeti fasor 46-48H-1068 Budapest Hungary
  - 전화: +36 1323 2656
  - 팩스: +36 1323 2651
  - 이 메일: kgyorgy@mszosz.hu

4) LIGA (Democratic League of Independent Trade Unions)

- 1989년 창립된 헝가리 최초의 민주노조임.
- 1993년에 실시된 사업장평의회 선거에서 MSzOSz에 이어 제2의 전국적 대표노동조합 조직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음.
- 조합원 수: 11만 명
- 국제활동: ITUC, OECD-TUAC, ETUC 가입
- 연락처
  - Democratic League of Independent Trade Unions LIGA President Ajtósi Dürer sor 27/AH - 1146 Budapest Hungary
  - 전화: +36 1321 5262
  - 팩스: +36 1321 5405
  - 이 메일: info@liganet.hu
  - 웹사이트: www.liganet.hu

5) MOSZ (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Councils)

- 공산당 치하에서 활발하지 못했던 기독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1989년에 결성된 노동조합단체임.
- 2006년 ITUC 통합 이전 WCL의 가맹조직이었음.
- 조합원 수: 4만5천 명
- 국제활동: ITUC, ETUC 가입
- 연락처
  - 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Councils MOSZ
    President Szarvas Gábor út 9/BH - 1125 Budapest, Hungary
  - 전화: +36 1275 1445
  - 팩스: +36 13942802
  - 이 메일: mosz@munkastanacsok.hu
  - 웹사이트: www.munkastanacsok.hu

제15장 북미

1. 미국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미국의 노동조합 역사는 1880년대부터 시작됐음. 1881년에 조직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Organized Trades and Labor Unions)이 결성되었고, 1886년에 현 미국노총의 한 축이었던 업종별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이 결성되었음. 유럽 노동운동과 달리 정치적 ·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기보다 교섭을 통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함.
- 1929년 대공황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수정자본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뉴딜정책이 실시되고 노조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AFL 조직들이 이탈해 1935년 산업별노조위원회(Committee of Industrial Organizations)를 결성하였음. 1938년에는 CIO(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식 출범함.
- 1955년에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과 CIO(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가 통합함. 전체 조직노동자의 82%인 1천 6백만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통합 초대위원장에 George Meany가 선출됨.
- 조직률은 1950년대 35%, 2000년 12%, 2013년 10.8%로 하락함.

- 70년대 후반 민주당의 우경화와 1980년 공화당 보수정권의 출범으로 규제철폐, 민영화 등이 단행되면서 조직화가 잘 되어 있던 산업분야가 큰 타격을 입음으로써 조합원 감소가 두드러졌음.
- AFL-CIO는 조직률 하락에 위기를 느꼈고 이에 1995년 대의원대회에서 개혁과 조직확대의 기치를 내건 존 스위니(전 SEIU 위원장)가 위원장에 당선되었음.
- 2003년 서비스노조(SEIU), 식품상업노조(UFCW), 트럭운전사노조(Teamsters), 건설공노조(LIUNA), 목수조립공노조(UBC), 농업노동자노조(UFW), 섬유의류관광노조(UNITE HERE) 등 7개 가맹 조직이 '새로운 단결 파트너십'(New Unity Partnership)을 결성하였음. 2005년 AFL-CIO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7개 노조는 6백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승리를 위한 변혁'(Change to Win)이라는 독자노총을 결성함.
- AFL-CIO의 대안으로 출범한 Change to Win(CtW)의 7개 참여 노조 중 식품상업노조(UFCW)와 건설공노조(LIUNA), 섬유의류관광노조(UNITE HERE)는 AFL-CIO로 재가입하였음. CtW 조직의 AFL-CIO 복귀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중심조직인 서비스노조(SEIU)와 트럭운전사노조(Teamsters)의 행보가 변수임.

2) 노사관계 개요

- 1933년 미국 정부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개혁을 위해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Board)'[29]를 설치하였음.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와그너의 이름을 따서 '와그너법'으로 알려진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30]이 1935년에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노조결성 및 단체

29) 사용자 대표 1인, 노동조합 대표 3인, 1인의 공익의장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30) 이 법의 핵심은 ⅰ)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결성권 인정(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부여) ⅱ) 사용자의 황견계약(노조불가입을 전제로 고용) 금지 ⅲ) 부당노동행위 명문화 및

교섭 권리가 명시되고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됨.

- 1947년 제출된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이 1951년 통과됨. 와그너법과는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노조에도 적용하며, 사용자의 경영권 보장, 개인의 자유결정에 의한 노조가입, 파업과 보이콧 수단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31]. 특히 노동자의 '일할 권리(Right to Work)[32]' 도입이 허용됨.
- 1959년 '노사보고 및 공개법(Labor-Management Reporting and Disclosure Act)'이 통과됨. 랜드럼-그리핀법(Landrum-Griffin Act)이라 불리는 이 법은 50년대 후반 노조의 부패와 노조간부의 전횡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연방정부에게 직접 노조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였음. 미 노동부가 노조재정을 감독하고(매년 재정보고 의무화) 노조가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였음.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사용자 공세 등으로 조직률이 하락하였으며(2005년 12%), 양보교섭, 분산교섭이 증가함.
- 미국의 노동운동은 '실리주의적 노동운동'(business unionism)이라 불리는 이익집단 운동의 성격이 지배적이며, 정규직 조직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대개 단체교섭의 효과는 조합원에게만 국한되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간에 큰 임금격차와 고용조건 격차가 존재함.
- 미국의 노사관계는 다자간 노사관계(Industrial Pluralism)로 정의될 수 있음. 즉, 노사 당사자주의는 존중되지만 동시에 정부가 노사관계의

노조를 산업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 ⅳ) 전국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ⅴ) 단체교섭을 위한 대표권 선거, 다수결에 의한 배타적 교섭당사자 인정, 사용자 단체교섭 의무화.

31) 클로즈드숍도 불법화되었으며 유니업숍도 조합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둠.

32)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을 때 개별 노동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노조의 결정을 어기고 작업에 임할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노조의 권리를 크게 제한함.

명확한 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단체교섭 전체 과정도 잘 제도화 되어 있음.

- 노사 양자는 정부의 규제 하에서 일종의 대타협을 이루어 왔음. 즉, 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갖지만 노조의 권리행사가 자유로운 시장경제 논리를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의 경영권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타협적 입장임.

3) AFL-CIO

(1) 창립과정 및 발전

- 1860년대 전국노조조직이 결성되었으나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으로 와해됨. 이후 업종별 노조 연합체인 AFL(American Federation of Labor)이 미국 노조운동을 주도함.
- 1930년대 산별노조건설운동이 활발히 진행돼 1935년 '산업별조합협의회'(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CIO)가 설립됨. 당시 CIO는 미 정권의 뉴딜정책, 산업평화시기와 맞물려 조직력이 급속히 확대돼 1945년 35.5%의 조직률을 기록함.
- 1955년 업종별 노조인 AFL과 산업별 노조인 CIO가 통합돼 미국 전체노동자의 82% 이상을 포괄하는 AFL-CIO가 출범함.
- 1995년 AFL-CIO 대의원대회에서 SEIU 위원장이었던 존 스위니가 개혁과 조직 확대의 기치를 내걸고 위원장직에 당선되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약 1,250만 명 (ITUC 등록조합원 수: 840만 명)

❍ 회원조합: 56개의 전국 및 국제 노조(national & international[33])

- Actors' Equity Association (AEA, 배우)
- Air Line Pilots Association (ALPA, 항공기 조종사)
- Amalgamated Transit Union (ATU, 수송)
- 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AFGE, 공무원)
-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FM, 음악가)
- American Feder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AFSA, 학교행정)
-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주 · 자치공무원)
-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AFT, 교사)
- American Postal Workers Union (APWU, 체신)
- American Radio Association (ARA, 라디오)
- American Train Dispatchers Association (ATDA, 열차 발차계원)
- Associated Actors and Artists of America (4As, 배우 · 예술가)
- American Guild of Musical Artists (AGMA, 음악가)
- American Guild of Variety Artists (AGVA, 예술가)
- The Guild of Italian American Actors (GIAA, 이탈리아계 미국인 배우)
- Bakery, Confectionery, Tobacco Workers and Grain Millers

33) international union은 미국과 캐나다의 동일분야 노조가 결집해 활동하는 조직을 뜻함.

International Union (BCTGM, 제과 · 담배 · 정미)
- Brotherhood of Railroad Signalmen (BRS, 철도신호수)
- California School Employees Association (CSEA, 교직원)
-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CWA, 커뮤니케이션)
- Association of Flight Attendants (AFA-CWA, 비행기 승무원)
- Industrial Union of Electronic Workers (IUE-CWA, 전자)
-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 Employees and Technicians (NABET-CWA, 방송기술인)
- The Newspaper Guild (TNG-CWA, 신문)
- Printing, Publishing and Media Workers (CWA, 출판 · 미디어)
- Farm Labor Organizing Committee (FLOC, 농장)
- Glass, Molders, Pottery, Plastics and Allied Workers International Union (GMP, 유리 · 도예)
-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s, Moving Picture Technicians, Artists and Allied Crafts of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and Canada (IATSE, 연극무대, 영화기술인 및 예술인)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ridge, Structural, Ornamental and Reinforcing Iron Workers (Ironworkers, 철근공)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Fighters (IAFF, 소방사)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eat and Frost Insulators and Allied Workers (AWIU, 방열 · 서리방지)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IAM, 항공우주)
-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Union/IAM (TCU/IAM, 운송커뮤니케이션)
-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Boilermakers, Iron Ship Builders,

Blacksmiths, Forgers and Helpers (IBB, 조선 · 대장장이 등)
-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IBEW, 전기)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 (IFPTE, 엔지니어)
-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ILA, 항만노동)
- International Plate Printers, Die Stampers and Engravers Union of North America (동판인쇄, 스탬프, 도장)
- International Union of Allied Novelty and Production Workers (Novelty and Production Workers, 잡화 · 생산)
- International Union of Bricklayers and Allied Craftworkers (BAC, 벽돌공)
- International Union of Elevator Constructors (IUEC, 엘리베이터 제조)
- International Union of Operating Engineers (IUOE, 엔지니어)
- International Union of Painters and Allied Trad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UPAT, 화가)
- International Union of Police Associations (IUPA, 경찰)
- Laborers' International Union of North America (LiUNA, 생산직)
- National Postal Mail Handlers Union (NPMHU, 체신)
- Marine Engineers' Beneficial Association (MEBA, 해양엔지니어)
- Professional Aviation Safety Specialists (PASS, 항공안전)
- NFL Players Association (NFLPA, 선수)
- Nat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Association (NATCA, 항공교통통제)
- National Association of Letter Carriers (NALC, 집배원)
- National Nurses United (NNU, 간호사)
- National Taxi Workers Alliance (NTWA, 택시)

- Office and Professional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OPEIU, 사무전문직)
- Operative Plasterers' and Cement Mason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PCMIA, 미장 · 시멘트)
- Screen Actors Guild-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SAG-AFTRA, 스크린 액터)
- Seafarers International Union of North America (SIU, 선원)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heet Metal, Air, Rail and Transportation Workers (SMART, 운송)
- Transport Workers Union of America (TWU, 운송)
- UNITE HERE (접대 · 유흥산업)
- United Association of Journeymen and Apprentices of the Plumbing and Pipe Fitting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UA, 배관공)
- United Automobile, Aerospace & Agricultural Implement Workers of America International Union (UAW, 자동차항공농기구)
-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International Union (UFCW, 식품상업)
- 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UMWA, 광산)
-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USW, 철강 · 제지 · 고무 · 제조업)
- United Union of Roofers, Waterproofers and Allied Workers (Roofers and Waterproofers, 지붕 · 방수)
- Utility Workers Union of America (UWUA, 공익사업)
- Writers Guild of America, East Inc. (WGAE, 작가)

❍ 전국업종별위원회(trade department)[34]

-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Department (BCTD), www.bctd.org
- Maritime Trades Department (MTD), www.maritimetrades.org
- Metal Trades Department (Metal Trades), www.metaltrades.org
- Department for Professional Employees (DPE), www.dpeaflcio.org
- Transportation Trades Department (TTD), www.ttd.org
- Union Label and Service Trades Department (UL&STD), www.unionlabel.org

❍ 운영체계

- 대의원대회(National Convention)는 4년마다 개최됨. 위원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과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다수의 부위원장을 선출함. 2013년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도부 3명 외에 55명의 부위원장이 선출됨.
- 산별대표자회의(Executive Council)는 지도부 3명과 부위원장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연 2회 이상 개최됨. AFL-CIO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논의하고 일상업무를 지도함.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지도부 3명과 주요 회원조합 대표 10명으로 구성됨.
- 일반이사회(General Board)에서는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부의한 의제를 논의하는데, 주로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승인문제를 다룸. 산별대표자회의 위원과 각 가맹노조 대표 1인, AFL-CIO 규약에 따라 설립된 AFL-CIO 전국업종별위원회(trade department) 의장, 4명의 주노동연맹(state federation) 지역대표로 구성됨.

34) AFL-CIO 규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의장단을 구성해서 운영함.

❍ 지도부

- 위원장(President): Richard Trumka(2009년 선출. 변호사, 광산노조 출신, AFL-CIO 전 사무총장), ITUC 부위원장 및 일반이사회 정이사, OECD-TUAC 위원장
- 사무총장(Secretary Treasurer): Liz Shuler(2009년 최초 여성 사무총장으로 선출, 전기노조 조직활동가 출신),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 상임부위원장(Executive Vice-President): Tefere Gebre(2013년 선출, 이티오피아 출신 이민 1세대, 운수노조 및 조직활동가 출신)
- 지도부 3명 외에 부위원장 55명

❍ 부처

- 회계(Accounting)
- 캠페인(Campaigns)
- 시민권, 인권 및 여성권리(Civil, Human and Women's Rights)
- 디지털전략(Digital Strategies)
- 시설관리(Facilities Management)
- 정부업무(Government Affairs)
- 인사(Human Resources)
-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국제활동(International)
- 국내외 회의(Meetings and Travel)
- 상담(Office of General Counsel)
- 투자(Office of Investment)
- 조직(Organizing)
- 정책(Policy)

- 정치(Political)
- 공공업무(Public Affairs)
- 지원(Support Services)

❍ 국제활동

- ITUC, OECD-TUAC 가입
  ITUC의 최대 가맹비 납부조직(840만 명)으로,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3명의 정이사가 배정되어 있고, 여성위원회 할당에 따른 정이사가 1명 추가돼 모두 4명이 참여하고 있음.
- OECD-TUAC 위원장으로 Richard Trumka 위원장이 선출되었음.

(3) 주요 현안

- 학교,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건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개선,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보편적 의료보험 실시가 주요 현안이 되고 있음.
- 공정무역과 미국경제를 재활성화 함으로써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시대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 '임원진 연봉에 대한 주주표결법안'(Shareholder Vote on Executive Compensation Act: SVECA)에 대해 지지운동을 벌이고 있음. SVECA는 공기업 임원진의 연봉을 매년 주주들의 비구속력 투표(non-binding shareholder vote)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임.
- 산업안전보험 미적용자 보호, 내부고발자 보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산업안전 위반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위한 '미국노동자보호법'(Protecting America's Workers Act)에 대한 지지운동을 벌이고 있음.

(4) 연락처

- AFL-CIO
  815 16th St., N.W.
  Washington, D.C. 20006
  USA
- 전화: +1 202 637 5000
- 팩스: +1 202 637 5325
- 이 메일: aforsyth@aflcio.org
- 웹사이트: www.aflcio.org

2. 캐나다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캐나다 노동조합운동은 형성기부터 미국노조가 주도하는 국제노조(international union)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 미국의 와그너법으로 알려진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1935년)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됨.
- 캐나다직업노동회의(Trades and Labour Congress of Canada: TLC)는 직종별 노동조합연맹으로 1883년에 결성되었음.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일반노조의 성격인 캐나다노동회의(Canadian Congress of Labour: CCL)는 1940년에 결성됨.
- 1956년 TLC와 CCL이 통합해 캐나다노총 CLC(Canadian Labour Congress)이 출범함으로써 두 조직 간 갈등의 시대가 청산되고 연대의

시대가 전개됨.
- 캐나다 노동운동은 1961년에 창당된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출범과정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연방이나 주 선거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연방 및 주 공무원에게 노동조합권이 허용되면서 캐나다 노동운동은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함.
- 1970년대부터 미국 중심의 국제노조에서 이탈하는 조직이 생기면서 캐나다는 현재 국제노조(international union), 전국노조(national union),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 등으로 파편화됨.
- 2011년 기준 전체 조직노동자는 약 456만 명이며, 2013년 기준 조직률은 27%임.

2) 노사관계 개요

- 1982년 캐나다 헌법에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헌장(Charter of Rights)이 추가됨.
- 단체교섭권은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과 같이 다수의 노조에게 부여되며, 단체협약은 노조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 ILO 핵심협약 8개 중 협약 98호(단결권과 단체협상), 29호(강제노동금지), 138호(고용최저연령)가 비준되지 않음.
- 공무원임금동결 및 공공분야 파업노동자에 대한 작업복귀명령(back to work order)으로 ILO 결사위원회에 제소된 바도 있음.
- 캐나다는 연방이기 때문에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경우, 60%이상 찬성으로 가결된 파업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파업 시 피켓라인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협상은 단위사업장 중심으로 한 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형

태로 이루어지며, 연방 단위나 산업별 중앙교섭은 흔하지 않음.

3) CLC (Canadian Congress of Labour)

(1) 창립과정과 발전

- CLC는 1956년 TLC(Trades and Labour Congress of Canada, 1886년 설립)와 CCL(Canadian Congress of Labour, 1940년 설립)의 통합으로 설립됨.
- 2차 대전 종료와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노동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새로운 노동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경쟁보다는 단결을 하기 위해 통합조직이 출범함.
- 1970년대에 공공분야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면서 노조가 결성되었고 이들이 CLC에 가입함으로써 CLC 조합원이 증가함.
- 2013년 조직률은 30.0%이며, CLC의 조합원은 330만 명으로 캐나다 전체 조직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함.

(2) 조직현황

❍ 개요

- CLC 조직체계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화된 연방제의 형태를 띠고 있음. 그러나 몇몇 주를 제외하면 주 단위에 대한 CLC의 영향력은 미약하며 실질적인 힘은 개별노조(공무원, 금속, 자동차노조 등)에 있음.
- 회원조합은 의무금을 납부하는 전국노조(national union), 국제노조

(international union: 미국과 캐나다노조, 전체 조합원 중 약 28% 차지), 지역 또는 주 노조(regional or provincial union), 지방노조(local union), 지방노조협의회(local labour council) 등이 있음.

- CLC 회원조합은 노조지부(local)를 조직하고 있는데 산별노조, 국제노조, 지역 및 주 노조는 CLC에 매월 조합원 1인당 70센트(캐나다 달러로 약 660원 정도)를 의무금으로 납부하고, 기타 회원조합은 할인된 의무금이 책정되어 있음(2005년 규약).

❍ 회원조합

- Association of Commercial and Technical Employees, Local 1725 (CLC Directly Chartered Local, 상업기술)
- Alliance of Canadian Cinema,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ACTRA, 시네마 TV 라디오 예술가)
-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FM, 음악가)
- Air Line Pilots Association, International - Canada Board Office (ALPA, 항공사 파일럿)
- Amalgamated Transit Union (ATU, 수송)
- International Union of Bricklayers and Allied Craftworkers (BAC, 벽돌공 등)
- 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 (BCTF, 교사)
- Bakery, Confectionery and Tobacco Workers and Grain Millers International Union (BCTGM, 제과 제빵 담배 등)
- National Automobile, Aerospace, Transportation and General Workers Union of Canada (CAW-Canada, 자동차 항공 운송 등)
- Fish, Food & Allied Workers, CAW-Canada (CAW-Canada/FFAW,

수산업 식품)
- United Fishermen and Allied Workers' Union - CAW (CAW-Canada/UFAW 어부)
- Canadian Union of Labour Representatives (CEP/CULR-1, 노동조직 대표)
- Canadian Federation of Nurses Unions (CFNU, 간호사)
- Manitoba Nurses' Union (MNU, 간호사)
- New Brunswick Nurses' Union (NBNU, 간호사)
- Newfoundland and Labrador Nurses' Union (NLNU, 간호사)
- Nova Scotia Nurses' Union (NSNU, 간호사)
- Ontario Nurses Association (ONA, 간호사)
- Prince Edward Island Nurses Union (PEINU, 간호사)
- Saskatchewan Union of Nurses (SUN, 간호사)
- United Nurses of Alberta (UNA, 간호사)
- Canadian Farmworkers Union (CFU, 농장노동자)
- Canadian Marine Officers' Union (CMOU, 해병)
- Canadian Office and Professional Employees' Union (COPE, 사무전문직)
- Canadian Postmasters and Assistants Association (CPAA, 우체국장)
-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공공)
- Hospital Employees' Union (CUPE/HEU, 병원)
- 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 (CUPW, 체신)
- Congress of Union Retirees of Canada (CURC, 퇴직자)
-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 Canada (CWA/SCA Canada, 통신)
- Elementary Teachers' Federation of Ontario (ETFO, 초등학교 교사)
- Glass, Molders, Pottery, Plastics and Allied Workers International

Union (GMP, 유리 도예 플라스틱 등)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ridge, Structural, Ornamental and Reinforcing Iron Workers (IABSORIW, 장신구 철강 등)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re fighters (IAFF, 소방대원)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eat and Frost Insulators and Allied Workers (IAHFIAW, 절연 서리방지 등)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IAM&AW, 기계공 항공)
-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Moving Picture Technicians, Artists and Allied Crafts of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and Canada (IATSE, 극장 영화무대 기술)
-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IBEW, 전기)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 (IFPTE, 전문기술엔지니어)
-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ILA, 항만)
- 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Canada (ILWU, 항만 창고)
- Grain Services Union (ILWU Canadian Region) (GSU, 곡물서비스)
- International Plate Printers, Die Stampers and Engravers' Union of North America (IPPDSEU, 도장 스탬프)
- International Union of Operating Engineers (IUOE, 운전요원)
- Laborers' International Union of North America (LIUNA, 육체노동)
- National Union of the 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NUCAUT, 대학교수)
- National Union of Public and General Employees (NUPGE, 공공)
- NUPGE/British Columbia Government and Service Employees' Union

(NUPGE/BCGEU, 정부 서비스 직원)
- NUPGE/Canadian Union of Brewery and General Workers, Component 325 (NUPGE/CUBGW, 양조)
- NUPGE/Health Sciences Association of Alberta (NUPGE/HSAA, 보건)
- NUPGE/Health Scienc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NUPGE/HSABC, 보건)
- NUPGE/Manitoba Government and General Employees' Union (NUPGE/MGEU, 정부)
- NUPGE/Newfoundland & Labrador Association of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NUPGE/NAPE, 공공 · 민간직원)
- NUPGE/New Brunswick Union of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NUPGE/NBUPPE, 공공 · 민간직원)
- NUPGE/Nova Scotia Government and General Employees Union (NUPGE/NSGEU, 정부)
- NUPGE/Ontario Public Service Employees Union (NUPGE/OPSEU, 공공서비스)
- NUPGE/Prince Edward Island Union of Public Sector Employees (NUPGE/PEIUPSE, 공공)
- NUPGE/Saskatchewan Government and General Empoloyees' Union (NUPGE/SGEU, 정부)
- Ontario English Catholic Teachers Association (OECTA, 가톨릭교사)
- Office and Professional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OPEIU, 사무전문직)
- Ontario Secondary School Teachers' Federation (OSSTF, 중등학교교사)
- Professional Institute of the Public Service of Canada (PIPSC,

공공서비스전문연구소)
- 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SAC, 공공서비스)
- Agriculture Union (AU/PSAC, 농업)
- Canada Employment and Immigration Union (CEIU/PSAC, 고용 이민)
- Customs and Immigration Union (CIU/PSAC, 세관 이민)
- Government Services Union (GSU/PSAC, 정부서비스)
- National Component (NC/PSAC)
- Nunavut Employees Union (NEU/PSAC)
- National Health & Welfare Union (NHWU/PSAC, 보건복지)
- Natural Resources Union (NRU/PSAC, 천연자원)
- Unifor
- Union of Canadian Transportation Employees (UCTE/PSAC, 교통)
- Union of Environment Workers (UEW/PSAC, 환경)
- Union of National Defence Employees (UNDE/PSAC, 국방)
- Union of Northern Workers (UNW/PSAC)
- Union of Postal Communications Employees (UPCE/PSAC, 체신)
- Union of Solicitor General Employees (USGE/PSAC)
- Union of Taxation Employees (UTE/PSAC, 세금)
- Union of Veterans' Affairs Employees (UVAE/PSAC, 참전용사)
- Yukon Employees Union (YEU/PSAC)
- FTQ-Construction
-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서비스)
- Shipyard General Workers' Federation of British Columbia (SGWBC, 조선소)
- Sheet Metal Workers' International Association (SMWIA, 판금)
- Seafarers' International Union of Canada (SIU, 선원)

- Sydney and District General Workers Union, Local 1509 (SDGWU) (CLC Directly Chartered Local)
- Teamsters Canada
- Teamsters Canada Rail Conference (TCRC)
- Teamsters Canada Rail Conference Maintenance of Way Employees Division (TCRC-MWED)
- Telecommunications Workers Union (TWU, 텔레콤)
- United Association of Journeymen and Apprentices of the Plumbing and Pipe Fitting Industry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UA, 배관공)
- International Union, United Automobile, Aerospace and Agricultural Implement Workers of America (UAW, 자동차 항공 농기구)
- United Brotherhood of Carpenters and Joiners of America (UBCJA, 목수)
-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International Union (UFCW, 식품상업)
- United Mine Workers of America (UMW, 광산)
- UNITE HERE!
- United Steelworkers (USW, 철강)
- United Transportation Union (UTU, 운송)

❍ 운영체계

- 최고 의결기구인 CLC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됨. 1,000명 이하 노조에는 한명의 대의원이 배정되며 500명당 한명의 대의원이 추가됨. 주 및 지역노조에도 청년대의원과 함께 대의원이 배정됨. 위원장(President), 사무총장(Secretary Treasurer), 상임부위원장(Executive

Vice President) 2명은 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됨.

- 총회 하부기구로 이사회에 해당하는 대표자회의(executive council)가 있음. CLC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2명, 22명의 최대 회원조합 대표, 여성, 소수민족, 원주민, 레즈비언, 게이,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대표, 청년 및 퇴직자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연 3회 회의를 개최함.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CLC의 일상업무와 행정을 담당하며, 위원장, 사무총장 및 2인의 상임부원장을 포함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노조 대표가 균형있게 구성됨. 최소 연 4회 이상 소집됨.

❍ 지도부(2014년 총회에서 선출)

- 위원장(President): Hassan Yussuff(자동차노조 CAW 출신, 이민 1세대),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TUCA 의장(2012년 선출)
- 사무총장(General Treasurer): Barbara Byers(여, 주공무원노조 출신),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 상임부위원장(Executive Vice President): Donald Lafleur(우정노조 CUPW 출신), Marie Clarke Walker(여, 공무원노조 CUPE 출신)

❍ 국제활동

- ITUC, OECD-TUAC 가입

(3) 연락처

• Canadian Labour Congress
2841 Riverside Drive
Ottawa ONT K1V 8X7

Canada
- 전화: +1 613 521 3400
- 팩스: +1 613 521 4655
- 이 메일: president@clc-ctc.ca
- 웹사이트: web@clc-ctc.ca

4) CSN (Confede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 1921년 캐나다가톨릭노동총연맹(Confederation des Travailleurs Catholiques du Canada: CTCC)으로 출범했으며, 미국의 AFL 주도 노동운동이 캐나다 노동운동을 압도하는 데 대한 저항적 성격을 띠었음.
- 1960년 조직 명칭을 CSN으로 변경하고, 종교적 노동조합운동에서 탈피해 현실 노동운동으로 조직을 변화시킴.
- 1972년에는 투쟁전략의 차이로 일부 조직이 이탈해 CSD(Centrale des Syndicats Democratiques)를 결성함.
- ICFTU에 가맹했으며, 현재 통합 국제노총인 ITUC의 회원조합임.
- 조합원 수: 30만 명(ITUC 등록조합원 수)
- 위원장: Jacques Letourneau
- 연락처
  -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1601 Avenue De LorimierMontréal QUE H2K 4M5 Canada
  - 전화: +1 514 598 2252
  - 팩스: +1 514 598 2052
  - 이 메일: international@csn.qc.ca
  - 웹사이트: www.csn.qc.ca

제16장 중 · 남미

1. 멕시코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17년 헌법에서 노동권이 인정되었고, 1918년 노조연맹체인 CROM (Confederacion Regional Obrera Mexicana)이 설립됨. 1921년에는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CROM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조직 CGT(Confederacion General de Trabajadores)가 탄생함.
- 1936년 CTM(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설립 이후에는 CTM이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함.[35]
- 1943년에 결성된 CNOP(Confederacion Nacional de Organizaciones Populares)는 공무원, 기업가, 자유직업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가 모여 결성한 단체임.
- CTM과 별도로 1952년 결성된 CROC(Confederacion Revolucionaria de Obreros y Campecinos)도 기본적으로 제도혁명당(PRI)을 지지하는 노동단체였음.
- 1966년에 결성된 CT(Congreso del Trabajo)는 노동단체들의 회의체로

35) CTM의 Fidel Velasquez 사무총장은 1929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사무총장직을 맡았으며, 코퍼러티즘을 통해 정치적 킹메이커 역할을 함.

노동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함.
- 공공부문의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혁명당 정부는 공무원노조연맹(FSTSE)을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었음.

2) 노사관계 개요

- 노조설립을 위해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2노조가 법적으로 승인되기 어려움. 이들이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사회보장부(Labour & Social Protection Secretariat)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활동하게 됨.
- 북부 국경선지대의 마킬라도라(maquiladora) 수출가공공단을 제외하면 대개 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음. 조직률은 약 20%임.
- 멕시코는 ILO 핵심 협약 8개 중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와 제138호(고용최저연령)는 비준하지 않고 있음.
- 1960년 연방헌법 개정으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존재함.
- 공공분야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일노조만 허용되며, 자신이 속한 공공서비스노조(Federación de Sindicatos de Trabajadores al Servicio del Estado - FSTSE)를 탈퇴할 수 없음. 일반노동자 노조나 농민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임원의 재선이 허용되지 않는 등 노동조합권에 대한 규제가 있음.
- 파업은 인정되나 공공분야에서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전체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함. 파업예정일 10일 전에 알선중재위원회(Junta de Conciliación y Arbitraje, JCA)에 통보되어야 함.
- 수출가공지구로 조성된 마킬라도라(maquiladora) 지역은 저임금, 열악

한 근로조건, 부당해고, 노동권 탄압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코포러티즘이 멕시코 노사관계의 근간이 되어 있는데 노조는 집권 정치세력에 조합원을 동원해 주고 정치권은 노조에 특혜를 주고 있음.
- 코포러티즘은 국가, 노조, 사용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법적 제도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음. 공식노조에게는 특권을 부여하는 반면 독립노조의 성장은 억제해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고자 함.
- 1970년대에 노사정 삼자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경제상황을 고려해 실업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었음. 그러나 실제적인 단체교섭은 사업장 단위로 한정되어 있음.
- 각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알선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노조등록에 대한 법적 인정 여부와 파업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함.
- 특히 노동부와 알선중재위원회는 노조등록 심사권을 갖고 있어 등록될 노조의 성격과 지도부 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 따라서 알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공식노조에 유리하고 독립노조에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음.
- 파업은 알선중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파업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미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이라 선언됨. 불법선언조항은 1931년 연방노동법에 삽입된 이후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파업을 억제하고 있음.
- 정부 통계에 따른 노조조직률은 1984년 30%에서 2000년 20%로 하락하였음. 과거의 코포러티즘 구조와 비교해 볼 때 노동조합의 영향력도 급격히 약화됨.

3) CTM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México)

(1) 창립과정과 발전

- 1936년 설립되었으며 창립총회 때부터 멕시코공산당(PCM)과 좌파 노조와의 의견차이로 두 번이나 와해될 뻔한 위기를 맞이했음. 그러나 단결을 중시하는 지도부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제도혁명당 PRI(1946년 개칭)의 전신인 멕시코혁명당(PRM)의 노동조직으로 편제됨.
- 1947년 CTM 조직 내에 좌파가 축출되면서 사회주의노총인 WFTU를 탈퇴하고 자유주의노총인 ICFTU에 가입함.
- CTM은 1929년부터 2000년까지 71년 동안 집권해 온 제도혁명당(PRI)과 함께 해 왔으며, 정부의 조직적 · 재정적 특혜를 받으면서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함.
- 1966년 제도혁명당 PRI는 당 소속 36개 노동조합의 통합협의체로 CT(Congreso del Trabajo)를 결성했는 데 여기에는 CTM도 포함되었음.
- CTM의 전설적 지도자 피델 벨라즈케즈(Fidel Velazquez) 제도혁명당 PRI의 역대 대통령후보 선정에 대해 자문을 받을 만큼 강력한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비민주적이고 보수적 성향으로 1990년대에는 CTM의 조직기반이 약화되었고 1997년에는 내분을 겪기도 함.
- 1980년대 후반기부터 전문엘리트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면서 CTM의 제도혁명당(PRI)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2000년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자 CTM의 정치적 영향력도 급격히 감소되었음.
- 또한 CTM은 조직현장에 대한 영향력과 주도권도 약화되었고, 사용자의 요구에 호응하고 노동자와 조합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 2000년 대선에서 친사용자 성향의 국민행동당(PAN)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정부는 CTM과 어느 정도 전략적 협조관계는 유지했지만 다른 노조연합단체인 CROC(Confederacion Revolucionaria de Obreros Campesinos)와 긴밀한 체제를 구축함.
- 2006년 대선에서도 국민행동당(PAN)의 펠리페 칼데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제도혁명당(PRI)이 제일 큰 정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600만(ITUC 등록: 150만)

❍ 대표적 회원조합

- SME(Sindicato Mexicano de Electricista, 1914년 결성된 전기노조)
- SNTE(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on, 1943년 결성된 교육노조)
- STRM(Sindicato de Telefonistas de la Republica Mexicana, 1950년 결성된 전화 노조)
- FSTSE(Federacion de Sindicatos de Trabajadores al Servicio del Estado, 1938년 결성된 공무원 노조)
- SNTMMSRM(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Mineros Metalurgicos y Similaares de la Republica Mexicana, 1934년 결성된 광산노조)
- STPRM(Sindicato de Trabajadores Petroleros de la Republica Mexicana, 1935년 결성된 석유노조)

❍ 지도부

사무총장: Joaquín Gamboa Pascoe

❍ 국제 활동

- ITUC(150만 조합원으로 등록), OECD-TUAC 가입
-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로 국제처장 Graciela Larios Rivas(여)가 선출됨.

(3) 연락처

- CTM
  Vallarta No 8
  COL. Tabacalera
  Mexico DF 06030
  Mexico
- 전화: +52 55 5566 8407
- 팩스: +52 55 5566 8407
- 이 메일: ctmrelaciones@prodigy.net.mx
- 웹사이트: www.ctmorganizacion.org.mx

4) CROC (Confederación Revolucionaria de Obreros y Campesinos)

- 1952년 설립됨.
- 조합원 수: 450만명(ITUC 등록: 125만명)
- 회원조합 수: 17개
- 통합 국제노총 ITUC 회원조직이 되기 전에는 WCL 회원조직이었음.

- 연락처
  - CROC
    Rio Lerma 171-1 Col. Cuauhtemoc.
    Mexico DF 06500
    Mexico
  - 전화: +52 55 5208 2329
  - 팩스: +52 55 5208 3866
  - 이 메일: crocinternacional@hotmail.com
  - 웹사이트: http://www.croc.org.mx

5) CNT (Consejo Nacional de los Trabajadores)

- 조합원 수: (ITUC 등록: 6천명)
- ITUC 회원조직
- 연락처
  - CNT
    Dr. Velasco 161, Despacho 11
    Colonia Doctores, Delegacion Cuauhtémoc
    Mexico DF 06720
    Mexico
  - 전화: +52 55 5702 2440
  - 팩스: +52 55 5552 2848
  - 이메일: cnt_presidencia@yahoo.com.mx

6) UNT (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 민주노동운동을 주창하며 1997년 설립됨.
- ITUC의 회원조직(통합 이전에는 ICFTU 회원조직)
- 연락처
  - UNT
    Manuel Villalongiu 50
    Colonia Cuauhtemoc
    México DF 06500
    Mexico
  - 전화: +52 55 5705 4810
  - 팩스: +52 55 5703 2853
  - 이 메일: secretariageneral@strm.org.mx
  - 웹사이트: www.unt.org.mx

2. 베네수엘라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36년 독재자 Gomez 사망 후 석유노동자의 43일 장기파업이 발생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1940년대 중반까지 군부정권에 의해 억압됨.
- 1945년 혁명과도정부를 이끈 민주행동당(Democratic Action: AD) 지도자 Romulo Betancourt가 노동조합의 AD 지지를 공고히 하고자 중앙노조조직인 CTV(Confederacion de Trabajadores de Venezuela)를 설립함.

- 1948년 Perez Jimenez가 이끄는 군부세력에 의해 AD당 정부가 전복되자 1958년 군부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노동조합도 해체됨.
- 1959년 AD당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CTV 조직도 재건되고 90% 이상의 조직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만큼 입지가 강화됨.
- CTV와 AD당과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 CTV는 AD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해 파업 등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야권을 이끄는 Chavez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함.
- 1998년 Chavez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CTV로부터 받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CTV를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부패조직으로 단정하였음. 이에 따라 1999년 8월, CTV와 3,000여개 노동조합에 대한 해체, 자산몰수, 노조간부 해외여행 금지, 노조회계감사 등을 내용으로 한 법령초안을 마련하기도 함.
- Chavez 대통령은 2000년 12월 3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CTV의 모든 지도부를 교체하도록 하였음. 이에 CTV는 2001년 10월 선거에서 새 위원장으로 Carlos Ortega를 선출했으나 Chavez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 2002년 4월 11일 CTV가 Chavez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다음 날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Chavez 대통령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함.
- 그러나 4월 14일 Chavez 대통령을 지지하는 빈민층의 시위가 시작되자 Chavez 대통령은 구금에서 풀려나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CTV 위원장인 Carlos Ortega의 체포명령이 내려지자 Ortega는 코스타리카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됨.
- 결국 이러한 구도에서 Chavez정부는 CTV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조합 중앙조직의 결성을 필요로 했는데 그 결과 UNT(Union Nacional de Trabajadores)가 탄생함.

2) 일반 개요

- 2013년 3월 Chavez 대통령이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Nicolas Maduro Moros가 2013년 4월 실시된 대선에서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됨.
- 임기 5년의 단원제 국회는 총 165석인데, 여당 98석(득표율: 48.9%), 야당연합 65석(득표율: 47.9%), 기타 2석(득표율: 3.2%)으로, 여야의 의석수는 차이가 나지만 득표율은 거의 비슷함.
- 석유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전체 수출총액의 약 96%, 국가예산 재원의 약 45%) 석유산업의 노사관계는 매우 예민하고 중요함.
- 인구의 약 31%가 빈곤층에 속하며, 2013년 기준 실업률은 7.9%로 나타나고 있음.

3) CTV (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Venezuela)

- 조합원 수: (ITUC 등록: 25만명)
- 위원장: Jose Elias Torres
- ITUC의 가맹조직이지만 내부적 어려움으로 활발한 국제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
- 연락처
  - Avde Este 2, Edif. "José Vargas" Piso 17
    (Av. Andrés Eloy Blanco), Los Caobos
    Caracas 1050
    Venezuela
  - 전화: +58 21 2574 1049
  - 팩스: +58 21 2574 0005
  - 이 메일: ctv.venezuela@gmail.com

• 웹사이트: www.ctv.org.ve

4) ASI (Alianza Sindical Independiente)

- 조합원 수: (ITUC 등록: 12만명)
- 위원장: Carlos Navarro Carrasco
- ITUC 가맹조직
- 연락처
  • Av Universidad, Esquina Coliseo a Salvad
  de Leon Ed. La Galeria Of. 13-D
  Caracas 1010 A
  Venezuela
  • 전화: +58 21 2541 0378
  • 팩스: +58 21 2543 0202
  • 이 메일: asialianzasindical@gmail.com
  • 웹사이트: www.asialianzasindicalindependiente.com

3. 브라질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브라질의 노동운동은 20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며, 1920년대에 Confederacion Nacional de Trabajo(CNT)와 공산계 Confederacion General del Trabajo(CGT)가 설립됨.
- 1930-45년 Vargas 대통령 재임 중의 코포러티즘에서는 파업이 금지되고

노조조직이 정부로 흡수되었으며 농업노동자의 조직화가 금지되었음.

- 1946년 이후, 결사의 자유가 개선되면서 CGT가 재결성되고 통합노총 결성 노력이 이루어지는 등 노조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 했으나 1964년 군사 쿠테타로 다시 노조운동은 보안법의 철권통제를 받게 됨.
- 1983년 8월, 5,000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브라질 최초의 노동조합 총연맹인 CUT가 출범함.
- CUT 출범에 불참한 노조들은 1983년 11월 협의체 형태의 CONCLAT(Coordenacao Nacional des Classes Trabalhadores)를 구성함으로써 제2노총 건설을 준비함. 1986년 CONCLAT는 조직개혁을 통해 CGT(Central Geral dos Trabalhadores)로 개칭함.
-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노동조합 수는 49% 증가해 총 11,354개가 되었고, 총 조합원 수는 22% 증가했음.
- 2007년, 그동안 제2노총의 자리를 차지해 온 CGT(Central Geral dos Trabalhadores)가 해체되고 새 중앙노조인 UGT(União Geral dos Trabalhadores Brasil)로 재출범함.
- 2012년 기준 전체 인구는 약 2억 명, 임금노동자 수는 약 6천5백만 명, 노조 조직률은 17.7% 정도임.
-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중앙노조총연맹(Central Labor Union), 총연맹(Confederation), 연맹(Federation), 단위 노동조합(union)으로 되어 있음.
- 중앙노조총연맹(Central Labor Union)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최소 5개 주에 걸쳐 100개 이상 노조 가입 또는 ②최소 3개 주에 각각 20개 이상 회원 노조 가입 또는 ③최소 5개 이상 산별노조 가입 또는 ④전체 가입 노조원 수가 전국 노조원 총수의 7% 이상인 경우 등 일정조건을 갖춰야 함. 현재 인정된 조직은 5개이며 인정되지 못한 조직은 4개임.
- 브라질 정부통계에 의하면 인정된 5개 중앙노조 총연맹은 2012년 현재 CUT(2,658,272명, 36.65%), FS(991,811명, 13.67%), UGT(816,396명,

11.25%), CTB(663,470명, 9.15%), NCST(587,136명, 8.09%)임. 인정되지 못한 4개 중앙노조로는 CGTB, CSP, Conlutas, CBDT가 있음.

- ILO 핵심협약 중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보호)만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일노조 인정이 협약에 위반되기 때문임.
- 조합비는 월급여의 1%로, 체크오프 시스템임.
- 비조합원도 노동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연간 1일분을 매년 3월에 납부해야 함[36]. 이 공제액은 조합비와 별도로 단위노조에 60%, 연맹에 15%, 총연맹에 5%, 중앙노조총연맹에 10%, 연방정부의 고용임금계정에 10%씩 자동이체 됨.

2) 노사관계 개요

- 1930년 혁명으로 노동자단체가 사회법인(social incorporation)이 될 수 있게 됨. 1943년 Vargas 대통령 당시에 제정된 노동법이 시대의 추세를 반영해 몇 차례 개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Vargas 대통령(1930-45)은 노조 코포라티즘 체계를 구축했음.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노조가 대중동원을 하고 정당과 정부가 노조에 특혜를 주는 수준의 코포러티즘이 아니라 노조가 일방적으로 통제받는 방식이었음. 따라서 멕시코만큼 노동조합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음.
- 군사정부의 통치하에 있던 브라질은 1982년 최초로 다당제의 선거가 이루어졌고, 1988년 헌법에서는 모든 노동자(공무원 포함)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됨.
- 1990년대 경제전반의 구조조정과 1999년의 외환위기는 노동운동, 단체교섭, 사회적 대화 등에 대한 노조의 인식을 변화시켰음. 기존의 국

36) 기업에 따라 1일 임금이 아니라 한해 성과배분금(PLR)의 약 4%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내산업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시장경제 현실을 인정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수출 중요성을 인식함.

- 2010년에는 소비 및 투자확대에 힘입어 7.5% 성장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유럽 및 미국의 재정위기로 2.7%의 성장을 이룸. 2016년까지 5%대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빈부격차와 사회불평등 확대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3) CUT (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

(1) 창립과정 및 발전

- 약 7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브라질 최대 노총으로 1983년 8월, 노동자당(PT)과 소작노동자의 참여로 출범함. 1964-1985년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투쟁에 앞장선 조직 중 하나로, 주력조직은 국영기업임.
- 1995년 30일 간의 Petrobras노조 파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59명의 노조간부가 해고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
- CUT는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 성향을 갖고 있으며, 2002년 대선에서 금속노조 출신인 PT당의 룰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6년 재선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현재 집권여당인 노동자당(PT)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04년 3월에는 룰라 대통령에 반기들 든 노조간부들이 Coordenação Nacional de Lutas (National Coordination of Struggles, CONLUTAS)를 결성함에 따라 CUT 지도부의 약 30-40%가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함. CONLUTAS는 PT당보다 사회자유당(P-SOL)을 지지함.

(2) 조직현황

❍ 지도부

- 위원장: Arthur Henrique da Silva Santos(전기전자출신, 2006년 당선)
- 사무총장: Quintino Severo

❍ 국제활동

- ITUC 가맹조직이며(782만 조합원으로 등록), 2014년 ITUC 세계총회에서 CUT의 João Antonio Felicio 전 위원장이 ITUC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4년마다 대륙별로 교대). 일반이사회 정이사로도 선출됨.
- OECD-TUAC에 준회원으로 참가(브라질에서 유일 조직).

(3) 연락처

- Rua Caetano Pinto 575
  Sao Paulo SP 03041-000
  Brazil
- 전화: +55 11 2108 9101
- 팩스: +55 11 3272 9601
- 이 메일: sri@cut.org.br
- 웹사이트: www.cut.org.br

4) FS (Força Sindical)

- CGT 노조간부 출신인 Luis Antonio Medeiros에 의해 1991년 창립되었는데, CGT 및 CUT와 달리 대립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며 강온전략을 구사함.

- 조합원 수: 210만(ITUC 등록)
- 회원조합 수: 27개
- 위원장: Miguel Torres
- 국제활동: ITUC 가입, Nilton Souza가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로 선출됨.
- 연락처
  - Rua Rocha Pombo, 94- 8으 andar Liberdade
    São Paulo SP 01525-010
    Brazil
  - 전화: +55 11 3348 9009
  - 팩스: +55 11 3348 9008
  - 이 메일: secinter1@fsindical.org.br
  - 웹사이트: www.fsindical.org.br

5) UGT (União Geral dos Trabalhadores Brasil)

- CGT와 통합해 2007년 새로이 결성됨.
- 조합원 수: 135만(ITUC 등록)
- 위원장: Ricardo Patah
- 국제활동: ITUC 가입, Monica Mata Roma(여)가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로 선출됨.
- 연락처
  - Rua Aguiar de Barros 144, Bela Vista
    São Paulo/SP CEP 0316-020
    Brazil
  - 전화: +55 1121117300
  - 팩스: +55 1121117301

- 이 메일: internacionais@ugt.org.br
- 웹사이트: www.ugt.org.br

6) CNPL (Confederação Nacional das Profissões Liberais)

- 1992년 설립되었으며, 총회는 3년마다 열림(7차 총회: 2013~2016년).
- 조합원 수: 28만(ITUC 등록)
- 회원조합 수: 28개
- 위원장: Carlos Alberto Schmitt de Azevedo
- 연락처
  - Barra Sul Quadra 6
    Bloco K Edificio Belvedere,
    Sala 212 CEP 70070-000
    Brasilia Brazil
  - 전화: +55 6121031683
  - 팩스: +55 6132231684
  - 이 메일: cnpldf@cnpl.org.br
  - 웹사이트: www.cnpl.org.br

4. 칠레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09년 칠레노동자연맹(Federation of Chilean Workers, FOCH)이 최초로 등장했으나 노조가 인정되고 단체교섭이 시작된 것은 1930년대임.

- 1936년 CTCH(Confederacion de Trabajadores de Chile)가 창립되었으나 1940년대에 기독민주당,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파벌로 분열되었다가 1953년 CUT(Central Union of Workers)로 통합됨.
- 1970년대 CUT는 아옌데의 당선을 적극 지지했으며 CUT 일부 지도부가 아옌데 정권하에서 각료로 임명되기도 함.
-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아옌데정권을 쿠데타로 전복하고 16년간 장기 통치함. 피노체트 정권은 파업 불법화, 단체협상 중지 및 노조해산 등의 강경책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이 침체기를 맞이함.
- 1982년 공무원노조 위원장인 Tuscapel Jimenez가 피노체트 정권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면서 포괄적 노조설립에 대한 발표를 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함.
- 1983년 구리광산업노조인 CTC는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전국적 투쟁을 시작했고, 이후 CTC와 기타 60여 명의 노조지도자들이 CNT(National Workers' Command)를 설립함.
- 1985년 CNT 지도부가 파업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함.
- CNT는 1986년 최초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려 했였으나 정부의 개입으로 좌초되었음. 이후 전국적 규모의 노총설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88년 칠레노총(CUT)이 창립됨.
- 조직률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음.
- 외주화(outsourcing)로 노조가 소규모화(atomization)되었음. 2006년 노동조합은 1만 여 개에 달했으나 총 조합원은 약 88만으로, 노조 당 평균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으로 소규모임.
- 칠레의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조 중심이었으나 최근 직종별 · 산별 노조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칠레 노동법은 직종별 · 산별노조와의 단

체교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칠레노총은 이데올로기 및 정치적 입지 약화와 노동자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재정부족과 노조운동가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됨.

2) 노사관계 개요

- 칠레의 노동조합 수는 1990년 8,861개에서 2004년 18,047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동기간 조합원수도 60만6천명에서 68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농업부문 조직률이 1998년 7.5%에서 2003년 9.1%로 증가함. 동기간 광산업의 경우 45%에서 51.4%, 건설업 9.7%에서 13.6%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17%에서 14.1%로 감소함.
- 칠레의 노조는 2년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함. 임금의 경우, 단순히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기업이 물가인상률을 초과하는 실질적 임금인상을 해주고 있음[37].
- 칠레의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높으나 높은 유연성이 바로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칠레에는 아직 효과적 노동법이 없으나 단체협약을 통한 실업보험,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적 혜택이 있음.
- 2004년 자료에 의하면 77.3%의 노동자가 정년을 보장받고 있으며, 계약직 노동자는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 종사하며 15%에 불과함[38].
- 칠레의 노동조합은 주요 노동이슈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를 협상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음. 전통적으로 스스로를 노동당이라고 불렀던 정치인들도 더 이상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음.

37) 광산업의 경우 84.6%, 제조업의 경우 42.9%가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임금인상을 해 줌 (2004년 자료)

38) 서비스산업의 경우 계약직 노동자는 34.8%

- 오랜 세월 군사독재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경험에 의해 개량주의 (Revionism) 입장을 견지하게 됨.

3) CUT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 장기집권을 거부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의해 피노체트가 물러나면서 1988년에 칠레노총(CUT)이 창립됨.
- 조합원 수: 68만 명 (2007) (ITUC 등록: 40만), 조직률은 13.8% (2006)
- 지도부: 위원장 Arturo Martínez, 사무총장 Jorge Gajardo
- 국제활동: ITUC 가입
- 연락처
  -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CUT)
    Alameda 1346, Santiago, Chile
  - 전화: +56 2352 7600
  - 팩스: +56 2672 0112
  - 이 메일: presidencia@cutchile.cl
  - 웹사이트: www.cutchile.cl

4) CAT (Central Autónoma de Trabajadores de Chile)

- 조합원 수: 107,000명(ITUC 등록)
- 지도부: 위원장 Osvaldo Herbach Alvarez, 사무총장 Pedro Robles
- 국제활동: ITUC 가입
- 연락처
  - CAT
    Calle Sazie, 1761

Santiago, Chile
- 전화: +56 22 657 8530
- 팩스: +56 22 657 8538
- 이 메일: catchile@catchile.cl
- 웹사이트: www.catchile.cl

5) UNT (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 조합원 수: 92,000명(ITUC 등록)
- 국제활동: ITUC 가입
- 연락처
  - 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UNT)
    Calle Moneda N으 1447
    Santiago, Chile
  - 전화: +56-26886344
  - 팩스: +56-26926834
  - 이 메일: presidencia@untchile.cl
  - 웹사이트: www.untchile.cl

제17장 아프리카

1. 가나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1941년 영국식민정부는 노동조합법(Trade Union Ordinace)을 제정해 노동조합을 합법화함.
- 1945년 가나노총의 전신인 골드코스트노동조합회의(Gold Coast Trades Union Congress of Ghana)가 결성되지만 정치적 변화에 의해 여러 차례 조직이 개편됨.
- 1984년 가나 TUC(Trades Union Congress of Ghana)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의 기능을 하기 시작함.
- 1985년 가나 TUC와 여러 공공부문 노동자협회(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지만 정부와 교섭)가 전국노동협의포럼(National Consultive Forum of Ghana Labour: NFGL)을 결성해 정부와 대화채널을 구축함.
- 1999년 기독교계통의 세계노동총연맹(WCL) 노동조합조직이 결집해 가나노동연맹(Ghana Federation of Labour: GFL)을 결성하기도 함.
- 현재 ITUC의 회원조합으로는 TUC와 GFL이 있으며, 9백만 노동인구 중 약 35만 명이 조직화됨.

2) 노사관계 개요

- 고용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58년 노사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Act)을 제정했으며, 1965년에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1959년에 ILO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비준함.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파업도 가능하지만 노동조합 등록이 쉽지 않고 파업 이전의 냉각기간이 길어 파업 발생빈도는 낮은 편임.
- 2003년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결성되었음. 또한 TUC가 특정노조의 교섭대표 인정권을 갖고 있었으나 이 권리가 노동부로 이관됨.

3) TUC (Ghana Trades Union Congress)

- 1945년 '골드코스트노동조합회의'(Gold Coast Trades Union Congress of Ghana)로 출범했으며, 1941년 노동조합법(Trades Union Ordinance)에 의해 등록된 14개 회원조합으로 구성되었음.
- 조합원 수: 50만명(ITUC 등록: 27만5천)
- 회원조합 수: 18개
-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Kofi Asamoah, ILO 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ITUC 가입
- 연락처
  - Ghana Trades Union Congress
    Secretary General
    Hall of Trade Unions,
    P.O. Box 701
    Accra, Ghana

- 전화: +233 21662568
- 팩스: +233 21667161
- 이 메일: ghanatuc@gmail.com
- 웹사이트: www.ghanatuc.org

4) GFL (Ghana Federation of Labour)

- 1999년 기독교계열 노조가 결집해 출범했으며 세계노총(WCL)에 가입했음.
- 조합원 수: 48,200명(ITUC 등록)
- 연락처
  - Ghana Federation of Labour
    P.O. Box Trade Fair 509
    LA – Accra, Ghana
  - 전화: +233 30 225 2105
  - 팩스: +233 30 230 7394
  - 이 메일: gflgh@hotmail.com

2. 나이지리아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노동조합운동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미 제 기능을 갖춘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음.
-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식민정부는 노동조합 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처

음으로 노동조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함.

-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분열과 내전의 유혈충돌 및 군부 개입 등으로 오랜 정치적 불안을 경험함.
- 1970년 초에는 수백 개 노동조합과 Nigeria Trade Union Congress(NTUC), Labour Unity Front(LUF), United Labour Congress(ULC), Nigeria Workers Council(NWC) 등 4개의 전국단위 노동조합단체가 결성되어 있었으나 1970년 대 중반 군사정권에 의해 모두 해체됨.
- 1978년 유일노총으로 NLC(Nigeria Labour Congress)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강요된 합리화 조치로 수백 개에 달하던 노동조합과 협회가 42개 산업노조로 축소됨.
- 이후에도 노동통제적 정치상황이 지속되었는데 1989년에는 국제산별노련(ITS) 가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발표되면서 가입한 노조에 벌금이 부과되기도 함.
- 1993년에는 NLC가 3일간 파업을 계획했다 철회하자 나이지리아 석유노조(NUPENG)가 10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함.
- 1994년 석유노조(NUPENG)의 파업은 동종업종 노조 PENGASSAN의 동조파업으로 6개월 간 지속되었는데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는 실패함. 결국 정부가 이 두 노조와 NLC 지도부를 해임하고 행정관료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통제하기 시작함.
- 1996년 정부는 NLC 산별노조 42개를 29개로 다시 축소하고 현장 조직 전문가의 NLC 직책을 금지하였으며, 무파업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고 조합비의 10%를 NLC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함.
- 1998년 구속된 석유노조 간부가 석방되고, NLC를 운영하던 행정관료가 철수되면서 1999년의 개정헌법의 공간 속에서 NLC를 포함한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
- 2004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유일노총 NLC 외에 다른 노총의 결성이

가능해짐. 대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조합단체로는 나이지리아 TUC(Trade Union Congress)가 있음.

- 2003년에는 TUC의 8개 노조가 이탈해 CFTU(Congress of Free Trade Unions)를 결성함.

2) 일반 개요

- 250개 이상의 다양한 종족과 언어로 구성된 나이지리아는 종교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50%와 40%를 차지해 정치적 · 종교적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음. 인구는 1억7천만 명 이상으로,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국임.
- 2011년 4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Goodluck Jonathan이 총 투표의 58.9%를 획득해 임기 4년(중임 가능)의 대통령에 당선됨.
- 양원제이며, 2011년 4월 총선의 결과 인민민주당인 PDP가 205석, 행동의회당 ACN이 69석, 진보변화당 CPC가 36석, 범나이제리아인민당 ANPP가 28석, 노동당인 LP가 9석, 범진보대동맹인 APGA가 6석, 대통합당인 ACC가 5석, 기타 2석을 차지해 정치권이 상당히 난립해 있음.
- 농업과 통신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최근 몇 년 간 6~8%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재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고 항만과 도로 등의 인프라가 취약해 향후 성장전망이 불확실함.

3) NLC (Nigeria Labour Congress)

- 조합원 수: 4백만 명(ITUC 등록: 2백만 명)

- 회원조합 수: 42개
- 위원장: Omar Abdulwhed I,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ITUC, OATUU 가입
- 연락처
  - Nigeria Labour Congress
    Labour House, Plot 820/821
    Central Business District
    Federal Capital Territory, Abuja
    Nigeria
  - 전화: +234 9627 4342
  - 팩스: +234 9627 6042
  - 이 메일: gsec@nlcng.org
  - 웹사이트: www.nlcng.org

4) TUC (Trade Union Congress of Nigeria)

- 조합원 수: 50만명(ITUC 등록)
- 위원장: Peter Esele
- 국제활동: ITUC 가입
- 연락처
  - Trade Union Congress of Nigeria
    338 Ikorodu Road, Express House
    Idi-Irako B/Stop Maryland
    Lagos
    Nigeria
  - 전화: +234 1470 1699

- 팩스: +234 1555 4822
- 이 메일: info@tuc-nigeria.org
- 웹사이트: www.tuc-nigeria.org

3. 남아프리카공화국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백인노동자 노조조직은 1911년 결성됨. 흑인노동자 노동조직은 1917년경부터 생기기 시작해 1919년에는 아프리카상공노동조합이 설립됨.
- 1930년대에는 흑인노조가 백인 중심의 노조연맹인 SATLC(South African Trades and Labour Council)에 가입하기 시작했으며, 1940년대부터 흑인중심 노조연맹(Council of Non-European Trade Unions)에 가입하는 흑인노조도 많이 생겨남.
- 그러나 1948년 국민당(National Party)이 집권하면서 흑인노조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어 1954년 SATLC는 해체되고 TUCSA로 대체되었으며 흑인노조는 TUCSA로부터 축출됨. 이 중 SATLC의 14개 회원노조가 SACTU(South African Congress of Trade Unions)를 결성함.
- SACTU는 ANC(African National Congress)의 노조기구로 정치적 성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1970년대까지 지하운동으로 잠입하게 됨.
- 1976-77년의 소웨토(Soweto)사태 이후 고용관계법에 변화가 생기면서 SACTU가 인종차별(apartheid) 반대와 백인노조 TUCSA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한 결과, 1985년 COSATU가 결성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해체됨.

- 1979년 다인종 노조연맹인 FOSATU(Federation of non-racial South African Trade Unions)가 설립되었고, 1980년에는 흑인노조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CUSA(Council of Unions of South Africa)가 발족됨.
- 1985년에는 FOSATU가 같은 해에 설립된 COSATU에 가입하고, 1986년에는 CUSA가 AZACTU(Azan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와 통합하면서 흑인노조인 NACTU(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를 설립함.
- 1986년 5월 1일, 약 150만 명의 흑인노동자가 메이데이 공휴일 지정을 요구하며 사상 최대의 파업을 조직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의 투쟁이 이어짐.
- 정부는 COSATU와 NACTU를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으며, 국가보안법으로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구속 · 투옥하였음. 분규를 이유로 한 노동자 해고도 계속됨.
- 1990년대 들어 그동안의 철권통제정책이 완화되자 COSATU는 조직확대를 꾀하였으며, ANC와 남아공공산당(SACP)과 혁명연합에 참여하기도 함. 상대적으로 NACTU는 흑인 중심 노조 성향과 내부 분열로 인해 COSATU만큼의 성장기회를 갖지 못함.
- 남아공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정부의 인종차별에 대항한 민주투쟁과 임금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진보노동운동의 모델로 부상했음.

2) 노사관계 개요

- 1988년 국민당(National Party) 정부는 COSATU(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를 포함한 17개 다른 단체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1988년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금지함으로써 1970년대 초반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노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고, 이에 노조는 파업과 시위로 저항함.
- 이러한 노조탄압은 경쟁조직인 COSATU와 NACTU(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의 단결을 가져왔으며, 1988년 6월에는 수백만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단행함.
- 1989년 남아공노조단체들은 남아공노조조정위원회(SATUCC)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농업노동자, 공공부문노동자, 가내노동자가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하였고 흑인의 참정권 쟁취를 위한 파업을 포함한 공동 행동을 취함.
- 1991년 양노총인 COSATU와 NACTU, 사용자단체인 SACCOLA(South African Employers' Consultative Committee on Labour Affairs)가 3년간 교섭한 결과, 노동관계법이 개정돼 그동안의 제한조항이 모두 폐지됨.
- 1991년 개정법에 따라 노조가 삼자기구인 국가인력자원위원회(National Manpower Commission: NMC)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노사정 각 10명씩 의석이 배분되었음.
- 1994년에는 COSATU의 강력한 주장으로 국가인력자원위원회(NMC)와 국가경제포럼(National Economic Forum: NEF)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경제발전노동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NEDLAC)가 설립됨.
- 1995년 NEDLAC은 고용관계를 총 망라하는 새로운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 기술개발법(Skills Development Act),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에 관한 입법에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 단체교섭, 파업권, 직장폐쇄, 피케팅, 해고, 직장위원회, 부당해고, 분쟁절차, 보상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음. 또한 알선조정중재위원회(Commission for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CCMA)가 설립되고, 기술개발 및 고용에 있어서 기회 평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됨.

3) COSATU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1) 창립과정 및 발전

- COSATU는 1985년 인종차별 반대와 다인종 노조단체를 근간으로 흑인노동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33개 노조, 약 55만 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함.
- COSATU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운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1997년 셉템버위원회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업장과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 사회조합주의(social unionism)를 추구하기로 함.

(2) 조직현황

❍ 개요

- 현재 21개 회원조합과 200만 명(맹비 납부 조합원: 18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남아공의 최대 노총임.

❍ 회원조합

- CEPPWAWU (화학, 에너지, 목재, 제지)
- CMU (통신)
- FAWU (식품)
- DENOSA (보건)
- MUSA (예술가)

- NEHAWU (공공 교육, 보건, 복지)
- NUM (광산)
- NUMSA (금속)
- PAWE (연예인)
- PAWUSA (공공)
- PORCRU (경찰, 교도관)
- SACCAWU (상업)
- SACTWU (섬유)
- SADNU (간호사)
- SADTU (교원)
- SAFPU (축구선수)
- SAMA (의료)
- SAMWU (지방자치)
- SASAWU (공무원)
- SASBO (은행, 보험)
- SATAWU (운수)

❍ 운영체계

- 총회는 3년 마다 열리며, 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차석부위원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및 회계 등 6인으로 구성됨.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전임으로 활동함.
-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는 연 1회, 중앙집행위원회(Central Executive Committee)는 연 2회 개최되며, 일상활동과 행정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가 있음.

❍ 지도부

- 사무총장: Zwelinzima Vavi, ITUC 부위원장 겸 일반이사회 정이사
- 위원장: Sdumo Dlamini
- 수석부위원장: Tyotyo James
- 부사무총장: Bheki Ntshalintshali
- 재무처장: Freda Oosthuysen

❍ 국제활동

- ITUC 가입

(3) 연락처

- P.O. Box 1019
  Johannesburg 2000
  South Africa
- 전화: +27 11 339 4911
- 팩스: +27 11 339 5080
- 이 메일: cosatu@wn.apc.org
- 웹사이트: www.cosatu.org.za

4) FEDUSA (Federation of Unions of South Africa)

- 1997년 Federation of South African Labour Unions(FEDSAL)과 Federation of Organisations Representing Civil Employees(FORCE)의 통합으로 설립됨.
- 조합원 수: 51만명(ITUC 등록: 31만명), 백인노동자(사무직 등) 우세 조직

- 회원조합 수: 21개
- 지도부: 위원장 Koos Bezuidenhout, 부위원장(5명) Martle Keyter(여) 외 4명
- 국제활동: ITUC, OECD-TUAC에 준회원으로 참여(남아공에서 유일)
- 연락처
  - Federation of Unions of South Africa
    General Secretary
    P. O. Box 7779
    Westgate 1734
    South Africa
  - 전화: +27 11 279 1800
  - 팩스: +27 11 279 1821
  - 이 메일: fedusa@fedusa.org.za
  - 웹사이트: www.fedusa.org.za

5) NACTU (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

- 1986년 설립됨.
- 조합원 수: 31만명(ITUC 등록), 흑인 노동자 중심.
- 회원조합 수: 22개
- 지도부: 위원장 Joseph Maqhekeni, 부위원장(4명) 위원장 대행, 국제관계, 조직, 양성분야 책임
- 연락처
  - 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
    General Secretary
    P O Box 10928

Johannesburg 2000
South Africa

- 전화: +27 11 333 1800
- 팩스: +27 11 333 1706
- 이 메일: info@nactu.org.za
- 웹사이트: www.nactu.org.za

4. 튀니지

1) 노동조합운동 개요

- 프랑스의 식민통치로 프랑스 노동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민족주의자와 좌파 마르크스주의자의 성향이 강했음.
- 1956년 독립한 다음 해인 1957년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비준함.
-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UGTT(Un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가 유일노총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음. 1978년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조직활동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으나 1989년 이후 다시 관계가 복원되었음.
- 분쟁해결 메커니즘으로 삼자로 구성된 알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음. 파업 이전 10일 간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며 UGTT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절차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음.
- 1987년 Bin Ali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UGTT에 개입하여 Ashour 사무총장을 퇴진시키고 1989년 총회에서 Ismail al-Sahabani를 새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등 정부가 UGTT를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UGTT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 24년간 장기집권을 하면서 시장경제정책을 추구해 온 Bin Ali 대통령이 친인척 비리와 부패로 반정부 시위에 직면하자 2011년 1월 사우디 아라비아로 도망감으로써 '아랍의 봄(Arab Spring)'[39]을 맞이함.
- '아랍의 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012년 총선에서 이슬람주의자당이 압승하자 정국은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자로 양분돼 극도의 혼란 상황에 빠짐. 이에 UGTT가 양측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2013년 12월 통합정부(consensus government)가 출범하고 새로운 헌법 초안이 마련됨. 이렇게 튀니지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킨 공로로 튀니지의 4개 대학에 의해 2014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함.

2) UGTT (Un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

(1) 창립과정 및 발전

- 1946년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독립투사이며 노조지도자인 Farhat Hached에 의해 설립됨.
- 1970년대에는 Bourguiba정권에 저항하기도 했으며, 1978년 1월 파업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여러 노조지도자가 체포되기도 함.
- 1980년대는 조직내부의 이념갈등으로 지도부가 좌파적 성향이 강한 교원노조와 우정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함.
- 1987년 Bin Ali 대통령이 권좌에 오르면서 UGTT에 개입해 Ashour 사무총장을 퇴진시키고 1989년 총회에서 Ismail al-Sahabani를 새 사

39) 2010년 12월 18일 튀니지의 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청년 Mohamed Bouazizi가 경찰의 부패와 가혹행위에 대한 항의로 분신하자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튀니지뿐만 아니라 인근 아랍국가의 장기집권자도 권력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함.

무총장으로 선출했는데 그는 2000년 노조기금 횡령으로 퇴출될 때까지 사무총장직을 맡음.

- UGTT와 Bin Ali 정권 사이의 유착관계는 2010년 말 튀니지의 혁명을 부른 Mohamed Bouazizi의 분신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23년 간 계속됨.
- 2010년 12월 반정부투쟁 기간 중에도 UGTT 지도부와 Bin Ali 정권 관계는 변화되지 않았으나 다수의 UGTT 가맹조합이 반정부 투쟁에 참가함.
- 2011년 Bin Ali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간 후, UGTT는 개혁세력의 주도 하에 정치파업을 이끄는 등 정치적 조직으로서도 튀니지혁명의 중심이 됨.

(2) 조직현황

❍ 개요

- 조합원 수: 517,000명(ITUC 등록)

❍ 지도부

-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Hassine Abassi ITUC 일반이사회 정이사

❍ 국제활동

- ITUC 가입

❍ 연락처

• UGTT

Place Mohammad Ali 29

Tunis 1002

Tunisia

- 전화: +216 7133 2400
- 팩스: +216 7125 9621
- 이 메일: secretariat.general@ugtt.org.tn
- 웹사이트: www.ugtt.org.tn

참고문헌

〉〉 책 자

김금수, 2013, 세계노동운동사, 후마니타스

국제노동협력원, 각국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노사발전재단, 각국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한국노총 & 국제노동협력원, 2007, 세계 주요국 노동조직 현황

Craig Phelan, 2007, Trade Union Revitalisation, Trends and Prospects in 34 countries, Peter Lang(ed),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John Schmitt & Alexandra Mitukiewicz, 2011, Changes in Unionization Rates in Rich Countries, 1960 – 2010,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Martin Upham (ed), 2005, Trade Unions of the World, 6th edition, John Harper Publishing

Rudolf Traub-Merz and Jürgen Eckl, No.1/2007,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Mergers and Contradictions, Friedrich Ebert Stiftung

〉〉 단체 website

www.ilo.org (국제노동기구)

www.ituc-csi.org (국제노총)

www.wftucentral.org (세계노련)

www.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

www.tuac.org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www.itfglobal.org (국제운수노련)

www.uniglobalunion.org (UNI 글로벌유니언)

www.bwint.org (국제건설목공노련)

www.world-psi.org (국제공공노련)

www.iuf.org (국제식품노련)
www.ei-ie.org (국제교원노련)
www.ifj.org (국제언론노련)
www.industriall-union.org (인더스터리올노련/국제제조노련)
www.etuc.org (유럽노동조합총연맹)
www.nfs.net (노르딕국가 노동조합협의회)
www.nosa.or.kr (노사발전재단)
www.eurofound.europa.eu/eiro (유럽노사관계전망대)
www.solidaritycenter.org (미국 국제노동연대센터)
www.jilaf.or.jp (일본 국제노동재단)
www.fes.de (독일 에버트재단)
www.ulandssekretariatet.dk (덴마크 LO-FTF협의회)
www.cia.gov (미국중앙정보국)

〉〉 각국 노총 website

www.ghanatuc.org (가나노총 TUC)
www.adedy.gr (그리스노총 Adedy)
www.nlcng.org (나이지리아노총 NLC)
www.tuc-nigeria.org (나이지리아노총 TUC)
www.cosatu.org.za (남아공노총 COSATU)
www.fedusa.org.za (남아공노총 FEDUSA)
www.nactu.org.za (남아공노총 NACTU)
www.lo.no (노르웨이노총 LO)
www.unio.no (노르웨이노총 UNIO)
www.ys.no (노르웨이노총 YS)
www.fnv.nl (네덜란드노총 FNV)

www.cnv.nl (네덜란드노총 CNV)
www.union.org.nz (뉴질랜드노총 NZCTU)
www.cfl.org.tw (대만노총 CFL)
www.dgb.de (독일노총 DGB)
www.lo.dk (덴마크노총 LO)
www.ftf.dk (덴마크노총 FTF)
www.ac.dk (덴마크노총 AC)
www.fnpr.org.ru (러시아노총 FNPR)
www.mtuc.org.my (말레이시아노총 MTUC)
www.ctmorganizacion.org.mx (멕시코노총 CTM)
www.croc.org.mx (멕시코노총 CROC)
www.unt.org.mx (멕시코노총 UNT)
www.ctv.org.ve (베네수엘라노총 CTV)
www.asialianzasindicalindependiente.com (베네수엘라노총 ASI)
www.congdoanvn.org.vn (베트남노총 VGCL)
www.eng.acv-online.be (벨기에노총 CSC)
www.abvv.be (벨기에노총 FGTB)
www.aclvb.be (벨기에노총 CGSLB)
www.cut.org.br (브라질노총 CUT)
www.fsindical.org.br (브라질노총 FS)
www.ugt.org.br (브라질노총 UGT)
www.cnpl.org.br (브라질노총 CNPL)
www.cmtu.mn (몽골노총 CMTU)
www.aflcio.org (미국노총 AFL-CIO)
www.lo.se (스웨덴노총 LO)
www.tco.se (스웨덴노총 TCO)

www.saco.se (스웨덴노총 SACO)
www.ugt.es (스페인노총 UGT)
www.ccoo.es (스페인노총 CCOO)
www.ntucworld.org.sg (싱가폴노총 SNTUC)
www.ictu.ie (아일랜드노총 ICTU)
www.asi.is (아이슬랜드노총 ASI)
www.bsrb.is (아이슬랜드노총 BSRB)
www.oegb.at (오스트리아노총 ÖGB)
www.cgil.it (이탈리아노총 CGIL)
www.cisl.it (이탈리아노총 CISL)
www.uil.it (이탈리아노총 UIL)
www.members.rediff.com/hms/ (인도노총 HMS)
www.members.rediff.com/intuc/ (인도노총 INTUC)
www.citucentre.org (인도노총 CITU)
www.jtuc-rengo.or.jp (일본노총 JTUC-Rengo)
www.tuc.org.uk (영국노총 TUC)
www.histadrut.org.il (이스라엘노총 Histadrut)
www.acftu.org (중화전국총공회 ACFTU)
www.cmkos.cz (체코노총 CMKOS)
www.cutchile.cl (칠레노총 CUT)
www.catchile.cl (칠레노총 CAT)
www.untchile.cl (칠레노총 UNT)
www.clc-ctc.ca (캐나다노총 CLC)
www.csn.qc.ca (캐나다노총 CSN)
www.turkis.org.tr (터키노총 TURK-IS)
www.hakis.org.tr (터키노총 HAK-IS)

www.disk.org.tr (터키노총 DISK)
www.kesk.org.tr (터키노총 KESK)
www.ugtt.org.tn (튀니지노총 UGTT)
www.pwf.com.pk (파키스탄노총 PWF)
www.ugt.pt (포르투갈노총 UGT)
www.solidarnosc.org.pl (폴란드노총 NSZZ Solidarnosc)
www.cfdt.fr (프랑스노총 CFDT)
www.cgt.fr (프랑스노총 CGT)
www.force-ouvriere.fr (프랑스노총 CGT-FO)
www.cftc.fr (프랑스노총 CFTC)
www.sak.fi (핀란드노총 SAK)
www.sttk.fi (핀란드노총 STTK)
www.akava.fi (핀란드노총 AKAVA)
www.tucp.org.ph (필리핀노총 TUCP)
www.actu.org.au (호주노총 ACTU)
www.hkctu.org.hk (홍콩노총 HKCTU)
www.ftu.org.hk (홍콩노총 HKFTU)
www.liganet.net (헝가리노총 LIGA)
www.munkastanacsok.hu (헝가리노총 MOSZ)

국제노동단체 및 주요국 노총 현황

발 행 2014년
발행인 김동만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Tel: 02)6277-0084 Fax: 02)6277-0068
웹사이트: www.inochong.org
초판·인쇄 삼영프린텍 (02-2279-6292)
ISBN 978-89-6337-125-2